

보훈대상자 의료지원사업 장기전망 모형 연구

- 2022. 8. -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된 것으로서,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서울대학교 김진현

제 출 문

국회예산정책처장 귀 하

본 보고서를 연구용역과제인 “보훈대상자 의료지원사업 장기전망 모형 연구”의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7월

- 연구기관명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구책임자 : 김 진 현 교수
- 연구참여자 : 권 현 정(서울대학교)
최 하 영(서울대학교)
박 은 하(서울대학교)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1. 보훈의료 근거 법령과 보훈의료 현황	3
2. 보훈의료정책의 최근 개정령 및 입법 현황	6
3. 연구목적	7
제2절 연구 수행 체계	8
제3절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9
1. 보훈의료지원 관련 법체계와 입법현황 조사	9
2. 보훈의료 현황 및 의료지원 실태 조사	10
3. 보훈대상자의 장기추계를 바탕으로 한 보훈의료지원 대상자에 대한 추계 및 의료지원 단가의 증장기 전망	10
제2장 보훈의료관련 법 체계 및 입법 현황	13
제1절 한국의 보훈의료법률	15
1. 보훈의료지원대상자 근거 법률	15
2. 보훈의료지원대상자 정의와 유형(국가보훈처, 2022)	16
제2절 입법 현황	22
1. 제20대 국회, 제21대 국회 보훈관련 입법 현황 비교	22
2. 보훈의료지원제도와 입법사항과 비용추계	24

제3장 보훈의료 현황 및 의료지원 실태조사 27

제1절 보훈의료대상자 현황 29

- 1. 보훈대상자 현황과 추이 29
- 2. 보훈의료지원대상자 현황과 추이 34

제2절 보훈 의료이용 현황 37

- 1. 보훈 의료이용 현황 37
- 2. 보훈의료지원 병원유형별 의료이용 현황 38
- 3. 보훈의료지원 의료지원유형별 의료이용 현황 41
- 4. 보훈의료 진료유형별(입원, 외래, 약제비) 의료이용 현황 51
- 5. 기타 국가보훈처 진료보상금 이용 현황 60
- 6. 건강보험 진료비 실태와 비교 70

제3절 보훈의료지원대상자 전망 75

- 1. 보훈대상자 수 추계방법 75
- 2. 보훈의료대상자 수 추계 83

제4장 보훈대상자와 보훈의료비 증장기 전망 87

제1절 진료비 추계 정확성 제고를 위한 추계모형 89

- 1. 추계모형 89
- 2. 예측정확도(MAPE) 92

제2절 보훈의료지원대상자의 의료이용량 추계 93

- 1. 보훈병원 93
- 2. 보훈위탁병원 126
- 3. 보훈의료지원대상자 유형별 의료비 단기추계모형 154

제3절 보훈의료지원대상자 의료비 증장기 추계모형과 전망	157
1. 보훈의료지원대상자 의료비 증장기 추계모형	157
2. 보훈의료지원대상자 연인원 장기추계 결과	157

제5장 결 론 169

1. 연구결과 요약	171
2. 논의	172

참고문헌 175

[부록 1] 보훈병원 명단	177
[부록 2] 보훈위탁병원 명단	177
[부록 3] 시도별 위탁병원 수	194
[부록 4] 제20대 국회 보훈법령 가결법안	195
[부록 5] 제21대 국회 보훈법령 가결법안	202

〈표 목 차〉

〈표 1〉 보훈의료대상자의 자격	4
〈표 2〉 6개 보훈병원 일반 현황	4
〈표 3〉 보훈법률 현황	15
〈표 4〉 보훈의료지원대상자 구분	16
〈표 5〉 보훈의료 진료비 감면대상자와 감면비율	20
〈표 6〉 국회별 보훈법령 입법 현황 비교	23
〈표 7〉 관련법령 중 의료비 추가 비용 추계액	24
〈표 8〉 제21대 국회 계류의안 중 의료지원관련 주요 입법 사항	25
〈표 9〉 보훈대상자 현황과 추이(1962-2021)	30
〈표 10〉 참전 유공자 연령별 분포(2021.08.11 기준)	32
〈표 11〉 국비진료대상자 추이(2015-2021)	35
〈표 12〉 감면진료대상자 추이(2015-2021)	35
〈표 13〉 보훈의료비 지원실적(2010-2021)	37
〈표 14〉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진료연인원	38
〈표 15〉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총진료비 비교	39
〈표 16〉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진료단가 비교	40
〈표 17〉 보훈병원의 진료대상별 진료연인원	41
〈표 18〉 보훈병원 국비진료대상자별 진료연인원 추이	42
〈표 19〉 보훈병원 감면진료대상자별 진료연인원 추이	43
〈표 20〉 보훈병원 국비진료대상자별 총진료비	44
〈표 21〉 보훈병원 감면대상자별 총진료비	45
〈표 22〉 보훈병원 국비진료대상자 진료단가	46
〈표 23〉 보훈병원 감면대상자별 진료단가	47
〈표 24〉 보훈위탁병원 진료대상, 유형별 진료연인원	48
〈표 25〉 보훈위탁병원 진료대상, 유형별 총진료비	49
〈표 26〉 보훈위탁병원 진료대상, 유형별 진료단가	50
〈표 27〉 의료기관별 입원진료 연인원 비교	51

〈표 28〉 의료기관별 총입원진료비 비교	52
〈표 29〉 의료기관별 입원의료비 단가 비교	53
〈표 30〉 의료기관별 외래진료 연인원 비교	54
〈표 31〉 의료기관별 총외래진료비 비교	55
〈표 32〉 의료기관별 외래의료비 단가 비교	56
〈표 33〉 의료기관별 약제비 진료연인원 비교	57
〈표 34〉 의료기관별 약제비 비교	58
〈표 35〉 의료기관별 약제비 단가 비교	59
〈표 36〉 보철구 지급 사업 결산액	61
〈표 37〉 보철구 항목과 항목별 사용 연한	61
〈표 38〉 연도별 보철구 공급, 수리 실적(2016-2020)-대분류	62
〈표 39〉 연도별 보철구 공급실적(2016-2020) - 제작품	63
〈표 40〉 연도별 제작품 보철구 단가 추이	64
〈표 41〉 연도별 보철구 공급실적(2016-2020) - 기성품	65
〈표 42〉 연도별 기성품 보철구 단가 추이	66
〈표 43〉 보철구 지원사업 예산추계방법 요약	66
〈표 44〉 고엽제 환자검진 예산결산	68
〈표 45〉 고엽제 환자검진 예산결산 추계	69
〈표 46〉 10년간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2012~2021)	70
〈표 47〉 보훈병원 진료 현황(2012~2021)	71
〈표 48〉 건강보험가입자와 보훈의료지원대상자 보훈병원 진료비 단가 비교	71
〈표 49〉 보훈위탁병원 진료 현황(2012-2021)	72
〈표 50〉 건강보험가입자와 보훈의료지원대상자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단가 비교	73
〈표 51〉 건강보험가입자와 보훈의료지원대상자 기관별 진료비 단가 증감률 비교	73
〈표 52〉 건강보험가입자와 보훈의료지원대상자 유형별 진료비 단가 증감률 비교	74
〈표 53〉 보훈대상자 유형별 대상자 수 추이	76
〈표 54〉 완전생명표	78
〈표 55〉 참전보훈대상자 코호트 구성법에 따른 추계결과	79
〈표 56〉 보훈대상자 장기추계 (1)	81
〈표 57〉 보훈대상자 장기추계 (2)	82

〈표 58〉 연도별 보훈대상자와 의료지원 대상자 수 장기추계(1)	84
〈표 59〉 연도별 보훈대상자와 의료지원 대상자 수 장기추계(2)	85
〈표 60〉 추세분석모형의 유형	91
〈표 61〉 상이자 입원진료연인원 추계치 비교	93
〈표 62〉 상이자 입원진료단가 추계치 비교	94
〈표 63〉 상이자 세부모형 입원 진료비총액 추계치 비교	94
〈표 64〉 상이자 총액모형 입원 진료비총액 추계치 비교	95
〈표 65〉 보훈병원 상이자 입원진료비 세부추계모형 총액추계모형 오차율 비교	95
〈표 66〉 상이자 외래진료연인원 추계치 비교	96
〈표 67〉 상이자 외래진료단가 추계치 비교	97
〈표 68〉 상이자 세부모형 외래진료비총액 추계치 비교	97
〈표 69〉 상이자 총액모형 외래 진료비총액 추계치 비교	98
〈표 70〉 보훈병원 상이자 외래진료비 세부추계모형 총액추계모형 오차율 비교	98
〈표 71〉 고엽제 등외자 입원진료 연인원 추계치 비교	99
〈표 72〉 고엽제 등외자 입원진료단가 추계치 비교	100
〈표 73〉 고엽제 등외자 세부모형 입원 진료비총액 추계치 비교	100
〈표 74〉 고엽제 등외자 총액모형 입원 진료비총액 추계치 비교	101
〈표 75〉 보훈병원 고엽제 등외자 입원진료비 세부추계모형 총액추계모형 오차율 비교	101
〈표 76〉 고엽제등외자 외래진료연인원 추계치 비교	102
〈표 77〉 고엽제 등외자 외래진료단가 추계치 비교	103
〈표 78〉 고엽제등외자 세부모형 외래진료비총액 추계치 비교	103
〈표 79〉 고엽제 등외자 총액모형 외래 진료비총액 추계치 비교	104
〈표 80〉 보훈병원 고엽제 등외자 외래진료비 세부추계모형 총액추계모형 오차율 비교	104
〈표 81〉 보훈병원 감면대상자 진료실적 구성비(2021년기준)	105
〈표 82〉 일반감면 입원진료 연인원 추계치	106
〈표 83〉 일반감면 입원진료단가 추계치	106
〈표 84〉 일반감면 입원진료비 총액 세부모형 추계치	107
〈표 85〉 일반감면 입원진료비 총액모형 추계치	108
〈표 86〉 일반감면 외래진료 연인원 추계치	108
〈표 87〉 일반감면 외래진료단가 추계치	109

〈표 88〉 일반감면 외래진료비 총액 세부모형 추계치	110
〈표 89〉 일반감면 외래진료비 총액모형 추계치	110
〈표 90〉 일반감면 약제비 단가추계치	111
〈표 91〉 일반감면 약제비 세부모형 추계치	112
〈표 92〉 일반감면 약제비 총액모형 추계치	112
〈표 93〉 일반감면 진료유형별 평균절대오차율 비교	113
〈표 94〉 참전감면 입원진료 연인원 추계치 비교	115
〈표 95〉 참전감면 입원진료단가 추계치 비교	116
〈표 96〉 참전감면 총액모형 입원 진료비총액 추계치 비교	118
〈표 97〉 참전감면 외래진료 연인원 추계치 비교	119
〈표 98〉 참전감면 외래진료단가 추계치 비교	121
〈표 99〉 참전감면 총액모형 외래 진료비총액 추계치 비교	122
〈표 100〉 참전감면 약제비 단가 추계치 비교	124
〈표 101〉 참전감면 총액모형 약제비 총액 추계치 비교	125
〈표 102〉 보훈위탁병원 국비 입원진료 연인원 추계치 비교	126
〈표 103〉 보훈위탁병원 국비 입원진료단가 추계치 비교	127
〈표 104〉 보훈위탁병원 국비 세부모형 입원진료비 총액 추계치 비교	127
〈표 105〉 보훈위탁병원 국비 총액모형 입원진료비 총액 추계치 비교	128
〈표 106〉 보훈위탁병원 국비 입원진료비 세부추계모형 총액추계모형 오차율 비교	128
〈표 107〉 보훈위탁병원 국비 외래진료 연인원 추계치 비교	129
〈표 108〉 보훈위탁병원 국비 외래진료단가 추계치 비교	130
〈표 109〉 보훈위탁병원 국비 세부모형 외래진료비 총액 추계치 비교	130
〈표 110〉 보훈위탁병원 국비 총액모형 외래진료비 총액 추계치 비교	131
〈표 111〉 보훈위탁병원 국비 외래진료비 세부추계모형 총액추계모형 오차율 비교	131
〈표 112〉 보훈위탁병원 국비 약제비 진료단가 추계치 비교	132
〈표 113〉 보훈위탁병원 국비 세부모형 약제비 총액 추계치 비교	133
〈표 114〉 보훈위탁병원 국비 총액모형 약제비 총액 추계치 비교	133
〈표 115〉 보훈위탁병원 국비 약제비 세부추계모형 총액추계모형 오차율 비교	134
〈표 116〉 보훈위탁병원 응급입원진료 연인원 추계치 비교	134
〈표 117〉 보훈위탁병원 응급입원진료 단가 추계치 비교	135

〈표 118〉 보훈위탁병원 세부모형 응급입원진료비 총액 추계치 비교	135
〈표 119〉 보훈위탁병원 총액모형 응급입원진료비 총액 추계치 비교	136
〈표 120〉 보훈위탁병원 응급입원진료비 세부추계모형 총액추계모형 오차율 비교	136
〈표 121〉 보훈위탁병원 응급통원진료 연인원 추계치 비교	137
〈표 122〉 보훈위탁병원 응급통원진료 단가 추계치 비교	138
〈표 123〉 보훈위탁병원 세부추계모형 응급통원진료비 총액 추계치 비교	138
〈표 124〉 보훈위탁병원 응급 총액모형 외래진료비 총액 추계치 비교	139
〈표 125〉 보훈위탁병원 응급외래진료비 세부추계모형 총액추계모형 오차율 비교	139
〈표 126〉 보훈위탁병원 일반감면(60%) 입원진료 연인원 추계치 비교	140
〈표 127〉 보훈위탁병원 일반감면(60%) 입원진료단가 추계치 비교	141
〈표 128〉 보훈위탁병원 세부모형 일반감면(60%) 입원진료비 총액 추계치 비교	141
〈표 129〉 보훈위탁병원 총액모형 입원진료비 총액 추계치 비교	142
〈표 130〉 보훈위탁병원 일반감면(60%) 입원진료비 세부추계모형 총액추계모형 오차율 비교	142
〈표 131〉 보훈위탁병원 일반감면(60%) 외래진료 연인원 추계치 비교	143
〈표 132〉 보훈위탁병원 일반감면(60%) 입원진료단가 추계치 비교	143
〈표 133〉 보훈위탁병원 세부모형 일반감면(60%) 외래진료비 총액 추계치 비교	144
〈표 134〉 보훈위탁병원 총액모형 일반감면(60%) 외래진료비 총액 추계치 비교	144
〈표 135〉 보훈위탁병원 일반감면(60%) 외래진료비 세부추계모형 총액추계모형 오차율 비교	145
〈표 136〉 참전감면 입원진료 연인원 추계치 비교	146
〈표 137〉 참전감면 입원진료단가 추계치 비교	148
〈표 138〉 참전감면 총액모형 입원진료비 총액 추계치 비교	149
〈표 139〉 참전감면 외래진료 연인원 추계치 비교	151
〈표 140〉 참전감면 외래진료단가 추계치 비교	152
〈표 141〉 참전감면 총액모형 외래진료비 총액 추계치 비교	154
〈표 142〉 보훈의료지원대상자별 단기 예산추계모형	156
〈표 143〉 보훈의료지원대상자 연인원 장기추계(~2060년까지)	159
〈표 144〉 보훈의료지원대상자 진료비 단가 장기추계(~2060년까지)	162
〈표 145〉 보훈의료지원대상자 총진료비 장기추계(1)	163
〈표 146〉 보훈의료지원대상자 총진료비 장기추계(2)	166

〈그림 목 차〉

[그림 1] 보훈대상자 진료 현황	6
[그림 2] 연구 수행 절차	8
[그림 3] 유형별 보훈대상자 수 추이(2000-2021)	31
[그림 4] 참전보훈대상자 연령별 분포	33
[그림 5] 보훈의료지원대상자 추이	36
[그림 6] 고엽제 환자 검진인원 추세선	69
[그림 7] 보훈대상자 유형별 대상자 수 추이와 추세선	77
[그림 8] 참전보훈대상자 코호트 추계 결과	80
[그림 9] 보훈대상자 대비 보훈의료지원대상자	83
[그림 10] 보훈병원 참전감면 입원진료 연인원 추이	114
[그림 11] 보훈병원 참전감면 입원진료단가 추이	116
[그림 12] 보훈병원 참전감면 입원진료비 총액 추이	117
[그림 13] 보훈병원 참전감면 외래진료 연인원 추이	119
[그림 14] 보훈병원 참전감면 외래진료단가 추이	120
[그림 15] 보훈병원 참전감면 외래 총진료비 추이	122
[그림 16] 보훈병원 참전감면 약제비 단가	123
[그림 17] 보훈병원 참전감면 약제비 총액 추이	125
[그림 18] 보훈위탁병원 참전감면 입원진료 연인원 추이	146
[그림 19] 보훈위탁병원 입원진료단가 추이	147
[그림 20] 보훈위탁병원 참전감면 총 입원진료비 추이	149
[그림 21] 보훈위탁병원 참전감면 외래진료 연인원 추이	150
[그림 22] 보훈위탁병원 참전감면 외래진료단가 추이	152
[그림 23] 보훈위탁병원 참전감면 외래진료비 총액 추이	153
[그림 24] 보훈의료지원대상자 진료연인원 장기추계	160
[그림 25] 보훈의료지원대상자 유형별 진료단가 추이(2010-2021)	161
[그림 26] 보훈의료비 장기추계(1)	165
[그림 27] 보훈의료비 장기추계(2)	168

〈용 어 정 의〉

1. 보훈대상자

- 정의: 희생 및 공헌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함.
- 포괄범위: 독립유공자, 전몰·전상·순직·공상 군경, 무공·보국 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 민주유공자, 순직·공상 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6·18 자유상이자, 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등.
- 대상자 수: 2021년 12월 기준 839,118명(국가보훈처, 2022).

2. 보훈의료지원대상자

- 정의: 「국가보훈기본법」 제5장(의료지원)에 의해 현물급여를 규정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의료 지원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 포괄범위: 본인과 유족에게 제공되며, 크게 국비진료 대상자와 감면진료 대상으로 구분되며 감면율은 30~100%까지 다양함.
- 대상자 수: 2021년 12월 기준 1,723,570명(국가보훈처, 2022).

보훈대상자와 보훈의료지원대상자의 비교

구분	보훈대상자	보훈의료지원대상자
포괄범위	독립유공자,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 민주유공자, 순직·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6·18 자유상이자, 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중·장기복무제대군인	국비환자 상이자(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상이자, 공상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 등급기준 미달자) 감면 환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무공보국수훈자, 공로자 등, 수권유족, 유가족, 기타 5·18 희생자와 유족, 장기복무제대군인, 군복무 중 발병자 등
대상자 수	839,118명 (2021.12.기준)	1,723,570명 (2021.12.기준)

3. 진료 연인원

○ 정의: 의료이용 형태에 따른 연인원을 제시하지 않고, 전반적인 진료 연인원을 의미할 때에는 입원과 외래의 연인원을 합하여 산출하고, 약제비 연인원은 제외하였음.

1) 입원: 일정기간 1일재원환자수를 합한 수를 의미함. 일반적으로 연인원은 단입법에 의하여 계산하며 이는 퇴원일에서 입원일을 뺀 날짜를 의미함.

예) 8월 1일 입원하여 8월 10일 퇴원한 환자 1인

→ 입원 연인원 = 9명

2) 외래: 일정기간 병원에 내원하여 각 진료과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 수를 의미함.

예) 8월 1일 환자A가 신경과, 내과 2개 과에서 진료를 본 경우

→ 외래 연인원 = 2명

○ 용어의 비교(보훈의료 보고서와 국민건강보험 용어)

사례 : 대상자 1명이 1년간 외래 5회, 입원(3박 4일씩) 2회 이용한 경우

보훈의료	국민건강보험	내용
보훈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보훈대상자/보훈의료지원대상자/건강보험가입자/건강보험적용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을 의미함. 이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하며 중복을 제외한 인원수임.
보훈의료지원대상자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진료 연인원	내원(입원)일수	환자가 실제로 요양기관에 방문 또는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일수. 단입법 기준으로 위의 사례의 경우 외래 연인원은 5명, 입원 연인원은 6명임.
자연인	실인원	가입자 중 1년간 진료를 본 사람의 수를 의미함. 동일한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외래 진료 또는 입원진료를 여러 번 받더라도 인원수는 1명임.
실인원	건수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한 횟수를 의미함. 위의 사례의 경우 실인원은 외래 5명(건), 입원 2명(건)임.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보훈의료 근거 법령과 보훈의료 현황

가. 보훈의료 근거 법령

- 보훈정책은 국가가 위기에 당면했을 때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을 대상으로 그들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위한 정책을 담고 있음¹⁾. 이는 다음의 법 제정에 근거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 보훈의료 대상자는 「국가보훈기본법」 제5장(의료지원) 제41조, 42조, 43조에 의해 현물급여를 규정하고 있고,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고 있음.
 - 보훈의료지원 대상자는 진료비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비진료 대상자와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해주는 감면진료 대상자, 그리고 일반환자 3가지의 유형이 존재함(신은숙, 2018).
 - 보훈의료지원 대상자 유형별 자격은 다음의 <표 1>과 같음.

1) 신영석, 신현웅, 정은희, 임완섭, 강지원(2012). 보훈의료체계 유지 필요성 및 발전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12-10.

〈표 1〉 보훈의료대상자의 자격

구분	대상자격	비고
국비진료 대상자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5.18자유상이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부상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 공상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등	① 세부대상 및 감면율
감면진료 대상자	(본인)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 공로자, 특수 임무 공로자, 5.18기타희생자, 창군자(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자)와 장기복무 제대 군인(10년 이상) (유가족)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	② 세부대상 및 감면율
일반환자	국비환자 및 감면환자 외 건강보험, 의료급여환자 등	

- 주 1) 12.7.1 이후 신청한 7급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 공로 상이자는 상이처 외 진료를 받는 경우는 본인부담액 10% 발생
- 2) 16.6.23 이후 신청한 고엽제 후유(의)증(2세포함) 중 경도판정자,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중 12~14등급 판정자, 특수 임무 부상자 중 7급 판정자가 상이처 외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액 10% 발생
- 3) 16.6.23 이후 신청한 5.18 민주유공자와 특수 임무 유공자의 유가족범위는 가족 중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명으로 변경(『보훈대상 및 보훈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법률)

자료: 중앙보훈병원(2022.04)

나. 보훈의료 대상자와 보훈의료 이용 현황

- 보훈의료전달체계는 서울시 소재 중앙보훈병원을 중심으로 한 3차진료, 지방보훈병원 중심의 2차진료, 대상자의 집에서 가까운 위탁병원에서의 1차진료로 나누어진 통합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신은숙, 2018).
- 보훈의료 대상자의 의료이용 형태는 보훈병원 혹은 위탁병원 이용, 응급진료 이용이 있음 (구길환 외,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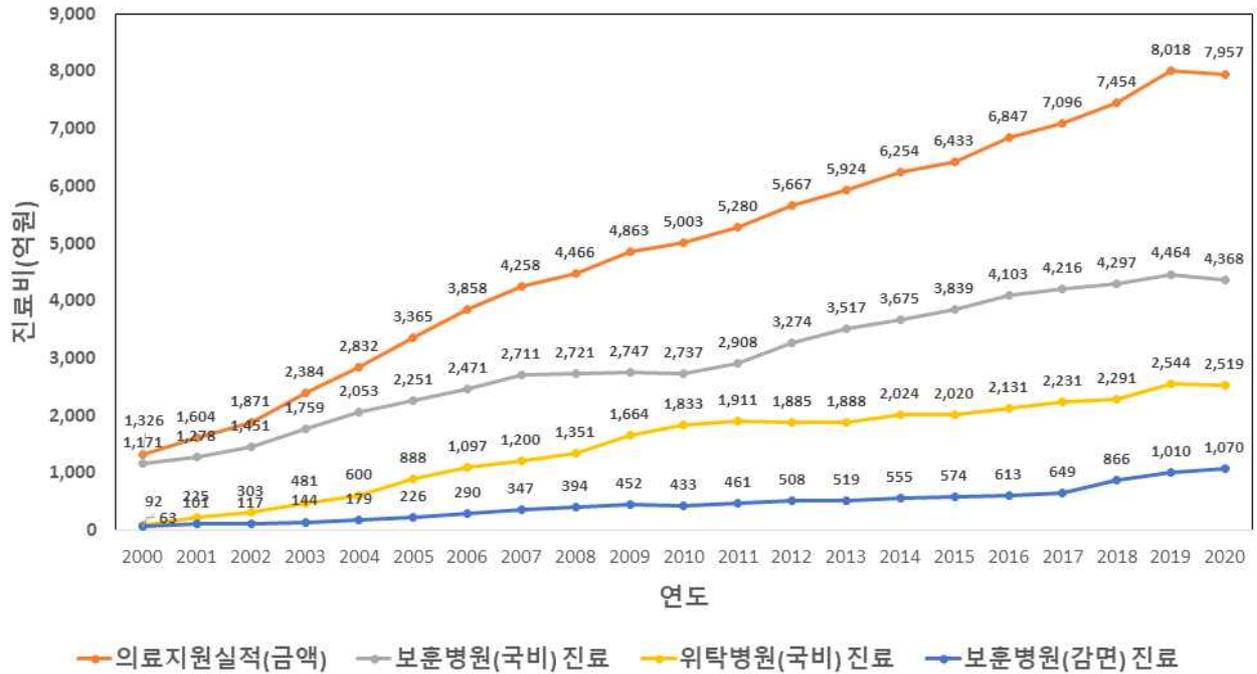
〈표 2〉 6개 보훈병원 일반 현황

(단위: 개)

구분	중앙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진료권	수도권, 강원	부산, 경남, 울산, 제주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대전, 충남, 충북, 세종	인천, 경기서북부
진료과목	31개	21개	24개	22개	22개	15개
병상수	1,383	499	571	484	383	137

- 보훈의료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021년 기준 73세로 고령임(국가보훈처, 2022). 보훈의료 대상자의 경우 복합만성질환과 치매유병률이 타보험 가입자에 비해 높으며(구길환 외, 2021), 소득을 위한 경제활동이 어려움. 또한, 보훈의료 대상자는 고엽제 후유증, 외과적 질환, 신체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만성적인 질병이 특이적으로 나타남.
- 보훈의료 대상자를 위한 정부의 보훈진료비 지원실적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보훈 진료비 지원은 2020년 7,957억 원이 지출되었으며, 2012년의 5,667억 원 대비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국비 대상자의 경우에는 6개 보훈병원의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63%에 해당하며 위탁병원 진료비는 37%를 차지하고 있음.
 - 그동안 위탁병원의 의료이용이 확대되면서 보훈병원의 진료비 비중은 2000년 93%, 2005년 72%, 2010년 60%로 감소하여 현재 60%대를 유지하고 있음(국가보훈처, 2022).
-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의료지원사업의 예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22년 기준 6,326억 원이 의료지원사업 예산으로 책정되었으며 이는 보훈 급여금 의무지출사업에서 보상금, 참전 명예수당 다음으로 높은 비중임.
 - 그러나 법안비용 추계 과정에서 과거 인상률을 적용하고 있어 최근의 정책변화와 의료지원 대상자의 고령화, 만성질환에 따른 대상자의 의료이용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함.
 - 또한, 최근 보훈의료 지원대상 확대에 대한 입법 활동이 나타나고 있어 정책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추계모형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임.

보훈대상자 진료현황(진료비)



[그림 1] 보훈대상자 진료 현황

2. 보훈의료정책의 최근 개정령 및 입법 현황

가. 최근 개정령

- (국가보훈처공고 제2017-15호) 참전유공자의 진료비 감면비율 확대(60%→90%)
- (국가보훈처공고 제2019-75호) 국가보훈대상자 통원진료 승인 기간을 연장(14일→30일)
- (국가보훈처공고 제2022-12호) 위탁병원 감면대상자의 의료지원 범위를 확대
 - 무공수훈자 및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과 참전유공자를 약제비용 지원대상에 포함
- (국가보훈처공고 제2022-13호) 참전유공자 등의 위탁병원 약제비용 지원안
 -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소요예산 4분기 6,919백만원

나. 입법 현황

- (의안번호 제210902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대안 (2021.3.24.의결)
 - 보훈보상 대상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심리재활서비스 지원근거를 마련.
- (의안번호 제2111095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2021.6.25)
 - 보훈보상 대상자의 배우자는 현재 보훈병원에서의 진료만 감면된 비용으로 받고 있으나, 감면 대상기관을 위탁병원 진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자는 입법안.
- (의안번호 제211036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2021.5.25)
 - 보훈보상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약제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입법안.

다. 보훈의료정책 확대를 반영하는 예산추계모형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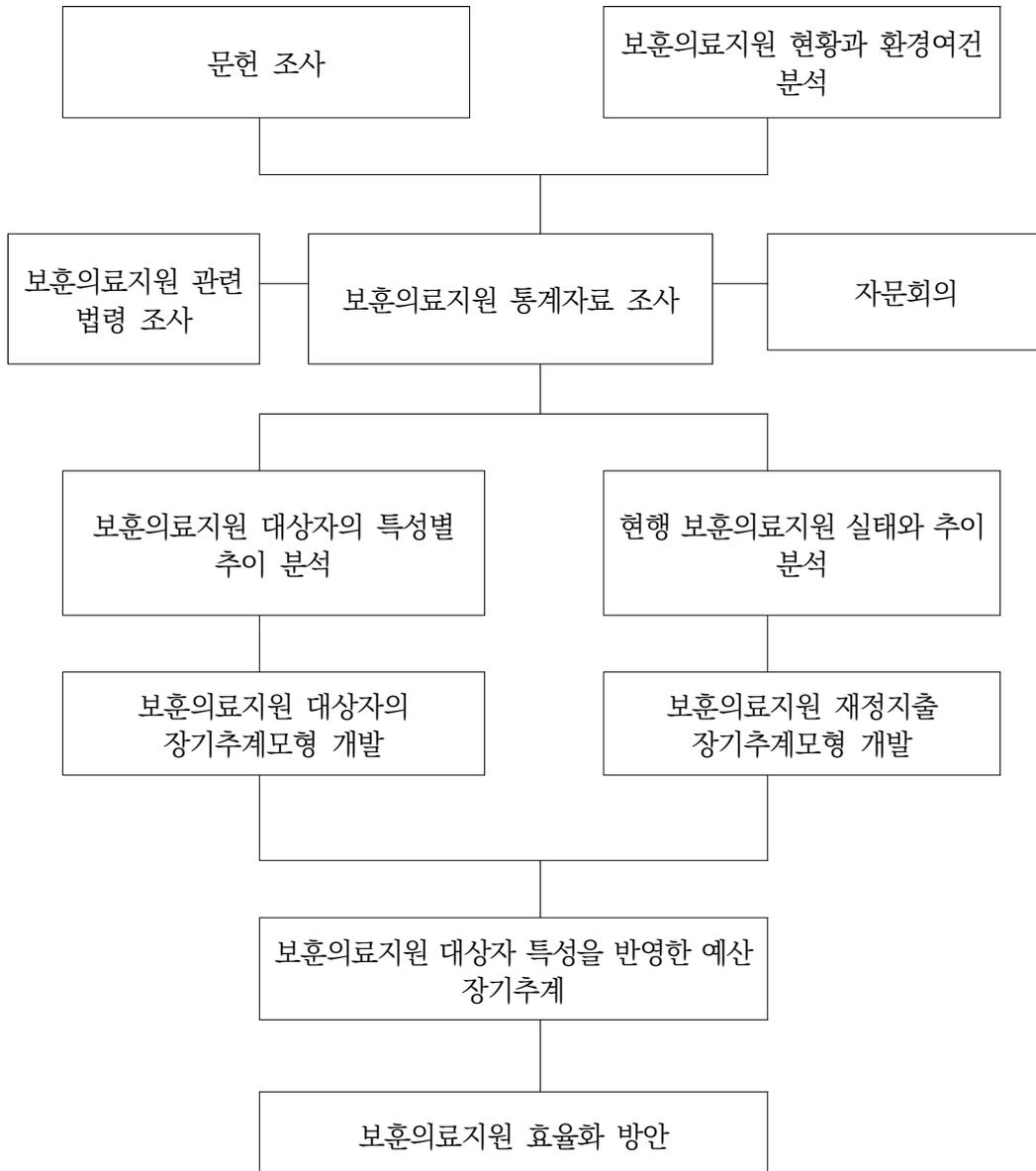
- 보훈의료 지급 대상자 확대 및 지원 혜택 확대 등에 관한 법안 발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정책지원의 확대를 예상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의료비 예측모형이 필요함.
- 정확한 예산추계모형 구축을 통하여 비용추계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3. 연구목적

- 보훈의료 대상 유형별 대상자 수, 진료비, 단가에 대한 장기 추계
- 보훈의료 지급대상자 확대, 진료지원 확대, 의료비 확대 등의 정책변화를 반영하는 의료비 예측모형을 개발함.

제2절 연구 수행 체계

- 본 연구는 보훈의료지원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장기적인 예산추계의 효율적인 방법을 개발하는 연구로 다음과 같은 체계에 의하여 수행될 예정임.



[그림 2] 연구 수행 절차

제3절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1. 보훈의료지원 관련 법체계와 입법현황 조사

- 보훈의료지원 대상자의 유형 및 정의와 관련된 근거법률 현황 조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훈의료지원 대상자 관련 근거법령 조사
 - 다음의 근거 법령에 대한 보훈의료지원 조문을 조사분석함
 - 「국가보훈기본법」 제5장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등
- 보훈의료지원 관련 현재 시행중인 법령 조사와 최근 입법 동향 조사
 - 다음의 입법 현황 관련 사이트에 대하여 주제어(보훈, 의료, 보상 등) 검색하여 자료 수집
 -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
 - 규제정보센터(<https://www.better.go.kr/rz.law.AssemblyLawListSIPL.laf>) 등
 - 수집된 문헌자료를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정리함

2. 보훈의료 현황 및 의료지원 실태 조사

- 보훈의료지원 대상자 현황 조사 : 보훈의료 DB 통계자료 분석
 - 보훈의료지원 대상별(국가유공자, 고엽제환자, 제대군인 등) 대상자 추이
 - 보훈의료지원 자격유형별(국비, 감면) 대상자 추이
 - 보훈의료진료 유형별(입원, 외래, 약제) 대상자 추이
 - 보훈의료지원 병원유형별(보훈병원, 위탁병원) 대상자 추이

- 보훈의료지원 재정지출과 이용량 실태 조사: 보훈의료 DB 통계자료 분석
 - 보훈의료지원 대상별(국가유공자, 고엽제환자, 제대군인 등) 재정지출과 이용량
 - 보훈의료지원 자격유형별(국비, 감면) 재정지출과 이용량
 - 보훈의료지원 진료형태별(입원, 외래, 약제) 재정지출과 이용량
 - 보훈의료지원 병원 유형별(보훈병원, 위탁병원) 재정지출과 이용량

3. 보훈대상자의 장기추계를 바탕으로 한 보훈의료지원 대상자에 대한 추계 및 의료지원 단가의 중장기 전망

- 보훈대상자 장기전망을 바탕으로 보훈의료지원 대상자 유형별 장기추계모형(2060년까지), 보훈의료 지원비의 유형별 장기추계모형(2060년까지)을 개발함.
 - 한국전쟁(6.25) 보훈의료지원 대상자 및 지원비의 장기추계모형
 - 월남전 보훈의료지원 대상자 및 지원비의 장기추계모형
 - 제대군인 보훈의료지원 대상자 및 지원비의 장기추계모형
 - 기타 보훈의료지원 대상자 및 지원비의 장기추계모형
 - 국가 전체 보훈의료지원 대상자 및 지원비의 장기추계모형

- 보훈의료 대상자 유형별 대상자 수와 진료비를 시계열자료 분석에 의해 추계함.
 - 이동평균모형
 - 추세분석모형
 - 기하평균모형

- 각 추계모형의 예측정확도를 평균절대오차율(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MAPE)로 분석하며 분석모형 중 추계정확도가 가장 높은 모형을 추계모형으로 선택함(김진현 외, 2021).

$$MAPE_n = \frac{1}{n} \sum_{t=1}^n \left| \frac{A_t - F_t}{A_t} \right| \times 100(\%)$$

n = 예측기간, t = 연도, A_t = t 년도의 실제치, F_t = t 년도의 추계치

제2장 보훈의료관련 법 체계 및 입법 현황

제1절 한국의 보훈의료법률

1. 보훈의료지원대상자 근거 법률

- 보훈보상제도는 국가유공자 등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를 발굴하고 예우하며, 그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의료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함(국가보훈처, 2020).
- 한국의 보훈의료지원 관련 법안으로는 다음의 법령이 존재함.
 - 법률은 국가보훈기본법을 포함하여 총 17개의 법률이 존재하고, 대통령령은 16개의 시행령 혹은 규정이 존재하며, 총리령은 17개의 규칙이 존재함.

〈표 3〉 보훈법률 현황

번호	법률	제정	주관부서
1	「국가보훈기본법」	'05.5.31.	전부서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94.12.31.	전부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84.8.2.	전부서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11.9.15.	전부서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93.12.27.	전부서
6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02.1.26.	전부서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93.3.10.	전부서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04.1.29.	전부서
9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97.12.31.	제대군인국
10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05.7.29.	보훈예우국
11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20.3.24	국제협력관
1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3.8.7.	보훈단체협력관
13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63.7.19.	제대군인국
14	「보훈기금법」	'81.3.27.	복지증진국
1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81.4.4.	복지증진국
16	「독립기념관법」	'86.5.9.	보훈선양국
17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05.7.29.	보훈선양국

자료: 국가보훈처(2020)

2. 보훈의료지원대상자 정의와 유형(국가보훈처, 2022)

가. 보훈의료지원대상자 구분

- 보훈의료지원대상자는 크게 국비진료대상자와 감면진료대상자로 구분됨. 국비진료대상자에는 상이자와 고엽제 지원대상자가 있으며, 감면진료는 감면율에 따라 구분하고 있음.
- 2021년 기준 보훈의료대상자는 총 1,723,570명으로 이중 국비진료대상자는 약 25만명, 감면대상자는 147만명으로 나타남.

〈표 4〉 보훈의료지원대상자 구분

대분류	소분류	대상별	근거법률	대상자수('21)
국비 진료	상이자	애국지사	「독립유공자법」	15
		전·공상군경	「국가유공자법」	108,482
		4·19상이자	「국가유공자법」	165
		공상공무원	「국가유공자법」	3,463
		기타 상이자	「국가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2,296
		재해부상군경	「보훈보상자법」	4,738
		재해부상공무원	「보훈보상자법」	161
		5·18부상자	「5.18 유공자법」	2,165
		등급기준 미달자	「제대군인법」	63,210
		고엽제	고엽제후유의증(등급자)	「고엽제법」
	고엽제2세환자(등급자)		「고엽제법」	143
	등급기준 미달자		「고엽제법」	36,280
	국비 소계(A)			
감면 진료	100%감면	재일학도의용군인	「국가유공자법」	9
	90%감면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법」	118,291
	60%감면	무공·보국수훈자	「국가유공자법」	33,989
		공로자 등	「국가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921
		수권유족	「독립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	237,589
	30~50% 감면	유가족	「독립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	1,032,570
		기타 5·18 유공자 등(50%)	「5.18 유공자법」	5,171
		기타 5·18 유가족(30%)	「5.18 유공자법」	5,171
장기복무제대군인(50%)	「제대군인법」	43,103		
군 복무 중 발병자	「제대군인법」	1,078		
감면 소계(B)				1,472,721
총계(A+B)				1,723,570

나. 보훈의료대상자 의료지원

1) 국비진료

□ 진료대상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등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

□ 보훈병원진료

- 국비진료대상자의 진료비를 국가에서 부담함. 다만 아래의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있음.
 - 상급병실료 : 전액본인부담
 - * 단, 애국지사, 1급상이자는 60%감면
 - * 치료목적상 격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판단이 있거나 상급병실외에 다른 병실이 없는 경우는 국비지원
 - 치과보철재료대(기공료 포함) : 상이처 - 보철구로 신청 / 비상이처 - 전액본인부담
 - 외모개선 목적 진료 : 전액본인부담
 - 예방진료 등 : 60%감면
 - 제증명수수료 : 본인부담

□ 위탁병원진료

- 거주지역에 보훈병원이 존재하지 않거나,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민간병원에 위탁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진료비 지원범위 : 본인부담 급여비, 단 비급여의 경우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음.
 - 진료기간 : 입원진료는 30일까지 지원(요양병원은 90일 까지), 만일 진료기간을 초과하거나 진료비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훈병원으로 전원하여 재원환자 관리를 통해 연장가능함.

○ 위탁병원 운용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제 5조에 의하면,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는 1) 간단한 외과적 처치 그 밖의 통원진료가 가능한 질병의 진료, 2) 장기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의 입원과 통원진료, 3) 보훈병원으로부터 회송받은 환자의 진료를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위탁병원 지정기준

- 위탁병원의 지정은 예우법 시행령 제 63조 제5항에 따라 시(광역시 포함), 군에 1개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훈병원이 소재하는 지역은 위탁병원 지정대상 지역에서 제외함. 다만, 보훈병원의 진료적체 등으로 위탁병원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할 수 있음.
-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은 위탁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제외하고, 「의료법」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은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위탁병원으로 지정가능함.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다만,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치과병원 및 한방 병원은 제외함.

□ 전문위탁진료

○ 중증, 특수질환자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한 경우 보훈병원장의 판단하에 국내 전문의료시설로 진료를 위탁하는 제도

- 진료비 지원범위 : 본인부담 급여와 법정비급여 진료비

- 단 아래 항목은 진료비 지원범위에서 제외됨.

- ① 보훈병원장이 승인한 질병이외의 진료비 및 승인기간 초과 진료비
- ② 환자 또는 보호자가 임의로 진료병원을 변경하여 발생한 진료비
- ③ 장기이식 수술에 따른 소요비용 중 공여자에 대한 제반 비용
- ④ 상급병실료 : 전액 본인부담이 원칙

※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상급병실료(특별병실 제외)

·무균치료 또는 격리치료 목적으로 상급병실 사용한 경우

·일반병실이 없어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 최초 입원일부터 7일 이내의 상급병실료

- ⑤ 치과 보철재료대, 보철구대, 제증명발급 수수료, 간병료, 전화료, 의료용품전문판매업 또는 매점에서 구매한 의료용품 및 보조기구 등
 - ※ 국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아닌 곳에서 구입한 재료대, 보장구 등은 지원되지 않음

□ 응급진료

-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에 의하여 다른 의료기관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비를 환불해주는 제도
 - 진료비 지원범위 : 응급진료에 소요되는 본인부담 급여와 법정 비급여
 - 단 아래 항목은 지원 제외됨.
 - ① 응급진료에 해당하지 않은 진료비
 - ② 장기이식 수술에 따른 소요비용 중 공여자에 대한 제반 비용
 - ③ 상급병실료 : 전액 본인부담이 원칙
 - ※ ·무균치료 또는 격리치료 목적으로 상급병실 사용한 경우와 ·일반병실이 없어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 입원일로부터 7일 이내 상급병실료 예외 가능
 - ※ 국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아닌 곳에서 구입한 재료대, 보장구 등은 지원되지 않음
 - 진료지원기간 : 입원일로부터 14일 이내

□ 통원진료

-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이 없는 경우 통원진료를 받을 수 있는제도임.
 - 진료비 지원범위 : 본인부담 급여비,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비급여 진료비
 - 통원진료기간 : 관할 보훈청장의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 * 만일,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함.

2) 감면진료

□ 진료대상과 감면비율

-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대상과 감면비율은 아래 <표 2-3>과 같음.
 -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손자녀포함)
 - 전·공상군경 · 4·19혁명부상자 · 공상공무원 · 6·18자유상이자 · 지원공상군경 · 지원공상공무원 ·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유가족

-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무공보국수훈자 및 유가족
- 참전유공자 본인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부상자 유가족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유가족·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수행자의 유가족
-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 등

〈표 5〉 보훈의료 진료비 감면대상자와 감면비율

진료비 감면 대상	감면 비율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손자녀 포함)	60%
전·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6·18자유상이자·지원공상군경·지원공상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유가족	60%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100%
무공보국수훈자 및 유가족,	60%
참전유공자 본인	90%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부상자 유가족,	60%
5·18민주화운동희생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유가족	50%~30%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수행자의 유가족	60%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 등	50%

자료: 국가보훈처(2022)

□ 위탁병원

- 위탁병원의 진료비 감면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하며 만 75세이상의 대상자를 기준으로 감면진료를 제공하고 있음.
 - 만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재일학도의용군인
 - 만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1인
 - * 보상금 받는 유족 : 전·공상군경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지원공상군경유족, 지원순직군경유족, 재일학도의용군인유족, 4·19사망·부상자유족, 6·18자유상이자유족
 - 만 75세 이상 6.25전몰자녀수당 받는 유족
 - 만 75세 이상 재해사망군경 배우자, 재해부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의 그 배우자

- 감면비율 : 대상자에 따라 다름
 - 참전유공자 : 90% 감면
 -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 60%
- 진료비지원범위 : 요양급여 진료비와 약국약제비(단, 유족에 대해서는 약제비 지원 제외)
- 진료기간 : 입원진료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이내)

제2절 입법 현황

1. 제20대 국회, 제21대 국회 보훈관련 입법 현황 비교

□ 제20대 국회와 제21대 국회의 보훈관련 입법 처리사항 비교

- 「국가보훈기본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신설 제안)」, 「보훈기금법」, 「보훈문화진흥에 관한 법률(신설 제안)」 등 보훈과 관련된 법안에 대하여 제20대 국회와 제21대 국회에서 제안된 의안을 검토하였음.

□ 제20대 국회 : 2016.05.30. ~ 2020.05.29.

- 보훈관련 개정법률의안으로 총 269개의 의안이 제안되었고, 1건을 제외하고 268건의 법령이 모두 처리되었음.
 - 가장 제안건수가 많았던 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65건이었고 그 뒤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54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32건으로 많았음.
- 268건의 법안 중 원안가결, 수정가결을 포함한 가결건수는 46건으로 처리건수 대비 가결건수의 비율은 17%임.

□ 제21대 국회 : 2020.05.30. ~ 2024.05.29.

- 2022년 5월 17일 현재, 보훈 관련 의안건수는 총 225개로 나타남.
- 이중 처리된 의안은 51건에 불과하며 그 외 의안은 현재 계류상태임. 처리의안 중 수정가결과 원안가결을 포함한 가결건수는 20건으로 나타났음.
- 처리의안 대비 가결의안 건수의 비율은 전체 39%로 현재까지는 제20대 국회보다 보훈관련 의안의 가결율이 22%p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6〉 국회별 보훈법령 입법 현황 비교

법령	제20대 국회 (2016.05.30. ~ 2020.05.29.)				제21대 국회 (2020.05.30. ~ 2024.05.29.)			
	제안 건수	처리 건수	가결 건수	가결율	제안 건수	처리 건수	가결 건수	가결율
「국가보훈 기본법」	6	6	1	17%	9	0	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5	65	7	11%	52	9	3	3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19	19	6	32%	21	4	2	5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4	4	2	50%	1	0	0	-
「보훈기금법」	4	4	1	25%	3	0	0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32	32	6	19%	24	5	3	60%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4	54	4	7%	46	7	3	4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8	18	4	22%	13	7	1	1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5	25	6	24%	22	7	3	4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5	25	5	20%	16	7	3	4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17	16	4	25%	16	5	2	40%
그 외(법안 신설)	0	0	0	-	2	0	0	-
합계	269	268	46	17%	225	51	20	39%

주: 2022.05.17. 검색기준

자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2. 보훈의료지원제도와 입법사항과 비용추계

- 앞서 분석한 제20대 국회, 제21대 국회 보훈 관련 법안 현황 비교에서 보훈의료지원과 관련한 법안의 처리건수, 가결건수를 비교분석하였음. 제21대 국회의 경우 현재 계류중인 의안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향후 보훈의료지원대상자의 범위 확대 또는 지원금액 등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법안을 분석함.

〈표 7〉 관련법령 중 의료비 추가 비용 추계액

의안번호/ 보훈처공고	주요내용	비용추계액 (백만원)	기타
2017-151 (훈령)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비율 확대(60%→90%)	시행 중임	-
2022-12	국가보훈대상자 통원진료 승인 기간을 연장 (14일→30일)	-	-
2022-12	위탁병원 감면대상자의 의료지원 범위를 확대 무공수훈자 및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과 참전유공자를 약제비용 지원대상에 포함	22년 4분기 기준 6,919	-
2022-93 (입법예고)	의무복무자가 복무 중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 법 제2조 제3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고의 중과실 사적행위 등 배제사유로 사망한 경우가 아니면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하도록 함.	해당없음	-
2014210	침샘암, 담낭암을 고엽제 후유의증에서 후유증으로 변경	60,124 의료지원 420	2018-2022(5년)
2107331	5.18 민주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범위 확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중 1인)	의료지원 추계 미제출	2022-2026(5년) * 확대되는 인원 약 70명으로 의료비의 경우 추가재정소요 미미

〈표 8〉 제21대 국회 계류의안 중 의료지원관련 주요 입법 사항

의안번호	주요내용	비용추계액 (백만원)	기타
211095	- 위탁병원 감면진료대상 확대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감면진료기관을 보훈위탁병원까지 확대하고 연령제한을 삭제 (현행법) 배우자의 경우 75세이상, 일부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만 위탁진료가 가능함.	956 ²⁾	연구자계산
211950	재해사망군경 유족 -> 순직군경 유족으로 법적 지위 변경(감면을 변경)	16,298 의료지원액추계 제외 (추가금액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	2022-2026
2111092 2110361	국비의료지원 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와 가족등의 약제비 지원 근거 신설	미제출	-
2106729	재난발생시 참전유공자 진료를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여 국가가 감면진료비용을 부담함.	미제출 (추가재정소요 미미)	(코로나19) 10개월간 2억5600만원 소요 (607건)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심리재활서비스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미제출 (2021년기준 약 11억)	시행중임
2105649	다른 나라로부터 무공 관련 훈장을 받은 경우도 무공수훈자에 포함하여 예우함.	미제출	현단계에서 인원파악불가
213661	전상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신체장애로 보철구를 사용하는 대상자의 사고 손해보험 가입비용 지원 근거 마련	5,316백만원 (연평균 1,063백만원)	2021-2025
2102781	1) 위탁병원 감면대상 확대 전: 75세 이상 후: 70세 이상 무공수훈자 등 국가유공자와 생 활조정수당수급자 2) 지원범위 확대(약제비)	132,434 (연평균 26,487)	2021-2025
2100289	국가유공자 대상자 축소 - 5.18 민주화 운동 시 진압군으로 투입되어 사망 혹은 상이를 입은 군인은 국가유공자에서 제외	-	현단계에서 인원파악불가
216422	보훈요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	-	-
2111601 2109099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범위 확대 -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 당시 유족이 사망한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자녀로, 그 자녀 중 1명을 손녀로 보도록 함.	추가재정소요미미 (의료지원의 경우 2026년 기준 110만원)	2022-2026
2111099 2110360	독립유공자 의료비지원 확대(약제비 신설) -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약제비용 지원	28,068/연 ³⁾	연구자 계산

의안번호	주요내용	비용추계액 (백만원)	기타
2108625	<p>독립유공자 등 범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를 증손자녀까지로 확대하고, 보상금을 받지 않는 선순위 손자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함. - 증손자녀 인원 약 11.7만명(2022-2026) - 75세 이상 증손자녀, 손자녀 약 1,427명 	1,048,514(연평균 209,703) (의료지원:31,656, 6,331/1년)	2022-2026
2100865	<p>위탁의료기관 감면진료대상자 범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연령의 확대(75세 -> 65세) - 예상되는 확대인원 2021~2025년 5,654명 	1,367 (연평균 273)	2021-2025
2111098	<p>비상이등급 고엽제후유증환자 의료지원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법에서 고엽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모든 질병에 대해 의료지원을 제공함. 입법안은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해서도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임(위탁병원만 해당) 	61,914 (연평균 14,797)	2022-2026

2) 산출식: 대상자수(재해사망군경유족 75세 미만 대상자 수 + 재해부상군경 75세미만 대상자 수 + 재해사망공무원 유족 중 75세 미만 대상자수 + 재해부상공무원 중 75세미만 대상자 수) * 21년도 위탁병원감면(60%) 입원/외래 진료횟수*입원/외래진료단가. 보훈연감 연령범위가 10세구조로 나와있어 70대는 0.5를 대입함.

$$= 5,656 * ((3.46 * 24887) + (4.89 * 16988)) =$$

3)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약제비용 산출식

$$\text{보훈병원 독립유공자와 유족 감면진료대상자수}(1,305,069) * 60\% \text{감면외래이용횟수}(0.47) * \text{약제비단가}(45,760\text{원})$$

제3장 보훈의료 현황 및 의료지원 실태조사

제1절 보훈의료대상자 현황

1. 보훈대상자 현황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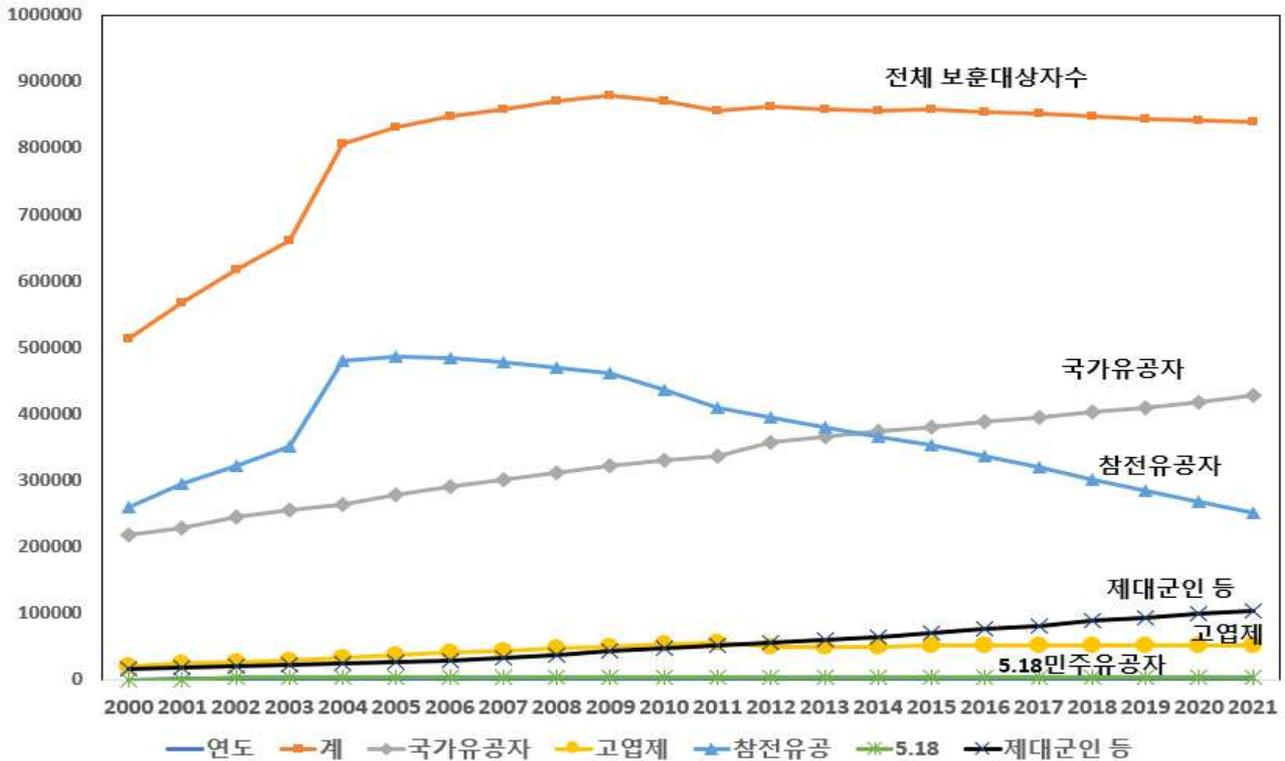
- 보훈대상자 현황을 국가유공자, 고엽제, 5.18민주유공자, 제대군인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음.
 - (국가유공자) 2000년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전공상군경, 전몰순직군경, 기타)의 비율은 42.3%에서 2004년 32.9%까지 감소함. 이후 2005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2021년 기준 과반 이상인 51.0%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함.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의 경우 2000년 약 26만명으로 전체의 50.6%가 참전유공자에 해당하였음. 참전유공자는 새로이 편입되는 대상자가 없으므로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임. 2021년 기준 30.0%로 2000년에 비하여 20.6%p 감소한 수치임.
 - (고엽제) 고엽제 관련 보훈대상자는 월남전 참전용사와 그 2세로 구성되어 있음. 2000년 기준 약 2만명으로 전체의 3.8%에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후 소폭 증가하여 현재는 약 6%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 (5.18 민주유공자) 5.18 민주유공자는 전체의 1% 미만으로 그 비중이 높지 않음.
 - (제대군인 등) 제대군인과 특수임무수행자의 경우 2000년 기준 1만 6천여명으로 전체의 3.2%에 해당하였지만, 이후 꾸준한 대상자의 편입으로 인하여 그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2021년 기준 대상자는 총 10만여명으로 전체의 12.4%가 제대군인과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함. 이는 2000년 대비 구성비의 약 4배 가까운 증가를 보였음.
 - 보훈대상자의 구분에 따라 대상자 수의 증감 추이가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대상자를 추계하는 데는 각 보훈대상자 구분 별로 각각 구분하여 추계할 필요가 있음.

〈표 9〉 보훈대상자 현황과 추이(1962-2021)

연도	계	국가유공자		고엽제		참전유공		5.18 민주유공자		제대군인 등 (특수임무수행자, 제대군인)	
		명	%	명	%	명	%	명	%	명	%
1962	150,340	150,340	100.0%	0	0.0%	0	0.0%	0	0.0%	0	0.0%
1970	146,496	146,496	100%	0	0.0%	0	0.0%	0	0.0%	0	0.0%
1980	130,986	130,986	100%	0	0.0%	0	0.0%	0	0.0%	0	0.0%
1990	172,148	172,148	100%	0	0.0%	0	0.0%	0	0.0%	0	0.0%
2000	513,247	217,105	42.3%	19,737	3.8%	259,930	50.6%	0	0.0%	16,475	3.2%
2001	566,810	229,199	40.4%	24,834	4.4%	294,140	51.9%	0	0.0%	18,637	3.3%
2002	616,551	245,267	39.8%	25,526	4.1%	321,913	52.2%	3,507	0.6%	20,338	3.3%
2003	660,445	255,020	38.6%	29,278	4.4%	350,775	53.1%	3,825	0.6%	21,547	3.3%
2004	805,277	264,603	32.9%	32,579	4.0%	480,647	59.7%	3,875	0.5%	23,573	2.9%
2005	831,785	277,437	33.4%	36,463	4.4%	486,696	58.5%	3,954	0.5%	27,235	3.3%
2006	848,745	290,835	34.3%	40,321	4.8%	484,934	57.1%	3,978	0.5%	28,677	3.4%
2007	859,138	301,839	35.1%	43,604	5.1%	477,781	55.6%	4,012	0.5%	31,902	3.7%
2008	870,060	311,852	35.8%	46,688	5.4%	470,088	54.0%	4,042	0.5%	37,390	4.3%
2009	878,780	321,480	36.6%	49,900	5.7%	460,950	52.5%	4,062	0.5%	42,388	4.8%
2010	871,092	329,404	37.8%	52,692	6.0%	437,095	50.2%	4,090	0.5%	47,811	5.5%
2011	857,151	336,900	39.3%	55,166	6.4%	408,944	47.7%	4,095	0.5%	52,046	6.1%
2012	861,817	357,378	41.5%	49,006	5.7%	394,657	45.8%	4,191	0.5%	56,585	6.6%
2013	858,834	365,818	42.6%	48,717	5.7%	379,634	44.2%	4,252	0.5%	60,413	7.0%
2014	857,107	373,494	43.6%	49,532	5.8%	364,980	42.6%	4,252	0.5%	64,849	7.6%
2015	858,859	380,789	44.3%	50,475	5.9%	353,346	41.1%	4,235	0.5%	70,014	8.2%
2016	854,356	387,723	45.4%	50,975	6.0%	335,879	39.3%	4,225	0.5%	75,554	8.8%
2017	851,635	394,587	46.3%	51,553	6.1%	319,630	37.5%	4,377	0.5%	81,488	9.6%
2018	846,800	402,417	47.5%	51,831	6.1%	300,154	35.4%	4,415	0.5%	87,983	10.4%
2019	843,770	409,517	48.5%	51,793	6.1%	284,631	33.7%	4,410	0.5%	93,419	11.1%
2020	841,119	418,429	49.7%	51,741	6.2%	267,902	31.9%	4,406	0.5%	98,641	11.7%
2021	839,118	427,985	51.0%	51,270	6.1%	251,547	30.0%	4,417	0.5%	103,899	12.4%

자료 : 국가보훈처(2022b). 보훈연감.

유형별 보훈대상자수 추이(2000-2021)



[그림 3] 유형별 보훈대상자 수 추이(2000-2021)

□ 전체 보훈대상자의 연령별 분포

□ 국가유공자 평균 연령 현황

- 2021년 기준 국가유공자 평균 연령은 전체 73세로 나타났음. 독립유공자 본인의 경우는 평균 96세, 독립유공자 유족은 78세, 전공상군경 본인은 68세, 군경유족은 72세, 무공보국수훈자는 73세, 기타 대상자는 72세로 나타났음(국가보훈처, 2022).

□ 참전 보훈 대상자의 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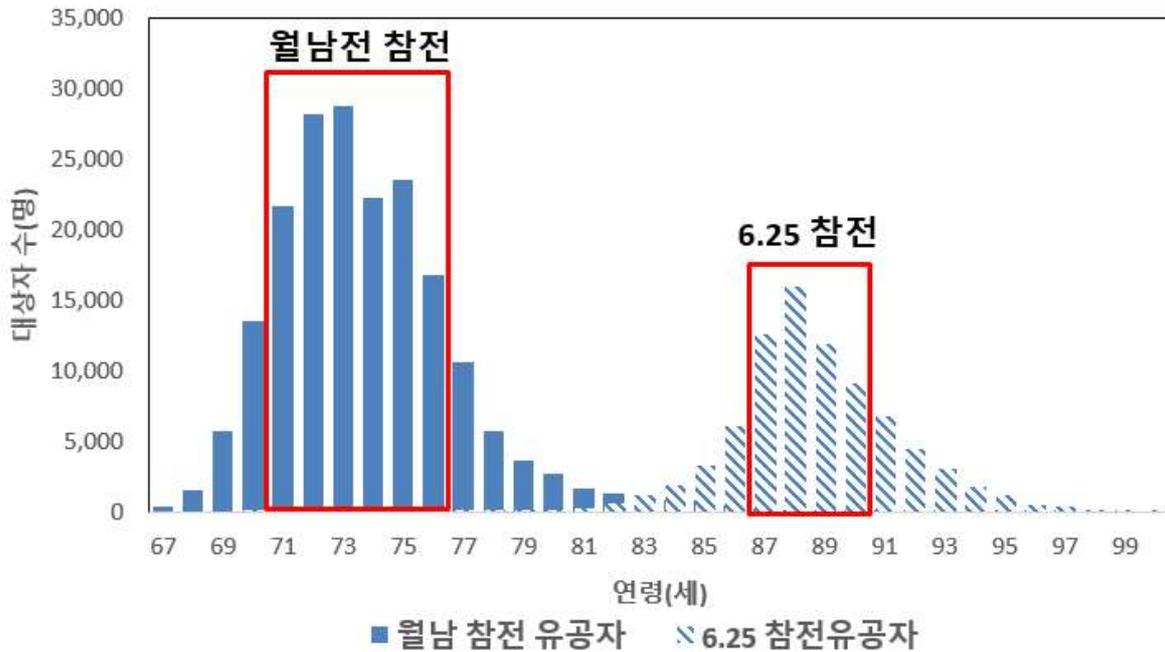
- 참전 관련 보훈대상자의 점유율을 급감하고 있음. 이는 참전대상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참전 관련 대상자는 진입되는 대상자가 없고 사망 등으로 인해 유출되는 대상자만 존재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0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함.
- 참전 관련 보훈대상자의 평균 연령을 살펴보면, 6.25 참전 유공자는 90세, 월남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증 대상자는 75세,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는 89세로 나타남(국가보훈처, 2022)

〈표 10〉 참전 유공자 연령별 분포(2021.08.11 기준)

연령	6.25 참전 유공자	월남 참전유공자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
64세	0	1	0
65세	0	2	0
66세	0	50	0
67세	0	435	0
68세	0	1,529	0
69세	0	5,808	0
70세	0	13,519	2
71세	0	21,716	4
72세	0	28,274	3
73세	0	28,822	5
74세	0	22,326	1
75세	1	23,549	0
76세	1	16,768	2
77세	5	10,661	1
78세	8	5,732	2
79세	21	3,684	2
80세	102	2,700	2
81세	301	1,726	3
82세	658	1,342	9
83세	1,148	1,052	16
84세	1,878	862	54
85세	3,230	806	124
86세	5,923	539	228
87세	12,181	304	414
88세	15,565	150	409
89세	11,666	53	279
90세	8,996	29	185
91세	6,664	16	125
92세	4,449	13	51
93세	3,000	2	26
94세	1,791	1	13
95세	1,163	2	4
96세	483	1	4
97세	350	1	0
98세	158	0	0
99세	76	0	0
100세 이상	199	0	0
합계	79,941	192,475	1,968

주 : 참전유공자 1세 별 현황은 2020년 8월 11일 기준임.

참전대상자 연령별 분포



[그림 4] 참전보훈대상자 연령별 분포

주: 6.25와 월남전 양전 모두 참전한 경우 6.25 참전으로 표기함

□ 제대군인 등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과 특수임무수행자의 경우 보훈대상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제대군인이 전체 보훈대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국방개혁 2020의 일환으로 군구조 개편작업이 진행되는 등의 정책적 변화는 제대군인의 수가 증가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등과 달리 제대군인의 평균 연령은 2021년 기준 55세이고, 특수임무공로자는 68세, 특수임무부상자는 64세로 비교적 낮은 연령의 대상자가 포함되어있음(국가보훈처, 2022).
- 대상자의 연령이 낮으므로 향후 해당 인구집단에는 유출보다는 유입의 속도가 가파를 것으로 예상되어 그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따라서 앞으로의 보훈대상자와 그 의료지원이용에 있어서, 기존의 경우 고엽제, 참전유공자 등의 특수성이 많이 반영되었으나, 향후 보훈의료이용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비중의 증가로 일반적인 건강보험환자와 유사한 질환 또는 의료이용양상을 보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2. 보훈의료지원대상자 현황과 추이

□ 보훈의료지원 대상자는 크게 국비 진료환자와 감면 진료환자로 나누어짐.

○ 2021년 기준 보훈의료지원대상자는 총 1,723,570명이었으며, 그 중 국비진료 지원대상자는 약 25만명으로 전체의 14.6%, 감면진료대상자는 약 147만명으로 85.4%에 해당함.

○ 국비 진료대상

- 국비진료대상자 내에서는 크게 상이자와 고엽제환자로 나뉘는데, 상이자에는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상이자, 공상공무원, 기타 상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 부상자, 등급기준 미달자가 포함됨. 보훈의료대상자에서 상이자의 총계는 184,695명으로 국비 진료대상에서 73.6%에 해당하였음.

- 고엽제 환자는 고엽제후유의증(등급자), 고엽제2세환자(등급자), 등급기준 미달자로 구성되어 있음. 2021년 기준 총 66,154명이 이에 해당하며 국비진료대상자 중 26.4%에 해당함.

○ 감면진료대상

- 감면진료대상자를 감면율에 따라 구분하면 100% 감면율을 적용받는 재일학도의용군인이 있는데 총 9명으로 매우 적음. 90%의 감면은 참전유공자로 이는 2018년부터 감면율이 확대되었음. 2021년 기준 118,291명이 참전유공자로 감면진료대상으로 구분되어있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감면율은 60%로 무공보국수훈자, 공로자 등, 수권유족, 유가족이 여기에 해당함. 총 1,305,069명이 포함되어있고,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은 유가족이 1,032,570명으로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음.

- 감면율 30~50%에 해당하는 대상자로는 기타 5.18희생자(유가족 포함), 장기복무제대군인, 군복무 중 발병자가 해당하며, 2021년 기준 총 49,352명이었음.

〈표 11〉 국비진료대상자 추이(2015-2021)

(단위: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구성비 (2021년)
합계(A+B)	303,219	293,169	295,049	249,930	249,130	249,617	250,849	100.0%
A. 상이자	122,734	122,359	122,020	121,197	170,163	170,797	184,695	73.6%
애국지사	76	64	52	37	36	26	15	0.0%
전공상군경	114,139	113,328	112,556	111,381	110,705	109,815	108,482	43.2%
4.19상이자	211	202	193	188	183	175	165	0.1%
공상공무원	3,995	3,932	3,841	3,743	3,655	3,562	3,463	1.4%
재해부상군경	1,846	2,355	2,901	3,374	2,343	2,316	2,296	0.9%
재해부상공무원	46	63	89	103	3,884	4,335	4,738	1.9%
기타상이자	2,421	2,415	2,388	2,371	120	141	161	0.1%
5.18부상자	2,311	2,287	2,226	2,269	2,247	2,215	2,165	0.9%
상이등급미달자	80,056	70,061	71,038	46,364	46,990	48,212	63,210	25.2%
B. 고엽제	98,118	98,462	99,765	80,100	78,967	78,820	66,154	26.4%

자료 : 국가보훈처(2022c). 보훈의료비 전망을 위한 대상자 및 보훈병원, 위탁병원 진료현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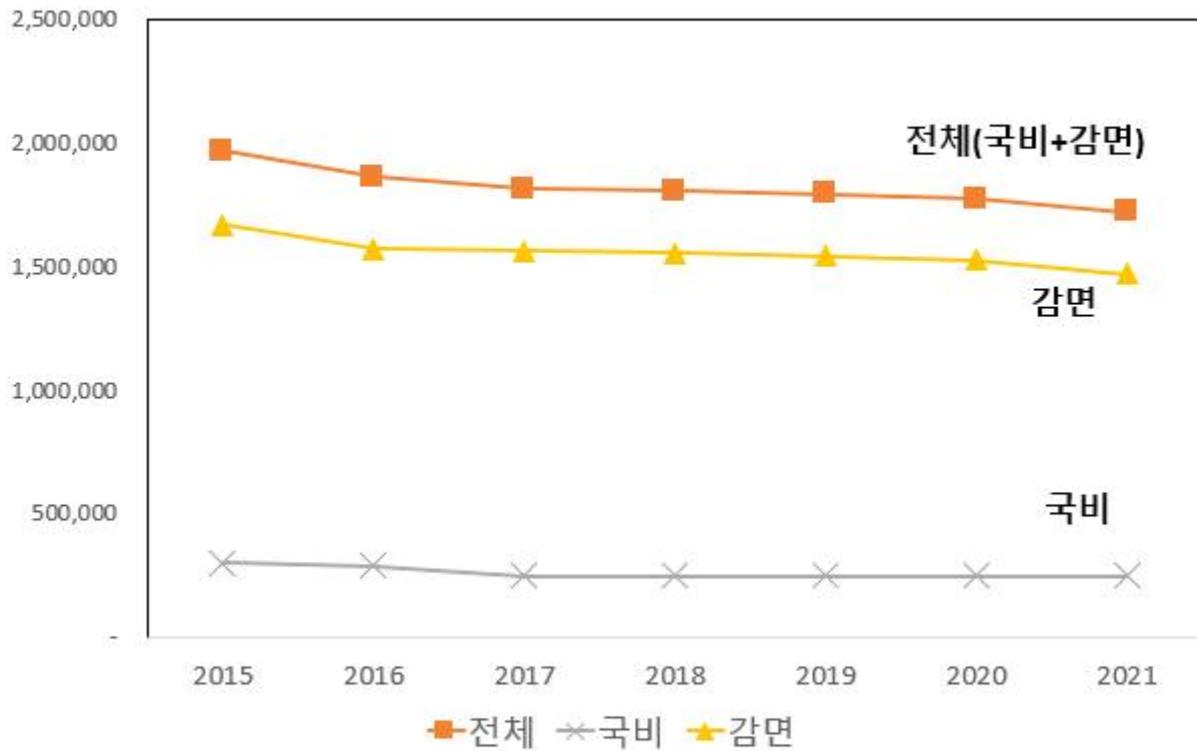
〈표 12〉 감면진료대상자 추이(2015-2021)

(단위: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구성비 (2021년)
합계(A+B+C+D)	1,669,934	1,573,325	1,566,096	1,559,147	1,547,289	1,528,331	1,472,721	100.0%
A. 재일학도의용군인(100% 감면)	7	23	18	13	11	9	9	0.0%
B. 참전유공자(90% 감면)	241,043	220,564	221,603	206,949	195,487	173,334	118,291	8.0%
C. 60% 감면	1,367,165	1,311,487	1,302,385	1,306,832	1,306,970	1,309,021	1,305,069	88.6%
무공보국수훈자		57,088	46,682	29,640	31,408	32,903	33,989	2.3%
공로자 등			1,896	1,714	1,011	998	921	0.1%
수권유족	191,654	201,103	205,686	212,249	217,181	222,644	237,589	16.1%
유가족	1,118,423	1,061,806	1,065,345	1,062,473	1,057,370	1,052,476	1,032,570	70.1%
D. 30~50% 감면	61,719	41,251	42,090	45,353	44,821	45,967	49,352	3.4%
기타 5.18희생자	5,472	5,403	4,208	5,601	5,453	4,201	5,171	0.4%
장기복무제대군인	55,594	35,146	37,171	39,035	38,364	40,710	43,103	2.9%
군복무 중 발병자	653	702	711	717	1,004	1,056	1,078	0.1%

자료 : 국가보훈처(2022c). 보훈의료비 전망을 위한 대상자 및 보훈병원, 위탁병원 진료현황 등.

보훈의료지원대상자 추이



[그림 5] 보훈의료지원대상자 추이

자료 : 국가보훈처(2022c). 보훈의료비 전망을 위한 대상자 및 보훈병원, 위탁병원 진료현황 등.

제2절 보훈 의료이용 현황

1. 보훈 의료이용 현황

- 2010년~2021년 보훈의료비 지원실적은 증가 추세를 보임. 2010년 총진료비 3,931억원에서 2021년 6,527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4.7%로 나타남. 진료연인원의 경우 연평균 1.1% 증가율을 보였으며, 진료단가는 2010년 57,478원에서 2020년 84,546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3.6%였음.
- 그러나 진료연인원의 경우는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해 기존 증가 추세와는 달리 감소하였고, 이 시기를 제외하고 2010년~2019년 연평균 증가율은 3.0%로 나타났음. 한편, 진료단가의 경우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음.
- 보훈의료비 지원실적은 총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13〉 보훈의료비 지원실적(2010-2021)

연도	A. 총진료비 (백만원)	B. 진료연인원 (명)	C. 평균진료단가 (C=A/B*1,000,000) (원)
2010	393,067	6,838,560	57,478
2011	421,421	7,233,533	58,259
2012	461,155	7,633,696	60,410
2013	484,917	7,965,764	60,875
2014	514,278	8,360,188	61,515
2015	526,029	8,060,381	65,261
2016	552,353	8,394,221	65,802
2017	566,581	8,401,997	67,434
2018	591,344	8,277,856	71,437
2019	650,014	8,894,817	73,078
2020	616,933	8,065,953	76,486
2021	652,668	7,719,719	84,546
연평균 증가율A (2010-2021)	4.7%	1.1%	3.6%
연평균 증가율B (2010-2019)	5.7%	3.0%	2.7%

2. 보훈의료지원 병원유형별 의료이용 현황

가. 진료연인원

- (보훈병원) 진료연인원의 경우 보훈병원은 2010년 341만명에서 2021년 400만 9천명으로 증가하였음. 2010년~2021년 연평균 증가율은 1.5%로 나타났고,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기간을 제외하면 연평균 3.0%의 증가율을 보였음.
- (위탁병원) 위탁병원의 진료연인원은 2010년 342만 8천명에서 2021년 371만 1천명으로 감소함. 하지만 연평균 증가율을 산출하였을 때에는 평균적으로 0.7%의 증가했으며, 코로나19 유행기간을 제외하면 2.9%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임.

〈표 14〉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진료연인원

연도	보훈병원 전체		위탁병원	
	진료연인원(천명)	증가율(%)	진료연인원(천명)	증가율(%)
2010	3,410,311		3,428,249	
2011	3,551,818	4.2%	3,681,715	7.4%
2012	3,756,395	5.8%	3,877,301	5.3%
2013	3,883,012	3.4%	4,082,752	5.3%
2014	4,086,449	5.2%	4,273,739	4.7%
2015	4,089,128	0.1%	3,971,253	-7.1%
2016	4,190,526	2.5%	4,203,695	5.9%
2017	4,177,237	-0.3%	4,224,760	0.5%
2018	4,242,926	1.6%	4,034,930	-4.5%
2019	4,450,761	4.9%	4,444,056	10.1%
2020	4,025,549	-9.6%	4,040,404	-9.1%
2021	4,008,853	-0.4%	3,710,866	-8.2%
연평균 증가율A (2010-2021)	1.5%		0.7%	
연평균 증가율B (2010-2019)	3.0%		2.9%	

자료 : 국가보훈처(2022c). 보훈의료비 전망을 위한 대상자 및 보훈병원, 위탁병원 진료현황 등.

나. 진료비

- (보훈병원) 보훈병원의 총진료비는 2010년 기준 2,097억원에서 2021년 3,950억원으로 연평균 5.9%씩 증가하였음.
 - 보훈병원의 총진료비는 2020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진료 이용에 제한이 있음을 보여줌.
 - 따라서 코로나19 유행기간을 제외하고 연평균 증가율을 분석해보면, 연평균 7.1%씩 총진료비 지원금액이 증가하였음.
- (위탁병원) 위탁병원은 2010년 1,833억 원에서 2021년 2,479억 원의 진료비를 지출하였음. 전체기간 동안 2.8%씩 증가하였음.
 - 위탁병원도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진료비 지원실적이 감소하였는데, 2020년은 전년 대비 1.6% 감소하였고, 2021년도 전년 대비 0.6% 감소한 바 있음.
 - 코로나19 유행기간을 제외하고는 연평균 3.7%의 증가율을 보였음.

〈표 15〉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총진료비 비교

(단위: 백만원)

연도	보훈병원 전체		위탁병원	
	총진료비(억원)	증가율(%)	총진료비(억원)	증가율(%)
2010	209,745		183,322	
2011	230,321	9.8%	191,100	4.2%
2012	272,639	18.4%	188,516	-1.4%
2013	298,490	9.5%	186,427	-1.1%
2014	312,691	4.8%	201,587	8.1%
2015	324,947	3.9%	201,609	0.0%
2016	340,804	4.9%	211,998	5.2%
2017	345,449	1.4%	221,702	4.6%
2018	365,344	5.8%	226,680	2.2%
2019	387,989	6.2%	253,350	11.8%
2020	379,018	-2.3%	249,373	-1.6%
2021	395,012	4.2%	247,931	-0.6%
연평균 증가율A (2010-2021)	5.9%		2.8%	
연평균 증가율B (2010-2019)	7.1%		3.7%	

주 : 보훈병원 총진료비는 2010년~2014년은 국가보훈처(2019)의 자료원에서, 2015~2021년의 자료는 국가보훈처(2022c) 자료원에서 추출함.

자료 : 국가보훈처(2022c). 보훈의료비 전망을 위한 대상자 및 보훈병원, 위탁병원 진료현황 등. 국가보훈처(2019). 10년간 예산결산현황(보훈병원).

다. 진료단가

- 진료단가는 연간 총진료비를 연인원으로 나누어서 산출하였음. 전반적으로 보훈병원의 진료 단가가 위탁병원에 비해 많았으며, 2021년 기준 보훈병원의 진료단가는 위탁병원의 약 1.48배 높은 수준이었음.
- (보훈병원) 보훈병원의 총진료비를 연인원으로 산출하여 진료단가를 분석함. 2010년 기준 보훈병원의 진료단가는 61,503원이었고, 2021년은 98,535원으로 연평균 4.4%씩 증가하였음.
- (위탁병원) 위탁병원의 진료단가는 2010년 53,474원에서 2021년 66,812원으로 연평균 2.0%씩 증가한 바 있음.

〈표 16〉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진료단가 비교

(단위: 원)

연도	보훈병원 전체		위탁병원	
	진료단가(원)	증가율(%)	진료단가(원)	증가율(%)
2010	61,503	.	53,474	.
2011	64,846	5.4%	51,905	-2.9%
2012	72,580	11.9%	48,620	-6.3%
2013	76,871	5.9%	45,662	-6.1%
2014	76,519	-0.5%	47,169	3.3%
2015	79,466	3.9%	50,767	7.6%
2016	81,327	2.3%	50,431	-0.7%
2017	82,698	1.7%	52,477	4.1%
2018	86,107	4.1%	56,179	7.1%
2019	87,174	1.2%	57,009	1.5%
2020	94,153	8.0%	61,720	8.3%
2021	98,535	4.7%	66,812	8.3%
연평균 증가율A (2010-2021)	4.4%		2.0%	
연평균 증가율B (2010-2019)	4.0%		0.7%	

주 : 보훈병원 진료비단가는 2010년~2014년은 국가보훈처(2019)의 자료원에서, 2015~2021년의 자료는 국가보훈처(2022c) 자료원에서 추출함.

자료 : 국가보훈처(2022c). 보훈의료비 전망을 위한 대상자 및 보훈병원, 위탁병원 진료현황 등.

3. 보훈의료지원 의료지원유형별 의료이용 현황

가. 보훈병원

1) 진료연인원

- 보훈병원의 국비, 감면 진료 구분에 따른 연인원 변화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 보훈병원 전체의 연인원은 400만 9천명으로 그 중 국비진료대상자는 264만명으로 보훈병원 진료연인원인 65.8%, 감면진료대상자는 136만 9천명으로 전체의 34.2%를 차지하고 있음.
- 2015년의 진료대상자 구분별 보훈병원 진료연인원 구성비는 국비진료가 70.7%, 감면진료가 29.3%였는데, 점차 국비진료대상자의 보훈병원 진료연인원 구성비는 감소하고, 감면진료대상자의 진료연인원은 증가하고 있음.
 - 국비 진료연인원의 연평균 증감률은 -1.0%로 감소한 반면, 감면진료대상자의 진료연인원 연평균 증감률은 2.2%로 나타났음.
 - 2020년. 2021년은 코로나19로 전체적인 의료이용에 제한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2015~2019년 보훈병원 국비/감면 진료연인원의 연평균 증감률을 산출한 결과, 국비 진료연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0.4%, 감면진료연인원은 5.9%로 나타났음.
 - 즉,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이용 제한을 참작하더라도, 국비진료대상자보다 감면진료대상자의 보훈병원 연인원의 증가추세가 크며, 이는 곧 향후 보훈병원 진료대상자의 구성비에서 감면진료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 것임을 시사함.

〈표 17〉 보훈병원의 진료대상별 진료연인원

(단위: 명)

연도	보훈병원 전체		국비		감면	
	진료연인원(명)	%	진료연인원(명)	%	진료연인원(명)	%
2015	4,089,128	100.0%	2,890,161	70.7%	1,198,967	29.3%
2016	4,190,526	100.0%	2,949,525	70.4%	1,241,001	29.6%
2017	4,177,237	100.0%	2,922,427	70.0%	1,254,810	30.0%
2018	4,242,926	100.0%	2,869,896	67.6%	1,373,030	32.4%
2019	4,450,761	100.0%	2,940,198	66.1%	1,510,563	33.9%
2020	4,025,549	100.0%	2,659,404	66.1%	1,366,145	33.9%
2021	4,008,853	100.0%	2,639,564	65.8%	1,369,289	34.2%
연평균 증가율A (2015-2021)		-0.3%		-1.5%		2.2%
연평균 증가율B (2015-2019)		2.1%		0.4%		5.9%

주 1) 2022년 자료는 예산자료로 제외하였음.

자료 : 국가보훈처(2022c). 보훈의료비 전망을 위한 대상자 및 보훈병원, 위탁병원 진료현황 등.

□ 보훈병원 국비진료대상자 별 진료연인원 추이

- (상이자) 국비진료대상 중 상이자는 국비진료 연인원의 대다수인 96.8%를 차지하였음. 2015~2021년 연평균 증가율은 -1.5%로 나타났고, 코로나19 유행기간인 2020~2021년을 제외하면 연평균 증가율은 0.4%로 나타났음.
- (고엽제 등외자) 고엽제 등외자는 전체 국비 진료연인원의 3%에 해당하였음. 연평균 증가율은 -2.1%로 감소하였고, 코로나19 유행기간을 제외하면 0.1%의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냄.

〈표 18〉 보훈병원 국비진료대상자별 진료연인원 추이

(단위: 명)

연도	보훈병원(국비전체)		상이자		고엽제 등외자	
	진료연인원(명)	%	진료연인원(명)	%	진료연인원(명)	%
2015	2,890,161	100.0%	2,794,502	96.7%	95,659	3.3%
2016	2,949,525	100.0%	2,858,103	96.9%	91,422	3.1%
2017	2,922,427	100.0%	2,832,044	96.9%	90,383	3.1%
2018	2,869,896	100.0%	2,777,872	96.8%	92,024	3.2%
2019	2,940,198	100.0%	2,844,272	96.7%	95,926	3.3%
2020	2,659,404	100.0%	2,569,973	96.6%	89,431	3.4%
2021	2,639,564	100.0%	2,555,242	96.8%	84,322	3.2%
연평균 증가율A (2015-2021)	-1.5%		-1.5%		-2.1%	
연평균 증가율B (2015-2019)	0.4%		0.4%		0.1%	

주 1) 2022년 자료는 예산자료로 제외하였음.

자료 : 국가보훈처(2022c). 보훈의료비 전망을 위한 대상자 및 보훈병원, 위탁병원 진료현황 등.

□ 보훈병원 감면진료대상자별 진료연인원 추이

- (90% 감면) 참전유공자의 경우 2015년~2021년 보훈병원 진료연인원이 40만 7천명에서 60만 4천명으로 증가하였음. 또한, 구성비도 2015년 34.0%에서 44.1%로 10.1%p 증가함.
 - 특히 구성비는 2018년에 기존 40만명 수준에서 57만명으로 진료연인원이 크게 증가 한 바 있음.
 - 이는 2018년을 기준으로 감면율이 60%에서 90%로 확대되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 것임. 2015~2021년의 연평균 증가율은 6.8%로 나타났으며, 2015년에서 2019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3.8%로 크게 증가한 바 있음.

- (60% 감면) 60%감면 대상자는 비상이유공자와 유가족 등이 포함되며, 보훈병원 감면진료 연인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15년 기준 77.8만명으로 보훈병원 감면진료 연인원의 65.0%의 비중을 차지하였음.
 - 하지만, 참전유공자의 진료연인원 비중이 확대되면서 감면진료(60%)대상자의 진료연인원 비중은 감소하였음.
 - 연평균 증가율은 2015~2021년 기준 -0.6%로 평균적으로는 진료연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코로나19 유행기간을 제외하면 1.0%로 나타났음.
- (30-50% 감면) 장기복무 제대군인, 기타 5.18 유공자 등은 50%의 감면율을 적용받고, 기타 5.18 유가족은 30%의 감면율을 적용받아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음. 진료 연인원 자체의 구성비는 전기간 1% 내외로 구성비가 낮았음.
 - 하지만 연평균 증가율은 2015~2021년 기준 3.0%로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유행 기간을 제외하면 6.4%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여 향후 구성비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표 19〉 보훈병원 감면진료대상자별 진료연인원 추이

(단위: 명)

연도	보훈병원(감면 전체)		90%		60%		30-50%	
	진료연인원(명)	%	진료연인원(명)	%	진료연인원(명)	%	진료연인원(명)	%
2015	1,198,967	100.0%	407,753	34.0%	778,895	65.0%	12,319	1.0%
2016	1,241,001	100.0%	407,095	32.8%	820,742	66.1%	13,164	1.1%
2017	1,254,810	100.0%	401,048	32.0%	839,454	66.9%	14,308	1.1%
2018	1,373,030	100.0%	573,348	41.8%	785,106	57.2%	14,576	1.1%
2019	1,510,563	100.0%	684,755	45.3%	810,020	53.6%	15,788	1.0%
2020	1,366,145	100.0%	623,505	45.6%	727,393	53.2%	15,247	1.1%
2021	1,369,289	100.0%	604,140	44.1%	750,428	54.8%	14,721	1.1%
연평균 증가율A	2.2%		6.8%		-0.6%		3.0%	
연평균 증가율B	5.9%		13.8%		1.0%		6.4%	

주 1) 2022년 자료는 예산자료로 제외하였음.

2) 연평균증가율A(2015-2021), 연평균증가율B(2015-2019)

자료 : 국가보훈처(2022c). 보훈의료비 전망을 위한 대상자 및 보훈병원, 위탁병원 진료현황 등.

2) 총진료비

□ 보훈병원 국비진료 대상자별 총진료비

- 2015년 기준 보훈병원 국비진료 대상자별 총진료비는 2,669억원에서 2021년 2,839억원으로 연평균 1.0%씩 증가하였음.
- (상이자) 그중 상이자의 총진료비는 2015년 2,537억원에서 2021년 2,839억원으로 연간 1.1%씩 증가함.
- (고엽제 등외자) 고엽제 등외자의 총진료비는 2015년 132억원에서 2021년 130억원으로 연간 0.3%씩 감소하였음.
 - 하지만 고엽제 등외자가 진료연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대인 것과 비교할 때, 총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 전후로 진료단가가 상이자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음.

〈표 20〉 보훈병원 국비진료대상자별 총진료비

(단위: 백만원)

연도	보훈병원(국비 전체)		상이자		고엽제 등외자	
	총진료비	%	총진료비	%	총진료비	%
2015	266,978	100.0%	253,733	95.0%	13,245	5.2%
2016	279,018	100.0%	266,708	95.6%	12,310	4.6%
2017	280,014	100.0%	266,866	95.3%	13,148	4.9%
2018	278,158	100.0%	263,631	94.8%	14,527	5.5%
2019	286,324	100.0%	272,009	95.0%	14,315	5.3%
2020	271,496	100.0%	258,315	95.1%	13,181	5.1%
2021	283,996	100.0%	270,953	95.4%	13,043	4.8%
연평균 증가율A (2015-2021)		1.0%		1.1%		-0.3%
연평균 증가율B (2015-2019)		1.8%		1.8%		2.0%

주 1) 2022년 자료는 예산자료로 제외하였음.

자료 : 국가보훈처(2022c). 보훈의료비 전망을 위한 대상자 및 보훈병원, 위탁병원 진료현황 등.

□ 보훈병원 감면진료 대상자별 총진료비

- 2015년 기준 보훈병원 감면진료 대상자별 총진료비는 574억원에서 2021년 1,102억원으로 연평균 11.5%씩 증가하였음.
- (90% 감면) 90% 감면 대상자인 참전유공자의 경우 2018년 이전에는 60%의 감면율을 적용받았으나 2018년부터 90% 감면으로 확대되며 2015년~2021년 연평균 20.7%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훈병원 감면진료대상자 총진료비에서 참전감면대상자의 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까지는 30%대인 것에 비해 감면율 확대에 따른 의료지원 규모확대와 의료이용의 변화로 그 비중이 50% 이상으로 많이 증가하였음.
- (60% 감면) 60%감면 대상자의 보훈병원 연간진료비 총액은 2015년 3,718억원에서 2021년 4,832억원으로 연간 4.5%씩 증가하였음.
- (30~50% 감면) 30% 감면과 50% 감면을 적용받는 대상자의 총진료비는 그 비중이 1% 내외로 상대적으로 미미함. 2015년 진료비 총액은 51억원에서 2021년 88억원으로 연평균 9.5%씩 증가함.

〈표 21〉 보훈병원 감면대상자별 총진료비

연도	보훈병원(감면 전체)		90%		60%		30-50%	
	총진료비	%	총진료비	%	총진료비	%	총진료비	%
2015	57,442	100.0%	19,748	34.4%	37,183	64.7%	511	0.9%
2016	61,338	100.0%	19,935	32.5%	40,806	66.5%	597	1.0%
2017	64,865	100.0%	21,174	32.6%	42,990	66.3%	701	1.1%
2018	86,507	100.0%	44,414	51.3%	41,375	47.8%	718	0.8%
2019	100,896	100.0%	56,485	56.0%	43,631	43.2%	780	0.8%
2020	106,736	100.0%	60,057	56.3%	45,807	42.9%	872	0.8%
2021	110,270	100.0%	61,067	55.4%	48,323	43.8%	880	0.8%
연평균 증가율A	11.5%		20.7%		4.5%		9.5%	
연평균 증가율B	15.1%		30.0%		4.1%		11.1%	

주 1) 2022년 자료는 예산자료로 제외하였음.

2) 연평균증가율A(2015-2021), 연평균증가율B(2015-2019)

자료 : 국가보훈처(2022c). 보훈의료비 전망을 위한 대상자 및 보훈병원, 위탁병원 진료현황 등.

3) 진료단가

□ 보훈병원 국비진료대상자별 진료단가

- 보훈병원 국비진료대상자 전체의 진료단가는 2015년 92,375원에서 2021년 107,592원으로 연평균 2.6%씩 증가함. 일반적으로 상이자에 비해 고엽제 등외자의 진료단가가 높은 수준이었으며, 2021년 기준 고엽제 등외자의 진료단가는 상이자의 1.46배 수준임.
- (상이자) 상이자의 진료단가는 2015년 90,797원에서 2021년 106,038원으로 연평균 2.6%씩 증가하였음.
- (고엽제 등외자) 고엽제 등외자의 진료단가는 2015년 138,461원에서 2021년 154,681원으로 연평균 1.9%씩 증가함.

〈표 22〉 보훈병원 국비진료대상자 진료단가

(단위: 원)

연도	보훈병원(국비전체)		상이자		고엽제 등외자	
	진료단가(원)	증가율(%)	진료단가(원)	증가율(%)	진료단가(원)	증가율(%)
2015	92,375		90,797		138,461	
2016	94,598	2.4%	93,316	2.8%	134,650	-2.8%
2017	95,816	1.3%	94,231	1.0%	145,470	8.0%
2018	96,923	1.2%	94,904	0.7%	157,861	8.5%
2019	97,383	0.5%	95,634	0.8%	149,230	-5.5%
2020	102,089	4.8%	100,513	5.1%	147,387	-1.2%
2021	107,592	5.4%	106,038	5.5%	154,681	4.9%
연평균 증가율A (2015-2021)	2.6%		2.6%		1.9%	
연평균 증가율B (2015-2019)	1.3%		1.3%		1.9%	

주 1) 2022년 자료는 예산자료로 제외하였음.

자료 : 국가보훈처(2022c). 보훈의료비 전망을 위한 대상자 및 보훈병원, 위탁병원 진료현황 등.

□ 보훈병원 감면진료대상자별 진료단가

- 보훈병원 감면진료대상자 전체의 진료단가는 2015년 49,910원에서 2021년 80,531원으로 연평균 9.0%씩 증가함. 국비진료대상자와 비교하면 증가율이 높았음. 또한, 모든 대상자에서 2020년의 전년 대비 진료단가 증가율이 15% 이상으로 많이 증가하였음.

- (90% 감면) 90% 감면 대상자의 진료단가는 2015년 48,431원에서 2021년 101,081원으로 연평균 13.0%씩 증가함. 특히 감면율이 60%에서 90%로 확대된 2018년의 참전 의료지원 대상자 진료단가는 77,464원으로 전해 진료단가가 52,797원인 것에 비해 46.7% 증가하였음.
- (60% 감면) 60% 감면 대상자의 2015년 진료단가는 47,738원에서 2021년 64,394원으로 증가하였음. 특히 2020년의 진료단가는 2019년 대비 16.9% 증가하여 큰 증가 폭을 보였음.
- (30~50% 감면) 30-50% 감면 대상자의 경우 2015년 진료단가는 41,505원에서 2021년 59,799원으로 연평균 6.3%씩 증가하였음.

〈표 23〉 보훈병원 감면대상자별 진료단가

연도	보훈병원(감면전체)		90%		60%		30-50%	
	진료단가	증가율	진료단가	증가율	진료단가	증가율	진료단가	증가율
2015	47,910		48,431		47,738		41,505	
2016	49,426	3.2%	48,969	1.1%	49,718	4.1%	45,313	9.2%
2017	51,693	4.6%	52,797	7.8%	51,212	3.0%	48,994	8.1%
2018	63,004	21.9%	77,464	46.7%	52,700	2.9%	49,238	0.5%
2019	66,794	6.0%	82,489	6.5%	53,864	2.2%	49,392	0.3%
2020	78,130	17.0%	96,322	16.8%	62,974	16.9%	57,211	15.8%
2021	80,531	3.1%	101,081	4.9%	64,394	2.3%	59,799	4.5%
증가율A	9.0%		13.0%		5.1%		6.3%	
증가율B	8.7%		14.2%		3.1%		4.4%	

주 1) 2022년 자료는 예산자료로 제외하였음.

2) 연평균증가율A(2015-2021), 연평균증가율B(2015-2019)

자료 : 국가보훈처(2022c). 보훈의료비 전망을 위한 대상자 및 보훈병원, 위탁병원 진료현황 등.

나. 보훈위탁병원

1) 진료연인원

- 보훈 위탁병원의 국비/감면 대상자 구분에 따른 진료연인원 구성비 추이는 전반적으로 국비 진료연인원이 감소 추세였으며, 참전대상자 감면율 확대에 따른 감면 90% 대상자의 구성비가 증가하였음.
- (국비진료) 국비진료대상자의 연인원은 2012년 313만 7,214명에서 2021년 263만 3,136명으로

연평균 0.5%씩 감소하였음. 코로나19 유행기간을 제외하면 증가율은 오히려 평균 2.0%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응급통원) 응급통원의 경우 연인원은 2012년 6만 5,526명에서 2021년 8만 9,105명으로 증가하였음. 응급통원의 경우는 연평균 3.5%씩 증가하였고, 코로나19 유행기간을 제외하면 2012년에서 2019년 동안 연평균 6.0%씩 증가함.
- (60% 감면) 60% 감면진료대상자의 진료연인원은 2012년 20만 4,587명에서 2021년 41만 9,460명으로 연간 평균 8.3%씩 증가하였음.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이용제한이 있었던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면 연평균 15.2%씩 증가하였음.
- (90% 감면) 90% 감면 진료는 2018년부터 참전유공자에 대한 감면비율이 60%에서 90%로 확대되었음. 2012년은 진료연인원은 46만 9,974명이었는데, 2019년 기준 73만 9,757명으로 크게 확대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한 제한으로 2020년과 2021년은 감소하여 2021년 기준 56만 9,165명으로 나타남. 연평균 증가율은 2.2%였으며, 2019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6.7%로 나타났음.

〈표 24〉 보훈위탁병원 진료대상, 유형별 진료연인원

연도	위탁병원 전체		국비진료		응급통원		감면(60%)		감면(90%)	
	연인원	%	연인원	%	연인원	%	연인원	%	연인원	%
2012	3,877,301	100.0%	3,137,214	80.9%	65,526	1.7%	204,587	5.3%	469,974	12.1%
2013	4,082,752	100.0%	3,055,139	74.8%	75,184	1.8%	311,493	7.6%	640,936	15.7%
2014	4,273,739	100.0%	3,272,233	76.6%	71,129	1.7%	341,450	8.0%	588,927	13.8%
2015	3,971,253	100.0%	3,009,698	75.8%	76,940	1.9%	339,723	8.6%	544,892	13.7%
2016	4,203,695	100.0%	3,147,083	74.9%	79,909	1.9%	333,537	7.9%	643,166	15.3%
2017	4,224,760	100.0%	3,062,544	72.5%	84,234	2.0%	449,931	10.6%	628,051	14.9%
2018	4,034,930	100.0%	2,985,492	74.0%	95,369	2.4%	359,952	8.9%	594,117	14.7%
2019	4,444,056	100.0%	3,054,454	68.7%	98,258	2.2%	551,587	12.4%	739,757	16.6%
2020	4,040,404	100.0%	2,848,848	70.5%	92,409	2.3%	452,198	11.2%	646,949	16.0%
2021	3,710,866	100.0%	2,633,136	71.0%	89,105	2.4%	419,460	11.3%	569,165	15.3%
연평균 증가율A		-0.5%		-1.9%		3.5%		8.3%		2.2%
연평균 증가율B		2.0%		-0.4%		6.0%		15.2%		6.7%

주 1) 2022년 자료는 예산자료로 제외하였음.

2) 연평균증가율A(2012-2021), 연평균증가율B(2012-2019)

자료 : 국가보훈처(2022c). 보훈의료비 전망을 위한 대상자 및 보훈병원, 위탁병원 진료현황 등.

2) 총진료비

- 보훈 위탁병원의 국비/감면 대상자 구분에 따른 총진료비의 구성비 추이는 전반적으로 국비 진료비의 비중은 감소하였고, 감면진료의 비중이 2배 가량 증가하였음.
- (국비진료) 국비진료대상자의 총진료비는 2012년 1,885억원에서 2021년 2,479억원으로 연평균 3.1%씩 증가하였음. 코로나19 유행기간을 제외하면 증가율은 평균 4.3%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응급통원) 응급통원의 진료비 총액은 2012년 66억원에서 2021년 114억원으로 증가하였음. 응급통원의 경우는 연평균 6.2%씩 증가하였고, 코로나19 유행기간을 제외하면 2012년에서 2019년 동안 연평균 7.7%씩 증가함.
- (감면 60%) 60% 감면진료대상자의 총진료비는 2012년 34억원에서 2021년 84억원으로 평균 10.6%씩 증가하였음.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이용 제한이 있었던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면 연평균 17.8%씩 증가하였음.
- (감면 90%) 감면 90%는 2018년부터 참전유공자에 대한 감면비율이 60%에서 90%로 확대 되었음. 2012년은 진료비총액은 59억원으로 전체의 3.2% 비율로 매우 적은 비중이었으나, 감면율이 확대된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183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하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1%로 높아졌음.
 - 연평균 증가율은 12.8%였으며, 2019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4%로 나타났음.

<표 25> 보훈위탁병원 진료대상, 유형별 총진료비

(단위: 백만원)

연도	위탁병원전체		국비진료		응급통원		감면(60%)		감면(90%)	
	총진료비	%	총진료비	%	총진료비	%	총진료비	%	총진료비	%
2012	188,517	100.0%	172,440	91.5%	6,665	3.5%	3,437	1.8%	5,975	3.2%
2013	186,427	100.0%	165,331	88.7%	8,200	4.4%	4,863	2.6%	8,033	4.3%
2014	201,587	100.0%	180,548	89.6%	8,002	4.0%	5,467	2.7%	7,570	3.8%
2015	201,609	100.0%	180,165	89.4%	8,524	4.2%	5,692	2.8%	7,228	3.6%
2016	211,997	100.0%	188,561	88.9%	8,802	4.2%	5,812	2.7%	8,822	4.2%
2017	221,702	100.0%	194,798	87.9%	9,857	4.4%	7,848	3.5%	9,199	4.1%
2018	226,680	100.0%	197,986	87.3%	10,551	4.7%	7,186	3.2%	10,957	4.8%
2019	253,350	100.0%	213,016	84.1%	11,205	4.4%	10,806	4.3%	18,323	7.2%
2020	249,373	100.0%	211,101	84.7%	10,777	4.3%	9,822	3.9%	17,673	7.1%
2021	247,931	100.0%	210,302	84.8%	11,423	4.6%	8,498	3.4%	17,708	7.1%
연평균 증가율A	3.1%		2.2%		6.2%		10.6%		12.8%	
연평균 증가율B	4.3%		3.1%		7.7%		17.8%		17.4%	

주 1) 2022년 자료는 예산자료로 제외하였음.

2) 연평균증가율A(2012-2021), 연평균증가율B(2012-2019).

자료 : 국가보훈처(2022c). 보훈의료비 전망을 위한 대상자 및 보훈병원, 위탁병원 진료현황 등.

3) 진료단가

- (국비진료) 국비진료대상자의 진료비 단가는 2012년 54,966원에서 2021년 79,868원으로 연평균 4.5%의 증가율을 보였음.
- (응급통원) 응급통원의 경우 진료비 단가는 2012년 101,715원에서 2021년 128,197원으로 연평균 3.0%씩 증가하였음.
- (감면 60%) 60% 감면진료대상자의 진료비 단가는 2012년 16,797원에서 2021년 20,259원으로 연평균 2.1%씩 증가하였음.
- (감면 90%) 감면 90%는 2012년 12,713원에서 2018년 18,442원, 2019년 24,769원, 2021년 27,317원 2021년 31,112원으로 감면율이 확대되며 진료비 단가가 크게 증가하는 추이를 보임. 특히 2018년에는 전년 대비 25.9% 증가했는데, 이는 소비자의 부담이 적음으로 인해서 공급자유인수요가 발생했을 가능성과 도덕적 해이로 인한 의료이용량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26〉 보훈위탁병원 진료대상, 유형별 진료단가

(단위: 원)

연도	위탁병원전체		국비진료		응급통원		감면(60%)		감면(90%)	
	단가	증가율	단가	증가율	단가	증가율	단가	증가율	단가	증가율
2012	48,621	-6.3%	54,966	-7.4%	101,715	2.6%	16,797	17.3%	12,713	-
2013	45,662	-6.1%	54,116	-1.5%	109,066	7.2%	15,611	-7.1%	12,534	-1.4%
2014	47,169	3.3%	55,176	2.0%	112,500	3.1%	16,010	2.6%	12,854	2.6%
2015	50,767	7.6%	59,861	8.5%	110,788	-1.5%	16,756	4.7%	13,264	3.2%
2016	50,431	-0.7%	59,916	0.1%	110,150	-0.6%	17,427	4.0%	13,717	3.4%
2017	52,477	4.1%	63,607	6.2%	117,019	6.2%	17,443	0.1%	14,647	6.8%
2018	56,179	7.1%	66,316	4.3%	110,633	-5.5%	19,964	14.5%	18,442	25.9%
2019	57,009	1.5%	69,739	5.2%	114,037	3.1%	19,591	-1.9%	24,769	34.3%
2020	61,720	8.3%	74,100	6.3%	116,623	2.3%	21,721	10.9%	27,317	10.3%
2021	66,812	8.3%	79,868	7.8%	128,197	9.9%	20,259	-6.7%	31,112	13.9%
연평균 증가율A	3.6%		4.5%		3.0%		2.1%		10.5%	
연평균 증가율B	2.3%		3.5%		1.6%		2.2%		10.0%	

주 1) 2022년 자료는 예산자료로 제외하였음.

2) 연평균증가율A(2012-2021), 연평균증가율B(2012-2019).

자료 : 국가보훈처(2022c). 보훈의료비 전망을 위한 대상자 및 보훈병원, 위탁병원 진료현황 등.

4. 보훈의료 진료유형별(입원, 외래, 약제비) 의료이용 현황

가. 입원 의료이용 현황

□ 입원진료 연인원

- (보훈병원) 보훈병원의 입원진료 연인원은 2015년 118만명에서 2021년 92.5만명으로 감연평균 4.0%씩 감소하였음. 코로나19로 인한 진료 제한을 고려하는 경우는 2015~2019년까지 연평균 0.5%씩 진료 연인원이 감소함.
- (보훈위탁병원) 위탁병원의 경우 2015년 123만명에서 2021년 116만명으로 진료인원이 약 1.0%씩 감소함.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이용 제한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3.8%의 연평균 증가를 보였음.
- 의료기관별 진료연인원은 보훈위탁병원이 보훈병원에 비해 많았음.

〈표 27〉 의료기관별 입원진료 연인원 비교

(단위: 명)

연도	보훈병원		보훈위탁병원		A/B
	연인원(입원) (A)	증가율	연인원(입원) (B)	증가율	
2015	1,185,110		1,231,971		1.0
2016	1,189,750	0.4%	1,297,056	5.3%	0.9
2017	1,166,305	-2.0%	1,316,289	1.5%	0.9
2018	1,153,709	-1.1%	1,289,435	-2.0%	0.9
2019	1,160,538	0.6%	1,432,803	11.1%	0.8
2020	998,346	-14.0%	1,298,561	-9.4%	0.8
2021	925,536	-7.3%	1,160,798	-10.6%	0.8
연평균 증가율A (2015-2021)	-4.0%		-1.0%		
연평균 증가율B (2015-2019)	-0.5%		3.8%		

주 1) 2022년 자료는 예산자료로 제외하였음.

자료 : 국가보훈처(2022c). 보훈의료비 전망을 위한 대상자 및 보훈병원, 위탁병원 진료현황 등.

□ 총 입원진료비

- (보훈병원) 보훈병원의 입원진료비 총액은 2015년 1,274억원에서 2021년 1,420억원으로 연평균 1.8%씩 증가하였음.
- (보훈위탁병원) 위탁병원의 입원진료비 총액은 2015년 397억원에서 2021년 500억원으로 연간 3.9%씩 증가하였음. 보훈병원과 비교하면 연평균 증가율이 2배 이상 높았음.
- 한편, 의료기관에 따른 입원진료비 총액을 살펴보면, 진료연인원은 보훈위탁병원이 더 많았던 반면, 입원진료비 총액은 보훈병원에서 2021년 기준 2.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28〉 의료기관별 총입원진료비 비교

(단위: 백만원)

연도	보훈병원		보훈위탁병원		A/B
	입원진료비(A)	증가율	입원진료비(B)	증가율	
2015	127,487	-	39,732	-	3.2
2016	128,633	0.9%	41,105	3.5%	3.1
2017	141,915	10.3%	43,182	5.1%	3.3
2018	133,521	-5.9%	45,435	5.2%	2.9
2019	136,625	2.3%	52,753	16.1%	2.6
2020	129,730	-5.0%	51,830	-1.7%	2.5
2021	142,024	9.5%	50,026	-3.5%	2.8
연평균 증가율A (2015-2021)	1.8%		3.9%		
연평균 증가율B (2015-2019)	1.7%		7.3%		

주 1) 2022년 자료는 예산자료로 제외하였음.

자료 : 국가보훈처(2022c). 보훈의료비 전망을 위한 대상자 및 보훈병원, 위탁병원 진료현황 등.

□ 입원진료비 단가

- 입원진료비 단가의 연간 증가율을 살펴보면, 2020년과 2021년에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음. 보훈병원의 입원진료비 단가가 위탁병원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임.
- (보훈병원) 보훈병원의 입원진료비 단가는 2015년 107,574원에서 2021년 153,450원으로 연평균 6.1%씩 증가하였음.
- (보훈위탁병원) 같은 기간 위탁병원의 입원진료비 단가는 32,250원에서 43,096원으로 연간 5.0%씩 증가하였음.
- 한편, 의료기관에 따른 입원진료비 총액을 살펴보면, 진료연인원은 보훈위탁병원이 더 많았던 반면, 입원진료비 총액은 보훈병원에서 2021년 기준 2.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29〉 의료기관별 입원의료비 단가 비교

(단위: 백만원)

연도	보훈병원		보훈위탁병원		A/B
	단가(A)	증가율	단가(B)	증가율	
2015	107,574	-	32,250	-	3.3
2016	108,118	0.5%	31,691	-1.7%	3.4
2017	121,679	12.5%	32,806	3.5%	3.7
2018	115,732	-4.9%	35,236	7.4%	3.3
2019	117,725	1.7%	36,818	4.5%	3.2
2020	129,945	10.4%	39,913	8.4%	3.3
2021	153,450	18.1%	43,096	8.0%	3.6
연평균 증가율A (2015-2021)		6.1%		5.0%	
연평균 증가율B (2015-2019)		2.3%		3.4%	

주 1) 2022년 자료는 예산자료로 제외하였음.

자료 : 국가보훈처(2022c). 보훈의료비 전망을 위한 대상자 및 보훈병원, 위탁병원 진료현황 등.

나. 외래 의료이용 현황

□ 외래진료 연인원

- (보훈병원) 보훈병원의 외래진료 연인원은 2015년 290만명에서 2021년 308만명으로 연평균 1.0%씩 증가하였음.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이용 제한을 고려하는 경우는 2015~2019년까지 연평균 3.2%씩 진료 연인원이 증가한 바 있음.
- (보훈위탁병원) 반면, 위탁병원의 경우 2015년 273만명에서 2021년 255만명으로 진료인원이 1.2%씩 감소함.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이용 제한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2.4%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음.
- 외래 연인원은 보훈위탁병원보다 보훈병원에서 1.1~1.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0〉 의료기관별 외래진료 연인원 비교

(단위: 명)

연도	보훈병원(A)		보훈위탁병원(B)		A/B
	연인원(외래)	증가율	연인원(외래)	증가율	
2015	2,904,018	-	2,739,282	-	1.1
2016	3,000,776	3.3%	2,906,639	6.1%	1.0
2017	3,010,932	0.3%	2,908,471	0.1%	1.0
2018	3,089,217	2.6%	2,745,495	-5.6%	1.1
2019	3,290,223	6.5%	3,011,253	9.7%	1.1
2020	3,027,203	-8.0%	2,741,843	-8.9%	1.1
2021	3,083,317	1.9%	2,550,068	-7.0%	1.2
연평균 증가율A(2015-2021)		1.0%	-1.2%		
연평균 증가율B(2015-2019)		3.2%	2.4%		

주 1) 2022년 자료는 예산자료로 제외하였음.

자료 : 국가보훈처(2022c). 보훈의료비 전망을 위한 대상자 및 보훈병원, 위탁병원 진료현황 등.

□ 외래진료비 총액

- (보훈병원) 보훈병원의 외래진료비 총액은 2015년 1,648억원에서 2021년 1,888억원으로 연평균 2.3%씩 증가하였음.
- (보훈위탁병원) 위탁병원의 경우 2015년 500억원에서 2021년 635억원으로 4.0%씩 진료비총액이 증가함.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이용 제한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2015~2019년 기간 동안 평균 7.0%씩 증가하였음.
- 외래진료비 총액은 보훈위탁병원보다 보훈병원에서 최소 2.9배~최대 3.3배 많았음.

〈표 31〉 의료기관별 총외래진료비 비교

(단위: 백만원)

연도	보훈병원(A)		보훈위탁병원(B)		A/B
	진료비	증가율	진료비	증가율	
2015	164,776	-	50,081	-	3.3
2016	177,642	7.8%	54,238	8.3%	3.3
2017	167,066	-6.0%	58,337	7.6%	2.9
2018	184,874	10.7%	57,663	-1.2%	3.2
2019	194,559	5.2%	65,565	13.7%	3.0
2020	187,371	-3.7%	63,004	-3.9%	3.0
2021	188,772	0.7%	63,529	0.8%	3.0
연평균증가율A(2015-2021)		2.3%	연평균증가율B(2015-2019)		4.0%
연평균증가율B(2015-2019)		4.2%			7.0%

주 1) 2022년 자료는 예산자료로 제외하였음.

자료 : 국가보훈처(2022c). 보훈의료비 전망을 위한 대상자 및 보훈병원, 위탁병원 진료현황 등.

□ 외래진료비 단가

- (보훈병원) 보훈병원의 외래진료비 단가는 2015년 56,741원에서 2021년 61,224원으로 연평균 1.3%씩 증가하였음.
- (보훈위탁병원) 위탁병원의 경우 2015년 18,282원에서 2021년 24,913원으로 5.3%씩 진료비총액이 증가함.
- 외래진료비 단가는 두 기관에서 큰 차이를 보였는데, 보훈위탁병원보다 보훈병원에서 2.5배~3.2배 높았음.

〈표 32〉 의료기관별 외래의료비 단가 비교

(단위: 원)

연도	보훈병원(A)		보훈위탁병원(B)		A/B
	외래진료비	증가율	외래진료비	증가율	
2015	56,741		18,282		3.1
2016	59,199	4.3%	18,660	2.1%	3.2
2017	55,486	-6.3%	20,058	7.5%	2.8
2018	59,845	7.9%	21,003	4.7%	2.8
2019	59,132	-1.2%	21,773	3.7%	2.7
2020	61,896	4.7%	22,979	5.5%	2.7
2021	61,224	-1.1%	24,913	8.4%	2.5
연평균 증가율A (2015-2021)		1.3%		5.3%	
연평균 증가율B (2015-2019)		1.0%		4.5%	

주 1) 2022년 자료는 예산자료로 제외하였음.

자료 : 국가보훈처(2022c). 보훈의료비 전망을 위한 대상자 및 보훈병원, 위탁병원 진료현황 등.

다. 약제비 이용 현황

□ 약제비 연인원

- 약제비의 경우 외래이용에 수반되는 약제비용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보훈병원의 경우 감면진료대상자의 약제비를 포함하였고, 보훈위탁병원은 국비진료대상자의 외래이용에 대한 약제비 진료연인원임.
- 진료연인원은 보훈병원이 2021년 110만명, 보훈위탁병원은 200만명으로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의 진료연인원 격차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표 33〉 의료기관별 약제비 진료연인원 비교

(단위: 명)

연도	보훈병원(A)		보훈위탁병원(B)		A/B
	약제비	증가율	약제비	증가율	
2015	912,050		2,263,179		0.4
2016	951,968	4.4%	2,378,808	5.1%	0.4
2017	966,371	1.5%	2,323,379	-2.3%	0.4
2018	1,064,447	10.1%	2,243,928	-3.4%	0.5
2019	1,189,496	11.7%	2,312,531	3.1%	0.5
2020	1,092,323	-8.2%	2,154,365	-6.8%	0.5
2021	1,105,726	1.2%	2,008,647	-6.8%	0.6
연평균 증가율A (2015-2021)		3.3%		-2.0%	
연평균 증가율B (2015-2019)		6.9%		0.5%	

주 1) 2022년 자료는 예산자료로 제외하였음.

자료 : 국가보훈처(2022c). 보훈의료비 전망을 위한 대상자 및 보훈병원, 위탁병원 진료현황 등.

□ 총약제비 비교

- (보훈병원) 약제비는 보훈병원의 경우 2015년 321억원에서 2021년 634억원으로 12.0%씩 증가하였음. (보훈위탁병원) 위탁병원의 약제비는 2015년 1,063억원에서 2021년 1,231억원으로 연간 2.4%씩 증가함.
- 2017년까지는 보훈위탁병원의 약제비 총액이 보훈병원에 비해 많았으나, 2018년부터 보훈병원의 약제비 총액이 위탁병원의 약제비 총액을 역전함. 현재는 보훈병원의 약제비 총액은 위탁병원의 1.4배 많은 수준임.

〈표 34〉의료기관별 약제비 비교

(단위: 백만원)

연도	보훈병원		보훈위탁병원		A/B
	약제비	증가율	약제비	증가율	
2015	32,158		106,804		0.3
2016	34,080	6.0%	110,826	3.8%	0.3
2017	35,898	5.3%	113,841	2.7%	0.3
2018	46,269	28.9%	115,995	1.9%	0.4
2019	56,037	21.1%	122,538	5.6%	0.5
2020	61,132	9.1%	122,201	-0.3%	0.5
2021	63,471	3.8%	123,164	0.8%	0.5
연평균 증가율A (2015-2021)	12.0%		2.4%		
연평균 증가율B (2015-2019)	14.9%		3.5%		

주 : 2022년 자료는 예산자료로 제외하였음.

자료 : 국가보훈처(2022c). 보훈의료비 전망을 위한 대상자 및 보훈병원, 위탁병원 진료 현황 등.

□ 약제비 단가 비교

- (보훈병원) 약제비 단가는 보훈병원의 경우 2015년 32,258원에서 2021년 57,402원으로 8.5%씩 증가하였음.
- (보훈위탁병원) 위탁병원의 약제비는 2015년 47,192원에서 2021년 61,317원으로 연간 4.5%씩 증가함.

〈표 35〉 의료기관별 약제비 단가 비교

(단위: 원)

연도	보훈병원		보훈위탁병원		A/B
	약제비	증가율	약제비	증가율	
2015	35,258	-	47,192	-	0.7
2016	35,800	1.5%	46,589	-1.3%	0.8
2017	37,148	3.8%	48,998	5.2%	0.8
2018	43,468	17.0%	51,693	5.5%	0.8
2019	47,110	8.4%	52,989	2.5%	0.9
2020	55,965	18.8%	56,723	7.0%	1.0
2021	57,402	2.6%	61,317	8.1%	0.9
연평균 증가율A (2015-2021)	8.5%		4.5%		
연평균 증가율B (2015-2019)	7.5%		2.9%		

주 : 2022년 자료는 예산자료로 제외하였음.

5. 기타 국가보훈처 진료보상금 이용 현황

가. 보철구 지급

- (보철구 제작비) 상이국가유공자에게 상이처로 인한 손상된 신체부위를 보완해 주고 생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보철구를 지급
- (보철구 담당자 교육) 보철구 담당자에게 변화된 제도 및 보철구 장비 안내 및 정책 반영을 위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청취 등 실시
- 대상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전투종사 군무원 등.
 - 애국지사,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해당 부상으로 인하여 수술한 자.
- 상이 국가유공자 신체검사 현황을 살펴보면, 1996년에서 2021년 총 408,124명이 상이 등급판정 검진을 수행하였고 그중 182,124명이 상이 등급을 받아 전체기간 동안 검진자 대비 44.6%가 상이 등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 보철구 지급 사업 결산액

- 보철구 지급사업의 결산액을 살펴보면, 2016~2020년 기준 할당된 예산을 모두 소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가장 최근 자료인 2021년의 경우에도 7월을 기준으로 할당된 예산의 59.7%가 집행되었음.
- 따라서 현 지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추계하는 것은 추세가 없이 일정 수준으로 결산액이 나타나기 때문에 추후 보철구별 지급추세, 단가의 증가추세 등을 고려한 추계를 반영한다면 3년 평균 결산액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음.

〈표 36〉 보철구 지급 사업 결산액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총액	보철구제작비	교육비	지급액
2016	6,003	5,997	6	6,066
2017	6,003	5,997	6	6,066
2018	6,003	5,997	6	6,074
2019	6,003	5,997	6	6,065
2020	6,003	5,997	6	6,064
2021	6,003	5,997	6	3,598 (‘21.07 기준)
2022	6,003	5,997	6	-

주 : 집행액과 지급실적총액의 수치가 일부 차이가 있어, 지급실적액을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 국가보훈처(2022). 2022예산안 사업성명자료 - 보철구지급(2150-3710)

〈표 37〉 보철구 항목과 항목별 사용 연한

사용 연한	보철구 항목
6개월	정형외과용 구두, 인공요장, 홍채 렌즈
1년	손의지, 손가락의지, 발의지, 발가락의지, 흰지팡이, 의이
2년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목발, 지팡이,
3년	다리보조기, 철크릿치, 맹인용안경, 저시력보조안경
5년	어깨관절의지, 위팔의지, 팔꿈치관절의지, 아래팔의지, 엉덩이관절의지, 넓적다리 의지, 무릎관절의지, 종아리의지, 전자의수, 팩시밀리, 중상이자리프트, 인공후두, 수동휠체어, 독서확대기, 욕창매트리스, 소형녹음기, 보청기, 맹인용시계, 의안, 의치, 욕창방석, 맹인용컴퓨터, TV자막 수신기, 브레일라이트
6년	전동휠체어
10년	비데
영구	의안(동작)

□ 보철구 종류별 공급, 수리실적

- 2020년을 기준으로 보철구 지원사업은 총 12,298개의 보철구를 신규로 공급하거나 수리 하였음. 그 중 공급(제작품+기성품)은 7,182개로 전체의 58.4%, 수리는 5,116개로 41.6%의 구성비를 보임.
- 2020년 기준으로 보철구 지원사업에 지출된 총액은 61억원이었음. 그 중 공급에 소요된 비용은 44억원으로 72.4%, 수리에 소요된 총액은 17억원으로 전체의 27.6%에 해당함.

- 전반적 분포를 살펴보면, 수리보다는 보철구를 공급할 때 소요되는 단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기성품공급보다는 제작품공급의 단가가 높은 것으로 추정됨.
- 또한, 2016년~2020년의 지원 수량과 지원 금액의 추이를 살펴볼 때, 수량은 2016년 16,272에서 2020년 12,298개로 0.75배 감소한 반면, 금액은 61억 수준으로 거의 동일함. 즉, 보철구 지원단가의 증가로 지원 수량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대분류를 기준으로 추계하는 경우 지원 수량에 최근 3년간 평균금액을 적용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차년도의 금액을 추계함

〈표 38〉 연도별 보철구 공급, 수리 실적(2016-2020)-대분류

(단위: 개, 백만원)

항목	2016		2017		2018		2019		2020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	금액	%
A.공급(=a+b)	10,500	4,683	8,502	4,531	8,598	4,445	7,959	4,424	7,182	58.4%	4,392	72.4%
a.제작품공급	6,011	3,707	5,728	3,680	5,505	3,748	5,218	3,687	4,862	39.5%	3,635	59.9%
b.기성품공급	4,489	976	2,774	851	3,093	697	2,741	737	2,320	18.9%	757	12.5%
B.수리	5,772	1,383	5,641	1,535	5,916	1,628	6,024	1,642	5,116	41.6%	1,671	27.6%
합계(A+B)	16,272	6,066	14,143	6,066	14,514	6,074	13,983	6,065	12,298	100%	6,064	100%

자료 : 국가보훈처(2022). 2022예산안 사업성명자료 - 보철구지급(2150-3710)

□ 보철구(제작품) 지원실적

- 2016년~2020년 5년간 보철구(제작품) 지원실적의 경우, 크게 팔의지, 다리의지, 보조장구, 특수보장구의 4가지로 구분됨.
- 해당 분류에 근거하여 수량과 금액의 경우 최근 3년 평균 수량과 금액을 적용하여 차년도 예산을 추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표 39〉 연도별 보철구 공급실적(2016-2020) - 제작품

(단위: 개, 백만원)

보철구명	2016		2017		2018		2019		2020	
	수량	금액								
A. 팔의지	190	184	160	172	197	180	166	149	253	257
어깨관절의지	3	7	5	12	3	7	2	4	3	8
위팔의지	19	40	13	26	23	46	11	22	15	34
팔꿈치관절의지	1	2	-	-	2	3	2	4	-	-
아래팔의지	65	93	54	78	53	78	50	77	50	85
전자의수	-	-	2	22	-	-	-	-	-	-
손의지	33	23	23	16	29	20	24	19	31	27
손가락의지	69	19	63	18	87	25	77	23	89	28
손목관절의지	-	-	-	-	-	-	-	-	65	74
B. 다리의지	519	1,750	477	1,846	437	1,950	443	1,840	380	1,949
엉덩이관절의지	1	9	1	9	6	54	2	20	1	10
넓적다리의지	81	647	65	548	91	810	69	644	83	853
무릎관절의지	7	45	21	138	11	77	12	73	11	88
종아리의지	266	905	271	1,041	213	905	230	987	179	888
발의지	56	50	62	57	48	37	53	43	49	53
발가락의지	49	36	36	25	31	24	27	20	22	17
다리의지실리콘커버	23	44	13	25	19	36	22	42	18	36
종아리의지실리콘커버	36	14	8	3	18	7	28	11	17	5
C. 보조장구	4,135	796	4,184	793	4,075	767	3,971	748	3,576	728
팔보조기	57	6	44	6	47	5	50	7	38	3
다리 보조기	339	75	374	81	311	64	306	55	259	43
척추보조기	633	110	690	114	559	91	660	86	474	25
맞춤형교정용 구두	3,072	564	3,055	567	3,146	593	2,933	573	2,774	616
자세유지보정기	34	41	21	25	12	14	22	26	31	41
D. 특수보장구	1,167	978	907	870	796	851	638	950	653	700
의안	130	57	127	55	147	64	154	75	127	96
의치	755	180	524	125	406	102	186	46	273	71
의이	-	-	-	-	-	-	-	-	-	-
보청기	282	741	256	689	243	685	298	830	253	533
합계(A+B+C+D)	6,011	3,707	5,728	3,680	5,505	3,748	5,218	3,687	4,862	3,635

자료 : 국가보훈처(2022). 2022예산안 사업성명자료 - 보철구지급(2150-3710)

□ 보철구(제작품) 단가

- 앞서 추계한 [표 38]의 보철구별 금액을 수량으로 나누어 단가를 산출하였음. 2016년 제작품 보철구 전체의 평균단가는 616,781원에서 2020년 기준 747,604원으로 증가하였음.
- 보철구 제작품의 단가를 추계하는 경우는 중분류(팔의지, 다리의지, 보조장구, 특수보장구)에 근거할 때에는 5년 평균 증감률을 적용하여 추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나, 세분류(ex, 어깨관절의지 등)에 근거할 때는 매년 지급이 되지 않는 항목이 있기에, 5년 평균 증감률보다는 3년 평균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 방안임.

〈표 40〉 연도별 제작품 보철구 단가 추이

(단위: 원)

보철구명	2016	2017	2018	2019	2020	5년 평균 증감률
A. 팔의지	970,863	1,073,000	912,030	897,042	1,016,368	1.2%
어깨관절의지	2,468,000	2,468,000	2,468,000	2,203,500	2,730,000	2.6%
위팔의지	2,087,316	2,008,538	2,020,913	2,035,909	2,286,933	2.3%
팔꿈치관절의지	1,897,000	-	1,275,500	1,867,000	-	-
아래팔의지	1,432,815	1,435,296	1,466,547	1,535,200	1,700,800	4.4%
전자의수	-	10,892,000	-	-	-	-
손의지	707,545	681,261	699,207	790,500	877,581	5.5%
손가락의지	275,681	290,000	290,000	294,039	318,730	3.7%
손목관절의지	-	-	-	-	1,139,000	-
B. 다리의지	3,371,129	3,869,241	4,462,126	4,153,181	5,129,729	11.1%
엉덩이관절의지	9,473,000	9,473,000	8,962,333	9,953,500	10,434,000	2.4%
넓적다리의지	7,984,827	8,429,231	8,905,956	9,340,000	10,281,349	6.5%
무릎관절의지	6,442,000	6,554,810	7,011,455	6,051,833	7,968,818	5.5%
종아리의지	3,402,195	3,840,203	4,246,967	4,290,861	4,958,922	9.9%
발의지	887,161	923,500	760,854	814,094	1,073,388	4.9%
발가락의지	726,388	683,667	776,516	737,741	752,000	0.9%
다리의지 실리콘커버	1,920,000	1,920,000	1,920,000	1,924,455	2,018,000	1.3%
종아리의지 실리콘커버	385,000	385,000	385,000	377,429	279,000	-7.7%
C. 보조장구	192,394	189,588	188,288	188,341	203,711	1.4%
팔보조기	109,386	140,750	99,511	132,940	84,974	-6.1%
다리 보조기	221,071	216,265	204,502	180,340	165,846	-6.9%
척추보조기	173,093	164,664	163,363	130,856	53,093	-25.6%
맞춤형 교정용 구두	183,595	185,709	188,581	195,468	222,224	4.9%
자세유지보정기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1,312,000	2.3%
D. 특수보장구	837,908	958,871	1,069,206	1,489,060	1,071,890	6.4%
의안	435,769	435,000	435,000	485,182	757,000	14.8%
의치	238,359	238,662	250,887	244,785	260,110	-
의이	-	-	-	-	-	-
보청기	2,628,468	2,692,938	2,820,095	2,784,470	2,105,909	-5.4%
제작품 보철구 평균단가	616,781	642,500	680,832	706,533	747,604	4.9%

□ 보철구(기성품) 공급실적

- 보철구 기성품 공급실적은 총 19가지 항목에 대한 수량과 금액을 기준으로 통계자료를 구축하고 있음. 제한적인 예산액으로 인하여 시계열 추세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항목이 대다수이므로 추세분석에 근거하기보다는 최근 3년간 수량과 금액의 평균을 적용하여 차년도의 예산안을 추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됨.

〈표 41〉 연도별 보철구 공급실적(2016-2020) - 기성품

(단위: 개, 원)

보철구명	2016		2017		2018		2019		2020	
	수량	금액								
첵크릿치	401	18,640	290	13,940	290	13,940	256	12,102	248	15,872
목발	150	5,250	130	4,550	190	6,650	131	4,553	76	1,444
흰지팡이	117	4,680	97	3,880	117	4,680	100	4,000	92	3,519
지팡이	2,778	25,002	1,452	13,068	1,778	16,002	1,373	12,517	1,160	29,000
시각장애인용안경	41	3,562	32	2,830	53	4,736	37	3,265	17	1,521
저시력보조안경	242	52,805	90	21,550	182	41,890	212	49,762	89	21,116
시각장애인용시계	61	13,832	36	7,830	29	5,575	50	10,710	27	6,789
시각장애인용컴퓨터	24	57,552	34	81,532	27	64,746	27	65,948	105	259,140
점자정보단말기	14	82,110	20	117,300	10	58,650	19	111,435	14	84,010
독서 확대기	5	13,980	8	17,064	11	24,568	3	7,504	1	3,806
비데	13	3,393	15	3,915	9	2,349	10	3,780	57	21,546
욕창방석	252	88,704	272	95,744	135	47,520	220	77,440	203	71,199
욕창매트리스	150	162,520	123	133,255	50	53,825	142	154,725	98	114,835
인공노장	5	3,680	7	5,152	5	3,680	5	3,680	2	1,470
인공후두	9	8,019	8	7,128	4	3,564	8	7,128	14	17,444
팩시밀리	2	364	5	910	4	728	1	182	6	1,212
홍채렌즈	25	5,075	30	6,090	26	5,278	32	6,669	26	5,451
중상이자리프트	127	358,140	105	296,100	94	265,080	50	140,545	17	39,675
광학문자판독기	73	68,328	20	18,720	79	73,944	65	60,840	68	58,412
합계	4,489	975,636	2,774	850,558	3,093	697,405	2,741	736,785	2,320	757,461

자료 : 국가보훈처(2022). 2022예산안 사업성명자료 - 보철구지급(2150-3710)

□ 보철구(기성품) 단가

- 앞선 보철구 공급수량과 금액 추계와 마찬가지로 단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단가의 최근 3년 평균 금액을 적용하여 추계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됨.

〈표 42〉 연도별 기성품 보철구 단가 추이

(단위: 원)

기성품 보철구명	2016	2017	2018	2019	2020
철크릿치	46,484	48,069	48,069	47,273	64,000
목발	35,000	35,000	35,000	34,756	19,000
흰지팡이	40,000	40,000	40,000	40,000	38,250
지팡이	9,000	9,000	9,000	9,117	25,000
시각장애인용안경	86,878	88,438	89,358	88,243	89,471
저시력보조안경	218,202	239,444	230,165	234,726	237,258
시각장애인용시계	226,754	217,500	192,241	214,200	251,444
시각장애인용컴퓨터	2,398,000	2,398,000	2,398,000	2,442,519	2,468,000
점자정보단말기	5,865,000	5,865,000	5,865,000	5,865,000	6,000,714
독서 확대기	2,796,000	2,133,000	2,233,455	2,501,333	3,806,000
비데	261,000	261,000	261,000	378,000	378,000
욕창방석	352,000	352,000	352,000	352,000	350,734
욕창매트리스	1,083,467	1,083,374	1,076,500	1,089,613	1,171,786
인공뇨장	736,000	736,000	736,000	736,000	735,000
인공후두	891,000	891,000	891,000	891,000	1,246,000
팩시밀리	182,000	182,000	182,000	182,000	202,000
홍채렌즈	203,000	203,000	203,000	208,406	209,654
증상이자리프트	2,820,000	2,820,000	2,820,000	2,810,900	2,333,824
광학문자판독기	936,000	936,000	936,000	936,000	859,000
기성품 보철구 평균단가	217,339	306,618	225,478	268,802	326,492

□ 보철구 지원사업 예산추계방법 소결

〈표 43〉 보철구 지원사업 예산추계방법 요약

추계모형	산출기준	추계방법
총액추계	결산액	최근 3년간 평균 결산액을 적용
	보철구 공급/수리 계	전년도 공급, 수리실적(수량)에 최근 3년간 평균단가를 적용
세부추계	보철구(제작품)	1) 지원총액기준 - 최근 3년간 평균금액 적용 2) 단가, 수량기준 (중분류) 단가 - 5년 평균증감을 적용 수량 - 3년 평균 수량 적용 (세분류) 단가 - 3년 평균 단가 적용 수량 - 3년 평균 수량 적용
		보철구(기성품)

나. 고엽제 환자검진

- 고엽제 피해 질병 등록신청자에 대해 보훈병원에서 검진을 시행하여 고엽제후유(의)증 또는 2세환자 여부 판정하기 위한 검진사업임.
 - 2022년도 예산산출방법
 - 검진비용 : 검진 대상자 21년 수준 반영(10,795명) x 단가(276,993원) = 2,990백만원
 - 간담회비 : 3백만원(전년과 동결)
 - 기존 예산산출방법: 2015-2017년 고엽제 환자검진 예산 산출방법
= 인원(3개년도 평균인원수) X 단가(최근 3년간 평균단가*5년 건보수가 평균인상률 적용)

- 고엽제 피해 질병 등록신청대상
 - 본인 : 월남전 참전 또는 국내 전방복무자
 - 월남전 참전 :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사로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자.
 - 국내 전방복무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한 자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자.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로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 임신하여 출생한 자녀 중 법 제5조 제3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자.

〈표 44〉 고엽제 환자검진 예산결산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	결산(A)	검진인원(B)	단가(C=A/B)
2008	4,417	4,518	16,096	280,691
2009	4,242	4,902	16,950	289,204
2010	4,242	4,333	15,863	273,151
2011	4,032	4,091	14,616	279,899
2012	4,070	5,856	19,688	297,440
2013	4,531	4,618	16,803	274,832
2014	4,271	4,473	15,167	294,917
2015	4,271	4,894	13,391	365,469
2016	4,494	4,444	12,556	353,934
2017	4,263	3,872	11,474	337,459
2018	4,231	3,130	11,301	276,967
2019	3,308	3,047	11,222	271,520
2020	2,993	2,254	9,628	234,109
2021	2,993	2,389	10,120	236,067

주 1) 검진워크숍 간담회 비용(3백만원)은 미포함.

2) 실인원당 고엽제 환자검진단가를 의미함.

자료 : 국가보훈처. 고엽제환자검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2014-2022)

□ 고엽제 환자검진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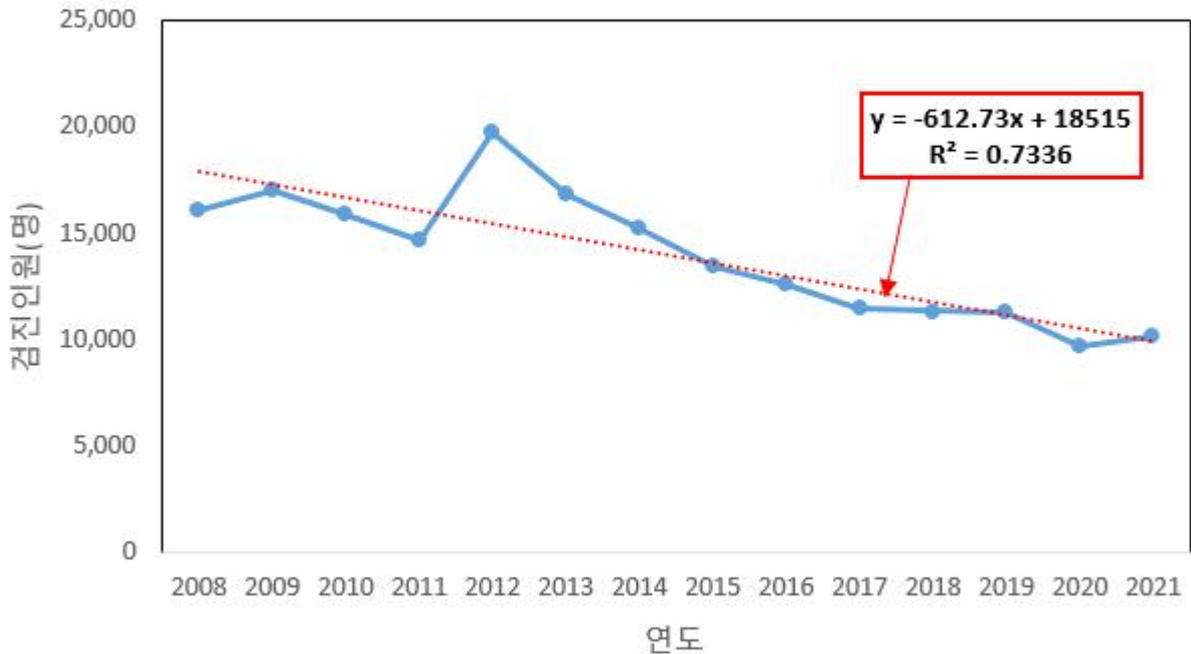
- 고엽제 환자검진 비용의 결산액과 검진인원을 토대로 단가를 추계한 결과, 2008년~2014년 약 28만원 수준이었던 단가가 2015년 36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이후, 2018년 27만원으로 다시 감소하였고 2020년~2021년에는 약 23만원으로 감소하였음.
- 고엽제 환자검진 비용의 단가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계열분석으로는 단가추계의 불확실성이 높으므로, 2021년의 단가를 기준으로 보건 의료 소비자물가상승률(2020년 기준 보건 물가 지수상승률 1.5%)을 반영하여 단가를 추계하고, 검진인원에 대해서는 추세분석으로 향후 인원을 예측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계방법임.
- 추계결과 검진인원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고엽제 환자의 경우 신규 유입이 없으므로 대상자 추계와 유사하게 약 2040년경 검진대상자가 0에 수렴하는 것으로 추계되었음.
- 예산은 2025년 약 1,778백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었고 2030년 1,058백만원으로 추계되었음.

〈표 45〉 고엽제 환자검진 예산결산 추계

(단위: 백만원, 명, 원)

연도	예산(A=B*C)	검진인원(B)	단가(C)
2022	2,204	9,324	236,421
2023	2,063	8,711	236,776
2024	1,920	8,099	237,131
2025	1,778	7,486	237,487
2026	1,635	6,873	237,843
2027	1,491	6,260	238,200
2028	1,347	5,648	238,557
2029	1,203	5,035	238,915
2030	1,058	4,422	239,273
2031	913	3,809	239,632
2032	767	3,197	239,991
2033	621	2,584	240,351
2034	475	1,971	240,712
2035	328	1,359	241,073
2036	180	746	241,435
2037	32	133	241,797
2038	0	0	242,159

고엽제 환자 검진인원 추계



[그림 6] 고엽제 환자 검진인원 추세선

6. 건강보험 진료비 실태와 비교

가.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2012~2021)

- 건강보험 의료이용 현황은 2021년 기준 입내원일수는 95,752만일, 전체 진료비는 935,011 억원으로 나타났음. 입내원당 진료비 단가는 97,650원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 2021년 10년간 연평균 증감률은 7.7%임.
- 2021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진료단가는 112,411원으로 65세 미만이 88,705원인 것에 비해 1.27배 높은 단가를 보이고 있음.

〈표 46〉 10년간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2012~2021)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년대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입내원 일수 (만일)	전체	95,179	96,879	98,950	98,993	102,157	103,264	105,229	108,674	96,198	95,752	-0.5%	0.1%
	65세미만	68,089	68,209	68,539	67,784	69,430	69,178	69,546	71,028	60,447	59,623	-1.4%	-1.5%
	65세이상	27,090	28,670	30,411	31,209	32,727	34,086	35,684	37,646	35,751	36,129	1.3%	3.3%
진료비 (억원)	전체	478,392	509,552	544,250	579,546	645,768	693,352	776,583	864,775	869,545	935,011	7.5%	7.7%
	65세미만	313,898	328,984	345,646	361,523	395,581	416,819	460,056	506,528	494,808	528,882	6.9%	6.0%
	65세이상	164,494	180,568	198,604	218,023	250,187	276,533	316,527	358,247	374,737	406,129	8.4%	10.6%
입내원당 진료비 (원)	전체	50,262	52,597	55,003	58,544	63,213	67,144	73,799	79,575	90,391	97,650	8.0%	7.7%
	65세미만	46,101	48,232	50,431	53,334	56,976	60,253	66,152	71,313	81,858	88,705	8.4%	7.5%
	65세이상	60,721	62,981	65,307	69,859	76,446	81,128	88,704	95,163	104,819	112,411	7.2%	7.1%

주 1) 지급기준

2) 입내원일수는 약국의 처방조제일수를 제외한 일수임.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2012-2021). 건강보험주요통계(2012-2021 각 연도).

나. 보훈병원 진료 현황

- 보훈병원의 의료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연인원은 4,009천명, 진료비총액은 3,943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진료비 단가는 98,349원임.
- 국비대상자의 경우는 단가가 107,592원, 감면대상자는 80,531원으로 나타나 국비대상자의 단가가 감면대상자에 비해 1.34배 높은 수준이었음.
- 건강보험 전체 대상자 단가보다 보훈병원 단가는 1.01배 수준으로 유사하였음. 국비대상자의 진료단가는 1.10배 높았고, 감면대상자의 진료단가는 0.82배 수준으로 낮았음.
- 65세 이상 건강보험대상자 진료단가와 비교할 때, 보훈병원 전체 단가는 0.87배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음.

〈표 47〉 보훈병원 진료 현황(2012~2021)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년대비	연평균
													증감률
진료 연인원 (천명)	전체	3,756	3,883	4,086	4,089	4,191	4,177	4,243	4,451	4,026	4,009	-0.4%	0.7%
	국비	2,676	2,727	2,823	2,890	2,950	2,922	2,870	2,940	2,659	2,640	-0.7%	-0.2%
	감면	1,081	1,156	1,263	1,199	1,241	1,255	1,373	1,511	1,366	1,369	-0.2%	2.7%
진료비 (억원)	전체	2,303	2,726	2,985	3,244	3,404	3,449	3,647	3,872	3,782	3,943	4.3%	6.2%
	국비	2,218	2,466	2,572	2,670	2,790	2,800	2,782	2,863	2,715	2,840	4.6%	2.8%
	감면	509	519	555	554	513	649	865	1,009	1,067	1,103	3.4%	9.0%
단가 (원)	전체	72,580	76,871	76,519	79,337	81,220	82,562	85,947	87,001	93,958	98,349	4.7%	3.4%
	국비	82,889	90,431	91,106	92,375	94,598	95,816	96,923	97,383	102,089	107,592	5.4%	2.9%
	감면	47,509	44,886	43,919	47,910	49,426	51,693	63,004	66,794	78,130	80,531	3.1%	6.0%

주 1) 2012~2014년은 김진현 외(2020) 연구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하였고, 2015~2021년의 통계자료는 보훈처 통계자료를 이용함.

2) 입내원일수는 약국의 처방조제일수를 제외한 일수임.

3) 총진료비는 심사위탁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임.

자료 : 국가보훈처(2022). 보훈의료비 전망을 위한 대상자 및 보훈병원, 위탁병원 진료현황 등 김진현 외(2020). 보훈의료대상자 특성을 반영한 진료비 산정체계 연구.

〈표 48〉 건강보험가입자와 보훈의료지원대상자 보훈병원 진료비 단가 비교

(단위:원)

건강보험 진료단가(A)	보훈병원 진료비단가(B)						
	전체	B/A	국비	B/A	감면	B/A	
전체	97,650	98,349	1.01	107,591	1.10	80,531	0.82
65세 미만	88,705	98,349	1.11	107,591	1.21	80,531	0.91
65세 이상	112,411	98,349	0.87	107,591	0.96	80,531	0.72

다. 보훈위탁병원 진료 현황

- 보훈위탁병원의 의료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연인원은 371만 1천명, 진료비 총액은 2,479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진료비 단가는 66,812원임.
- 국비대상자의 경우는 단가가 143,899원, 응급진료는 208,813원, 감면(60%)의 단가는 41,875원, 감면(90%)의 단가는 61,551원으로 국비진료대상자의 단가가 감면대상자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단가를 보이고 있었음.
- 또한, 감면대상자의 경우 참전감면은 2018년을 기준으로 감면율이 기존 60%에서 90%로 확대되었는데 진료비단가도 2017년 28,656원에서 2018년 35,837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2021년까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 2021년 기준 단가는 전년 대비 15.6% 증가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10.6%로 높았음.

〈표 49〉 보훈위탁병원 진료 현황(2012-2021)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년대비 증감률	연평균 증감율	
진료 연인원 (천명)	전체	3,877	4,083	4,274	3,971	4,204	4,225	4,035	4,444	4,040	3,711	-8.2%	-0.5%
	국비	3,137	3,055	3,272	3,010	3,147	3,063	2,985	3,054	2,849	2,633	-7.6%	-1.9%
	응급	65	75	71	77	80	84	95	98	92	89	-3.6%	3.5%
	60%	204	311	341	340	334	450	360	552	452	419	-7.2%	8.3%
	90%	469	641	589	545	643	628	594	740	647	569	-12.0%	2.2%
진료비 (억원)	전체	1,885	1,864	2,016	2,016	2,120	2,217	2,267	2,534	2,494	2,479	-0.6%	3.1%
	국비	1,724	1,653	1,805	1,801	1,886	1,948	1,980	2,130	2,111	2,103	-0.4%	2.2%
	응급	66	82	80	8,524	88	99	106	112	108	114	6.0%	6.2%
	60%	34	48	54	57	58	78	72	108	98	85	-13.5%	10.6%
	90%	59	80	76	72	88	92	110	183	177	177	0.2%	12.8%
단가 (원)	전체	48,620	45,662	47,169	50,767	50,431	52,477	56,179	57,009	61,720	66,812	8.3%	3.6%
	국비	96,494	95,133	97,502	106,381	106,478	112,407	118,051	126,887	134,996	143,899	6.6%	4.5%
	응급	162,540	175,748	182,963	186,310	186,264	193,615	183,816	189,428	196,602	208,813	6.2%	2.8%
	60%	33,354	31,184	32,492	33,452	34,779	35,486	40,097	39,608	43,822	41,875	-4.4%	2.6%
	90%	24,933	24,484	25,218	26,201	27,292	28,656	35,837	48,784	53,257	61,551	15.6%	10.6%

주 1) 국비대상자의 진료연인원에서 약제비 진료연인원은 제외하였음.

자료 : 국가보훈처(2022). 보훈의료비 전망을 위한 대상자 및 보훈병원, 위탁병원 진료현황 등

- 건강보험 전체 대상자 단가와 비교하면 보훈위탁병원의 국비 진료대상자 단가는 1.47배, 응급진료비 단가는 2.14배로 높은 편임. 반면, 감면대상자의 단가는 건강보험 진료단가 대비 60%의 경우는 0.43배, 참전감면(90%)은 0.63배로 낮은 수준임.

〈표 50〉 건강보험가입자와 보훈의료지원대상자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단가 비교

건강보험 진료단가(A)	보훈위탁병원 진료비단가(B)										
	전체	B/A	국비	B/A	응급	B/A	감면(60%)	B/A	감면(90%)	B/A	
전체	97,650	66,812	0.68	143,899	1.47	208,813	2.14	41,875	0.43	61,551	0.63
65세 미만	88,705	66,812	0.75	143,899	1.62	208,813	2.35	41,875	0.47	61,551	0.69
65세 이상	112,411	66,812	0.59	143,899	1.28	208,813	1.86	41,875	0.37	61,551	0.55

〈표 51〉 건강보험가입자와 보훈의료지원대상자 기관별 진료비 단가 증감률 비교

연도	건강보험 전체		건강보험 (65세이상)		보훈병원 전체		위탁병원	
	진료단가(원)	증가율(%)	진료단가(원)	증가율(%)	진료단가(원)	증가율(%)	진료단가(원)	증가율(%)
2011	49,928		60,707		64,846		51,905	
2012	50,262	0.7%	60,721	0.0%	72,580	11.9%	48,620	-6.3%
2013	52,597	4.6%	62,981	3.7%	76,871	5.9%	45,662	-6.1%
2014	55,003	4.6%	65,307	3.7%	76,519	-0.5%	47,169	3.3%
2015	58,544	6.4%	69,859	7.0%	79,466	3.9%	50,767	7.6%
2016	63,213	8.0%	76,446	9.4%	81,327	2.3%	50,431	-0.7%
2017	67,144	6.2%	81,128	6.1%	82,698	1.7%	52,477	4.1%
2018	73,799	9.9%	88,704	9.3%	86,107	4.1%	56,179	7.1%
2019	79,575	7.8%	95,163	7.3%	87,174	1.2%	57,009	1.5%
2020	90,391	13.6%	104,819	10.1%	94,153	8.0%	61,720	8.3%
2021	97,650	8.0%	112,411	7.2%	98,535	4.7%	66,812	8.3%
연평균 증가율A (2011-2021)	6.9%		6.4%		4.3%		2.6%	
연평균 증가율B (2011-2019)	6.0%		5.8%		3.8%		1.2%	

- 보훈의료지원대상자의 구분에 따른 진료비 단가를 국민건강보험환자 진료비단가와 비교한 결과, 국비진료의 경우 2021년 기준 94,319원이었고, 감면진료는 57,880원으로 나타났다. 국비진료는 건강보험대상자의 진료단가와 유사하지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감면진료는 건강보험단가의 0.59배 수준으로 낮음.
- 진료단가의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이 6.9%로 가장 높았고, 감면진료가 5.6%, 건강보험(65세이상)이 6.4%, 국비진료가 3.7%로 나타났다.
- 특히, 감면진료의 경우 2018년 참전감면 진료대상자의 감면율이 확대된 시기에 진료단가의 증가율이 28.1%로 가장 높았음.

〈표 52〉 건강보험가입자와 보훈의료지원대상자 유형별 진료비 단가 증감률 비교

연도	건강보험 전체		건강보험 (65세이상)		국비진료		감면진료	
	진료단가(원)	증가율(%)	진료단가(원)	증가율(%)	진료단가(원)	증가율(%)	진료단가(원)	증가율(%)
2011	49,928		60,707		65,653		33,491	
2012	50,262	0.7%	60,721	0.0%	68,196	3.9%	34,336	2.5%
2013	52,597	4.6%	62,981	3.7%	71,728	5.2%	30,727	-10.5%
2014	55,003	4.6%	65,307	3.7%	72,287	0.8%	31,234	1.7%
2015	58,544	6.4%	69,859	7.0%	76,239	5.5%	33,770	8.1%
2016	63,213	8.0%	76,446	9.4%	77,128	1.2%	34,258	1.4%
2017	67,144	6.2%	81,128	6.1%	79,857	3.5%	35,113	2.5%
2018	73,799	9.9%	88,704	9.3%	81,787	2.4%	44,970	28.1%
2019	79,575	7.8%	95,163	7.3%	83,793	2.5%	46,406	3.2%
2020	90,391	13.6%	104,819	10.1%	88,092	5.1%	54,448	17.3%
2021	97,650	8.0%	112,411	7.2%	94,319	7.1%	57,880	6.3%
연평균 증가율A (2011-2021)	6.9%		6.4%		3.7%		5.6%	
연평균 증가율B (2011-2019)	6.0%		5.8%		3.1%		4.2%	

제3절 보훈의료지원대상자 전망

1. 보훈대상자 수 추계방법

가. 기존연구에 의한 보훈대상자 추계방법(김진현 외,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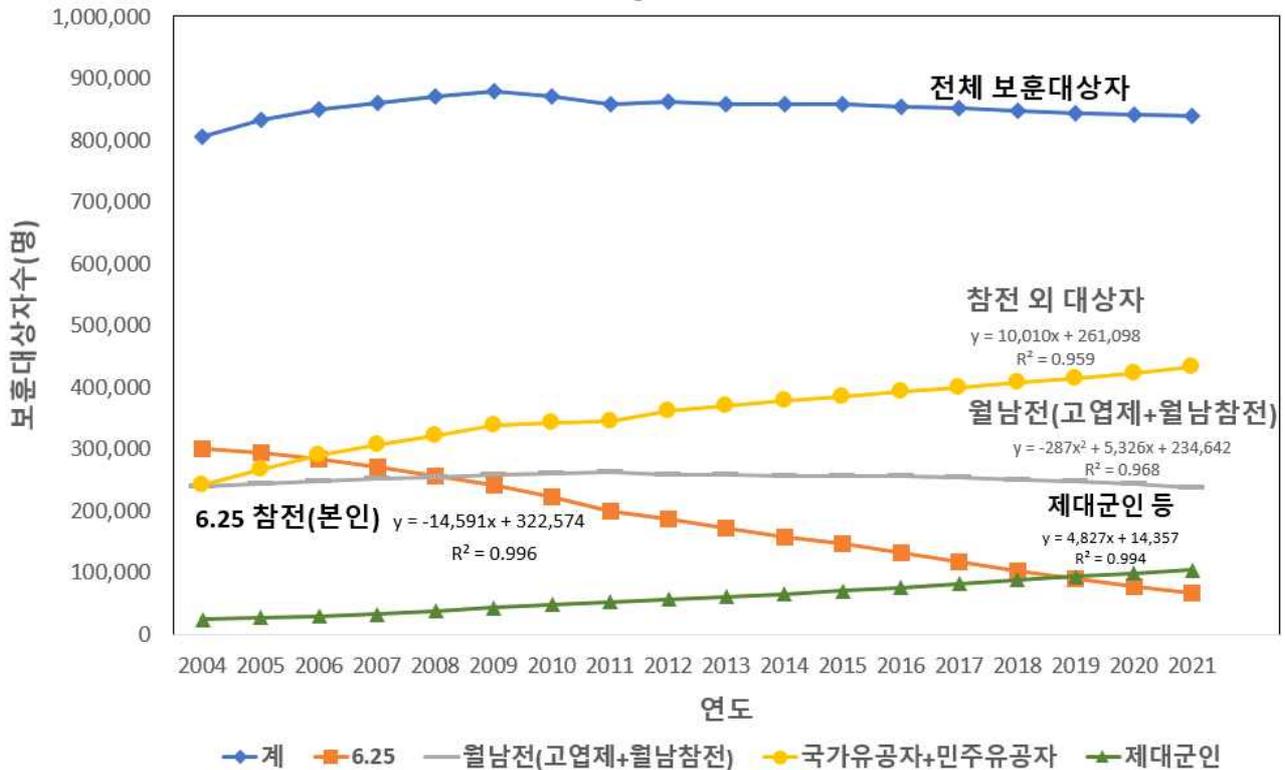
□ 보훈대상자 유형별 추세분석에 따른 향후 대상자 수 추계

- 보훈대상자는 2004년~2021년 기간 동안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04년 80만 5,277명에서 2009년 87만 8,780명까지 증가한 뒤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21년 83만 9,118명으로 나타남.
- 보훈대상자를 크게 6.25 참전, 월남전(고엽제+월남참전), 참전 외 대상자(국가유공자+민주유공자), 제대군인 등으로 네 가지로 분류하여 각 구분에 대한 시계열분석을 수행하였음.
- (6.25 참전) 6.25 참전 본인은 2004년 기준 30만 262명에서 2021년 6만 5,493명으로 크게 감소하였음.
- (월남전 관련) 월남전 관련 보훈대상자는 월남전에 참전한 본인과 고엽제 관련 보훈대상자를 의미하는데, 2004년 23만 9,773명에서 2011년 26만 2,360명까지 증가한 뒤 이후 감소하여 2021년 현재 23만 7,324명으로 추정됨.
- (제대군인 등) 제대군인은 2004년 2만 3,573명으로 그 비중이 전체의 3.2%로 매우 적었으나 점차 증가하여 2021년 기준 103,899명으로 보훈대상자 전체에서 12.4%를 차지하고 있음.
- (참전 외 대상자) 참전 외 대상자는 국가 유공자와 5.18 민주유공자를 의미함.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4년 24만 1,669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1년 기준 43만 2,402명으로 약 2배가량 증가하였음.

〈표 53〉 보훈대상자 유형별 대상자 수 추이

연도	보훈대상자	6.25 참전	월남계 (A=B+C)	월남참전 (B)	고엽제 (C)	제대군인	국가+ 민주유공자
2004	805,277	300,262	239,773	180,385	32,579	23,573	241,669
2005	831,785	293,734	243,657	192,962	36,463	27,235	267,159
2006	848,745	283,284	247,515	201,650	40,321	28,677	289,269
2007	859,138	269,993	250,798	207,788	43,604	31,902	306,445
2008	870,060	256,634	253,882	213,454	46,688	37,390	322,154
2009	878,780	241,583	257,094	219,367	49,900	42,388	337,715
2010	871,092	222,072	259,886	215,023	52,692	47,811	341,323
2011	857,151	198,246	262,360	262,360	55,166	52,046	344,499
2012	861,817	186,076	257,587	208,581	49,006	56,585	361,569
2013	858,834	171,043	257,308	208,591	48,717	60,413	370,070
2014	857,107	157,750	256,762	207,230	49,532	64,849	377,746
2015	858,859	147,078	256,743	206,268	50,475	70,014	385,024
2016	854,356	131,666	255,188	204,213	50,975	75,554	391,948
2017	851,635	117,962	253,221	201,668	51,553	81,488	398,964
2018	846,800	101,630	250,355	198,524	51,831	87,983	406,832
2019	843,770	89,600	246,824	195,031	51,793	93,419	413,927
2020	841,119	77,141	242,502	190,761	51,741	98,641	422,835
2021	839,118	65,493	237,324	186,054	51,270	103,899	432,402

- 특히 참전 관련 대상자는 연령분포에 의하면 고령의 인구로 구성되어 있음. 그리고 전쟁 관련 유공자는 신규 유입되는 대상자가 없으며 사망으로 인하여 유출되는 인구만 존재할 것으로 예상함.
- 참전 관련 대상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6.25 참전대상자는 연령분포는 70~74세 구간에서부터 100세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85세~95세 사이에 해당함
- 월남 참전유공자의 경우는 65세 이상의 연령대를 보이는데, 빈도가 가장 많은 연령 구간은 75~79세이고, 그다음은 70~74세에 해당하였음.
- 통계청의 생명표에 근거하면 100세 이상의 경우는 사망확률이 100%이므로 본 연구에서도 추계 시 최대 생존연수를 100세로 가정하였음.



[그림 7] 보훈대상자 유형별 대상자 수 추이와 추세선

- 참전유공자에 한해서는 코호트 조성법(cohort component method)을 이용하여 해당 코호트의 장래인구를 추계할 수 있음.
- 참전용사의 경우 남성 생명표를 적용하여 추계하였고, 2020년 8월의 참전유공자 연령별 코호트 자료를 기준으로 삼고 생명표를 적용하여 추계함. 참전대상자의 수는 유입이 없다고 가정하였음.

$$y_{t+1} = y_t \times (1 - {}_nQ_x)$$

y_{t+1} : t+1년의 연령별 생존자수

y_t : t년도의 연령별 인구수

${}_nQ_x$: 연령별 사망확률

- 그 결과, 6.25 참전 관련 보훈대상자는 2029년 1만 명 미만으로 감소하며 2040년경 모두 사망할 것으로 예측되었고, 월남전 참전용사의 경우 2032년경 10만 명 미만으로 감소하며 그 후 급감하여 2044년경 1만 명 미만으로 감소하고 2055년 모든 대상자가 사망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표 54〉 완전생명표

연령	전체	남성	여성
64	0.00608	0.00907	0.00327
65	0.00665	0.00993	0.00357
66	0.00730	0.01090	0.00395
67	0.00807	0.01205	0.00440
68	0.00894	0.01332	0.00493
69	0.00984	0.01464	0.00547
70	0.01091	0.01618	0.00617
71	0.01199	0.01767	0.00693
72	0.01323	0.01937	0.00784
73	0.01470	0.02130	0.00896
74	0.01657	0.02376	0.01039
75	0.01914	0.02722	0.01229
76	0.02233	0.03162	0.01457
77	0.02593	0.03658	0.01719
78	0.02977	0.04172	0.02017
79	0.03387	0.04698	0.02357
80	0.03858	0.05283	0.02764
81	0.04404	0.05970	0.03234
82	0.05052	0.06800	0.03782
83	0.05778	0.07715	0.04414
84	0.06565	0.08667	0.05137
85	0.07433	0.09709	0.05945
86	0.08389	0.10842	0.06848
87	0.09436	0.12069	0.07852
88	0.10577	0.13392	0.08963
89	0.11818	0.14813	0.10183
90	0.13159	0.16332	0.11517
91	0.14604	0.17950	0.12966
92	0.16151	0.19665	0.14530
93	0.17801	0.21475	0.16208
94	0.19552	0.23377	0.17997
95	0.21399	0.25367	0.19892
96	0.23336	0.27438	0.21885
97	0.25357	0.29584	0.23968
98	0.27451	0.31796	0.26129
99	0.29607	0.34064	0.28354
100+	1.00000	1.00000	1.00000

자료: 통계청(2021). 2020년 생명표

〈표 55〉 참전보훈대상자 코호트 구성법에 따른 추계결과

(단위:명)

연도	합계(A+B+C)	A. 6.25 참전	B. 월남참전(B)	C. 고엽제 후유증
2022	289,780	58,529	181,810	49,441
2023	271,672	48,324	175,758	47,590
2024	253,934	39,187	169,176	45,571
2025	236,649	31,196	162,051	43,402
2026	219,784	24,295	154,379	41,110
2027	203,381	18,494	146,183	38,704
2028	187,391	13,707	137,501	36,183
2029	171,783	9,855	128,388	33,540
2030	156,517	6,811	118,907	30,799
2031	141,632	4,479	109,149	28,004
2032	127,133	2,732	99,214	25,187
2033	113,033	1,433	89,217	22,383
2034	99,604	671	79,302	19,631
2035	86,900	321	69,609	16,970
2036	74,865	150	60,275	14,440
2037	63,503	66	51,439	11,998
2038	53,104	25	43,213	9,866
2039	43,653	7	35,698	7,948
2040	35,221	1	28,957	6,263
2041	27,853	0	23,032	4,821
2042	21,554	0	17,935	3,619
2043	16,283	0	13,637	2,646
2044	11,948	0	10,066	1,882
2045	8,466	0	7,165	1,301
2046	5,733	0	4,859	874
2047	3,215	0	3,156	59
2048	1,903	0	1,855	48
2049	993	0	954	39
2050	440	0	410	30
2051	155	0	132	23
2052	46	0	29	17
2053	18	0	5	13
2054	9	0	0	9
2055	6	0	0	6
2056	4	0	0	4
2057	0	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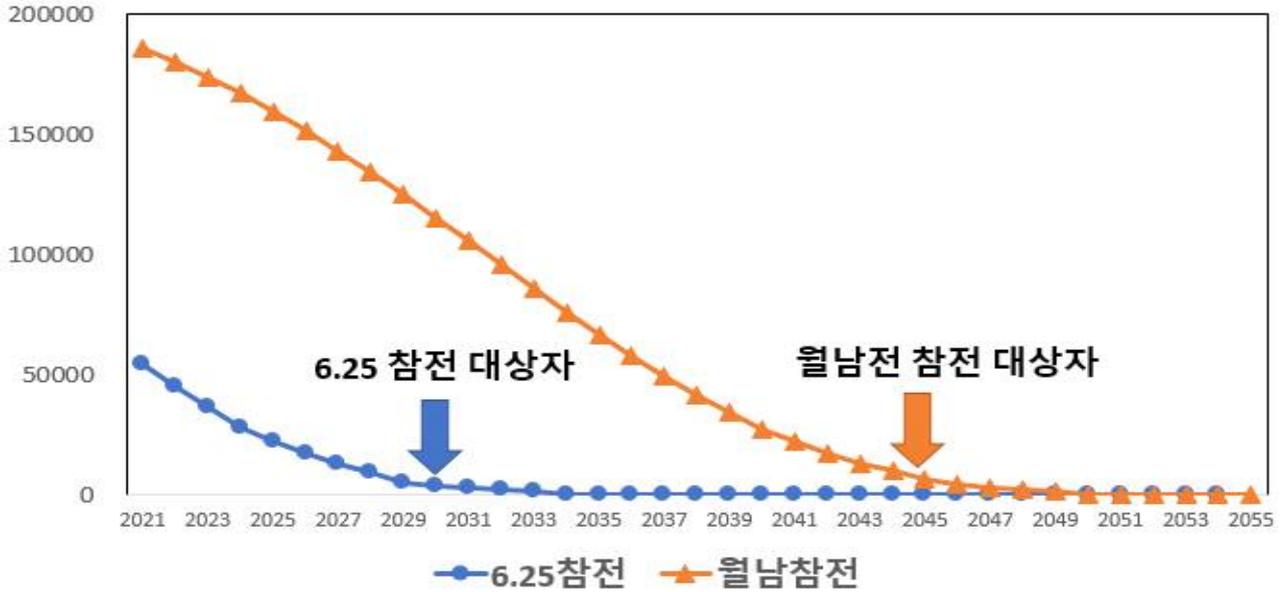
주 1: 6.25와 월남전 모두 참전한 대상자는 6.25 참전에 포함하였음.

2: 고엽제 후유(의)증은 분류상 전상,공상군경에 포함되나, 월남전 참전으로 인한 대상자가 대부분으로 본 연구에서는 코호트 추계 시 포함하였음. 고엽제 2세는 21년 12월 31일 기준 173명으로 미미하므로 추계에서는 제외하였음.

3: 고엽제 후유(의)증은 보훈연감의 연력대별 자료(10세구간)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코호트 추계하였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2). 200811참전유공자 1세 별 현황/ 국가보훈처(2022). 2021 보훈연감

참전 보훈대상자 코호트 조성법 추계결과



[그림 8] 참전보훈대상자 코호트 추계 결과

□ 시계열분석법과 코호트조성법에 의한 보훈대상자 수 유형별 장기전망

- 참전유공자는 6.25, 월남전, 고엽제 코호트별로 장래인구를 코호트 조성법에 따라 추계하였고, 그 외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 제대군인 등은 시계열분석을 기반으로 한 선형추세 분석을 활용하여 장래 대상자 수를 2060년까지 추계하였음.
- 그 결과 참전 관련 대상자는 2040년 기준 급감하며, 2057년에는 모두 사망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 그리고 제대군인 등의 증가로 인하여 대상자 수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며, 2040년 기준 85만 9,645명, 2060년 기준 112만 1,164명으로 예측함.
- 단 해당 예측치는 참전 외 대상자의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훈대상자의 구성비율과 대상자 수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추세모형에 반영하면 더욱 정확하게 변동을 예측할 수 있음.
- 장기추계 1은 제대군인의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반영한 모델이고, 장기추계 2는 중장기 제대군인의 수가 일정한 것을 가정한 모형임.
- 장기추계 1에 의하면 2060년 보훈대상자는 약 112만명으로 예상되며 장기추계 2에 의하면 약 93만 명으로 예측됨.

〈표 56〉 보훈대상자 장기추계 (1)

연도	합계 (A+B+C+D+E)	A. 공상 등	B. 제대군인 등	C. 6.25	D. 월남참전	E. 고엽제
2022	847,138	451,288	106,070	58,529	181,810	49,441
2023	843,867	461,298	110,897	48,324	175,758	47,590
2024	840,966	471,308	115,724	39,187	169,176	45,571
2025	838,518	481,318	120,551	31,196	162,051	43,402
2026	836,490	491,328	125,378	24,295	154,379	41,110
2027	834,924	501,338	130,205	18,494	146,183	38,704
2028	833,771	511,348	135,032	13,707	137,501	36,183
2029	833,000	521,358	139,859	9,855	128,388	33,540
2030	832,571	531,368	144,686	6,811	118,907	30,799
2031	832,523	541,378	149,513	4,479	109,149	28,004
2032	832,861	551,388	154,340	2,732	99,214	25,187
2033	833,598	561,398	159,167	1,433	89,217	22,383
2034	835,006	571,408	163,994	671	79,302	19,631
2035	837,139	581,418	168,821	321	69,609	16,970
2036	839,941	591,428	173,648	150	60,275	14,440
2037	843,416	601,438	178,475	66	51,439	11,998
2038	847,854	611,448	183,302	25	43,213	9,866
2039	853,240	621,458	188,129	7	35,698	7,948
2040	859,645	631,468	192,956	1	28,957	6,263
2041	867,114	641,478	197,783	0	23,032	4,821
2042	875,652	651,488	202,610	0	17,935	3,619
2043	885,218	661,498	207,437	0	13,637	2,646
2044	895,720	671,508	212,264	0	10,066	1,882
2045	907,075	681,518	217,091	0	7,165	1,301
2046	919,179	691,528	221,918	0	4,859	874
2047	931,498	701,538	226,745	0	3,156	59
2048	945,023	711,548	231,572	0	1,855	48
2049	958,950	721,558	236,399	0	954	39
2050	973,234	731,568	241,226	0	410	30
2051	987,786	741,578	246,053	0	132	23
2052	1,002,514	751,588	250,880	0	29	17
2053	1,017,323	761,598	255,707	0	5	13
2054	1,032,151	771,608	260,534	0	0	9
2055	1,046,985	781,618	265,361	0	0	6
2056	1,061,820	791,628	270,188	0	0	4
2057	1,076,653	801,638	275,015	0	0	0
2058	1,091,490	811,648	279,842	0	0	0
2059	1,106,327	821,658	284,669	0	0	0
2060	1,121,164	831,668	289,496	0	0	0

주: 6.25와 월남전 모두 참전한 대상자는 6.25 참전에 포함하였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2). 200811참전유공자 1세 별 현황, 국가보훈처(2022). 2021 보훈연감

〈표 57〉 보훈대상자 장기추계 (2)

연도	합계	A. 참전(6.25, 월남, 고엽제)	B. 참전 외 대상자
2022	844,967	289,780	536,301
2023	836,869	271,672	555,187
2024	829,141	253,934	565,197
2025	821,866	236,649	575,207
2026	815,011	219,784	585,217
2027	808,618	203,381	595,227
2028	802,638	187,391	605,237
2029	797,040	171,783	615,247
2030	791,784	156,517	625,257
2031	786,909	141,632	635,267
2032	782,420	127,133	645,277
2033	778,330	113,033	655,287
2034	774,911	99,604	665,297
2035	772,217	86,900	675,307
2036	770,192	74,865	685,317
2037	768,840	63,503	695,327
2038	768,451	53,104	705,337
2039	769,010	43,653	715,347
2040	770,588	35,221	725,357
2041	773,230	27,853	735,367
2042	776,941	21,554	745,377
2043	781,680	16,283	755,387
2044	787,355	11,948	765,397
2045	793,883	8,466	775,407
2046	801,160	5,733	785,417
2047	808,652	3,215	795,427
2048	817,350	1,903	805,437
2049	826,450	993	815,447
2050	835,907	440	825,457
2051	845,632	155	835,467
2052	855,533	46	845,477
2053	865,515	18	855,487
2054	875,516	9	865,497
2055	885,523	6	875,507
2056	895,531	4	885,517
2057	905,537	0	895,527
2058	915,547	0	905,537
2059	925,557	0	915,547
2060	935,567	0	925,557

주: 장기제대군인이 일정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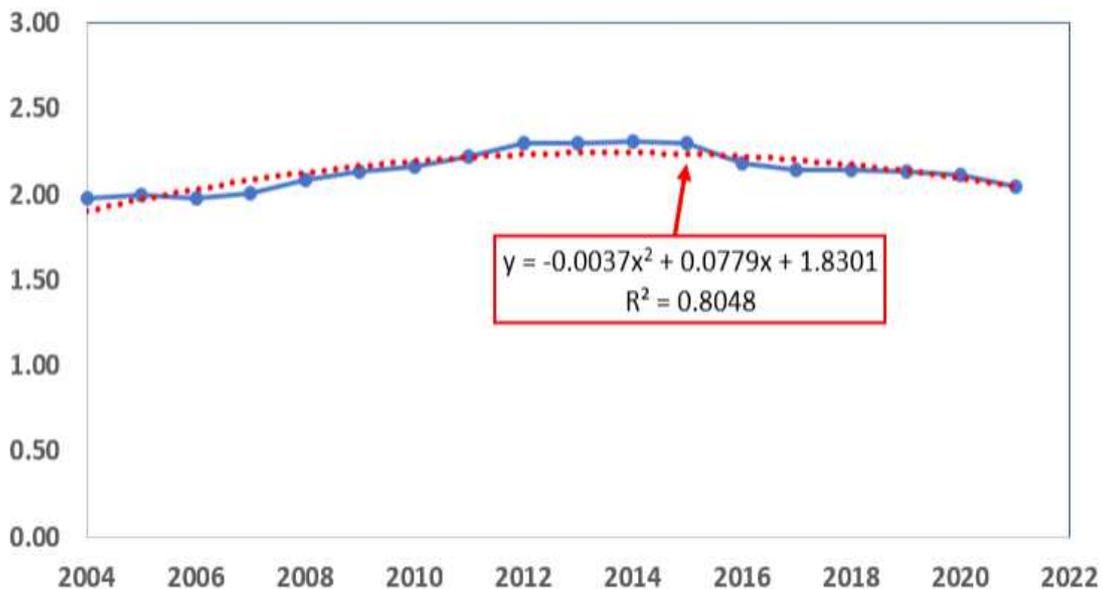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2). 200811참전유공자 1세 별 현황, 국가보훈처(2022). 2021 보훈연감

2. 보훈의료대상자 수 추계

□ 보훈의료대상자 수 추계방법

- 보훈의료지원대상자는 보훈대상자 수에 보훈의료지원대상자 승수를 곱하여 추계하고, 국비대상자 수는 보훈의료지원 대상자 수에 국비대상자 비율을 추계하여 적용함. 감면진료 대상자는 추계의 일치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훈의료대상자 수에서 국비대상자를 차감함.
- 보훈의료지원대상자 수를 보훈대상자 수로 나눈 승수의 추세를 분석해보면, 약 2050년경 1 미만으로 감소하게 됨. 따라서 추세분석을 통한 승수 추정은 불확실하므로 2019년~2021년 기준 보훈의료지원 대상자 승수인 2.09를 이용하여 보훈의료대상자 수를 예측하였음.
- 국비지원 대상자의 비율도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는데, 2017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추계 시에는 2019년~2021년의 국비 대상자 비율의 평균인 14.2%를 적용하였음.

- 보훈의료지원대상자 수 = 국비대상자 수 + 감면진료대상자 수
= 보훈대상자 수 × (보훈대상자 1인당 의료지원 대상자 승수)
- 국비대상자 수 = 보훈의료대상자 수 × (국비대상자 비율)
- 감면진료대상자 수 = 보훈대상자 수 - 국비대상자 수



[그림 9] 보훈대상자 대비 보훈의료지원대상자

□ 보훈의료지원 대상자수 장기추계(1)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증가추세를 반영한 모형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2060년경 약 234만 명으로 추계되었음.

〈표 58〉 연도별 보훈대상자와 의료지원 대상자 수 장기추계(1)

연도	보훈대상자 (A)	보훈의료지원 대상자 (B=A*D)	국비대상자 (C=B*F/100)	감면대상자 (D=B-C)	승수 (E)	국비비율 (F(%))
2022	847,138	1,770,517	251,413	1,519,104	2.09	14.2%
2023	843,867	1,763,683	250,443	1,513,240	2.09	14.2%
2024	840,966	1,757,618	249,582	1,508,036	2.09	14.2%
2025	838,518	1,752,502	248,855	1,503,647	2.09	14.2%
2026	836,490	1,748,263	248,253	1,500,010	2.09	14.2%
2027	834,924	1,744,991	247,789	1,497,202	2.09	14.2%
2028	833,771	1,742,582	247,447	1,495,135	2.09	14.2%
2029	833,000	1,740,970	247,218	1,493,753	2.09	14.2%
2030	832,571	1,740,073	247,090	1,492,983	2.09	14.2%
2031	832,523	1,739,974	247,076	1,492,898	2.09	14.2%
2032	832,861	1,740,680	247,177	1,493,503	2.09	14.2%
2033	833,598	1,742,220	247,395	1,494,825	2.09	14.2%
2034	835,006	1,745,162	247,813	1,497,349	2.09	14.2%
2035	837,139	1,749,621	248,446	1,501,175	2.09	14.2%
2036	839,941	1,755,477	249,278	1,506,199	2.09	14.2%
2037	843,416	1,762,740	250,309	1,512,431	2.09	14.2%
2038	847,854	1,772,016	251,626	1,520,390	2.09	14.2%
2039	853,240	1,783,272	253,225	1,530,048	2.09	14.2%
2040	859,645	1,796,659	255,126	1,541,533	2.09	14.2%
2041	867,114	1,812,268	257,342	1,554,926	2.09	14.2%
2042	875,652	1,830,113	259,876	1,570,237	2.09	14.2%
2043	885,218	1,850,106	262,715	1,587,391	2.09	14.2%
2044	895,720	1,872,056	265,832	1,606,224	2.09	14.2%
2045	907,075	1,895,788	269,202	1,626,586	2.09	14.2%
2046	919,179	1,921,084	272,794	1,648,290	2.09	14.2%
2047	931,498	1,946,831	276,450	1,670,381	2.09	14.2%
2048	945,023	1,975,099	280,464	1,694,635	2.09	14.2%
2049	958,950	2,004,205	284,597	1,719,608	2.09	14.2%
2050	973,234	2,034,060	288,837	1,745,224	2.09	14.2%
2051	987,786	2,064,474	293,155	1,771,318	2.09	14.2%
2052	1,002,514	2,095,255	297,526	1,797,729	2.09	14.2%
2053	1,017,323	2,126,204	301,921	1,824,283	2.09	14.2%
2054	1,032,151	2,157,195	306,322	1,850,874	2.09	14.2%
2055	1,046,985	2,188,199	310,724	1,877,475	2.09	14.2%
2056	1,061,820	2,219,204	315,127	1,904,077	2.09	14.2%
2057	1,076,653	2,250,205	319,529	1,930,676	2.09	14.2%
2058	1,091,490	2,281,214	323,932	1,957,282	2.09	14.2%
2059	1,106,327	2,312,223	328,336	1,983,888	2.09	14.2%
2060	1,121,164	2,343,233	332,739	2,010,494	2.09	14.2%

□ 보훈의료지원 대상자수 장기추계(2)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수가 일정할 것으로 가정한 모형으로, 2060년경 약 196만명으로 추계되었음.

〈표 59〉 연도별 보훈대상자와 의료지원 대상자 수 장기추계(2)

연도	보훈대상자 (A)	보훈의료지원 대상자 (B)	국비대상자 (C)	감면대상자 (D=B-C)	승수 (B/A)	비율 (C/B*100%)
2022	844,967	1,765,981	250,769	1,515,212	2.09	14.2%
2023	836,869	1,749,056	248,366	1,500,690	2.09	14.2%
2024	829,141	1,732,905	246,072	1,486,832	2.09	14.2%
2025	821,866	1,717,700	243,913	1,473,787	2.09	14.2%
2026	815,011	1,703,373	241,879	1,461,494	2.09	14.2%
2027	808,618	1,690,012	239,982	1,450,030	2.09	14.2%
2028	802,638	1,677,513	238,207	1,439,307	2.09	14.2%
2029	797,040	1,665,814	236,546	1,429,268	2.09	14.2%
2030	791,784	1,654,829	234,986	1,419,843	2.09	14.2%
2031	786,909	1,644,640	233,539	1,411,101	2.09	14.2%
2032	782,420	1,635,258	232,207	1,403,051	2.09	14.2%
2033	778,330	1,626,710	230,993	1,395,717	2.09	14.2%
2034	774,911	1,619,564	229,978	1,389,586	2.09	14.2%
2035	772,217	1,613,934	229,179	1,384,755	2.09	14.2%
2036	770,192	1,609,701	228,578	1,381,124	2.09	14.2%
2037	768,840	1,606,876	228,176	1,378,699	2.09	14.2%
2038	768,451	1,606,063	228,061	1,378,002	2.09	14.2%
2039	769,010	1,607,231	228,227	1,379,004	2.09	14.2%
2040	770,588	1,610,529	228,695	1,381,834	2.09	14.2%
2041	773,230	1,616,051	229,479	1,386,572	2.09	14.2%
2042	776,941	1,623,807	230,581	1,393,226	2.09	14.2%
2043	781,680	1,633,711	231,987	1,401,724	2.09	14.2%
2044	787,355	1,645,572	233,671	1,411,901	2.09	14.2%
2045	793,883	1,659,215	235,609	1,423,607	2.09	14.2%
2046	801,160	1,674,424	237,768	1,436,656	2.09	14.2%
2047	808,652	1,690,083	239,992	1,450,091	2.09	14.2%
2048	817,350	1,708,262	242,573	1,465,688	2.09	14.2%
2049	826,450	1,727,281	245,274	1,482,007	2.09	14.2%
2050	835,907	1,747,046	248,080	1,498,965	2.09	14.2%
2051	845,632	1,767,371	250,967	1,516,404	2.09	14.2%
2052	855,533	1,788,064	253,905	1,534,159	2.09	14.2%
2053	865,515	1,808,926	256,868	1,552,059	2.09	14.2%
2054	875,516	1,829,828	259,836	1,569,993	2.09	14.2%
2055	885,523	1,850,743	262,806	1,587,938	2.09	14.2%
2056	895,531	1,871,660	265,776	1,605,884	2.09	14.2%
2057	905,537	1,892,572	268,745	1,623,827	2.09	14.2%
2058	915,547	1,913,493	271,716	1,641,777	2.09	14.2%
2059	925,557	1,934,414	274,687	1,659,727	2.09	14.2%
2060	935,567	1,955,335	277,658	1,677,677	2.09	14.2%

제4장 보훈대상자와 보훈의료비 증장기 전망

제1절 진료비 추계 정확성 제고를 위한 추계모형

1. 추계모형

가. 이동평균모형(moving average model)

- 이동평균법은 평균의 산출대상 기간을 고정하되 시점을 순차적으로 이동시켜가면서 기간별 평균을 계산하여 추계치를 구하는 방법임.
- 평균의 산출대상 기간을 고정시킨 시점을 이동시키면서 평균을 산출하므로 가장 오래된 자료는 평균의 산출대상에서 빠져나가고 최근의 자료가 평균의 산출대상으로 들어오게 됨.
- 간단하고 이해가 용이하나, 데이터가 선형을 이루지 않을 때 정확성이 감소하고, 시계열 자료의 초기 일정 기간의 자료를 이용할 수 없고, 미래예측용 수학적 모형을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음.

1) 단순 이동평균모형

- 단순 이동평균모형은 차기년도의 예측치를 현시점에서 가까운 N개의 데이터를 평균하여 차례로 구하여 나가는 방법.

$$Y_{t+1} = \bar{Y}_t + \frac{Y_t - Y_{t-N}}{N}, \quad \bar{Y}_t = \frac{1}{N} \sum_{k=t-N+1}^t Y_k$$

단, Y_{t+1} : t+1년도 예측치, Y_k : 실적치, N: 이동평균항의 수

2) 가중 이동평균모형(1)

- 이 방법은 최근의 자료일수록 보다 중요하게 취급하는 즉, 가중치를 부여하여 최근의 상황에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한 방법.
- 이 방법은 증가 추세 혹은 감소 추세가 있는 시계열 자료에는 부적합하고 추세가 없는 자료에 적합함.

$$Y_{t+1} = \bar{Y}_t + S \times N, \quad \bar{Y}_t = \frac{1}{N} \sum_{k=t-N+1}^t Y_k$$

$$S(\text{기울기}) = \frac{\sum w_k Y_k}{\sum w_k^2}$$

w_k :가중치, Y_k :실적치, N : 기준개월 수

3) 가중 이동평균모형(2)

- 이 방법은 최근의 실적치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가중평균으로 예측하는 방법이며 연도별 가중치(w_k)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준과 방법이 필요함. 예컨대, 3개년의 과거 실적치를 예측에 이용하는 경우, 각 연도별 가중치를 $w_1 = 0.5$, $w_2 = 0.3$, $w_3 = 0.2$ 로 부여할 수 있음.
- 이 방법은 일정한 방향으로 증가 추세 혹은 감소 추세가 있는 시계열 자료의 예측에는 부적합하고 특정한 추세가 없는 자료에 적합함.

$$Y_{t+1} = w_1 Y_t + w_2 Y_{t-1} + w_3 Y_{t-2}$$

w_k : 가중치, Y_t : 실적치

나. 추세분석모형

- 추세분석모형은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장래 예측을 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온 방법이며, 예측의 정확도 측면에서 우수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음.
- 횡단자료나 패널자료를 이용한 회귀모형은 여러 개의 독립변수를 사용하므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구조를 분석하는 데는 용이하지만, 종속변수의 미래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독립변수의 미래치를 먼저 예측해야 하므로 독립변수가 많을수록 오차가 커지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종속변수의 정확한 예측이 주된 목적인 상황에서는 추세변수로서 시간 변수만을 사용하는 추세분석모형이 가장 적합한 모형이라고 판단됨.

$$Y_{t+1} = f(\text{time})$$

- 한편 추세분석모형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바 흔히 사용되는 모형으로는 지수모형, 선형모형, 로그모형, 다항모형, 거듭제곱모형 등이 있음.

〈표 60〉 추세분석모형의 유형

유형	모형의 예시
지수모형	$Y_{t+1} = \beta_1 e^{\beta_2 T}$ $T = \text{time}(\text{year})$
선형모형	$Y_{t+1} = \beta_1 + \beta_2 T$ $T = \text{time}(\text{year})$
로그모형	$Y_{t+1} = \beta_1 + \beta_2 \ln(T)$ $T = \text{time}(\text{year})$
다항모형	$Y_{t+1} = \beta_1 + \beta_2 T + \beta_3 T^2$ $T = \text{time}(\text{year})$
거듭제곱모형	$Y_{t+1} = \beta_1 T^{\beta_2}$ $T = \text{time}(\text{year})$

- 본 연구에서 보훈진료비 시계열 자료에 여러 가지 추세분석모형을 적용한 뒤, 그 중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판명된 추세분석모형을 중심으로 분석할 예정임. 일반적으로 기존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선형모형, 다항모형, 지수모형이 가장 높은 예측정확도를 갖는 모형임.
- 본 연구에서 추세분석모형에 투입된 자료원은 2007~2021년 자료를 이용하였음. 이동평균 모형과의 비교를 위하여, 예측정확도는 2012~2021년, 2012~2019년 시기를 기반으로 비교함.

나. 총액추계모형과 세부항목별 추계모형(김진현 외, 2021)

- 세부항목별 추계모형
 - 진료 연인원과 의료비 단가를 분석단위로 설정하여 각각에 대해 추계치를 도출함. 이후 도출된 예측치를 곱하여 의료비 총액을 산출하는 모형을 의미함.
- 총액추계모형
 - 연간 의료비 총액 결산자료를 분석단위로 설정하여 추계하는 모형임.

다. 기하평균모형

- 현재 보훈의료비 추계 방식을 의미함. 이 모형은 현재 시점(t년도)에서 (t-1)년도의 실적(연 인원, 단가)에 최근 5년간 평균 증감률(기하평균)을 반영하여 산출하는 것임.

$$Y_{t+1} = Y_{t-1} (1+\phi)^2$$

단, $\phi = \frac{1}{5} \sum_{k=1}^5 \left(\frac{Y_{t-k} - Y_{t-k-1}}{Y_{t-k-1}} \right)$

2. 예측정확도(MAPE)

□ 예측정확도

- 본 연구에서는 예측모형별 정확도를 판별하기 하여 예측정확도를 다음과 같이 평균 절대 오차율(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MAPE)로 산출하였음. MAPE의 산출식은 아래와 같음.
- 예측정확도의 경우 MAPE 값이 0%이상 10%미만인 경우 매우 정확한 예측, 10%이상 20% 미만인 경우 상대적으로 정확한 예측, 20% 이상 50%미만의 경우는 합리적 예측이라고 함 (Lewis, 1982).

$$MAPE_n = \frac{1}{n} \sum_{t=1}^n \left| \frac{A_t - F_t}{A_t} \right| \times 100 (\%)$$

단, n = 예측기간
t = 연도
A_t = t년도의 실제값
F_t = t년도의 추계치

제2절 보훈의료지원대상자의 의료이용량 추계

1. 보훈병원

가. 보훈병원 상이자

1) 입원

□ 상이자 입원 진료연인원 추계

- 2013-2021년 실제 진료연인원과 추계치의 오차율을 비교한 결과 상이자 입원진료연인원 추계의 예측정확도는 추세분석모형에서 가장 높았음. 평균절대오차율은 3.9%로 타 모형보다 정확도가 우수하였음.

〈표 61〉 상이자 입원진료연인원 추계치 비교

연도	연인원	추세분석모형		이동평균모형		기하평균모형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2013	816,195	839,031	2.8%	831,083	1.8%	818,559	0.3%
2014	843,246	851,398	1.0%	872,262	3.4%	875,507	3.8%
2015	888,368	855,297	3.7%	893,552	0.6%	896,430	0.9%
2016	892,953	850,730	4.7%	898,928	0.7%	926,140	3.7%
2017	869,278	837,695	3.6%	951,206	9.4%	960,859	10.5%
2018	836,811	816,194	2.5%	944,125	12.8%	947,334	13.2%
2019	830,262	786,225	5.3%	886,633	6.8%	897,317	8.1%
2020	715,596	747,788	4.5%	802,440	12.1%	833,467	16.5%
2021	653,818	700,885	7.2%	788,468	20.6%	802,273	22.7%
평균절대오차율(2013-2021)			3.9%	7.6%		8.9%	
평균절대오차율(2013-2019)			3.4%	5.1%		5.8%	

□ 상이자 입원진료단가 추계

- 2013~2021년 상이자 입원진료단가도 마찬가지로 추계치의 오차율을 비교한 결과 추세 분석모형의 평균절대오차율은 5.0%로 타 모형보다 정확도가 우수하였음.

〈표 62〉 상이자 입원진료단가 추계치 비교

연도	진료단가 (원)	추세분석모형		이동평균모형		기하평균모형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2013	133,573	120,732	9.6%	102,388	23.3%	110,901	17.0%
2014	124,291	124,402	0.1%	112,669	9.4%	110,780	10.9%
2015	131,707	129,034	2.0%	149,320	13.4%	138,649	5.3%
2016	133,456	134,629	0.9%	132,696	0.6%	128,144	4.0%
2017	150,995	141,187	6.5%	143,765	4.8%	137,239	9.1%
2018	142,265	148,707	4.5%	133,378	6.2%	138,928	2.3%
2019	145,747	157,190	7.9%	168,798	15.8%	155,676	6.8%
2020	156,968	166,635	6.2%	149,304	4.9%	147,102	6.3%
2021	191,197	177,043	7.4%	153,941	19.5%	149,536	21.8%
평균절대오차율(2012-2021)			5.0%	10.9%		9.3%	
평균절대오차율(2013-2019)			4.5%	10.5%		7.9%	

□ 상이자 입원진료비 추계(세부모형)

- 앞서 분석한 진료단가와 연인원 추계치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세부모형의 총입원진료비 예측정확도를 비교한 결과, 추세분석모형이 4.8%, 이동평균모형이 9.5%, 기하평균모형이 7.8%로 나타났음.

〈표 63〉 상이자 세부모형 입원 진료비총액 추계치 비교

연도	총진료비 (백만원)	추세분석모형		이동평균모형		기하평균모형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2013	109,022	101,298	7.1%	85,093	21.9%	90,779	16.7%
2014	104,808	105,915	1.1%	98,277	6.2%	96,988	7.5%
2015	117,004	110,363	5.7%	133,426	14.0%	124,289	6.2%
2016	119,170	114,533	3.9%	119,284	0.1%	118,679	0.4%
2017	131,257	118,271	9.9%	136,750	4.2%	131,867	0.5%
2018	119,049	121,373	2.0%	125,926	5.8%	131,611	10.6%
2019	121,008	123,586	2.1%	149,662	23.7%	139,691	15.4%
2020	112,326	124,608	10.9%	119,807	6.7%	122,605	9.2%
2021	125,008	124,087	0.7%	121,378	2.9%	119,969	4.0%
평균절대오차율(2013-2021)			4.8%	9.5%		7.8%	
평균절대오차율(2013-2019)			4.5%	10.9%		8.2%	

□ 상이자 입원진료비 추계(총액모형)

- 상이자 입원진료비 총액을 기반으로 추세분석, 이동평균, 기하평균(5년 평균 증감을 반영) 모형에 근거하여 실제치와 추계치를 비교한 결과, 추세분석모형의 예측정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평균절대오차율이 추세분석모형에서는 4.3%로 나타났지만, 이동평균모형과 기하평균모형은 그 2배 이상이었음.

〈표 64〉 상이자 총액모형 입원 진료비총액 추계치 비교

연도	총진료비 (백만원)	추세분석모형		이동평균모형		기하평균모형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2013	109,022	103,018	5.5%	86,751	20.4%	87,478	19.8%
2014	104,808	107,245	2.3%	98,148	6.4%	92,199	12.0%
2015	117,004	111,020	5.1%	130,381	11.4%	118,616	1.4%
2016	119,170	114,345	4.1%	118,115	0.9%	113,193	5.0%
2017	131,257	117,219	10.7%	134,981	2.8%	126,832	3.4%
2018	119,049	119,642	0.5%	125,935	5.8%	127,869	7.4%
2019	121,008	121,614	0.5%	148,890	23.0%	137,426	13.6%
2020	112,326	123,136	9.6%	120,412	7.2%	122,859	9.4%
2021	125,008	124,206	0.6%	122,233	2.2%	121,976	2.4%
평균절대오차율(2013-2021)			4.3%	8.9%		8.3%	
평균절대오차율(2013-2019)			4.1%	10.1%		8.9%	

□ 상이자 입원진료비 추계모형별 오차율

- 세부모형과 총액모형의 각 추계모형을 비교한 결과 보훈병원 상이자 입원진료비를 추계하는 가장 정확한 모형은 평균절대오차율이 4.3%로 가장 낮았던 총액추계모형 중 추세분석으로 나타났음.

〈표 65〉 보훈병원 상이자 입원진료비 세부추계모형 총액추계모형 오차율 비교

추계모형	세부추계모형	총액추계모형
추세분석모형	4.8%	4.3%
이동평균모형	9.5%	8.9%
기하평균모형	7.0%	8.3%

2) 외래

□ 상이자 외래 진료연인원 추계

- 2013~2021년 보훈병원 상이자 외래 진료연인원과 추계치의 오차율을 비교한 결과 상이자 추세분석모형의 예측정확도가 가장 높았음. 평균절대오차율은 추세분석모형이 2.4%, 이동평균모형이 3.0%, 기하평균모형이 3.3%로 나타났음.

〈표 66〉 상이자 외래진료연인원 추계치 비교

연도	연인원	추세분석모형		이동평균모형		기하평균모형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2013	1,811,211	1,831,641	1.1%	1,790,850	1.1%	1,755,871	3.1%
2014	1,875,749	1,869,754	0.3%	1,857,467	1.0%	1,927,864	2.8%
2015	1,906,134	1,899,871	0.3%	1,941,566	1.8%	1,940,215	1.8%
2016	1,965,150	1,921,992	2.2%	1,998,914	1.7%	1,993,848	1.5%
2017	1,962,766	1,936,117	1.4%	1,999,955	1.9%	2,006,542	2.2%
2018	1,941,061	1,942,246	0.1%	2,067,776	6.1%	2,060,609	6.2%
2019	2,014,010	1,940,379	3.7%	2,020,777	0.3%	2,022,091	0.4%
2020	1,854,377	1,930,516	4.1%	1,964,346	5.6%	1,917,838	3.4%
2021	1,901,424	1,912,657	0.6%	2,046,583	7.1%	2,066,715	8.7%
평균절대오차율(2013-2021)			2.4%	3.0%		3.3%	
평균절대오차율(2013-2019)			0.9%	2.0%		2.6%	

□ 상이자 외래진료단가 추계

- 상이자 외래진료단가도 마찬가지로 추세분석모형에서 예측정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평균절대오차율의 경우 추세분석모형은 3.7%로 나타났지만, 이동평균모형과 기하평균모형은 10%이상으로 나타났음.

〈표 67〉 상이자 외래진료단가 추계치 비교

연도	입원진료단가(원)	추세분석모형		이동평균모형		기하평균모형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2013	70,507	65,928	6.5%	56,123	20.4%	60,244	14.6%
2014	73,636	68,194	7.4%	82,085	11.5%	99,486	35.1%
2015	71,731	70,241	2.1%	85,725	19.5%	91,470	27.5%
2016	75,077	72,070	4.0%	86,505	15.2%	78,728	4.9%
2017	69,091	73,681	6.6%	73,646	6.6%	73,028	5.7%
2018	74,486	75,074	0.8%	78,124	4.9%	76,586	2.8%
2019	74,975	76,250	1.7%	66,061	11.9%	66,490	11.3%
2020	78,727	77,207	1.9%	76,323	3.1%	73,891	6.1%
2021	76,755	77,946	1.6%	74,907	2.4%	81,405	6.1%
평균절대오차율(2013-2021)		3.7%		10.6%		12.7%	
평균절대오차율(2013-2019)		4.2%		12.9%		14.6%	

□ 상이자 외래진료비 추계(세부모형)

- 세부모형의 외래진료비 총액추계치를 실제치와 비교한 결과 추세분석모형의 평균절대오차율이 3.8%로 가장 낮았음. 이동평균모형은 12.3%, 기하평균모형은 15.4%로 나타남.

〈표 68〉 상이자 세부모형 외래진료비총액 추계치 비교

연도	총진료비 (백만원)	추세분석모형		이동평균모형		기하평균모형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2013	127,703	120,757	5.4%	100,507	21.3%	105,780	17.2%
2014	138,123	127,505	7.7%	152,470	10.4%	191,796	38.9%
2015	136,729	133,448	2.4%	166,441	21.7%	177,472	29.8%
2016	147,537	138,518	6.1%	172,917	17.2%	156,972	6.4%
2017	135,610	142,655	5.2%	147,289	8.6%	146,534	8.1%
2018	144,582	145,813	0.9%	161,542	11.7%	157,814	9.2%
2019	151,001	147,953	2.0%	133,495	11.6%	134,450	11.0%
2020	145,989	149,049	2.1%	149,924	2.7%	141,712	2.9%
2021	145,945	149,084	2.2%	153,303	5.0%	168,241	15.3%
평균절대오차율(2013-2021)		3.8%		12.3%		15.4%	
평균절대오차율(2013-2019)		4.2%		14.7%		17.2%	

□ 상이자 외래진료비 추계(총액모형)

- 상이자 외래진료비 총액을 기준으로 추계한 모형의 예측정확도를 비교한 결과, 총액모형에서도 추세분석모형의 예측정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평균절대오차율의 경우 추세분석 모형은 3.6%인데 비해, 타 모형은 11.2%, 14.2%로 나타나 차이가 크게 나타났음.

〈표 69〉 상이자 총액모형 외래 진료비총액 추계치 비교

연도	총진료비 (백만원)	추세분석모형		이동평균모형		기하평균모형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2013	127,703	121,650	4.7%	100,061	21.6%	97,661	23.5%
2014	138,123	128,033	7.3%	148,763	7.7%	149,557	8.3%
2015	136,729	133,584	2.3%	161,481	18.1%	161,624	18.2%
2016	147,537	138,301	6.3%	168,954	14.5%	184,898	25.3%
2017	135,610	142,186	4.8%	147,105	8.5%	166,647	22.9%
2018	144,582	145,237	0.5%	160,760	11.2%	162,660	12.5%
2019	151,001	147,456	2.3%	133,935	11.3%	139,709	7.5%
2020	145,989	148,843	2.0%	149,817	2.6%	147,780	1.2%
2021	145,945	149,396	2.4%	153,310	5.0%	158,645	8.7%
평균절대오차율(2013-2021)			3.6%	11.2%		14.2%	
평균절대오차율(2013-2019)			4.0%	13.3%		16.9%	

□ 상이자 외래진료비 추계모형별 오차율

- 상이자의 외래진료비를 가장 정확하게 추계하는 모형은 진료비총액을 기준으로 추계하는 모형 중 추세분석모형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나타났음.

〈표 70〉 보훈병원 상이자 외래진료비 세부추계모형 총액추계모형 오차율 비교

추계모형	세부추계모형	총액추계모형
추세분석모형	3.8%	3.6%
이동평균모형	12.3%	11.2%
기하평균모형	15.4%	14.2%

나. 보훈병원 고엽제 등외자

1) 입원

□ 고엽제 등외자 입원진료 연인원 추계

- 2013~2021년 보훈병원 고엽제 등외자의 입원진료 연인원 추계치의 예측정확도는 추세 분석모형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상이자에 비해 평균절대오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이동평균모형에 기반한 추계치는 예측의 정확도가 매우 떨어지는 모형으로 평균절대오차율이 71.5%로 나타났음.

〈표 71〉 고엽제 등외자 입원진료 연인원 추계치 비교

연도	실제 진료연인원	추세분석모형		이동평균모형		기하평균모형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2013	12,063	14,881	23.4%	2,949	75.6%	9,238	23.4%
2014	20,243	13,185	34.9%	11,180	44.8%	12,648	37.5%
2015	9,825	11,730	19.4%	1,100	88.8%	8,431	14.2%
2016	7,764	10,517	35.5%	24,948	221.3%	17,059	119.7%
2017	8,588	9,545	11.1%	5,312	38.2%	8,479	1.3%
2018	8,315	8,814	6.0%	4,898	41.1%	5,310	36.1%
2019	9,209	8,325	9.6%	818	91.1%	7,253	21.2%
2020	8,928	8,077	9.5%	7,308	18.1%	5,335	40.2%
2021	8,155	8,071	1.0%	10,172	24.7%	8,917	9.3%
평균절대오차율(2013-2021)		16.7%		71.5%		33.7%	
평균절대오차율(2013-2019)		20.2%		85.8%		36.2%	

□ 고엽제 등외자 입원진료단가 추계

- 진료단가의 경우 마찬가지로 추세분석모형의 예측정확도가 가장 높았음. 평균절대오차율은 추세분석모형에서 17.2%, 이동평균모형에서 25.0%, 기하평균모형에서 30.7%로 나타남.
- 특히 입원진료단가의 경우 코로나19 유행기간을 제외하는 경우 모든 모형에서 평균절대 오차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72〉 고엽제 등외자 입원진료단가 추계치 비교

연도	입원진료단가 (원)	추세분석모형		이동평균모형		기하평균모형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2013	276,051	266,146	3.6%	181,212	34.4%	184,547	33.1%
2014	282,073	298,373	5.8%	238,409	15.5%	258,771	8.3%
2015	454,758	334,502	26.4%	346,713	23.8%	344,426	24.3%
2016	446,291	375,007	16.0%	358,741	19.6%	363,373	18.6%
2017	488,472	420,416	13.9%	615,357	26.0%	749,740	53.5%
2018	625,856	471,323	24.7%	559,784	10.6%	644,803	3.0%
2019	548,755	528,395	3.7%	626,071	14.1%	649,379	18.3%
2020	489,416	592,377	21.0%	739,921	51.2%	931,524	90.3%
2021	474,130	664,107	40.1%	617,064	30.1%	602,700	27.1%
평균절대오차율(2013-2021)		17.2%		25.0%		30.7%	
평균절대오차율(2013-2019)		13.4%		20.5%		22.7%	

□ 고엽제 등외자 입원진료비 추계(세부모형)

- 보훈병원 고엽제 등외자의 연인원, 단가 추계치를 곱하여 총진료비를 도출한 세부모형에서도 추세분석모형의 평균절대오차율이 15.5%로 가장 낮았음.

〈표 73〉 고엽제 등외자 세부모형 입원 진료비총액 추계치 비교

연도	총진료비 (백만원)	추세분석모형		이동평균모형		기하평균모형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2013	3,330	3,960	18.9%	534	84.0%	1,702	48.9%
2014	5,710	3,934	31.1%	2,665	53.3%	3,278	42.6%
2015	4,468	3,924	12.2%	381	91.5%	2,905	35.0%
2016	3,465	3,944	13.8%	8,950	158.3%	6,200	78.9%
2017	4,195	4,013	4.3%	3,269	22.1%	6,359	51.6%
2018	5,204	4,154	20.2%	2,742	47.3%	3,424	34.2%
2019	4,370	4,399	0.7%	512	88.3%	4,705	7.7%
2020	3,867	4,785	23.7%	5,408	39.8%	4,967	28.5%
2021	4,690	5,360	14.3%	6,277	33.8%	4,318	7.9%
평균절대오차율(2013-2021)		15.5%		68.7%		37.2%	
평균절대오차율(2013-2019)		14.5%		77.8%		42.7%	

□ 고엽제 등외자 입원진료비 추계(총액모형)

- 총액모형의 경우 추세분석에서는 평균절대오차율이 12.9%, 기하평균모형 37.2%, 이동평균모형이 48.2%로 총액추세분석이 가장 예측정확도가 높은 모형으로 나타났다.

〈표 74〉 고엽제 등외자 총액모형 입원 진료비총액 추계치 비교

연도	총진료비 (백만원)	추세분석모형		이동평균모형		기하평균모형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2013	3,330	4,038	21.3%	896	73.1%	1,702	48.9%
2014	5,710	4,083	28.5%	2,998	47.5%	3,278	42.6%
2015	4,468	4,135	7.5%	2,318	48.1%	2,905	35.0%
2016	3,465	4,193	21.0%	8,048	132.3%	6,200	78.9%
2017	4,195	4,257	1.5%	5,081	21.1%	6,359	51.6%
2018	5,204	4,327	16.8%	3,555	31.7%	3,424	34.2%
2019	4,370	4,404	0.8%	3,185	27.1%	4,705	7.7%
2020	3,867	4,487	16.0%	5,695	47.3%	4,967	28.5%
2021	4,690	4,576	2.4%	4,973	6.0%	4,318	7.9%
평균절대오차율(2013-2021)			12.9%		48.2%		37.2%
평균절대오차율(2013-2019)			13.9%		54.4%		42.7%

□ 고엽제 등외자 입원진료비 추계모형별 오차율

- 세부추계에 의한 3가지 모형과 총액추계에 의한 3가지 모형 총 6가지 모형의 진료비 예측정확도를 비교한 결과, 고엽제 등외자의 보훈병원 입원진료비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는 모형은 총액추계모형의 추세분석모형임.
- 총액 추세분석에서 평균절대오차율이 12.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75〉 보훈병원 고엽제 등외자 입원진료비 세부추계모형 총액추계모형 오차율 비교

추계모형	세부추계모형	총액추계모형
추세분석모형	15.5%	12.9%
이동평균모형	68.7%	48.2%
기하평균모형	37.2%	37.2%

2) 외래

□ 고엽제 등외자 외래진료 연인원 추계

- 고엽제 등외자의 보훈병원 외래진료 연인원을 추계하는 가장 정확한 모형은 추세분석모형으로 평균절대오차율이 3.2%로 나타났음. 동기간 평균절대오차율이 이동평균모형에서는 10.4%, 기하평균모형에서는 7.6%인 것에 비해 예측의 정확도가 높음.

〈표 76〉 고엽제등외자 외래진료연인원 추계치 비교

연도	실제 진료연인원	추세분석모형		이동평균모형		기하평균모형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2013	87,425	91,836	5.0%	79,401	10.1%	84,913	2.9%
2014	83,987	88,985	6.0%	98,898	15.1%	92,482	10.1%
2015	85,834	86,524	0.8%	67,932	26.4%	81,581	5.0%
2016	83,658	84,454	1.0%	77,517	7.9%	71,241	14.8%
2017	81,795	82,775	1.2%	76,711	6.6%	82,099	0.4%
2018	83,709	81,486	2.7%	81,147	3.2%	76,778	8.3%
2019	86,717	80,589	7.1%	80,334	7.9%	79,038	8.9%
2020	80,503	80,082	0.5%	82,292	2.2%	83,542	3.8%
2021	76,167	79,966	5.0%	88,756	14.2%	87,238	14.5%
평균절대오차율(2013-2021)			3.2%		10.4%		7.6%
평균절대오차율(2013-2019)			3.4%		11.0%		7.2%

□ 고엽제 등외자 외래진료단가 추계

- 고엽제 등외자의 보훈병원 외래진료단가의 경우 마찬가지로 추세분석모형의 평균절대오차율이 가장 낮아 예측의 정확도가 우수한 것으로 추계됨.
- 하지만 가장 최근인 2021년 단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는 이동평균모형과 기하평균모형의 예측정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77〉 고엽제 등외자 외래진료단가 추계치 비교

연도	입원진료단가(원)	추세분석모형		이동평균모형		기하평균모형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2013	74,830	84,440	12.8%	48,218	35.6%	48,513	35.2%
2014	102,052	88,593	13.2%	71,795	29.6%	71,744	29.7%
2015	102,256	92,886	9.2%	81,499	20.3%	78,006	23.7%
2016	105,728	97,321	8.0%	132,531	25.4%	128,014	21.1%
2017	109,457	101,896	6.9%	123,353	12.7%	137,833	25.9%
2018	111,374	106,612	4.3%	126,327	13.4%	129,330	16.1%
2019	109,449	111,470	1.8%	114,394	4.5%	132,443	21.0%
2020	120,470	116,468	3.3%	117,453	2.5%	116,328	3.4%
2021	107,974	121,607	12.6%	111,930	3.7%	113,202	4.8%
평균절대오차율(2013-2021)		8.0%		16.4%		20.1%	
평균절대오차율(2013-2019)		8.0%		20.2%		24.7%	

□ 고엽제 등외자 외래진료비 추계(세부모형)

- 고엽제 등외자의 외래진료 연인원과 단가에서 추세분석모형의 예측정확도가 가장 우수하였기 때문에 세부모형 진료비 총액의 추계치 결과에서도 추세분석모형의 평균절대오차율이 6.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78〉 고엽제등외자 세부모형 외래진료비총액 추계치 비교

연도	총진료비 (백만원)	추세분석모형		이동평균모형		기하평균모형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2013	6,542	7,755	18.5%	3,829	41.5%	4,119	37.0%
2014	8,571	7,883	8.0%	7,100	17.2%	6,635	22.6%
2015	8,777	8,037	8.4%	5,536	36.9%	6,364	27.5%
2016	8,845	8,219	7.1%	10,273	16.1%	9,120	3.1%
2017	8,953	8,434	5.8%	9,463	5.7%	11,316	26.4%
2018	9,323	8,687	6.8%	10,251	10.0%	9,930	6.5%
2019	8,811	8,983	2.0%	9,190	4.3%	10,468	18.8%
2020	9,176	9,327	1.6%	9,665	5.3%	9,718	5.9%
2021	9,391	9,724	3.6%	9,934	5.8%	9,876	5.2%
평균절대오차율(2013-2021)		6.9%		15.9%		17.0%	
평균절대오차율(2013-2019)		8.1%		18.8%		20.3%	

□ 고엽제 등외자 외래진료비 추계(총액모형)

- 고엽제 등외자의 외래진료비 총액을 기준으로 총진료비를 추계한 결과 추세분석모형의 평균절대오차율이 7.8%로 가장 낮아 예측의 정확도가 가장 높은 모형으로 나타났음.
- 반면, 이동평균모형은 17.4%, 기하평균모형은 17.1%로 평균절대오차율이 추세분석모형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음.

〈표 79〉 고엽제 등외자 총액모형 외래 진료비총액 추계치 비교

연도	총진료비 (백만원)	추세분석모형		이동평균모형		기하평균모형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2013	6,542	7,534	15.2%	3,539	45.9%	4,115	37.1%
2014	8,571	7,675	10.5%	7,102	17.1%	6,639	22.5%
2015	8,777	7,864	10.4%	5,861	33.2%	6,360	27.5%
2016	8,845	8,099	8.4%	10,766	21.7%	9,128	3.2%
2017	8,953	8,382	6.4%	9,944	11.1%	11,327	26.5%
2018	9,323	8,712	6.6%	10,380	11.3%	9,919	6.4%
2019	8,811	9,089	3.2%	9,208	4.5%	10,481	19.0%
2020	9,176	9,514	3.7%	9,687	5.6%	9,719	5.9%
2021	9,391	9,985	6.3%	8,788	6.4%	8,829	6.0%
평균절대오차율(2013-2019)		7.8%		17.4%		17.1%	
평균절대오차율(2013-2021)		8.6%		20.7%		20.3%	

□ 고엽제 등외자 외래진료비 추계모형별 오차율

- 세부추계모형과 총액추계모형의 각 3가지 분석모형 총 6가지 분석모형을 비교한 결과, 보훈병원 고엽제 등외자 외래진료비는 진료연인원과 단가를 각각 추세분석으로 추계한 뒤 곱하여 총액을 추계하는 세부 추세분석모형의 예측정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80〉 보훈병원 고엽제 등외자 외래진료비 세부추계모형 총액추계모형 오차율 비교

추계모형	세부추계모형	총액추계모형
추세분석모형	6.9%	7.8%
이동평균모형	15.9%	17.4%
기하평균모형	17.0%	17.1%

다. 보훈병원 - 일반감면(30~60% 감면)

- 보훈병원 감면율은 4가지로 분류되어있음. 특히 참전유공자의 경우 2018년을 기점으로 감면율이 기존 60%에서 90%로 확대되었음.
- 보훈병원 참전 외 감면대상자는 일반감면으로 분류하여 추계하였음. 보훈병원 일반감면 통계 자료는 자료원의 한계로 2015년을 기준연도로 추계하였음. 다만, 이동평균모형과 기하평균 모형을 적용하기에는 시계열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추세분석모형만을 대상으로 추계를 수행하고 총액모형과 세부모형에 대한 예측정확도를 비교하여 추계모형을 산정함.
- 50% 감면과 30% 감면의 경우 진료연인원과 총진료비에서 해당 감면율의 진료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1% 수준 혹은 그 이하로 미미하여, 시계열자료의 변동성이 비교적 크게 나타나 추계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한계가 있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표 81〉 보훈병원 감면대상자 진료실적 구성비(2021년기준)

감면율	대상자 유형	진료연인원 (명)	구성비 (%)	총진료비 (백만원)	구성비 (%)
90%감면	참전유공자	604,140	44.12%	61,067	55.38%
60%감면	비상이유공자, 유가족 등	750,428	54.80%	48,323	43.82%
50%감면	장기복무제대군인, 기타 5.18 유공자 등	14,328	1.05%	872	0.79%
30%감면	기타 5.18 유가족 등	393	0.03%	8	0.01%
합계		1,369,289	100.0%	110,270	100.0%

1) 일반감면 입원

- 일반감면 입원진료 연인원 추계
 - 보훈병원 일반감면의 경우 30%감면, 50%감면, 60%감면으로 분류됨.
 - 특히 30%감면의 경우 시계열자료가 불안정하므로 평균절대오차율이 크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었음. 반면, 50%감면과 60%감면의 경우 추세분석을 통한 입원진료연인원 추계치와 실제치의 평균절대오차율이 각 5.3%, 3.3%로 비교적 높은 예측정확도를 보였음.

〈표 82〉 일반감면 입원진료 연인원 추계치

연도	30%감면			50%감면			60%감면		
	실제치	추계치	오차율	실제치	추계치	오차율	실제치	추계치	오차율
2015	65	59	9.6%	2,886	2,683	7.0%	168,741	172,713	2.4%
2016	112	106	5.3%	2,524	2,797	10.8%	177,415	174,430	1.7%
2017	152	141	6.9%	2,733	2,865	4.8%	179,551	172,469	3.9%
2018	51	165	223.6%	2,997	2,889	3.6%	161,827	166,829	3.1%
2019	303	177	41.7%	3,022	2,866	5.1%	159,730	157,511	1.4%
2020	157	176	12.4%	2,840	2,799	1.4%	135,644	144,513	6.5%
2021	149	164	10.3%	2,584	2,686	4.0%	133,387	127,837	4.2%
평균절대오차율 (2012-2021)		44.3%			5.3%			3.3%	
평균절대오차율 (2012-2019)		57.4%			6.3%			2.5%	

□ 일반감면 입원진료단가 추계

- 입원진료단가의 경우 30%감면은 평균절대오차율이 42.6%로 나타났으며, 50%감면은 15.2%, 60%감면은 4.8%로 나타났음.

〈표 83〉 일반감면 입원진료단가 추계치

연도	30%감면			50%감면			60%감면		
	실제치	추계치	오차율	실제치	추계치	오차율	실제치	추계치	오차율
2015	9,140	7,205	21.2%	16,214	18,958	16.9%	20,788	20,589	1.0%
2016	2,581	6,219	141.0%	21,930	19,878	9.4%	20,417	20,379	0.2%
2017	7,783	6,138	21.1%	26,120	21,167	19.0%	21,565	21,546	0.1%
2018	7,176	6,963	3.0%	22,427	22,823	1.8%	23,985	24,090	0.4%
2019	5,547	8,692	56.7%	16,953	24,848	46.6%	24,838	28,012	12.8%
2020	16,981	11,326	33.3%	30,610	27,241	11.0%	38,507	33,310	13.5%
2021	12,202	14,866	21.8%	30,663	30,002	2.2%	37,810	39,986	5.8%
평균절대오차율 (2012-2021)		42.6%			15.2%			4.8%	
평균절대오차율 (2012-2019)		48.6%			18.7%			2.9%	

□ 일반감면 입원진료비 추계(세부모형)

- 총입원진료비 세부모형의 추계치와 실제치를 비교한 결과, 30% 감면대상자의 평균절대 오차율은 66.5%, 50%감면의 경우 11.3%, 60%감면의 경우 4.5%로 나타났다.

〈표 84〉 일반감면 입원진료비 총액 세부모형 추계치

연도	30%감면			50%감면			60%감면		
	실제치	추계치	오차율	실제치	추계치	오차율	실제치	추계치	오차율
2015	0.59	0.42	28.7%	47	51	8.7%	3,508	3,556	1.4%
2016	0.29	0.66	128.2%	55	56	0.4%	3,622	3,555	1.9%
2017	1.18	0.87	26.6%	71	61	15.0%	3,872	3,716	4.0%
2018	0.37	1.15	214.0%	67	66	1.9%	3,881	4,019	3.5%
2019	1.68	1.54	8.6%	51	71	39.0%	3,967	4,412	11.2%
2020	2.67	2.00	25.0%	87	76	12.3%	5,223	4,814	7.8%
2021	1.82	2.44	34.4%	79	81	1.7%	5,043	5,112	1.4%
평균절대오차율 (2012-2021)		66.5%			11.3%			4.5%	
평균절대오차율 (2012-2019)		81.2%			13.0%			4.4%	

□ 일반감면 입원진료비 추계(총액모형)

- 입원진료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추계한 결과에서는 30%감면의 평균절대오차율이 57.5%, 50%감면이 11.2%, 60%감면이 4.2%로 나타났다.
- 50%감면과 60%감면의 예측정확도는 비교적 우수한 편이었으나, 30%감면의 경우 연도별 추세가 일정하지 않은 관계로 추세분석을 통한 추계의 정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5〉 일반감면 입원진료비 총액모형 추계치

연도	30%감면			50%감면			60%감면		
	실제치	추계치	오차율	실제치	추계치	오차율	실제치	추계치	오차율
2015	0.59	0.05	90.8%	47	50	7.7%	3,508	3,534	0.7%
2016	0.29	0.13	56.3%	55	55	0.1%	3,622	3,595	0.8%
2017	1.18	0.25	79.2%	71	60	15.3%	3,872	3,745	3.3%
2018	0.37	0.41	12.9%	67	65	2.6%	3,881	3,983	2.6%
2019	1.68	0.63	62.6%	51	70	37.5%	3,967	4,309	8.6%
2020	2.67	0.89	66.6%	87	75	13.2%	5,223	4,724	9.6%
2021	1.82	1.20	33.9%	79	80	1.6%	5,043	5,227	3.7%
평균절대오차율 (2012-2021)		57.5%			11.2%			4.2%	
평균절대오차율 (2012-2019)		60.4%			12.7%			3.2%	

2) 외래

□ 일반감면 외래진료 연인원 추계

- 일반감면 대상자의 보훈병원 외래진료 연인원의 경우 30%감면의 평균절대오차율이 20.2%, 50%감면은 1.3%, 60%감면은 2.7%로 나타남.

〈표 86〉 일반감면 외래진료 연인원 추계치

연도	30%감면			50%감면			60%감면		
	실제치	추계치	오차율	실제치	추계치	오차율	실제치	추계치	오차율
2015	140	118	16.1%	9,228	9,264	0.4%	610,154	620,706	1.7%
2016	122	136	11.4%	10,406	10,347	0.6%	643,327	634,542	1.4%
2017	148	157	6.1%	11,275	11,161	1.0%	659,903	641,528	2.8%
2018	182	182	0.2%	11,346	11,704	3.2%	623,279	641,664	2.9%
2019	139	210	51.0%	12,324	11,979	2.8%	650,290	634,949	2.4%
2020	417	243	41.8%	11,833	11,983	1.3%	591,749	621,384	5.0%
2021	244	281	15.0%	11,744	11,719	0.2%	617,041	600,968	2.6%
평균절대오차율 (2012-2021)		20.2%			1.3%			2.7%	
평균절대오차율 (2012-2019)		17.0%			1.6%			2.2%	

□ 일반감면 외래진료단가 추계

- 일반감면 대상자의 보훈병원 외래진료단가의 경우 30%감면은 평균절대오차율이 10.7%, 50%감면은 2.4%, 60%감면은 1.8%로 나타났음.
- 특히 30%감면의 경우 대상자의 수가 많지 않으므로, 해당 연도에 외래진료를 받는 대상자의 질환 또는 의료이용특성에 따른 편차가 다른 의료이용자에 비해 큰 변동성을 초래하므로 오차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

〈표 87〉 일반감면 외래진료단가 추계치

연도	30%감면			50%감면			60%감면		
	실제치	추계치	오차율	실제치	추계치	오차율	실제치	추계치	오차율
2015	8,638	8,544	1.1%	16,662	17,129	2.8%	22,157	22,472	1.4%
2016	9,033	9,555	5.8%	18,056	17,775	1.6%	23,264	22,986	1.2%
2017	9,819	10,687	8.8%	19,198	18,153	5.4%	24,001	23,287	3.0%
2018	15,878	11,952	24.7%	18,367	18,421	0.3%	23,472	23,500	0.1%
2019	11,019	13,367	21.3%	17,845	18,629	4.4%	22,823	23,666	3.7%
2020	16,309	14,950	8.3%	18,586	18,799	1.1%	23,528	23,801	1.2%
2021	15,928	16,720	5.0%	19,137	18,943	1.0%	24,381	23,916	1.9%
평균절대오차율 (2012-2021)		10.7%			2.4%			1.8%	
평균절대오차율 (2012-2019)		12.3%			2.9%			1.9%	

□ 일반감면 외래진료비 추계(세부모형)

- 앞서 추계한 일반감면대상자의 외래진료연인원과 외래진료단가를 곱하여 총진료비를 추계한 세부모형의 평균절대오차율을 보면, 30%감면의 경우 32.3%, 50%감면의 경우 2.9%, 60%감면의 경우 3.8%로 추계됨.
- 50%감면과 60%감면대상자의 외래진료 총진료비를 추계하는 세부추세분석모형의 예측 정확도는 10% 미만으로 매우 정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88〉 일반감면 외래진료비 총액 세부모형 추계치

(단위: 백만원)

연도	30%감면			50%감면			60%감면		
	실제치	추계치	오차율	실제치	추계치	오차율	실제치	추계치	오차율
2015	1.21	1.00	17.0%	154	159	3.2%	13,519	13,949	3.2%
2016	1.10	1.30	17.8%	188	184	2.1%	14,966	14,586	2.5%
2017	1.45	1.68	15.5%	217	203	6.4%	15,838	14,939	5.7%
2018	2.89	2.17	24.9%	208	216	3.5%	14,630	15,079	3.1%
2019	1.53	2.81	83.2%	220	223	1.5%	14,841	15,027	1.2%
2020	6.80	3.63	46.6%	220	225	2.4%	13,923	14,790	6.2%
2021	3.89	4.69	20.7%	225	222	1.2%	15,044	14,372	4.5%
평균절대오차율 (2012-2021)	32.3%			2.9%			3.8%		
평균절대오차율 (2012-2019)	31.7%			3.3%			3.1%		

□ 일반감면 외래진료비 추계(총액모형)

- 일반감면대상자의 보훈병원 외래진료비 추계치와 실제치를 비교한 결과, 총액모형을 기준으로 예측정확도는 30%감면 기준 32.3%, 50%감면은 3.1%, 60%감면은 3.9%로 나타났음.
- 앞선 세부추세분석모형과 유사하게 50%감면과 60%감면의 예측정확도는 매우 정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하지만, 외래진료비 추계에서는 세부모형을 기반으로 진료단가와 연인원을 각각 추계하여 총진료비를 예측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모형으로 나타났음.

〈표 89〉 일반감면 외래진료비 총액모형 추계치

(단위: 백만원)

연도	30%감면			50%감면			60%감면		
	실제치	추계치	오차율	실제치	추계치	오차율	실제치	추계치	오차율
2015	1.21	1.00	17.0%	154	159	3.7%	13,519	14,059	4.0%
2016	1.10	1.30	17.8%	188	184	1.9%	14,966	14,573	2.6%
2017	1.45	1.68	15.5%	217	203	6.1%	15,838	14,903	5.9%
2018	2.89	2.17	24.9%	208	216	3.8%	14,630	15,049	2.9%
2019	1.53	2.81	83.2%	220	223	1.6%	14,841	15,010	1.1%
2020	6.80	3.63	46.6%	220	224	2.1%	13,923	14,786	6.2%
2021	3.89	4.69	20.7%	225	220	2.3%	15,044	14,379	4.4%
평균절대오차율 (2012-2021)	32.3%			3.1%			3.9%		
평균절대오차율 (2012-2019)	31.7%			3.4%			3.3%		

3) 약제비

□ 일반감면 약제비 단가 추계

- 일반감면 대상자의 약제비 진료연인원은 외래진료 연인원과 같음.
- 약제비의 단가를 살펴보면, 30%감면에서는 연도별 단가의 변화가 일정하지 않아 평균절대 오차율이 52.0%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음. 특히 2018년과 2020년의 오차율은 100%이상으로 매우 부정확한 예측이 나타났음을 보여줌.
- 반면, 50%감면과 60%감면은 평균절대오차율이 각 1.5%, 2.1%로 약제비 단가를 예측하는 모형으로 매우 정확한 예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90〉 일반감면 약제비 단가추계치

(단위: 원)

연도	30%감면			50%감면			60%감면		
	실제치	추계치	오차율	실제치	추계치	오차율	실제치	추계치	오차율
2015	10,865	11,979	10.2%	33,295	32,879	1.2%	33,035	33,307	0.8%
2016	16,957	14,150	16.6%	33,647	34,239	1.8%	34,536	33,924	1.8%
2017	15,249	15,228	0.1%	36,204	36,140	0.2%	35,277	35,181	0.3%
2018	7,523	15,214	102.2%	38,619	38,581	0.1%	36,683	37,079	1.1%
2019	25,684	14,107	45.1%	40,758	41,564	2.0%	38,171	39,617	3.8%
2020	4,387	11,907	171.4%	46,801	45,088	3.7%	45,055	42,796	5.0%
2021	10,535	8,615	18.2%	48,323	49,153	1.7%	45,760	46,615	1.9%
평균절대오차율 (2012-2021)		52.0%			1.5%			2.1%	
평균절대오차율 (2012-2019)		34.8%			1.1%			1.5%	

□ 일반감면 약제비 추계(세부모형)

- 추세분석모형에 근거하여 추계한 연인원과 단가를 곱하여 약제비 총액을 산출한 세부모형에서 평균절대오차율은 30%감면이 29.0%, 50%감면이 1.6%, 60%감면이 2.2%로 나타났음.
- 50%감면, 60%감면 대상자의 진료비를 세부추세분석모형으로 예측하는 것은 매우 정확한 예측으로 판단할 수 있음.

〈표 91〉 일반감면 약제비 세부모형 추계치

(단위: 백만원)

연도	30%감면			50%감면			60%감면		
	실제치	추계치	오차율	실제치	추계치	오차율	실제치	추계치	오차율
2015	1.52	1.41	7.5%	307	305	0.9%	20,156	20,674	2.6%
2016	2.07	1.92	7.1%	350	354	1.2%	22,218	21,526	3.1%
2017	2.26	2.39	6.0%	408	403	1.2%	23,280	22,570	3.0%
2018	1.37	2.76	101.8%	438	452	3.1%	22,864	23,792	4.1%
2019	3.57	2.96	17.0%	502	498	0.9%	24,823	25,155	1.3%
2020	1.83	2.89	58.0%	554	540	2.4%	26,661	26,593	0.3%
2021	2.57	2.42	5.9%	568	576	1.5%	28,236	28,014	0.8%
평균절대오차율 (2012-2021)		29.0%			1.6%			2.2%	
평균절대오차율 (2012-2019)		27.9%			1.4%			2.8%	

□ 일반감면 약제비 추계(총액모형)

- 50%감면, 60%감면대상자의 진료비를 세부추세분석모형으로 예측하는 것은 매우 정확한 예측으로 판단할 수 있음.

〈표 92〉 일반감면 약제비 총액모형 추계치

(단위: 백만원)

연도	30%감면			50%감면			60%감면		
	실제치	추계치	오차율	실제치	추계치	오차율	실제치	추계치	오차율
2015	1.52	1.59	4.8%	307	303	1.4%	20,156	20,688	2.6%
2016	2.07	1.88	8.9%	350	355	1.4%	22,218	21,557	3.0%
2017	2.26	2.12	6.2%	408	405	0.8%	23,280	22,574	3.0%
2018	1.37	2.29	67.1%	438	452	3.2%	22,864	23,738	3.8%
2019	3.57	2.40	32.8%	502	497	1.2%	24,823	25,050	0.9%
2020	1.83	2.45	34.1%	554	538	2.8%	26,661	26,510	0.6%
2021	2.57	2.45	4.9%	568	578	1.8%	28,236	28,117	0.4%
평균절대오차율 (2012-2021)		22.7%			1.8%			2.1%	
평균절대오차율 (2012-2019)		24.0%			1.6%			2.7%	

□ 일반감면 분석모형별 예측정확도 비교

- 세부추세분석모형과 총액추세분석모형의 평균절대오차율은 아래 표와 같음.
- 30%감면의 입원, 외래, 약제비의 평균절대오차율은 비교하면, 총액을 기준으로 추세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세부추세분석보다 예측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하지만 평균절대오차율의 수치를 살펴보면 입원의 경우 57.5%, 외래는 32.3%, 약제비는 22.7%로 그 오차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음. 평균절대오차율의 값이 50% 미만은 합리적 예측(Lewis, 1982)으로 볼 수 있으나, 입원진료비의 평균절대 오차율은 그 이상으로 이 경우 기존 예산산정방식인 5년 증감률, 3년 증감률 등을 반영하여 추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예상함.
- 50%감면의 경우에는 입원진료비는 총액추세분석, 외래와 약제비는 세부추세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예측정확도가 우수한 모형이었음.
- 60%감면의 경우는 모두 세부추세분석모형을 이용하여 추계하는 것이 평균절대오차율이 가장 낮아 예측정확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표 93〉 일반감면 진료유형별 평균절대오차율 비교

(단위: 백만원)

대상자	입원		외래		약제비	
	세부모형	총액모형	세부모형	총액모형	세부모형	총액모형
30%감면	66.5%	57.5%	32.3%	32.3%	29.0%	22.7%
50%감면	11.3%	11.2%	2.9%	3.1%	1.6%	1.8%
60%감면	4.5%	4.2%	3.8%	3.9%	2.2%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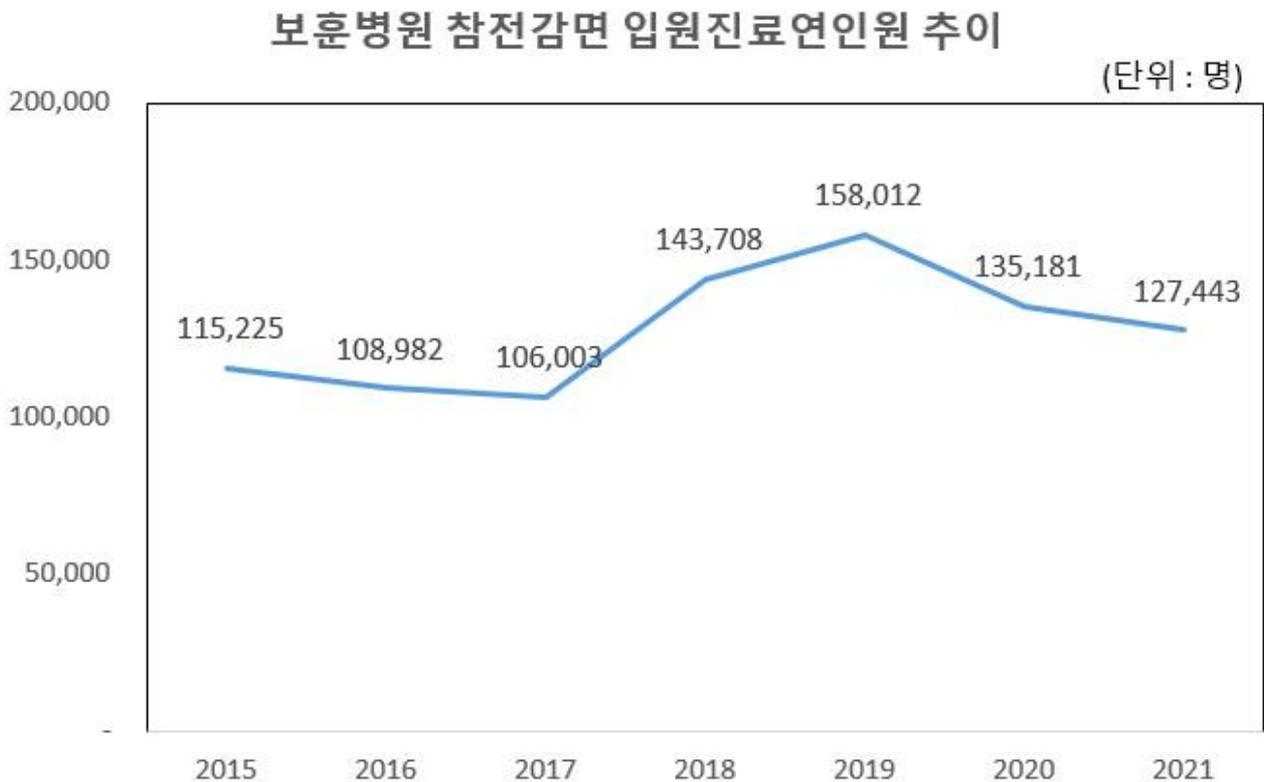
라. 보훈병원 - 참전유공자(90% 감면)

- 보훈병원 참전유공자는 2018년을 기점으로 이전은 60% 감면을 적용받았고 2018년 이후 90%감면을 적용받는 것으로 감면율이 확대되었음. 따라서 일반적인 추계모형을 적용하면 감면율 확대라는 정책의 효과로 인해 정확한 추계의 어려움이 따름.
- 일반감면과 분리되어 구축된 시계열 자료가 7개년도로 한정적이지만, 감면율 확대에 따른 진료인원과 단가의 증가효과는 시계열 자료를 살펴보면 기울기가 급격하게 달라지는 시점에 대해 가변수를 이용하여 해당 구간의 이용량 증가를 반영하였음.
- 향후 시계열 자료가 충분히 구축된다면 다른 대상자 의료비 추계방법을 적용하여 예측정확도를 비교하여 추계방법을 선택하는 방법을 고려해야함.

1) 입원

□ 참전감면 진료연인원 추계

- 보훈병원 참전감면 진료연인원에 대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87.1%로 나타났음. 회귀식에 근거하여 참전감면 입원진료연인원을 추계한 결과, 평균절대오차율은 6.4%로 나타나 예측 정확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추계되었음.



[그림 10] 보훈병원 참전감면 입원진료 연인원 추이

$$Y = 3,984(T - 2014) + 29,504D_1 + 103,427$$

$$T = \text{연도}(2015-2021), D_1 = 1 \text{ if } 2018 \leq T \leq 2019, D_1 = 0$$

$$F(p) = 13.51(.017), R^2 = 0.871$$

[수식 1] 보훈병원 참전감면 입원진료 연인원 회귀식

〈표 94〉 참전감면 입원진료 연인원 추계치 비교

연도	실제 진료연인원	회귀분석	
		추계치	오차율
2015	115,225	107,411	6.8%
2016	108,982	111,395	2.2%
2017	106,003	115,380	8.8%
2018	143,708	148,868	3.6%
2019	158,012	152,852	3.3%
2020	135,181	127,332	5.8%
2021	127,443	131,316	3.0%
평균절대오차율(2015-2021)			4.8%
평균절대오차율(2015-2019)			4.9%

□ 참전감면 입원진료단가 추계

- 보훈병원 참전감면 진료단가에 대한 추계식은 아래와 같으며, 설명력은 94.0%로 나타났음.
- 회귀식에 근거하여 참전감면 입원진료단가를 추계한 결과, 평균절대오차율은 12.0%로 나타났음.
- 현재까지의 참전감면 입원진료단가의 추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였고, 추세분석 시에는 진료비단가의 증가 효과가 2021년까지 모두 나타난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하는 보수적인 추계기법을 활용할 수 있음.
- 더욱 정확한 추계를 위해서는 향후 진료비단가 통계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분석을 재수행하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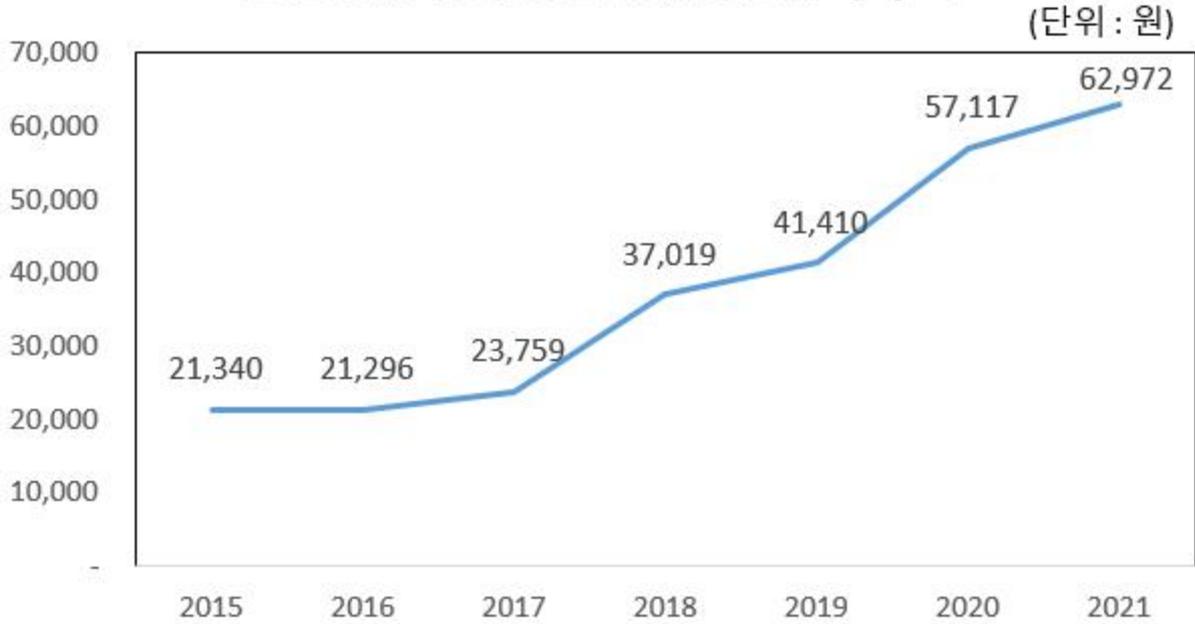
$$Y = 7,029(T-2014) + 2,897D_1 + 8,074$$

T = 연도(2015-2021), $D_1 = 1$ if $2018 \leq T \leq 2021$, $D_1 = 0$

$$F(p) = 35.48(.003), R^2 = 0.933$$

[수식 2] 보훈병원 참전감면 입원진료단가 회귀식

보훈병원 참전감면 입원진료단가 추이



[그림 11] 보훈병원 참전감면 입원진료단가 추이

〈표 95〉 참전감면 입원진료단가 추계치 비교

연도	실제 진료단가(원)	회귀분석	
		추계치	오차율
2015	21,340	15,103	29.2%
2016	21,296	22,132	3.9%
2017	23,759	29,161	22.7%
2018	37,019	39,086	5.6%
2019	41,410	46,115	11.4%
2020	57,117	53,144	7.0%
2021	62,972	60,173	4.4%
평균절대오차율(2015-2021)			12.0%
평균절대오차율(2015-2019)			14.6%

□ 참전감면 입원진료비 추계비교(세부모형 VS 총액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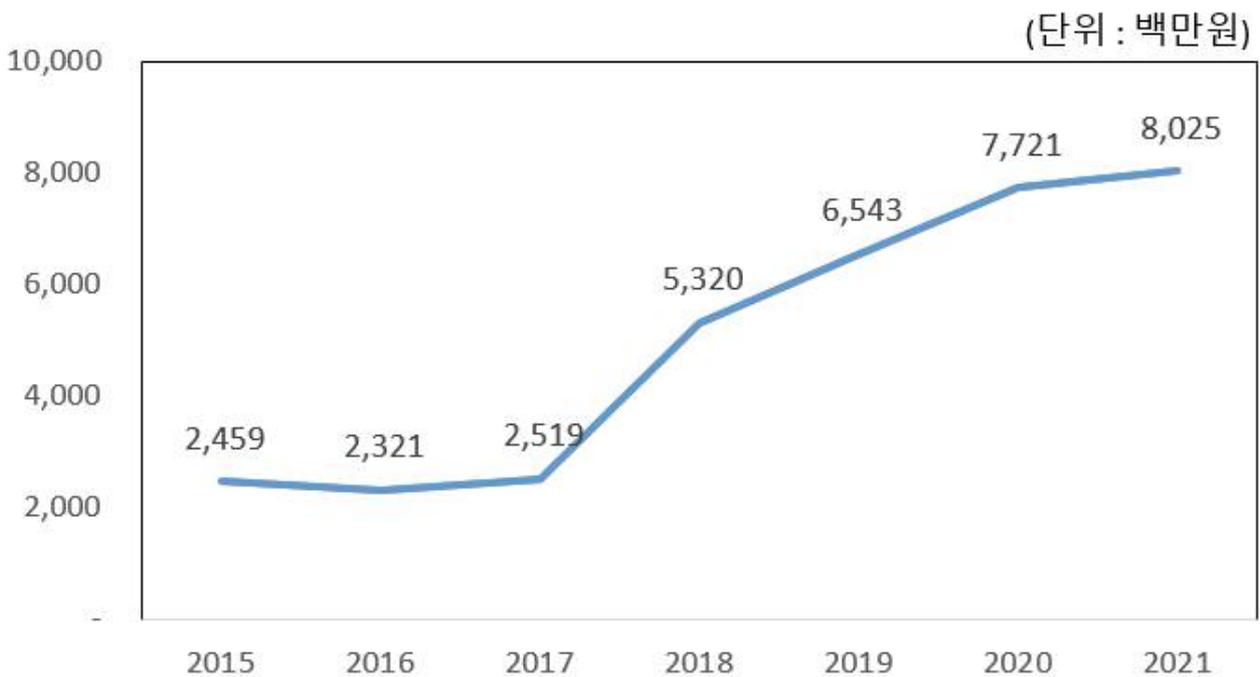
- 세부모형은 앞서 산출한 입원 진료연인원 추계치와 진료단가의 추계치를 곱하여 산출한 모형임.
- 총액모형의 경우에는 입원진료비총액을 기준으로 기존 시계열자료의 기울기변화를 파악하여 연도(2018~2021)에 대한 가변수를 추가한 회귀모형을 기반으로 분석한 모형이며 회귀식은 아래와 같음. 회귀식의 설명력은 96.3%로 나타났음.

$$Y = 672(T-2014) + 2,116D_1 + 1,088$$

T = 연도(2015-2021), $D_1 = 1$ if $2018 \leq T \leq 2021$, $D_1 = 0$
 $F(p) = 52.70(.001)$, $R^2 = 0.963$

[수식 3] 보훈병원 참전감면 총입원진료비 회귀식

보훈병원 참전감면 입원진료비 총액 추이



[그림 12] 보훈병원 참전감면 입원진료비 총액 추이

- 가변수를 활용한 회귀분석의 세부모형과 총액모형을 비교한 결과, 평균절대오차율은 총 진료비를 기준으로 추계한 총액모형에서 가장 낮아 예측정확도가 높은 모형으로 판단하였음.

〈표 96〉 참전감면 총액모형 입원 진료비총액 추계치 비교

(단위:백만원)

연도	실제 입원진료비총액	세부모형		총액모형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2015	2,459	1,622	34.0%	1,761	28.4%
2016	2,321	2,465	6.2%	2,433	4.8%
2017	2,519	3,365	33.6%	3,105	23.3%
2018	5,320	5,819	9.4%	5,894	10.8%
2019	6,543	7,049	7.7%	6,566	0.4%
2020	7,721	6,767	12.4%	7,238	6.3%
2021	8,025	7,902	1.5%	7,911	1.4%
평균절대오차율(2015-2021)			15.0%	10.8%	
평균절대오차율(2015-2019)			18.2%	13.5%	

2) 외래

□ 참전감면 외래진료 연인원 추계

- 보훈병원 참전감면 외래진료 연인원은 2018년 감면율 확대가 시작된 해를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이후 2020년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따라서 감면율 확대에 대한 연인원 증가의 효과가 나타난 연도는 2018년과 2019년 두 해로 가정을 하였고 해당 기간을 가변수로 추가하여 회귀식을 추정하였음. 해당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90.6%로 나타났음.
- 회귀식에 근거하여 참전감면 외래진료연인원을 추계한 결과, 평균절대오차율은 7.0%로 나타나 예측정확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추계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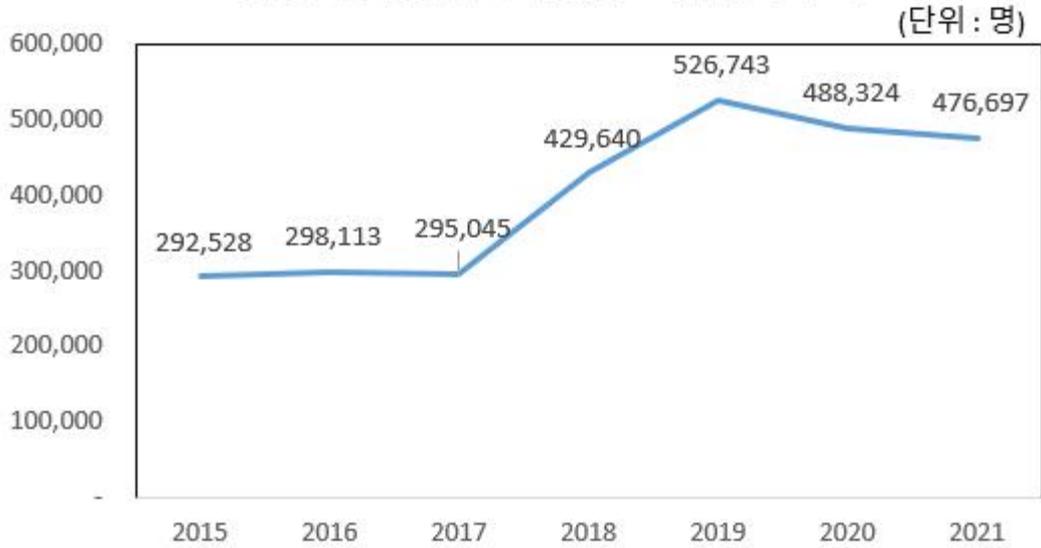
$$Y = 38,702(T-2014) + 80,958D_1 + 223,072$$

$$T = \text{연도}(2015-2021), D_1 = 1 \text{ if } 2018 \leq T \leq 2019, D_1 = 0$$

$$F(p) = 19.21(.009), R^2 = 0.906$$

[수식 4] 보훈병원 참전감면 외래진료 연인원 회귀식

보훈병원 참전감면 외래진료연인원 추이



[그림 13] 보훈병원 참전감면 외래진료 연인원 추이

〈표 97〉 참전감면 외래진료 연인원 추계치 비교

연도	실제 진료연인원	회귀분석	
		추계치	오차율
2015	292,528	261,775	10.5%
2016	298,113	300,477	0.8%
2017	295,045	339,179	15.0%
2018	429,640	458,840	6.8%
2019	526,743	497,543	5.5%
2020	488,324	455,287	6.8%
2021	476,697	493,989	3.6%
평균절대오차율(2015-2021)			7.0%
평균절대오차율(2015-2019)			7.7%

□ 참전감면 외래진료단가 추계

- 보훈병원 참전감면 진료단가에 대한 추계식은 아래와 같으며, 설명력은 99.5%로 나타났음.
- 회귀식에 근거하여 참전감면 외래진료단가를 추계한 결과, 평균절대오차율은 1.7%로 나타나 예측정확도가 매우 높은 편임.

- 입원진료단가와 마찬가지로 현재까지의 참전감면 외래진료단가의 추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였고, 추세분석시에는 진료비단가의 증가효과가 2021년까지 모두 나타난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하는 보수적인 추계기법을 활용할 수 있음.
- 외래 진료비단가의 추이를 보면 2018년 감면율 확대가 나타난 시점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이후에는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였음. 2018년 다년도에 대한 가변수 회귀분석을 이용한 결과와 2018~2021년의 증가추세를 모두 가정한 가변수 회귀분석모형의 설명력을 비교한 결과 2018~2021년의 가변수 회귀분석의 설명력이 더 높아 해당기간에 대한 가변수를 추가하였음.
- 더욱 정확한 추계를 위해서는 향후 진료비단가 통계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분석을 재수행하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Y = 693(T-2014) + 14,673D_1 + 19,099$$

T = 연도(2015-2021), $D_1 = 1$ if T=2018, $D_1 = 0$

$$F(p) = 411.86(<.001), R^2 = 0.995$$

[수식 5] 보훈병원 참전감면 외래진료단가 회귀식



[그림 14] 보훈병원 참전감면 외래진료단가 추이

〈표 98〉 참전감면 외래진료단가 추계치 비교

연도	실제 진료단가(원)	회귀분석	
		추계치	오차율
2015	19,128	19,792	3.5%
2016	20,475	20,484	0.0%
2017	21,850	21,177	3.1%
2018	37,538	36,543	2.7%
2019	36,515	37,236	2.0%
2020	37,722	37,929	0.5%
2021	38,554	38,621	0.2%
평균절대오차율(2015-2021)			1.7%
평균절대오차율(2015-2019)			2.2%

□ 참전감면 외래진료비 추계비교(세부모형 vs 총액모형)

- 세부모형은 앞서 산출한 외래진료연인원 추계치와 진료단가의 추계치를 곱하여 산출한 모형임.
- 총액모형의 경우에는 외래진료비총액을 기준으로 기존 시계열자료의 기울기변화를 파악하여 연도(2018~2021)에 대한 가변수를 추가한 회귀모형을 기반으로 분석한 모형이며 회귀식은 아래와 같음. 회귀식의 설명력은 98.6%로 나타났음.

$$Y = 546(T-2014) + 10,082D_1 + 4,9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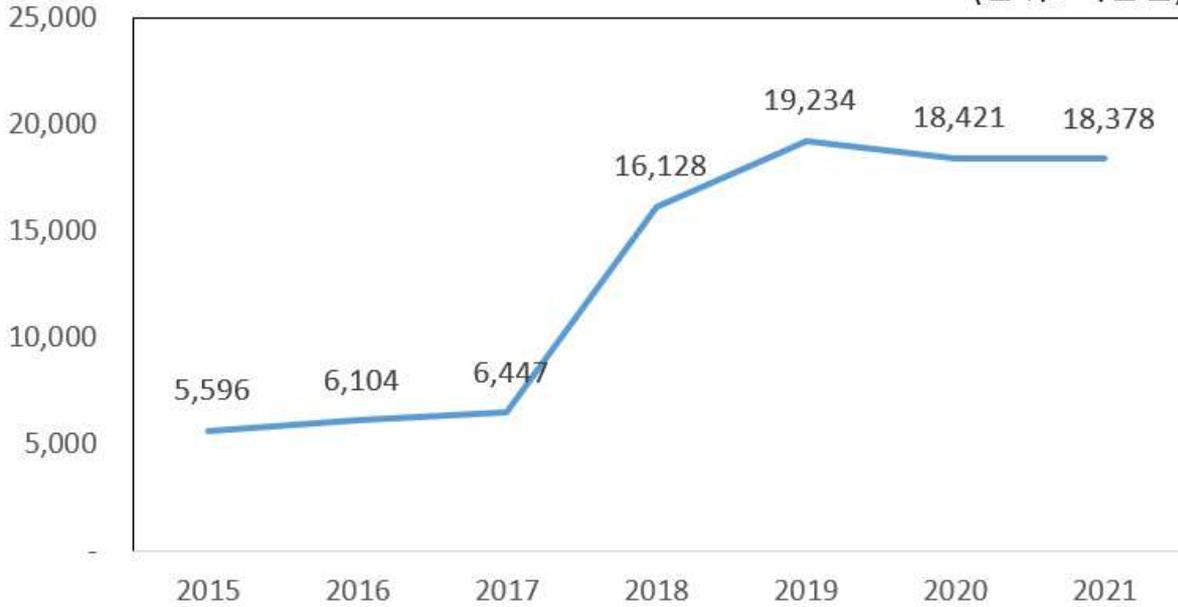
T = 연도(2015-2021), $D_1 = 1$ if $2018 \leq T \leq 2021$, $D_1 = 0$

$$F(p) = 137.21(.002), R^2 = 0.986$$

[수식 6] 보훈병원 참전감면 외래진료비 총액 회귀식

보훈병원 참전감면 외래총진료비 추이

(단위 : 백만원)



[그림 15] 보훈병원 참전감면 외래 총진료비 추이

- 가변수를 활용한 회귀분석의 세부모형과 총액모형을 비교한 결과, 평균절대오차율은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추계한 총액모형에서 가장 낮아 예측정확도가 높은 모형으로 판단하였음.

〈표 99〉 참전감면 총액모형 외래 진료비총액 추계치 비교

(단위: 백만원)

연도	실제 외래진료비총액	세부모형		총액모형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2015	5,596	5,181	7.4%	5,503	1.7%
2016	6,104	6,155	0.8%	6,049	0.9%
2017	6,447	7,183	11.4%	6,595	2.3%
2018	16,128	16,767	4.0%	17,222	6.8%
2019	19,234	18,526	3.7%	17,767	7.6%
2020	18,421	17,268	6.3%	18,313	0.6%
2021	18,378	19,079	3.8%	18,859	2.6%
평균절대오차율(2015-2021)			5.3%		3.2%
평균절대오차율(2015-2019)			5.5%		3.9%

3) 약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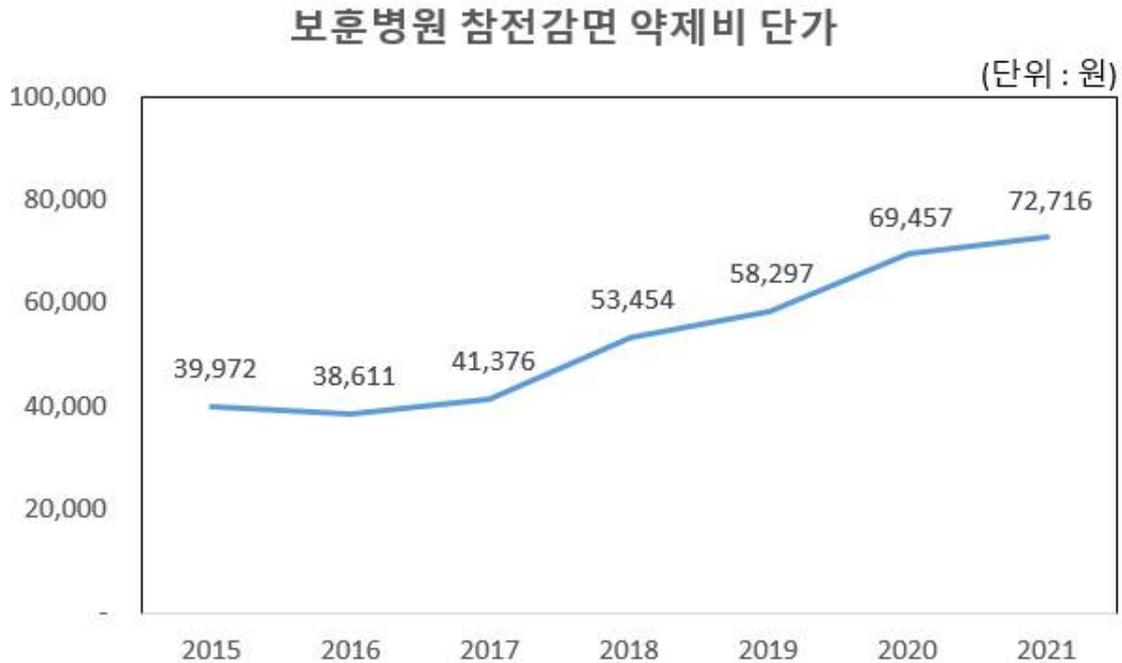
□ 참전감면 약제비 단가 추계

- 보훈병원 참전감면 진료단가에 대한 추계식은 아래와 같으며, 설명력은 99.5%로 나타났음.
- 회귀식에 근거하여 참전감면 약제비단가를 추계한 결과, 평균절대오차율은 1.7%로 나타나 예측정확도가 매우 높은 편임.
- 약제비 단가는 2018년부터 약제비 단가 기울기가 증가하였음. 2021년까지 감면을 확대에 따른 단가 증가의 추세가 모두 나타난 것으로 가정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고, 그 이후에는 약제비 단가 데이터가 축적되는 것을 반영하여 분석을 재수행해야 함.

$$Y = 5,125(T-2014) + 5,556D_1 + 29,736$$

T = 연도(2015-2021), $D_1 = 1$ if $2018 \leq T \leq 2019$, $D_1 = 0$
 $F(p) = 33.07(.003)$, $R^2 = 0.943$

[수식 7] 보훈병원 참전감면 약제비 단가 회귀식



[그림 16] 보훈병원 참전감면 약제비 단가

〈표 100〉 참전감면 약제비 단가 추계치 비교

연도	실제 진료단가(원)	회귀분석	
		추계치	오차율
2015	39,972	34,861	12.8%
2016	38,611	39,986	3.6%
2017	41,376	45,112	9.0%
2018	53,454	55,793	4.4%
2019	58,297	60,918	4.5%
2020	69,457	66,044	4.9%
2021	72,716	71,169	2.1%
평균절대오차율(2015-2021)			5.9%
평균절대오차율(2015-2019)			6.8%

□ 참전감면 약제비 추계비교(세부모형 VS 총액모형)

- 세부모형은 앞서 산출한 약제비 연인원 추계치와 진료단가의 추계치를 곱하여 산출한 모형임.
- 총액모형의 경우에는 약제비 총액을 기준으로 기존 시계열 자료의 기울기 변화를 파악하여 연도(2018~2021)에 대한 가변수를 추가한 회귀모형을 기반으로 분석한 모형이며 회귀식은 아래와 같음. 회귀식의 설명력은 98.6%로 나타났음.

$$Y = 546(T-2014) + 10,082D_1 + 4,9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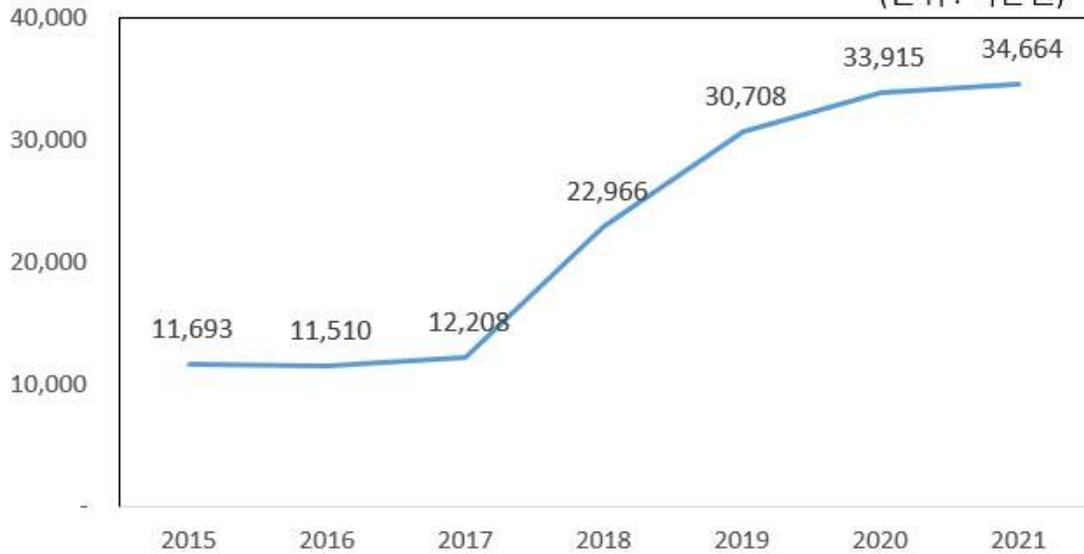
$$T = \text{연도}(2015-2021), D_1 = 1 \text{ if } 2018 \leq T \leq 2019, D_1 = 0$$

$$F(p) = 137.21(.002), R^2 = 0.986$$

[수식 8] 보훈병원 참전감면 약제비 총액 회귀식

보훈병원 참전감면 약제비 총액

(단위 : 백만원)



[그림 17] 보훈병원 참전감면 약제비 총액 추이

- 가변수를 활용한 회귀분석의 세부모형과 총액모형을 비교한 결과, 참전감면 약제비 총액을 추계하는데 가장 예측정확도가 높은 모형은 진료비와 단가를 각각 추계한 뒤 곱하여 총액을 도출하는 세부모형으로 나타났다.

〈표 101〉 참전감면 총액모형 약제비 총액 추계치 비교

(단위: 백만원)

연도	실제 약제비 총액	세부모형		총액모형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2015	11,693	9,126	22.0%	7,856	32.8%
2016	11,510	12,015	4.4%	12,478	8.4%
2017	12,208	15,301	25.3%	17,100	40.1%
2018	22,966	25,600	11.5%	24,526	6.8%
2019	30,708	30,309	1.3%	29,148	5.1%
2020	33,915	30,069	11.3%	30,967	8.7%
2021	34,664	35,157	1.4%	35,589	2.7%
평균절대오차율(2015-2021)			11.0%		14.9%
평균절대오차율(2015-2019)			12.9%		18.6%

2. 보훈위탁병원

가. 국비대상자

1) 입원

□ 보훈위탁병원 국비 입원진료 연인원 추계

- 보훈위탁병원의 국비대상자 입원진료 연인원 추계는 추세분석모형에 기반하였을 때 평균 절대오차율이 2.9%로 가장 낮았음. 이동평균모형은 8.4%, 기하평균모형은 7.2%로 모두 2배 이상 높은 오차율을 보였음.
- 특히, 이동평균모형과 기하평균모형은 2022년의 오차율이 16.0%, 18.3%로 추세분석에서 1.5%인 것에 비해 오차율이 매우 높은 편이었음.

〈표 102〉 보훈위탁병원 국비 입원진료 연인원 추계치 비교

연도	연인원	추세분석모형		이동평균모형		기하평균모형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2013	795,255	801,159	0.7%	870,448	9.5%	845,240	6.3%
2014	840,554	802,480	4.5%	897,905	6.8%	923,721	9.9%
2015	746,519	797,450	6.8%	788,960	5.7%	840,413	12.6%
2016	768,275	786,068	2.3%	877,933	14.3%	859,148	11.8%
2017	739,165	768,334	3.9%	695,090	6.0%	728,710	1.4%
2018	741,564	744,248	0.4%	750,288	1.2%	742,376	0.1%
2019	741,923	713,811	3.8%	671,572	9.5%	712,795	3.9%
2020	694,483	677,022	2.5%	738,261	6.3%	696,300	0.3%
2021	624,489	633,881	1.5%	724,355	16.0%	738,958	18.3%
평균절대오차율(2012-2021)			2.9%		8.4%		7.2%
평균절대오차율(2012-2019)			3.2%		7.6%		6.6%

□ 보훈위탁병원 국비 입원진료단가 추계

- 2013~2021년 보훈위탁병원 국비 입원진료단가 추계치의 오차율을 비교한 결과 추세분석 모형의 평균절대오차율은 2.5%로 타모형보다 정확도가 우수하였음.

〈표 103〉 보훈위탁병원 국비 입원진료단가 추계치 비교

연도	진료단가 (원)	추세분석모형		이동평균모형		기하평균모형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2013	33,905	34,632	2.1%	32,562	4.0%	33,669	0.7%
2014	35,538	36,196	1.9%	35,617	0.2%	34,166	3.9%
2015	39,953	38,136	4.5%	35,423	11.3%	34,999	12.4%
2016	40,191	40,450	0.6%	37,139	7.6%	37,702	6.2%
2017	41,892	43,139	3.0%	43,856	4.7%	43,881	4.7%
2018	44,538	46,204	3.7%	44,382	0.4%	43,638	2.0%
2019	51,199	49,643	3.0%	46,128	9.9%	46,538	9.1%
2020	54,614	53,458	2.1%	47,595	12.9%	49,854	8.7%
2021	56,887	57,648	1.3%	58,538	2.9%	57,962	1.9%
평균절대오차율(2012-2021)		2.5%		6.0%		5.5%	
평균절대오차율(2012-2019)		2.7%		5.4%		5.6%	

□ 보훈위탁병원 국비 입원진료비 추계(세부모형)

- 세부모형의 총입원진료비 평균절대오차율을 비교한 결과, 추세분석모형이 4.0%, 이동평균모형이 8.0%, 기하평균모형이 7.2%로 나타나, 예측정확도는 추세분석모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104〉 보훈위탁병원 국비 세부모형 입원진료비 총액 추계치 비교

연도	총진료비 (백만원)	추세분석모형		이동평균모형		기하평균모형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2013	26,963	27,746	2.9%	28,343	5.1%	28,459	5.5%
2014	29,872	29,047	2.8%	31,980	7.1%	31,560	5.7%
2015	29,826	30,411	2.0%	27,947	6.3%	29,413	1.4%
2016	30,878	31,796	3.0%	32,605	5.6%	32,392	4.9%
2017	30,965	33,145	7.0%	30,484	1.6%	31,976	3.3%
2018	33,028	34,387	4.1%	33,299	0.8%	32,396	1.9%
2019	37,986	35,436	6.7%	30,978	18.4%	33,172	12.7%
2020	37,928	36,192	4.6%	35,137	7.4%	34,713	8.5%
2021	35,525	36,542	2.9%	42,402	19.4%	42,832	20.6%
평균절대오차율(2012-2021)		4.0%		8.0%		7.2%	
평균절대오차율(2012-2019)		4.1%		6.4%		5.0%	

□ 보훈위탁병원 국비 입원진료비 추계(총액모형)

- 보훈위탁병원 국비 입원진료비 총액을 기반으로 추세분석, 이동평균, 기하평균(5년 평균 증감률 반영) 모형에 근거하여 실제치와 추계치를 비교한 결과, 추세분석모형의 예측정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평균절대오차율이 추세분석모형에서는 3.8%로 가장 낮았고, 이동평균모형은 7.6%, 기하평균 모형은 7.2%로 나타나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임.

〈표 105〉 보훈위탁병원 국비 총액모형 입원진료비 총액 추계치 비교

연도	총진료비 (백만원)	추세분석모형		이동평균모형		기하평균모형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2013	26,963	27,775	3.0%	28,468	5.6%	28,497	5.7%
2014	29,872	28,909	3.2%	31,698	6.1%	31,497	5.4%
2015	29,826	30,089	0.9%	27,971	6.2%	29,388	1.5%
2016	30,878	31,317	1.4%	32,456	5.1%	32,372	4.8%
2017	30,965	32,595	5.3%	30,987	0.1%	31,950	3.2%
2018	33,028	33,925	2.7%	33,488	1.4%	32,378	2.0%
2019	37,986	35,309	7.0%	31,694	16.6%	33,170	12.7%
2020	37,928	36,750	3.1%	35,163	7.3%	34,700	8.5%
2021	35,525	38,250	7.7%	42,725	20.3%	42,842	20.6%
평균절대오차율(2012-2021)			3.8%		7.6%		7.2%
평균절대오차율(2012-2019)			3.4%		5.9%		5.0%

□ 보훈위탁병원 국비 입원진료비 추계모형별 오차율

- 세부모형과 총액모형의 각 추계모형을 비교한 결과 보훈병원 보훈위탁병원 국비 입원진료비를 추계하는 가장 정확한 모형은 평균절대오차율이 3.8%로 가장 낮았던 총액추계모형 중 추세분석으로 나타났음.

〈표 106〉 보훈위탁병원 국비 입원진료비 세부추계모형 총액추계모형 오차율 비교

추계모형	세부추계모형	총액추계모형
추세분석모형	4.0%	3.8%
이동평균모형	8.0%	7.6%
기하평균모형	7.2%	7.2%

2) 외래

□ 보훈위탁병원 국비 외래 진료연인원 추계

- 2013~2021년 보훈병원 보훈위탁병원 국비 외래 진료연인원과 추계치의 오차율을 비교한 결과 보훈위탁병원 국비 추세분석모형의 예측정확도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기하평균 모형, 이동평균모형 순으로 나타남.
- 평균절대오차율은 추세분석모형이 2.2%, 이동평균모형이 7.1%, 기하평균모형이 6.0%로 나타났음.

〈표 107〉 보훈위탁병원 국비 외래진료 연인원 추계치 비교

연도	연인원	추세분석모형		이동평균모형		기하평균모형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2013	2,259,884	2,306,720	2.1%	2,590,354	12.8%	2,443,329	8.1%
2014	2,431,679	2,358,608	3.0%	2,578,998	5.7%	2,629,019	8.1%
2015	2,263,179	2,384,952	5.4%	2,408,011	6.0%	2,360,413	4.3%
2016	2,378,808	2,385,752	0.3%	2,611,267	8.9%	2,554,783	7.4%
2017	2,323,379	2,361,008	1.6%	2,229,597	4.2%	2,267,708	2.4%
2018	2,243,928	2,310,720	3.0%	2,458,091	8.7%	2,326,762	3.7%
2019	2,312,531	2,234,888	3.4%	2,251,179	2.7%	2,384,180	3.1%
2020	2,154,365	2,133,512	1.0%	2,231,094	3.4%	2,115,667	1.8%
2021	2,008,647	2,006,592	0.1%	2,268,346	11.4%	2,303,290	14.7%
평균절대오차율(2012-2021)			2.2%		7.1%		6.0%
평균절대오차율(2012-2019)			2.7%		7.0%		5.3%

□ 보훈위탁병원 국비 외래진료단가 추계

- 보훈위탁병원 국비 외래진료단가도 마찬가지로 추세분석모형에서 예측정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평균절대오차율의 경우 추세분석모형은 1.3%로 나타났고, 이동평균모형과 기하평균 모형은 모두 3.1%로 나타났음.

〈표 108〉 보훈위탁병원 국비 외래진료단가 추계치 비교

연도	입원진료단가(원)	추세분석모형		이동평균모형		기하평균모형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2013	17,631	17,992	2.0%	17,762	0.7%	17,538	0.5%
2014	18,626	18,587	0.2%	17,903	3.9%	18,421	1.1%
2015	19,236	19,273	0.2%	18,026	6.3%	17,914	6.9%
2016	19,698	20,049	1.8%	19,672	0.1%	19,493	1.0%
2017	21,517	20,915	2.8%	20,348	5.4%	20,447	5.0%
2018	21,820	21,872	0.2%	21,076	3.4%	20,857	4.4%
2019	22,699	22,919	1.0%	23,444	3.3%	23,768	4.7%
2020	23,660	24,057	1.7%	23,543	0.5%	23,601	0.3%
2021	25,695	25,285	1.6%	24,700	3.9%	24,646	4.1%
평균절대오차율(2012-2021)		1.3%		3.1%		3.1%	
평균절대오차율(2012-2019)		1.2%		3.3%		3.4%	

□ 보훈위탁병원 국비 외래진료비 추계(세부모형)

- 세부모형의 보훈위탁병원 국비진료대상자 외래진료비 총액추계치를 실제치와 비교한 결과 추세분석모형의 평균절대오차율이 2.7%로 가장 낮았음. 이동평균모형은 6.1%, 기하평균모형은 5.7%로 나타났음.

〈표 109〉 보훈위탁병원 국비 세부모형 외래진료비 총액 추계치 비교

연도	총진료비 (백만원)	추세분석모형		이동평균모형		기하평균모형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2013	39,844	41,502	4.2%	46,009	15.5%	42,851	7.5%
2014	45,292	43,839	3.2%	46,173	1.9%	48,430	6.9%
2015	43,535	45,964	5.6%	43,406	0.3%	42,285	2.9%
2016	46,857	47,831	2.1%	51,369	9.6%	49,799	6.3%
2017	49,992	49,381	1.2%	45,368	9.2%	46,368	7.2%
2018	48,962	50,540	3.2%	51,807	5.8%	48,529	0.9%
2019	52,492	51,222	2.4%	52,777	0.5%	56,666	8.0%
2020	50,972	51,325	0.7%	52,526	3.0%	49,931	2.0%
2021	51,613	50,736	1.7%	56,027	8.6%	56,766	10.0%
평균절대오차율(2012-2021)		2.7%		6.1%		5.7%	
평균절대오차율(2012-2019)		3.1%		6.1%		5.7%	

□ 보훈위탁병원 국비 외래진료비 추계(총액모형)

- 보훈위탁병원 국비 외래진료비 총액을 기준으로 추계한 모형의 예측정확도를 비교한 결과, 총액모형에서도 추세분석모형의 예측정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절대오차율의 경우 추세분석모형은 2.6%로 가장 낮았고, 이동평균모형이 5.8%로 나타났다. 반면, 기하평균모형의 평균절대오차율은 7.7%로 가장 높았음.

〈표 110〉 보훈위탁병원 국비 총액모형 외래진료비 총액 추계치 비교

연도	총진료비 (백만원)	추세분석모형		이동평균모형		기하평균모형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2013	39,844	41,765	4.8%	45,255	13.6%	45,853	15.1%
2014	45,292	43,914	3.0%	45,949	1.5%	52,543	16.0%
2015	43,535	45,805	5.2%	43,260	0.6%	44,012	1.1%
2016	46,857	47,439	1.2%	50,899	8.6%	51,758	10.5%
2017	49,992	48,816	2.4%	45,462	9.1%	47,269	5.4%
2018	48,962	49,935	2.0%	51,532	5.2%	50,291	2.7%
2019	52,492	50,796	3.2%	53,125	1.2%	55,959	6.6%
2020	50,972	51,401	0.8%	52,580	3.2%	50,940	0.1%
2021	51,613	51,748	0.3%	56,249	9.0%	57,652	11.7%
평균절대오차율(2012-2021)		2.6%		5.8%		7.7%	
평균절대오차율(2012-2019)		3.1%		5.7%		8.2%	

□ 보훈위탁병원 국비 외래진료비 추계모형별 오차율

- 보훈위탁병원 국비의 외래진료비를 가장 정확하게 추계하는 모형은 진료비총액을 기준으로 추계하는 모형 중 추세분석모형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나타났다.

〈표 111〉 보훈위탁병원 국비 외래진료비 세부추계모형 총액추계모형 오차율 비교

추계모형	세부추계모형	총액추계모형
추세분석모형	2.7%	2.6%
이동평균모형	6.1%	5.8%
기하평균모형	5.7%	7.7%

3) 약제비

□ 보훈위탁병원 국비 약제비 진료연인원 추계

○ 약제비의 진료연인원 추계는 앞서 추계한 보훈위탁병원 국비 외래 연인원 추계와 같음.

□ 보훈위탁병원 국비 약제비단가 추계

○ 위탁병원 국비대상자의 약제비 단가의 경우 추세분석의 평균절대오차율이 2.3%로 가장 낮아 예측정확도가 높았음.

〈표 112〉 보훈위탁병원 국비 약제비 진료단가 추계치 비교

연도	약제비단가(원)	추세분석모형		이동평균모형		기하평균모형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2013	43,597	46,296	6.2%	47,717	9.4%	52,454	20.3%
2014	43,338	46,234	6.7%	38,725	10.6%	39,442	9.0%
2015	47,192	46,682	1.1%	37,112	21.4%	39,181	17.0%
2016	46,589	47,642	2.3%	37,677	19.1%	39,030	16.2%
2017	48,998	49,113	0.2%	48,768	0.5%	45,046	8.1%
2018	51,693	51,095	1.2%	48,584	6.0%	47,525	8.1%
2019	52,989	53,588	1.1%	52,771	0.4%	51,982	1.9%
2020	56,722	56,592	0.2%	54,694	3.6%	56,450	0.5%
2021	61,317	60,107	2.0%	57,256	6.6%	56,107	8.5%
평균절대오차율(2012-2021)			2.3%		8.6%		9.9%
평균절대오차율(2012-2019)			2.7%		9.6%		11.5%

□ 보훈위탁병원 국비 약제비진료비 추계(세부모형)

○ 세부모형의 약제비진료비 총액추계치를 실제치와 비교한 결과 추세분석모형의 평균절대 오차율이 3.1%로 가장 낮았고, 그다음으로는. 이동평균모형이 8.3%, 기하평균모형은 8.7%로 나타났음.

〈표 113〉 보훈위탁병원 국비 세부모형 약제비 총액 추계치 비교

연도	총진료비 (백만원)	추세분석모형		이동평균모형		기하평균모형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2013	98,524	106,792	8.4%	123,603	25.5%	128,162	30.1%
2014	105,384	109,047	3.5%	99,871	5.2%	103,693	1.6%
2015	106,804	111,335	4.2%	89,367	16.3%	92,483	13.4%
2016	110,826	113,662	2.6%	98,384	11.2%	99,714	10.0%
2017	113,841	115,956	1.9%	108,733	4.5%	102,151	10.3%
2018	115,995	118,066	1.8%	119,423	3.0%	110,580	4.7%
2019	122,538	119,763	2.3%	118,798	3.1%	123,934	1.1%
2020	122,201	120,740	1.2%	122,027	0.1%	119,430	2.3%
2021	123,164	120,611	2.1%	129,876	5.4%	129,231	4.9%
평균절대오차율(2012-2021)			3.1%			8.3%	8.7%
평균절대오차율(2012-2019)			3.5%			9.8%	10.2%

□ 보훈위탁병원 국비 약제비진료비 추계(총액모형)

- 보훈위탁병원 국비 약제비진료비 총액을 기준으로 추계한 모형의 예측정확도를 비교한 결과, 총액모형에서도 추세분석모형의 예측정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절대오차율을 비교해보면, 추세분석모형이 3.5%, 이동평균모형이 7.7%, 기하평균모형이 8.8%로 추세분석 모형보다 타 모형의 오차율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4〉 보훈위탁병원 국비 총액모형 약제비 총액 추계치 비교

연도	총진료비 (백만원)	추세분석모형		이동평균모형		기하평균모형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2013	98,524	107,920	9.5%	128,005	29.9%	137,091	39.1%
2014	105,384	110,142	4.5%	103,919	1.4%	112,390	6.6%
2015	106,804	112,140	5.0%	91,769	14.1%	96,174	10.0%
2016	110,826	113,957	2.8%	100,925	8.9%	103,705	6.4%
2017	113,841	115,627	1.6%	108,866	4.4%	104,256	8.4%
2018	115,995	117,172	1.0%	119,027	2.6%	114,626	1.2%
2019	122,538	118,612	3.2%	119,479	2.5%	122,421	0.1%
2020	122,201	119,961	1.8%	122,122	0.1%	121,630	0.5%
2021	123,164	121,231	1.6%	130,346	5.8%	131,266	6.6%
평균절대오차율(2012-2021)			3.5%			7.7%	8.8%
평균절대오차율(2012-2019)			4.0%			9.1%	10.3%

□ 보훈위탁병원 국비 약제비 추계모형별 오차율

- 보훈위탁병원 국비의 약제비를 가장 정확하게 추계하는 모형은 진료비와 단가를 추세분석 모형에 의해 추계한 뒤 곱하여 약제비 총액을 예측하는 세부추계모형의 추세분석모형으로 나타났음.

〈표 115〉 보훈위탁병원 국비 약제비 세부추계모형 총액추계모형 오차율 비교

추계모형	세부추계모형	총액추계모형
추세분석모형	3.1%	3.5%
이동평균모형	8.3%	7.7%
기하평균모형	8.7%	8.8%

바. 보훈위탁병원 - 응급

1) 입원

□ 보훈위탁병원 응급입원진료 연인원 추계

- 보훈위탁병원의 응급입원진료 연인원 추계는 추세분석모형에 기반하였을 때 평균절대오차율이 5.8%로 가장 낮았음. 이동평균모형은 14.9%, 기하평균모형은 13.2%로 모두 2배 이상 높은 오차율을 보였음.
-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던 2020~2021년의 오차율을 비교할 때, 추세분석모형은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이동평균모형과 기하평균모형은 오차율이 20%이상으로 부정확한 추계치를 보였음.

〈표 116〉 보훈위탁병원 응급입원진료 연인원 추계치 비교

연도	연인원	추세분석모형		이동평균모형		기하평균모형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2013	52,789	51,661	2.1%	41,820	20.8%	47,107	10.8%
2014	50,338	52,715	4.7%	40,528	19.5%	42,735	15.1%
2015	52,602	54,076	2.8%	55,850	6.2%	51,217	2.6%
2016	53,083	55,745	5.0%	52,239	1.6%	51,452	3.1%
2017	58,755	57,721	1.8%	56,497	3.8%	55,373	5.8%
2018	68,043	60,004	11.8%	53,279	21.7%	56,535	16.9%
2019	69,704	62,594	10.2%	64,366	7.7%	61,971	11.1%
2020	61,949	65,492	5.7%	78,337	26.5%	79,072	27.6%
2021	63,737	68,697	7.8%	80,785	26.7%	80,252	25.9%
평균절대오차율(2012-2021)			5.8%		14.9%		13.2%
평균절대오차율(2012-2019)			5.5%		11.6%		9.3%

□ 보훈위탁병원 응급 입원진료단가 추계

- 2013~2021년 보훈위탁병원 응급 입원진료단가 추계치의 오차율을 비교한 결과 추세분석 모형의 평균절대오차율은 3.3%로 예측정확도가 가장 높았음.

〈표 117〉 보훈위탁병원 응급입원진료 단가 추계치 비교

연도	진료단가 (원)	추세분석모형		이동평균모형		기하평균모형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2013	140,294	134,732	4.0%	143,123	2.0%	148,962	6.2%
2014	142,080	137,922	2.9%	138,327	2.6%	148,117	4.2%
2015	141,154	140,735	0.3%	147,663	4.6%	154,674	9.6%
2016	144,924	143,252	1.2%	153,367	5.8%	148,982	2.8%
2017	147,970	145,529	1.6%	149,170	0.8%	150,041	1.4%
2018	135,767	147,608	8.7%	148,011	9.0%	153,451	13.0%
2019	140,853	149,520	6.2%	151,897	7.8%	151,842	7.8%
2020	152,063	151,290	0.5%	132,176	13.1%	132,797	12.7%
2021	159,650	152,939	4.2%	138,139	13.5%	140,571	12.0%
평균절대오차율(2012-2021)		3.3%		6.6%		7.7%	
평균절대오차율(2012-2019)		3.6%		4.7%		6.4%	

□ 보훈위탁병원 응급 입원진료비 추계(세부모형)

- 세부모형의 총입원진료비 평균절대오차율을 비교한 결과, 추세분석모형이 3.8%, 이동평균 모형이 10.4%, 기하평균모형이 6.8%로 나타나, 예측정확도는 추세분석모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118〉 보훈위탁병원 세부모형 응급입원진료비 총액 추계치 비교

연도	총진료비 (백만원)	추세분석모형		이동평균모형		기하평균모형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2013	7,406	6,960	6.0%	5,985	19.2%	7,017	5.3%
2014	7,152	7,271	1.7%	5,606	21.6%	6,330	11.5%
2015	7,425	7,610	2.5%	8,247	11.1%	7,922	6.7%
2016	7,693	7,986	3.8%	8,012	4.1%	7,665	0.4%
2017	8,694	8,400	3.4%	8,428	3.1%	8,308	4.4%
2018	9,238	8,857	4.1%	7,886	14.6%	8,675	6.1%
2019	9,818	9,359	4.7%	9,777	0.4%	9,410	4.2%
2020	9,420	9,908	5.2%	10,354	9.9%	10,500	11.5%
2021	10,176	10,506	3.2%	11,160	9.7%	11,281	10.9%
평균절대오차율(2012-2021)		3.8%		10.4%		6.8%	
평균절대오차율(2012-2019)		3.7%		10.6%		5.5%	

□ 보훈위탁병원 응급입원진료비 추계(총액모형)

- 보훈위탁병원 응급 입원진료비 총액을 기반으로 추세분석, 이동평균, 기하평균(5년 평균 증감을 반영) 모형에 근거하여 실제치와 추계치를 비교한 결과, 추세분석모형의 예측정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평균절대오차율이 추세분석모형에서는 3.6%로 가장 낮았고, 이동평균모형은 10.0%, 기하평균모형은 6.7%로 나타나 약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임.

〈표 119〉 보훈위탁병원 총액모형 응급입원진료비 총액 추계치 비교

연도	총진료비 (백만원)	추세분석모형		이동평균모형		기하평균모형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2013	7,406	6,969	5.9%	6,241	15.7%	7,022	5.2%
2014	7,152	7,340	2.6%	5,749	19.6%	6,331	11.5%
2015	7,425	7,721	4.0%	8,191	10.3%	7,918	6.6%
2016	7,693	8,112	5.4%	7,958	3.4%	7,661	0.4%
2017	8,694	8,512	2.1%	8,350	4.0%	8,296	4.6%
2018	9,238	8,922	3.4%	7,884	14.7%	8,677	6.1%
2019	9,818	9,342	4.9%	9,722	1.0%	9,422	4.0%
2020	9,420	9,771	3.7%	10,447	10.9%	10,498	11.4%
2021	10,176	10,210	0.3%	11,235	10.4%	11,283	10.9%
평균절대오차율(2012-2021)			3.6%	10.0%		6.7%	
평균절대오차율(2012-2019)			4.0%	9.8%		5.5%	

□ 보훈위탁병원 응급 입원진료비 추계모형별 오차율

- 세부모형과 총액모형의 각 추계모형을 비교한 결과 보훈병원 보훈위탁병원 응급 입원진료비를 추계하는 가장 정확한 모형은 평균절대오차율이 3.8%로 가장 낮았던 총액추계모형 중 추세분석으로 나타났음.

〈표 120〉 보훈위탁병원 응급입원진료비 세부추계모형 총액추계모형 오차율 비교

추계모형	세부추계모형	총액추계모형
추세분석모형	3.8%	3.6%
이동평균모형	10.4%	10.0%
기하평균모형	6.8%	6.7%

2) 응급통원

□ 보훈위탁병원 응급통원진료 연인원 추계

- 2013~2021년 보훈위탁병원 응급통원 진료연인원 추계치의 오차율을 비교한 결과 추세분석 모형의 예측정확도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이동평균모형, 기하평균모형 순으로 나타남.
- 평균절대오차율은 추세분석모형이 5.5%, 이동평균모형이 7.5%, 기하평균모형이 13.0%로 나타났음. 모든 모형에서 2021년의 오차율이 모두 10%이상으로 다른 시기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났음.

〈표 121〉 보훈위탁병원 응급통원진료 연인원 추계치 비교

연도	연인원	추세분석모형		이동평균모형		기하평균모형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2013	22,395	22,532	0.6%	21,931	2.1%	29,752	32.9%
2014	20,791	23,518	13.1%	19,498	6.6%	21,607	3.9%
2015	24,338	24,389	0.2%	24,049	1.2%	25,211	3.6%
2016	26,826	25,168	6.2%	22,098	21.4%	21,251	20.8%
2017	25,479	25,872	1.5%	28,052	9.2%	27,657	8.5%
2018	27,326	26,515	3.0%	29,780	8.2%	32,048	17.3%
2019	28,554	27,106	5.1%	28,604	0.2%	27,188	4.8%
2020	30,460	27,654	9.2%	29,318	3.9%	31,344	2.9%
2021	25,368	28,164	11.0%	29,706	14.6%	30,943	22.0%
평균절대오차율(2012-2021)			5.5%	7.5%		13.0%	
평균절대오차율(2012-2019)			4.2%	7.0%		13.1%	

□ 보훈위탁병원 응급외래진료 단가 추계

- 보훈위탁병원 응급 외래진료단가도 마찬가지로 추세분석모형에서 예측정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평균절대오차율의 경우 추세분석모형은 6.6%로 나타났고, 이동평균모형은 9.7%, 기하평균은 13.2%로 나타났음.

〈표 122〉 보훈위탁병원 응급통원진료 단가 추계치 비교

연도	입원진료단가(원)	추세분석모형		이동평균모형		기하평균모형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2013	35,454	37,141	4.8%	32,932	7.1%	28,752	18.9%
2014	40,883	38,112	6.8%	34,593	15.4%	32,811	19.7%
2015	45,156	39,331	12.9%	40,142	11.1%	37,540	16.9%
2016	41,340	40,800	1.3%	45,736	10.6%	49,020	18.6%
2017	45,645	42,516	6.9%	52,987	16.1%	52,378	14.8%
2018	48,049	44,481	7.4%	45,264	5.8%	46,012	4.2%
2019	48,575	46,695	3.9%	48,820	0.5%	51,772	6.6%
2020	44,539	49,158	10.4%	49,978	12.2%	52,070	16.9%
2021	49,163	51,869	5.5%	53,398	8.6%	50,339	2.4%
평균절대오차율(2012-2021)		6.6%		9.7%		13.2%	
평균절대오차율(2012-2019)		6.3%		9.5%		14.2%	

□ 보훈위탁병원 응급외래진료비 추계(세부모형)

- 세부모형의 보훈위탁병원 응급진료대상자 통원진료비 총액추계치를 실제치와 비교한 결과 추세분석모형의 평균절대오차율이 8.1%로 가장 낮았음. 이동평균모형은 13.0%, 기하평균모형은 14.2%로 나타났음.

〈표 123〉 보훈위탁병원 세부추계모형 응급통원진료비 총액 추계치 비교

연도	총진료비 (백만원)	추세분석모형		이동평균모형		기하평균모형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2013	794	837	5.4%	722	9.0%	855	7.7%
2014	850	896	5.5%	674	20.6%	709	16.6%
2015	1,099	959	12.7%	965	12.2%	946	13.9%
2016	1,109	1,027	7.4%	1,011	8.9%	1,042	6.1%
2017	1,163	1,100	5.4%	1,486	27.8%	1,449	24.6%
2018	1,313	1,179	10.2%	1,348	2.7%	1,475	12.3%
2019	1,387	1,266	8.7%	1,396	0.7%	1,408	1.5%
2020	1,357	1,359	0.2%	1,465	8.0%	1,632	20.3%
2021	1,247	1,461	17.1%	1,586	27.2%	1,558	24.9%
평균절대오차율(2012-2021)		8.1%		13.0%		14.2%	
평균절대오차율(2012-2019)		7.9%		11.7%		11.8%	

□ 보훈위탁병원 응급외래진료비 추계(총액모형)

- 보훈위탁병원 응급 외래진료비 총액을 기준으로 추계한 모형의 예측정확도를 비교한 결과, 총액모형에서도 추세분석모형의 예측정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평균절대오차율의 경우 추세분석모형은 2.6%로 가장 낮았고, 이동평균모형이 5.8%로 나타났음. 반면, 기하평균모형의 평균절대오차율은 7.7%로 가장 높았음.

〈표 124〉 보훈위탁병원 응급 총액모형 외래진료비 총액 추계치 비교

연도	총진료비 (백만원)	추세분석모형		이동평균모형		기하평균모형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2013	794	845	6.4%	728	8.4%	855	7.6%
2014	850	923	8.6%	672	20.9%	708	16.6%
2015	1,099	999	9.1%	946	13.9%	947	13.8%
2016	1,109	1,072	3.3%	995	10.3%	1,042	6.1%
2017	1,163	1,143	1.7%	1,414	21.6%	1,448	24.5%
2018	1,313	1,213	7.6%	1,319	0.5%	1,474	12.3%
2019	1,387	1,280	7.7%	1,372	1.1%	1,407	1.5%
2020	1,357	1,345	0.9%	1,456	7.3%	1,632	20.3%
2021	1,247	1,407	12.9%	1,572	26.1%	1,558	25.0%
평균절대오차율(2012-2021)			6.5%		12.2%		14.2%
평균절대오차율(2012-2019)			6.4%		10.9%		11.8%

□ 보훈위탁병원 응급외래진료비 추계모형별 오차율

- 보훈위탁병원 응급의 외래진료비를 가장 정확하게 추계하는 모형은 진료비총액을 기준으로 추계하는 모형 중 추세분석모형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나타났음.

〈표 125〉 보훈위탁병원 응급외래진료비 세부추계모형 총액추계모형 오차율 비교

추계모형	세부추계모형	총액추계모형
추세분석모형	8.1%	6.5%
이동평균모형	13.0%	12.2%
기하평균모형	14.2%	14.2%

사. 보훈위탁병원 - 일반감면(60%)

- 보훈위탁병원 감면진료의 경우 참전감면과 일반감면대상자의 진료실적이 분리된 시점이 2012년부터임. 추세분석의 예측치는 2012~2021년 자료를 기반으로 추정하였음.
- 보훈의료지원대상자의 진료실적자료에 비해 시계열자료가 짧은 한계가 있어 평균절대오차율을 근거로 예측정확도를 일반화하는 데 주의가 필요함.
- 특히, 4개년도(2018~2021)의 예측치와 실제치를 비교하여 평균절대오차율을 산출하였는데,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진료실적에 영향이 있었기에 외부효과가 크게 나타났음.

1) 입원

- 보훈위탁병원 일반감면(60%) 입원 진료연인원 추계
 - 보훈위탁병원의 일반감면(60%) 입원 진료연인원 추계는 추세분석모형에 기반하였을 때 평균절대오차율이 13.1%로 가장 낮았음. 이동평균모형은 24.7%, 기하평균모형은 30.6%로 모두 2배 이상 높은 오차율을 보였음.
 - 코로나19로 인한 진료실적의 영향을 배제하여 평균오차율을 추계한 결과에서는 이동평균 모형의 평균절대오차율이 6.2%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표 126〉 보훈위탁병원 일반감면(60%) 입원진료 연인원 추계치 비교

연도	연인원	추세분석모형		이동평균모형		기하평균모형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2018	153,617	178,406	16.1%	158,314	3.1%	199,653	30.0%
2019	233,486	186,650	20.1%	211,887	9.3%	212,632	8.9%
2020	193,105	194,237	0.6%	155,584	19.4%	162,024	16.1%
2021	173,802	201,285	15.8%	290,056	66.9%	290,797	67.3%
평균절대오차율(2018-2021)			13.1%		24.7%		30.6%
평균절대오차율(2018-2019)			18.1%		6.2%		19.4%

□ 보훈위탁병원 일반감면(60%) 입원진료단가 추계

- 2013~2021년 보훈위탁병원 일반감면(60%) 입원진료단가 추계치의 오차율을 비교한 결과 추세분석모형의 평균절대오차율은 1.2%로 예측정확도가 가장 높았음.

〈표 127〉 보훈위탁병원 일반감면(60%) 입원진료단가 추계치 비교

연도	진료단가 (원)	추세분석모형		이동평균모형		기하평균모형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2018	20,629	20,069	2.7%	18,112	12.2%	16,642	19.3%
2019	21,196	21,499	1.4%	20,560	3.0%	22,667	6.9%
2020	23,211	23,138	0.3%	23,406	0.8%	24,961	7.5%
2021	24,887	24,986	0.4%	23,961	3.7%	23,235	6.6%
평균절대오차율(2018-2021)			1.2%	4.9%		10.1%	
평균절대오차율(2018-2019)			2.1%	7.6%		13.1%	

□ 보훈위탁병원 일반감면(60%) 입원진료비 추계(세부모형)

- 세부모형의 일반감면 입원진료비 총액추계치의 평균절대오차율을 비교한 결과, 추세분석모형이 10.7%, 이동평균모형이 25.2%, 기하평균모형이 18.4%로 나타나, 예측정확도는 추세분석모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하지만, 만일 2020년과 2021년의 데이터를 제외하고 분석한다면, 앞서 결과와는 다르게, 기하평균모형의 평균절대오차율이 3.7%로 가장 낮아 예측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128〉 보훈위탁병원 세부모형 일반감면(60%) 입원진료비 총액 추계치 비교

연도	총진료비 (백만원)	추세분석모형		이동평균모형		기하평균모형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2018	3,169	3,195	0.8%	2,867	9.5%	3,323	4.8%
2019	4,949	3,641	26.4%	4,356	12.0%	4,820	2.6%
2020	4,482	4,128	7.9%	3,642	18.8%	4,044	9.8%
2021	4,325	4,664	7.8%	6,950	60.7%	6,757	56.2%
평균절대오차율(2018-2021)			10.7%	25.2%		18.4%	
평균절대오차율(2018-2019)			13.6%	10.7%		3.7%	

□ 보훈위탁병원 일반감면(60%) 입원진료비 추계(총액모형)

- 보훈위탁병원 일반감면(60%) 입원진료비 총액을 기반으로 추세분석, 이동평균, 기하평균(5년 평균 증감을 반영) 모형에 근거하여 실제치와 추계치를 비교한 결과, 추세분석모형의 예측 정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평균절대오차율이 추세분석모형에서는 11.3%로 가장 낮았고, 이동평균모형은 23.7%, 기하평균모형은 22.4%로 나타나 약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임.
- 반면, 세부모형과 유사하게, 총액모형에서도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가 유행했던 시기를 제외하고 평균절대오차율을 산출해보면, 반대로 기하평균모형에서 8.6%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오히려 추세분석모형에서는 18.1%로 가장 높은 오차율이 나타남.

〈표 129〉 보훈위탁병원 총액모형 입원진료비 총액 추계치 비교

연도	총진료비 (백만원)	추세분석모형		이동평균모형		기하평균모형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2018	3,169	3,671	15.8%	2,842	10.3%	2,662	16.0%
2019	4,949	3,939	20.4%	4,265	13.8%	5,006	1.1%
2020	4,482	4,192	6.5%	3,628	19.1%	3,961	11.6%
2021	4,325	4,432	2.5%	6,559	51.7%	6,950	60.7%
평균절대오차율(2018-2021)			11.3%		23.7%		22.4%
평균절대오차율(2018-2019)			18.1%		12.1%		8.6%

□ 보훈위탁병원 일반감면(60%) 입원진료비 추계모형별 오차율

- 세부모형과 총액모형의 각 추계모형을 비교한 결과 보훈병원 보훈위탁병원 일반감면(60%) 입원진료비를 추계하는 가장 정확한 모형은 평균절대오차율이 3.8%로 가장 낮았던 총액추계 모형 중 추세분석으로 나타났음.

〈표 130〉 보훈위탁병원 일반감면(60%) 입원진료비 세부추계모형 총액추계모형 오차율 비교

추계모형	세부추계모형	총액추계모형
추세분석모형	10.7%	11.8%
이동평균모형	25.2%	23.7%
기하평균모형	18.4%	22.4%

2) 외래

□ 보훈위탁병원 일반감면(60%) 외래 진료연인원 추계

- 보훈위탁병원의 일반감면(60%) 외래 진료연인원 추계는 추세분석모형에 기반하였을 때 평균절대오차율이 12.3%로 가장 낮았음. 이동평균모형은 17.4%, 기하평균모형은 25.3%로 나타남.
- 코로나19로 인한 진료실적의 영향을 배제하여 평균오차율을 추계한 결과에서는 이동평균 모형의 평균절대오차율이 5.6%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이동평균모형과 기하평균모형은 최근 진료실적을 기반으로 추계하는 모형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이 나타난 2020년과 2021년의 추계에서는 예측오차가 크게 나타남.

〈표 131〉 보훈위탁병원 일반감면(60%) 외래진료 연인원 추계치 비교

연도	연인원	추세분석모형		이동평균모형		기하평균모형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2018	206,335	241,924	17.2%	189,919	8.6%	227,412	10.2%
2019	318,101	252,397	20.7%	310,364	2.5%	328,563	3.3%
2020	259,093	262,012	1.1%	217,854	18.9%	207,575	19.9%
2021	245,658	270,922	10.3%	406,898	39.6%	412,679	68.0%
평균절대오차율(2018-2021)		12.3%		17.4%		25.3%	
평균절대오차율(2018-2019)		19.0%		5.6%		6.8%	

□ 보훈위탁병원 일반감면(60%) 외래진료단가 추계

- 2013~2021년 보훈위탁병원 일반감면(60%) 외래진료단가 추계치의 오차율을 비교한 결과 추세분석모형의 평균절대오차율은 6.2%로 예측정확도가 가장 높았음.

〈표 132〉 보훈위탁병원 일반감면(60%) 입원진료단가 추계치 비교

연도	진료단가 (원)	추세분석모형		이동평균모형		기하평균모형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2018	19,468	17,933	7.4%	19,064	2.1%	20,950	7.6%
2019	18,412	18,262	0.7%	16,922	8.8%	15,362	16.6%
2020	20,611	18,590	8.7%	21,121	2.4%	21,382	3.7%
2021	16,988	18,919	7.8%	18,866	10.0%	20,962	23.4%
평균절대오차율(2018-2021)		6.2%		5.8%		12.8%	
평균절대오차율(2018-2019)		4.1%		5.5%		12.1%	

□ 보훈위탁병원 일반감면(60%) 외래진료비 추계(세부모형)

- 세부모형의 일반감면 외래진료비 총액추계치의 평균절대오차율을 비교한 결과, 추세분석모형이 15.3%, 이동평균모형이 21.0%, 기하평균모형이 39.2%로 나타나, 예측정확도는 추세분석모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133〉 보훈위탁병원 세부모형 일반감면(60%) 외래진료비 총액 추계치 비교

연도	총진료비 (백만원)	추세분석모형		이동평균모형		기하평균모형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2018	4,017	3,899	2.9%	3,621	10.9%	4,764	18.6%
2019	5,857	4,207	28.2%	5,252	11.5%	5,047	13.8%
2020	5,340	4,497	15.8%	4,601	16.1%	4,438	16.9%
2021	4,173	4,775	14.4%	7,677	45.6%	8,651	107.3%
평균절대오차율(2018-2021)			15.3%		21.0%		39.2%
평균절대오차율(2018-2019)			15.6%		11.2%		16.2%

□ 보훈위탁병원 일반감면(60%) 외래진료비 추계(총액모형)

- 보훈위탁병원 일반감면(60%) 외래진료비 총액을 기반으로 추세분석, 이동평균, 기하평균(5년 평균 증감을 반영) 모형에 근거하여 실제치와 추계치를 비교한 결과, 추세분석모형의 예측정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평균절대오차율이 추세분석모형에서는 14.9%로 가장 낮았고, 이동평균모형은 12.4%, 기하평균모형은 6.5%로 나타남.
-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가 유행했던 시기를 제외하고 평균절대오차율을 산출해보면, 반대로 기하평균모형에서 6.5%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오히려 추세분석모형에서는 15.0%로 가장 높은 오차율이 나타남.

〈표 134〉 보훈위탁병원 총액모형 일반감면(60%) 외래진료비 총액 추계치 비교

연도	총진료비 (백만원)	추세분석모형		이동평균모형		기하평균모형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2018	4,017	4,322	7.6%	3,604	11.5%	3,519	12.4%
2019	5,857	4,549	22.3%	5,171	13.3%	5,820	0.6%
2020	5,340	4,758	10.9%	4,554	17.3%	4,923	7.8%
2021	4,173	4,954	18.7%	7,576	44.9%	7,936	90.2%
평균절대오차율(2018-2021)			14.9%		21.7%		27.8%
평균절대오차율(2018-2019)			15.0%		12.4%		6.5%

□ 보훈위탁병원 일반감면(60%) 외래진료비 추계모형별 오차율

- 세부모형과 총액모형의 각 추계모형을 비교한 결과 보훈병원 보훈위탁병원 일반감면(60%) 외래진료비를 추계하는 가장 정확한 모형은 평균절대오차율이 14.9%로 가장 낮았던 총액 추세분석으로 나타났음.

〈표 135〉 보훈위탁병원 일반감면(60%) 외래진료비 세부추계모형 총액추계모형 오차율 비교

추계모형	세부추계모형	총액추계모형
추세분석모형	15.3%	14.9%
이동평균모형	21.0%	21.7%
기하평균모형	39.2%	2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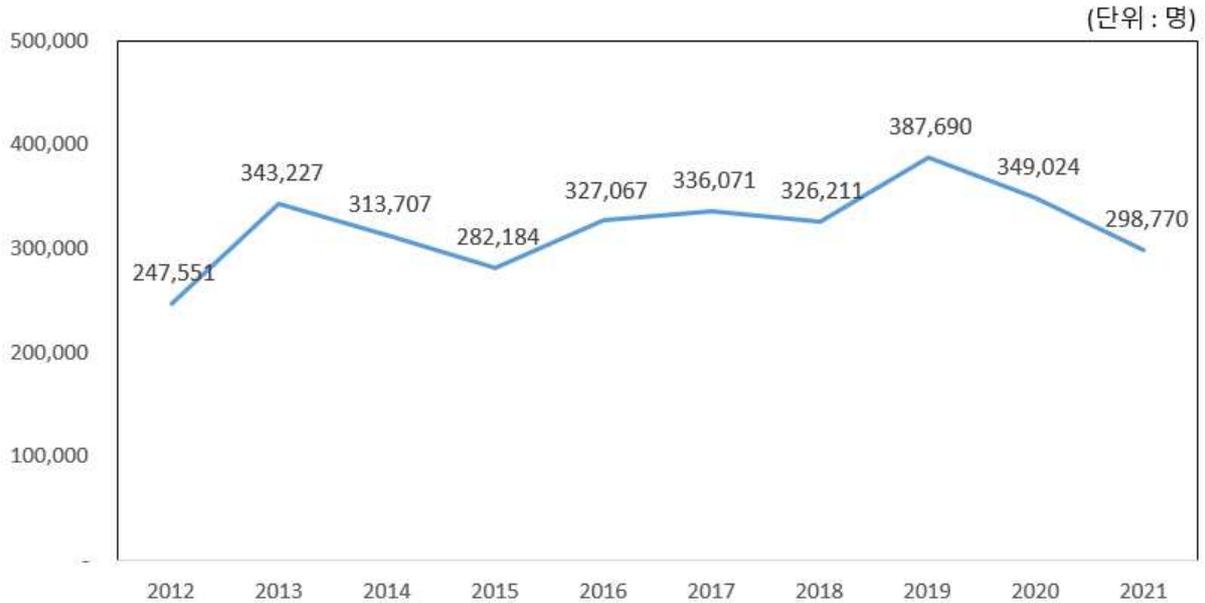
아. 보훈위탁병원 - 참전감면(90%)

1) 입원

□ 참전감면 진료연인원 추계

- 보훈위탁병원의 참전감면 입원진료 연인원의 추이는 일정한 감소 혹은 증가추세가 보이지 않음. 따라서, 일반적 선형회귀모형으로 추정하는 것은 추정의 부정확성이 높아지므로, 다른 추세분석모형을 이용하여 추계하였음.
- 다항추세분석모형을 통해 입원진료 연인원을 추계한 결과 평균절대오차율이 7.3%로 나타났음.

보훈위탁병원 참전감면 입원진료연인원 추이



[그림 18] 보훈위탁병원 참전감면 입원진료 연인원 추이

<표 136> 참전감면 입원진료 연인원 추계치 비교

연도	실제 진료연인원	회귀분석	
		추계치	오차율
2012	247,551	270,049	9.1%
2013	343,227	291,843	15.0%
2014	313,707	309,723	1.3%
2015	282,184	323,689	14.7%
2016	327,067	333,740	2.0%
2017	336,071	339,877	1.1%
2018	326,211	342,099	4.9%
2019	387,690	340,407	12.2%
2020	349,024	334,801	4.1%
2021	298,770	325,280	8.9%
평균절대오차율(2015-2021)			7.3%
평균절대오차율(2015-2019)			7.5%

□ 참전감면 입원진료단가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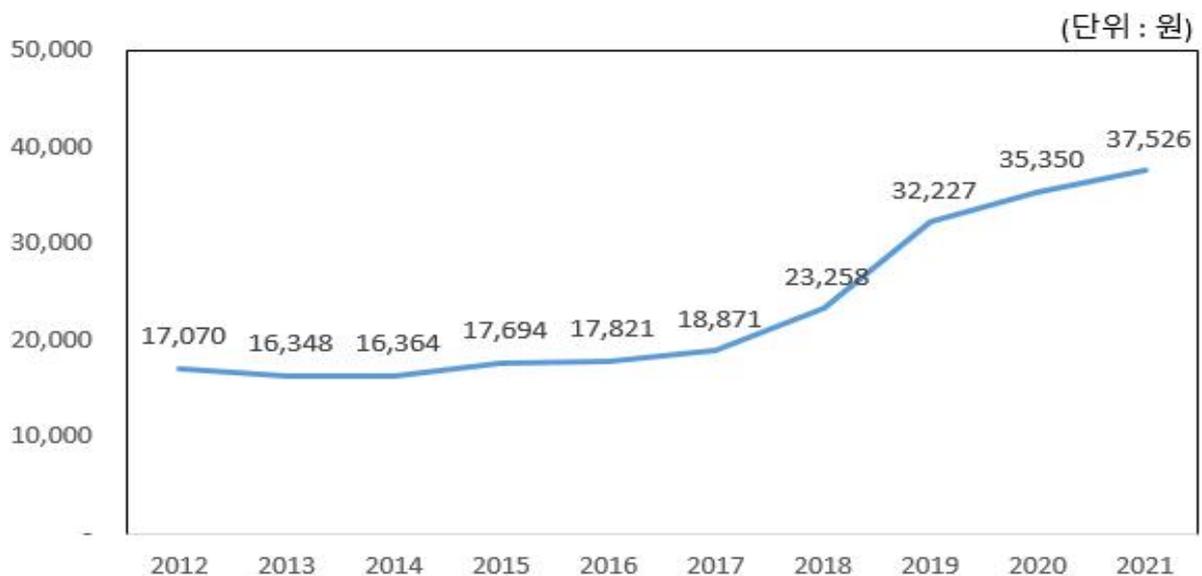
- 보훈위탁병원 참전감면 진료단가에 대한 추계식은 아래와 같으며, 설명력은 87.3%로 나타났음.
- 회귀식에 근거하여 참전감면 입원진료단가를 추계한 결과, 평균절대오차율은 12.0%로 나타났음.
- 현재까지의 참전감면 입원진료단가의 추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였고, 추세분석시에는 진료비단가의 증가효과가 2021년까지 모두 나타난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하는 보수적인 추계기법을 활용할 수 있음.
- 더욱 정확한 추계를 위해서는 향후 진료비단가 통계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분석을 재수행하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Y = 1,348(T-2014) + 7,987D_1 + 12,642$$

T = 연도(2015-2021), $D_1 = 1$ if $2018 \leq T \leq 2021$, $D_1 = 0$
 $F(p) = 23.97(.001)$, $R^2 = .873$

[수식 9] 보훈위탁병원 참전감면 입원진료단가 회귀식

보훈위탁병원 참전감면 입원진료단가 추이



[그림 19] 보훈위탁병원 입원진료단가 추이

〈표 137〉 참전감면 입원진료단가 추계치 비교

연도	실제 진료단가(원)	회귀분석	
		추계치	오차율
2012	17,070	13,990	18.0%
2013	16,348	15,339	6.2%
2014	16,364	16,687	2.0%
2015	17,694	18,036	1.9%
2016	17,821	19,384	8.8%
2017	18,871	20,733	9.9%
2018	23,258	30,068	29.3%
2019	32,227	31,416	2.5%
2020	35,350	32,764	7.3%
2021	37,526	34,113	9.1%
평균절대오차율(2015-2021)			9.5%
평균절대오차율(2015-2019)			9.8%

□ 참전감면 입원진료비 추계비교(세부모형 VS 총액모형)

- 세부모형은 앞서 산출한 입원 진료연인원 추계치와 진료단가의 추계치를 곱하여 산출한 모형임.
- 총액모형의 경우에는 입원진료비총액을 기준으로 기존 시계열자료의 기울기 변화를 파악하여 연도(2018~2019)에 대한 가변수를 추가한 회귀모형을 기반으로 분석한 모형이며 회귀식은 아래와 같음. 회귀식의 설명력은 79.9%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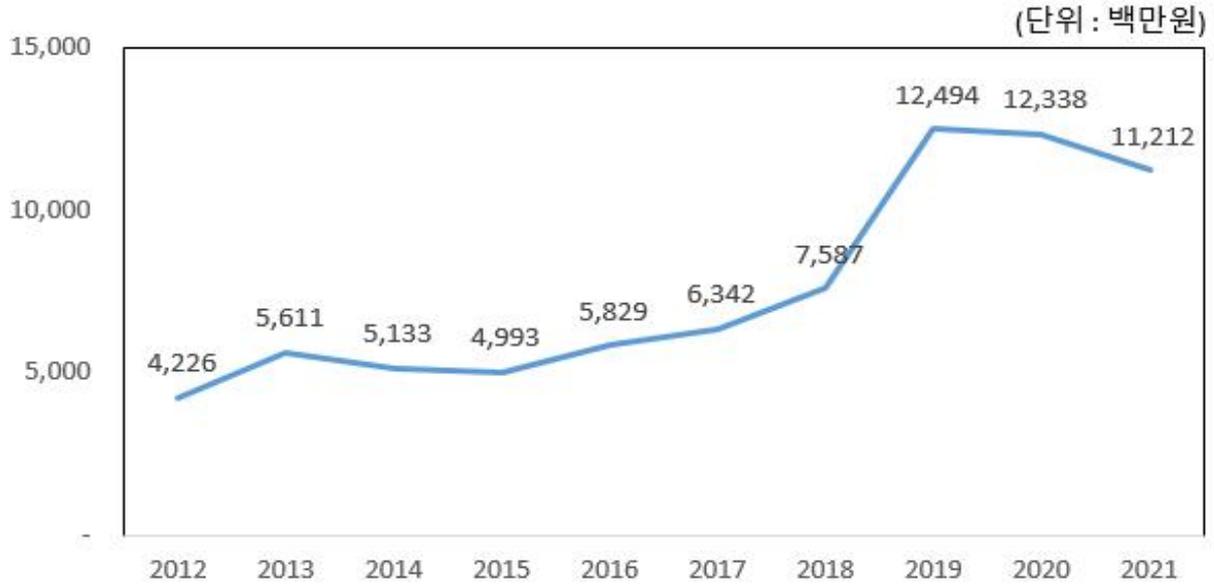
$$Y = 899(T-2014) + 831D_1 + 2,463$$

$$T = \text{연도}(2015-2021), D_1 = 1 \text{ if } 2018 \leq T \leq 2019, D_1 = 0$$

$$F(p) = 13.93(.004), R^2 = .799$$

[수식 10] 보훈위탁병원 참전감면 입원진료비 총액 회귀식

보훈위탁병원 참전감면 총 입원진료비 추이



[그림 20] 보훈위탁병원 참전감면 총 입원진료비 추이

- 가변수를 활용한 회귀분석의 세부모형과 총액모형을 비교한 결과, 평균절대오차율은 진료비단가와 진료연인원을 각각 추제한뒤 곱하여 총액을 산출하는 세부모형에서 가장 낮았음. 따라서 예측정확도가 가장 높은 모형은 세부모형에 의한 의료비 추계방법으로 나타남.

〈표 138〉 참전감면 총액모형 입원진료비 총액 추계치 비교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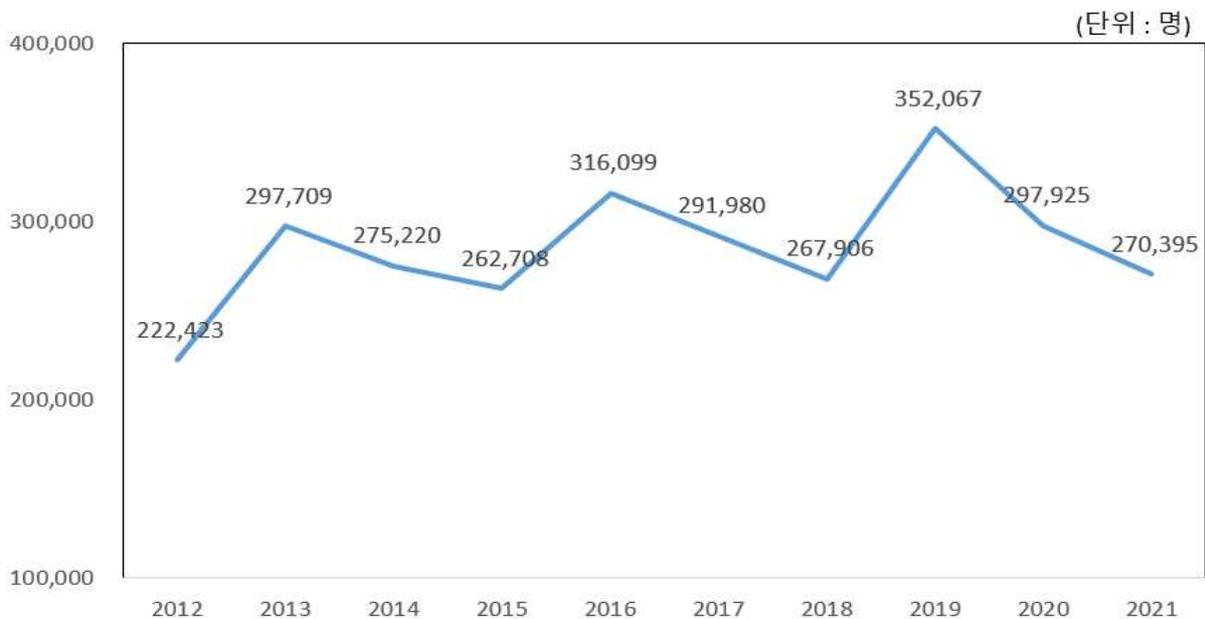
연도	실제 입원진료비총액	세부모형		총액모형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2012	4,226	3,778	10.6%	3,363	20.4%
2013	5,611	4,476	20.2%	4,262	24.0%
2014	5,133	5,168	0.7%	5,162	0.5%
2015	4,993	5,838	16.9%	6,061	21.4%
2016	5,829	6,469	11.0%	6,961	19.4%
2017	6,342	7,046	11.1%	7,860	23.9%
2018	7,587	10,286	35.6%	9,591	26.4%
2019	12,494	10,694	14.4%	10,490	16.0%
2020	12,338	10,970	11.1%	10,558	14.4%
2021	11,212	11,096	1.0%	11,458	2.2%
평균절대오차율(2015-2021)			13.3%		16.9%
평균절대오차율(2015-2019)			15.1%		19.0%

2) 외래

□ 참전감면 외래진료 연인원 추계

- 보훈위탁병원의 참전감면 외래진료 연인원의 추이를 살펴보면, 뚜렷한 증가 혹은 감소 추세가 보이지 않고 연도별 변화가 크게 나타났음.
- 따라서 정책 확대에 따른 효과를 추정하는 가변수 회귀모형을 적용하기에는 추계의 부정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추세분석모형 중 가장 설명력이 높았던 다항추세모형을 기반으로 추계치를 구하여 평균절대오차율을 산출하였음.
- 그 결과 연인원의 평균절대오차율은 7.5%로 나타나 비교적 정확한 예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보훈위탁병원 참전감면 외래진료연인원 추이



[그림 21] 보훈위탁병원 참전감면 외래진료 연인원 추이

〈표 139〉 참전감면 외래진료 연인원 추계치 비교

연도	실제 진료연인원	회귀분석	
		추계치	오차율
2012	222,423	240,504	8.1%
2013	297,709	260,657	12.4%
2014	275,220	276,997	0.6%
2015	262,708	289,525	10.2%
2016	316,099	298,241	5.6%
2017	291,980	303,143	3.8%
2018	267,906	304,233	13.6%
2019	352,067	301,511	14.4%
2020	297,925	294,976	1.0%
2021	270,395	284,628	5.3%
평균절대오차율(2015-2021)			7.5%
평균절대오차율(2015-2019)			8.6%

□ 참전감면 외래진료단가 추계

- 보훈위탁병원 참전감면 진료단가에 대한 추계식은 아래와 같으며, 설명력은 99.5%로 나타났음.
- 회귀식에 근거하여 참전감면 외래진료단가를 추계한 결과, 평균절대오차율은 1.7%로 나타나 예측정확도가 매우 높은 편임.
- 참전감면 보훈위탁병원 외래진료단가의 추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였고, 향후 진료비예측을 위한 추세분석시에는 진료단가의 증가효과가 2021년까지 모두 나타난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하는 보수적인 추계기법을 활용할 수 있음.
- 외래진료단가의 추이를 보면 2018년 감면을 확대가 나타난 시점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이후에는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였음. 2018년 단년도에 대한 가변수 회귀분석을 이용한 결과와 2018~2021년의 증가추세를 모두 가정한 가변수 회귀분석모형의 설명력을 비교한 결과 2018~2021년의 가변수 회귀분석의 설명력이 더 높아 해당기간에 대한 가변수를 추가하였음.
- 더욱 정확한 추계를 위해서는 향후 진료단가 통계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분석을 재수행하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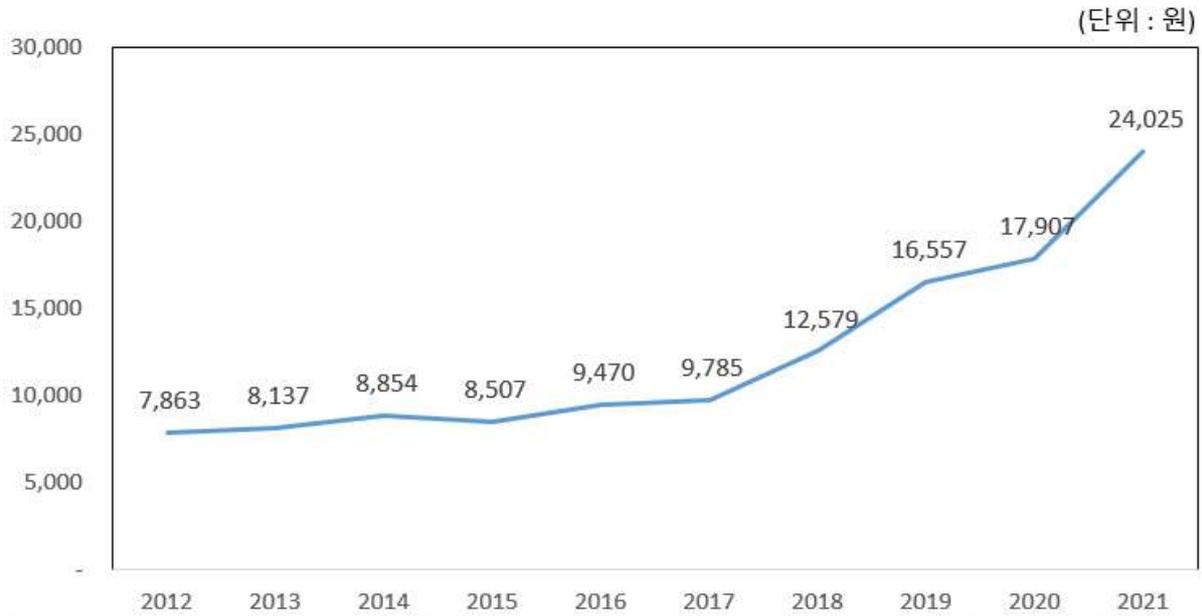
$$Y = 1,088(T-2014) + 3,559D_1 + 4,962$$

T = 연도(2015-2021), $D_1 = 1$ if $2018 \leq T \leq 2021$, $D_1 = 0$

F(p) = 17.67(.018), $R^2 = .835$

[수식 11] 보훈위탁병원 참전감면 외래진료단가 회귀식

보훈위탁병원 참전감면 외래진료단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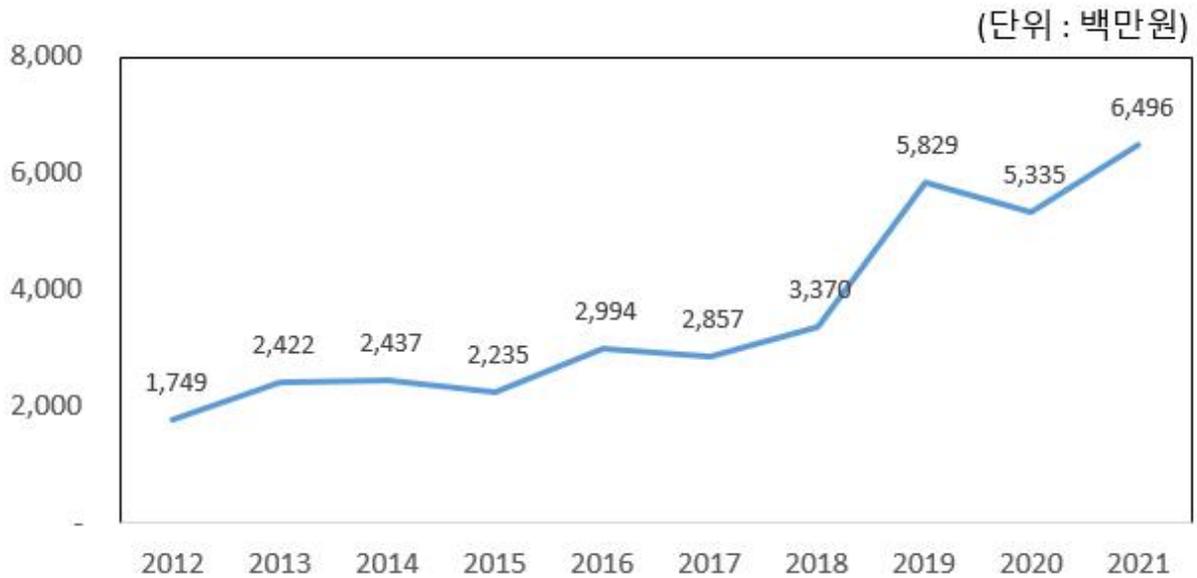


[그림 22] 보훈위탁병원 참전감면 외래진료단가 추이

〈표 140〉 참전감면 외래진료단가 추계치 비교

연도	실제 진료단가(원)	회귀분석	
		추계치	오차율
2012	7,863	6,050	23.1%
2013	8,137	7,138	12.3%
2014	8,854	8,225	7.1%
2015	8,507	9,313	9.5%
2016	9,470	10,401	9.8%
2017	9,785	11,489	17.4%
2018	12,579	16,135	28.3%
2019	16,557	17,223	4.0%
2020	17,907	18,311	2.3%
2021	24,025	19,399	19.3%
평균절대오차율(2015-2021)			13.3%
평균절대오차율(2015-2019)			13.9%

보훈위탁병원 참전감면 외래진료비 총액 추이



[그림 23] 보훈위탁병원 참전감면 외래진료비 총액 추이

- 참전감면 외래진료비 추계비교(세부모형 VS 총액모형)
 - 세부모형은 앞서 산출한 외래진료 연인원 추계치와 진료단가의 추계치를 곱하여 산출한 모형임.
 - 총액모형의 경우에는 외래진료비 총액을 기준으로 기존 시계열 자료의 기울기 변화를 파악하여 연도(2018~2019)에 대한 가변수를 추가한 회귀모형을 기반으로 분석한 모형이며 회귀식은 아래와 같음. 회귀식의 설명력은 83.0%로 나타났음.
 - 총액모형의 회귀식을 기반으로 추계한 추계치의 평균절대오차율은 18.3%로 나타났음.

$$Y = 503(T - 2014) + 24D_1 + 796$$

$$T = \text{연도}(2015-2021), D_1 = 1 \text{ if } 2018 \leq T \leq 2019, D_1 = 0$$

$$F(p) = 17.09(.002), R^2 = 0.830$$

[수식 12] 보훈위탁병원 참전감면 외래진료비 총액 회귀식

- 가변수를 활용한 회귀분석의 세부모형과 총액모형을 비교한 결과, 평균절대오차율은 세부 모형에 기반하여 진료단가와 진료연인원을 각각 추계한 뒤 곱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추계 모형으로 나타났음.

〈표 141〉 참전감면 총액모형 외래진료비 총액 추계치 비교

(단위: 백만원)

연도	실제 외래진료비총액	세부모형		총액모형	
		추계치	오차율	추계치	오차율
2012	1,749	1,455	16.8%	1,300	25.7%
2013	2,422	1,860	23.2%	1,804	25.5%
2014	2,437	2,278	6.5%	2,308	5.3%
2015	2,235	2,696	20.7%	2,812	25.8%
2016	2,994	3,102	3.6%	3,316	10.8%
2017	2,857	3,483	21.9%	3,820	33.7%
2018	3,370	4,909	45.7%	4,348	29.0%
2019	5,829	5,193	10.9%	4,851	16.8%
2020	5,335	5,401	1.2%	5,331	0.1%
2021	6,496	5,521	15.0%	5,835	10.2%
평균절대오차율(2015-2021)			16.5%		18.3%
평균절대오차율(2015-2019)			18.7%		21.6%

3. 보훈의료지원대상자 유형별 의료비 단기추계모형

- 보훈의료지원대상자 유형별 의료비 추계의 예측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단기추계모형을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총액추세분석
 - 보훈병원 - 국가유공자 입원, 외래
 - 보훈병원 - 고엽제등외자 입원
 - 보훈병원 - 감면진료(60%감면) 입원, 외래, 약제비
 - 보훈병원 - 감면진료(50%감면) 입원

- 보훈병원 - 감면진료(30%감면) 외래, 약제비
- 보훈위탁병원 - 국비진료 입원, 외래
- 보훈위탁병원 - 응급입원, 응급통원
- 보훈위탁병원 - 감면진료 유족(60%감면) 외래

□ 세부추세분석

- 보훈병원 - 고엽제등외자 외래
- 보훈병원 - 감면진료(50%감면) 외래, 약제비
- 보훈위탁병원 - 국비진료 약제비
- 보훈위탁병원 - 감면진료 유족(60%감면) 입원

□ 그 외

- 가변수회귀분석 - 보훈병원 참전유공자 입원, 외래, 약제비, 보훈위탁병원 참전 입원, 외래
- 기하평균모형 - 보훈병원 감면진료(30%감면) 입원

〈표 142〉 보훈의료지원대상자별 단기 예산추계모형

병원	의료대상자 유형		진료비 유형	예측모형
보훈병원	국비진료	국가유공자, 고엽제 환자	입원	총액추세분석
			외래	총액추세분석
		고엽제 등외자	입원	총액추세분석
			외래	세부추세분석
	감면진료	일반감면(60% 감면)	입원	총액추세분석
			외래	총액추세분석
			약제비	총액추세분석
		감면율 50%	입원	총액추세분석
	외래		세부추세분석	
		세부추세분석		
감면율 30%	입원	기하평균분석		
	외래	총액추세분석		
	약제비	총액추세분석		
참전유공자(90% 감면)	입원	가변수회귀분석(총액)		
	외래	가변수회귀분석(총액)		
	약제비	가변수회귀분석(세부)		
보훈 위탁병원	국비진료		입원	총액추세분석
			외래	총액추세분석
			약제비	세부추세분석
	응급진료		응급	총액추세분석
			통원	총액추세분석
	감면진료	유족(60% 감면)	입원	세부추세분석
외래			총액추세분석	
	참전(90% 감면)	입원	회귀분석(세부)	
		외래	회귀분석(세부)	

제3절 보훈의료지원대상자 의료비 증장기 추계모형과 전망

1. 보훈의료지원대상자 의료비 증장기 추계모형

- 보훈의료지원대상자의 증장기 의료비 추계모형에 대해서는 보훈의료지원대상자별로 진료비를 각각 추계하여 합산하는 모형보다는 건당 진료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국비와 감면진료대상자로 크게 두 가지 군으로 분리하여 진료비를 추계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비대상자의 연인원, 감면대상자의 연인원, 그리고 진료비는 기존의 시계열 자료(2007~2021)에서 추정하였음. 다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진료연인원 혹은 진료비 단가의 추세가 급격히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는 가변수를 이용하여 구간을 나누어 추정하였고, 코로나19의 영향은 2022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여 추계함.

- 보훈의료지원대상자 의료비 = 국비 의료비 + 감면진료 의료비
- 국비진료대상자 의료비 = 국비 연인원 × 국비 연인원 1인당 진료비
- 감면진료 의료비 = 감면진료 연인원 × 감면진료 연인원 1인당 진료비

2. 보훈의료지원대상자 연인원 장기추계 결과

- 국비 진료연인원 추계방법
 - 국비 진료연인원은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2020년, 2021년 연인원의 경우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 이는 코로나19의 유행이 의료이용량에 미친 외부효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연도에 대한 가변수를 설정한 회귀모형을 구성하였음.
 - 코로나19의 영향은 2022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하였고, 기울기가 달라지는 시점의 진료연인원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절편조정계수에 대한 변수를 추가로 구성하였음.

$$Y = 65,237(T-2009) - 71,939D_1(T-2009) - 935,217D_2 + 5,553,258$$

T = 연도(2010-2060), $D_1=1$ if $2020 \leq T \leq 2022$, $D_1=0$ 그 외 $D_2=1$ if $T \geq 2023$, $D_2=0$ 그 외

[수식 13] 국비진료 연인원 회귀식

□ 감면 진료연인원 추계식

- 감면진료도 마찬가지로 가변수를 활용한 회귀분석으로 향후 감면 진료연인원을 추계하였음.

$$Y = 119,253(T-2009) - 35,126D_1(T-2009) - 491,773D_2 + 1,439,984$$

T = 연도(2010-2060), $D_1=1$ if $2020 \leq T \leq 2022$, $D_1=0$ 그 외 $D_2=1$ if $T \geq 2023$, $D_2=0$ 그 외

[수식 14] 감면진료 연인원 회귀식

□ 보훈의료지원대상자 연인원 장기추계전망

- 보훈의료지원대상자의 연인원은 향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함. 2060년경 약 1,400만 명의 연인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국비진료와 감면진료 연인원 모두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나, 감면진료대상자의 증가 추세가 국비진료연인원보다 가파른 것으로 예상되어 연인원에서의 국비와 감면진료의 구성비의 격차가 점차 감소함.
- 2020년 기준 국비연인원이 69.4%, 감면연인원은 30.6%였는데, 2060년에는 그 격차가 점차 감소하여 국비연인원 53.1%, 감면연인원 46.9%로 구성비가 점차 유사해질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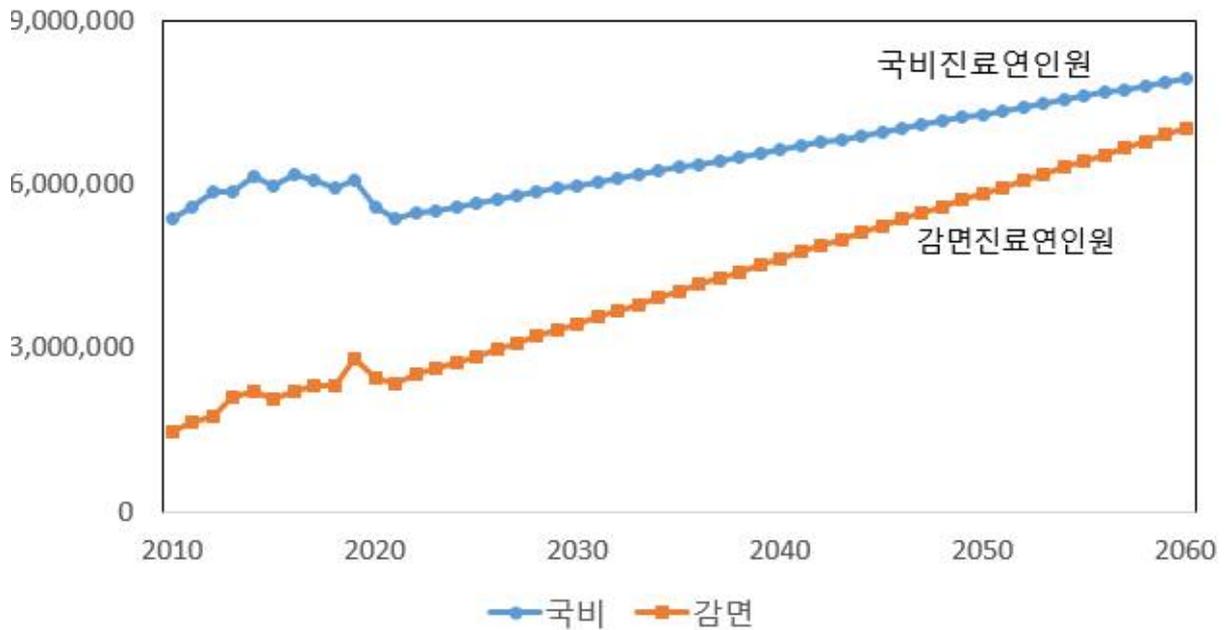
〈표 143〉 보훈의료지원대상자 연인원 장기추계(~2060년까지)

(단위 : 명, %)

	합계(A+B)	(%)	A. 국비	(%)	B. 감면	(%)
2010	6,838,560	100.0%	5,371,511	78.5%	1,467,049	21.5%
2011	7,233,533	100.0%	5,570,702	77.0%	1,662,831	23.0%
2012	7,633,696	100.0%	5,878,367	77.0%	1,755,329	23.0%
2013	7,965,764	100.0%	5,857,217	73.5%	2,108,547	26.5%
2014	8,360,188	100.0%	6,166,587	73.8%	2,193,601	26.2%
2015	8,060,381	100.0%	5,976,799	74.2%	2,083,582	25.8%
2016	8,394,221	100.0%	6,176,517	73.6%	2,217,704	26.4%
2017	8,401,997	100.0%	6,069,205	72.2%	2,332,792	27.8%
2018	8,277,856	100.0%	5,950,757	71.9%	2,327,099	28.1%
2019	8,894,817	100.0%	6,092,910	68.5%	2,801,907	31.5%
2020	8,065,953	100.0%	5,600,661	69.4%	2,465,292	30.6%
2021	7,719,719	100.0%	5,361,805	69.5%	2,357,914	30.5%
2022	7,999,763	100.0%	5,466,133	68.3%	2,533,630	31.7%
2023	8,149,127	100.0%	5,531,371	67.9%	2,617,756	32.1%
2024	8,333,618	100.0%	5,596,609	67.2%	2,737,009	32.8%
2025	8,518,109	100.0%	5,661,847	66.5%	2,856,262	33.5%
2026	8,702,600	100.0%	5,727,085	65.8%	2,975,515	34.2%
2027	8,887,091	100.0%	5,792,323	65.2%	3,094,769	34.8%
2028	9,071,582	100.0%	5,857,561	64.6%	3,214,022	35.4%
2029	9,256,073	100.0%	5,922,798	64.0%	3,333,275	36.0%
2030	9,440,564	100.0%	5,988,036	63.4%	3,452,528	36.6%
2031	9,625,056	100.0%	6,053,274	62.9%	3,571,781	37.1%
2032	9,809,547	100.0%	6,118,512	62.4%	3,691,035	37.6%
2033	9,994,038	100.0%	6,183,750	61.9%	3,810,288	38.1%
2034	10,178,529	100.0%	6,248,988	61.4%	3,929,541	38.6%
2035	10,363,020	100.0%	6,314,226	60.9%	4,048,794	39.1%
2036	10,547,511	100.0%	6,379,463	60.5%	4,168,047	39.5%
2037	10,732,002	100.0%	6,444,701	60.1%	4,287,301	39.9%
2038	10,916,493	100.0%	6,509,939	59.6%	4,406,554	40.4%
2039	11,100,984	100.0%	6,575,177	59.2%	4,525,807	40.8%
2040	11,285,475	100.0%	6,640,415	58.8%	4,645,060	41.2%
2041	11,469,966	100.0%	6,705,653	58.5%	4,764,313	41.5%
2042	11,654,457	100.0%	6,770,891	58.1%	4,883,567	41.9%
2043	11,838,948	100.0%	6,836,129	57.7%	5,002,820	42.3%
2044	12,023,439	100.0%	6,901,366	57.4%	5,122,073	42.6%
2045	12,207,931	100.0%	6,966,604	57.1%	5,241,326	42.9%

	합계(A+B)	(%)	A. 국비	(%)	B. 감면	(%)
2046	12,392,422	100.0%	7,031,842	56.7%	5,360,579	43.3%
2047	12,576,913	100.0%	7,097,080	56.4%	5,479,833	43.6%
2048	12,761,404	100.0%	7,162,318	56.1%	5,599,086	43.9%
2049	12,945,895	100.0%	7,227,556	55.8%	5,718,339	44.2%
2050	13,130,386	100.0%	7,292,794	55.5%	5,837,592	44.5%
2051	13,314,877	100.0%	7,358,032	55.3%	5,956,845	44.7%
2052	13,499,368	100.0%	7,423,269	55.0%	6,076,099	45.0%
2053	13,683,859	100.0%	7,488,507	54.7%	6,195,352	45.3%
2054	13,868,350	100.0%	7,553,745	54.5%	6,314,605	45.5%
2055	14,052,841	100.0%	7,618,983	54.2%	6,433,858	45.8%
2056	14,237,332	100.0%	7,684,221	54.0%	6,553,111	46.0%
2057	14,421,823	100.0%	7,749,459	53.7%	6,672,365	46.3%
2058	14,606,314	100.0%	7,814,697	53.5%	6,791,618	46.5%
2059	14,790,806	100.0%	7,879,935	53.3%	6,910,871	46.7%
2060	14,975,297	100.0%	7,945,172	53.1%	7,030,124	4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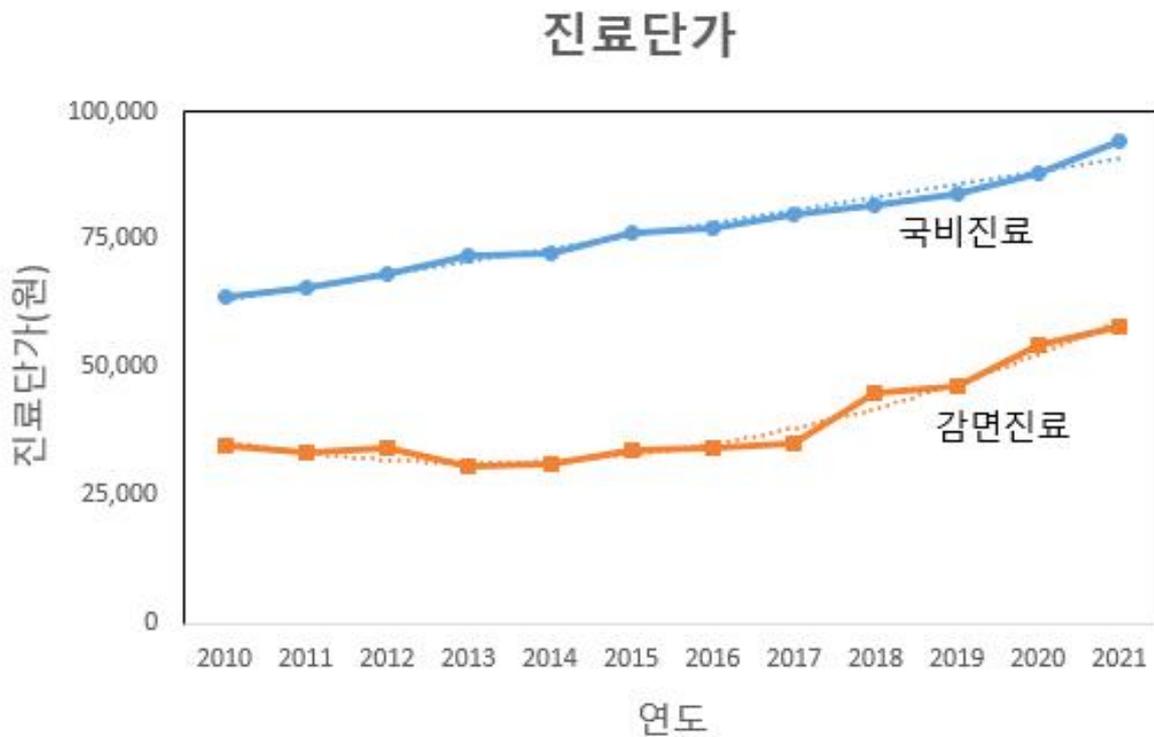
진료연인원 장기추계



[그림 24] 보훈의료지원대상자 진료연인원 장기추계

□ 보훈의료지원대상자 진료단가 장기전망

- 보훈의료지원대상자별 진료단가는 2021년 기준 국비는 94,319원, 감면은 57,880원으로 나타났음.
- 국비진료대상자의 진료단가와 감면진료대상자의 진료단가의 2010~2021년의 추세를 살펴 보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추세분석방법을 이용하여 2060년까지의 진료비 단가를 추계한 결과 2060년경 국비 진료 단가는 189,246원, 감면 진료단가는 134,291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그림 25] 보훈의료지원대상자 유형별 진료단가 추이(2010-2021)

〈표 144〉 보훈의료지원대상자 진료비 단가 장기추계(~2060년까지)

(단위: 원)

연도	국비	감면	연도	국비	감면
2011	65,653	33,491	2036	128,653	83,051
2012	68,196	34,336	2037	131,178	85,186
2013	71,728	30,727	2038	133,702	87,321
2014	72,287	31,234	2039	136,227	89,456
2015	76,239	33,770	2040	138,752	91,591
2016	77,128	34,258	2041	141,276	93,726
2017	79,857	35,113	2042	143,801	95,861
2018	81,787	44,970	2043	146,326	97,996
2019	83,793	46,406	2044	148,851	100,131
2020	88,092	54,448	2045	151,375	102,266
2021	94,319	57,880	2046	153,900	104,401
2022	93,307	53,161	2047	156,425	106,536
2023	95,832	55,296	2048	158,949	108,671
2024	98,357	57,431	2049	161,474	110,806
2025	100,881	59,566	2050	163,999	112,941
2026	103,406	61,701	2051	166,523	115,076
2027	105,931	63,836	2052	169,048	117,211
2028	108,455	65,971	2053	171,573	119,346
2029	110,980	68,106	2054	174,098	121,481
2030	113,505	70,241	2055	176,622	123,616
2031	116,029	72,376	2056	179,147	125,751
2032	118,554	74,511	2057	181,672	127,886
2033	121,079	76,646	2058	184,196	130,021
2034	123,604	78,781	2059	186,721	132,156
2035	126,128	80,916	2060	189,246	134,291

□ 보훈의료비 장기추계(1)

- 보훈의료비 장기추계 모형 1은 진료연인원과 진료비 단가에 대해 장기적인 추계결과를 기반으로 연인원과 단가를 곱하여 보훈의료비를 추정하는 모형임.
- 앞서 분석한 진료연인원, 진료비단가를 기반으로 보훈의료비 총액을 추계한 결과, 2060년경 총 보훈의료비는 2조 4,476억 원으로 추계됨.
- 그 중 국비진료비는 1조 5,036억 원, 감면진료비는 9,440억 원으로 추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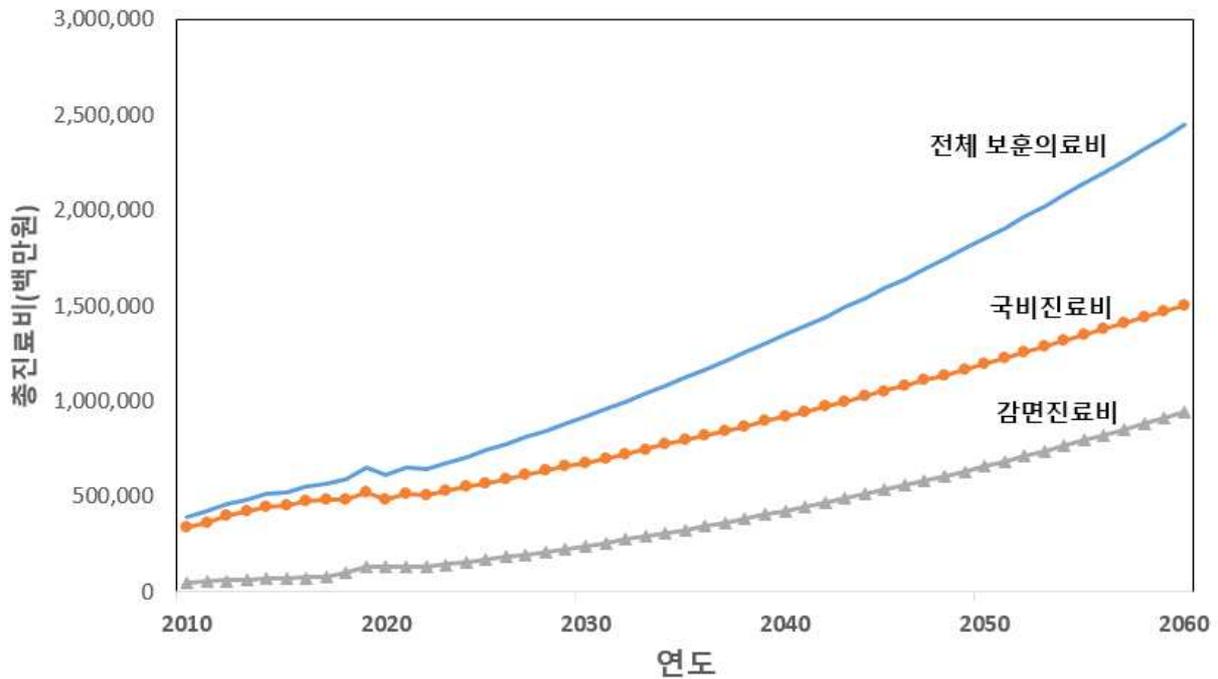
〈표 145〉 보훈의료지원대상자 총진료비 장기추계(1)

(단위: 백만원)

연도	계(A+B)	A. 국비	B. 감면
2010	393,067	342,054	51,013
2011	421,421	365,731	55,690
2012	461,155	400,884	60,271
2013	484,917	420,128	64,789
2014	514,278	445,762	68,516
2015	526,029	455,667	70,362
2016	552,353	476,380	75,973
2017	566,581	484,670	81,911
2018	591,344	486,694	104,650
2019	650,014	519,989	130,025
2020	616,934	482,703	134,230
2021	652,668	516,192	136,476
2022	644,719	510,029	134,690
2023	674,833	530,081	144,751
2024	707,652	550,463	157,189
2025	741,310	571,174	170,136
2026	775,807	592,214	183,592
2027	811,142	613,584	197,558
2028	847,316	635,283	212,032
2029	884,328	657,312	227,016
2030	922,179	679,670	242,509
2031	960,869	702,358	258,511
2032	1,000,397	725,375	275,022

연도	계(A+B)	A. 국비	B. 감면
2033	1,040,764	748,721	292,043
2034	1,081,970	772,397	309,573
2035	1,124,014	796,402	327,612
2036	1,166,897	820,736	346,161
2037	1,210,618	845,400	365,218
2038	1,255,179	870,394	384,785
2039	1,300,577	895,717	404,861
2040	1,346,815	921,369	425,446
2041	1,393,891	947,350	446,540
2042	1,441,805	973,662	468,144
2043	1,490,558	1,000,302	490,256
2044	1,540,150	1,027,272	512,878
2045	1,590,581	1,054,571	536,009
2046	1,641,850	1,082,200	559,650
2047	1,693,957	1,110,158	583,799
2048	1,746,904	1,138,445	608,458
2049	1,800,689	1,167,062	633,626
2050	1,855,312	1,196,009	659,304
2051	1,910,774	1,225,284	685,490
2052	1,967,075	1,254,890	712,186
2053	2,024,215	1,284,824	739,390
2054	2,082,193	1,315,088	767,105
2055	2,141,009	1,345,682	795,328
2056	2,200,665	1,376,604	824,060
2057	2,261,159	1,407,857	853,302
2058	2,322,491	1,439,438	883,053
2059	2,384,662	1,471,349	913,313
2060	2,447,672	1,503,590	944,082

보훈의료비 장기추계(1)



[그림 26] 보훈의료비 장기추계(1)

□ 보훈의료비 장기추계(2)

-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보훈의료지원대상자의 진료비 총액에 대한 장기추계모형을 추계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추계할 수 있음.
- 선형추세분석모형에 근거하여 향후 2060년까지의 보훈의료비를 장기적으로 추계하였음.

$$Y = 23,261(T-2009)+384,701$$

$$T = \text{연도}(2010-2060)$$

[수식 14] 보훈의료비 장기추계(2) 회귀식

- 총진료비에서 국비진료비와 감면진료비의 금액을 추정하기 위해서 국비진료비의 구성비의 변화를 예측하는 수식을 통해 향후 구성비를 예측하고 총진료비에 구성비율을 적용하여 국비진료비를 추정하였음(수식 15). 이후 감면진료비는 추계된 총진료비에서 국비진료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설정하여 정합성을 유지하였음.

$$Y(\%) = -0.83(T-2009)+89.75$$

$$T = \text{연도}(2010-2060)$$

[수식 15] 총 진료비중 국비진료비의 구성비 추정 회귀식

- 추계결과 총액을 기준으로 보훈의료비를 2060년까지 장기추계한 결과, 총 진료비는 2040년 약 1조 1,057억원, 2060년 1조 5,710억원이 지출될 것으로 전망됨.
- 이는 진료연인원과 단가를 각각 추계하여 곱한 보훈의료비 장기추계 (1)에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보훈의료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2060년 기준 장기추계 (1)의 0.64배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계되었음.
- 또한 장기추계(2)에 근거하면, 2057년 이후 감면진료비총액이 국비진료비총액보다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한 보훈의료비 장기추계는 진료연인원과 단가를 추정하지 않는 모형이기 때문에, 예산 산정시에는 단가 혹은 진료연인원 중 예측정확도가 더 높았던 항목을 근거로 연인원과 단가를 역으로 추정하여 산정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볼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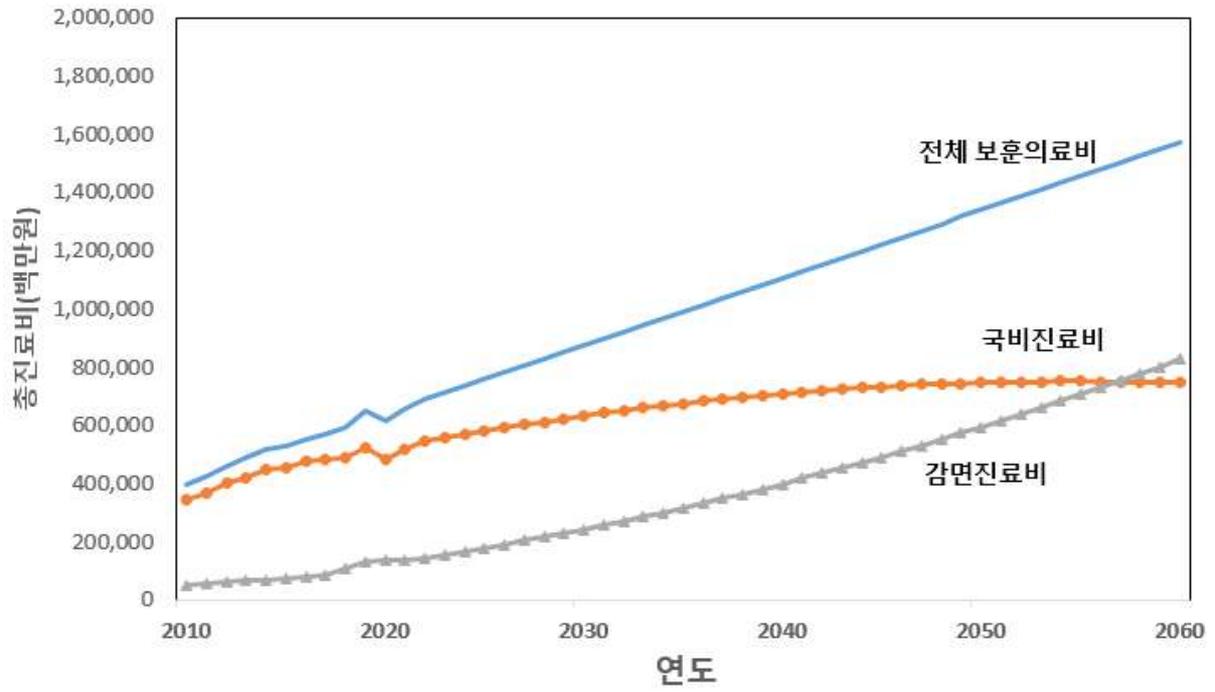
〈표 146〉 보훈의료지원대상자 총진료비 장기추계(2)

(단위: 백만원)

연도	총진료비(A)	B. 국비 (B=A*C/100)	C. 국비구성비	D. 감면 (D=A*E/100)	E. 감면구성비
2010	393,067	342,054	87.0%	51,013	13.0%
2011	421,421	365,731	86.8%	55,690	13.2%
2012	461,155	400,884	86.9%	60,271	13.1%
2013	484,917	420,128	86.6%	64,789	13.4%
2014	514,278	445,762	86.7%	68,516	13.3%
2015	526,029	455,667	86.6%	70,362	13.4%
2016	552,353	476,380	86.2%	75,973	13.8%
2017	566,581	484,670	85.5%	81,911	14.5%
2018	591,344	486,694	82.3%	104,650	17.7%
2019	650,014	519,989	80.0%	130,025	20.0%
2020	616,933	482,703	78.2%	134,230	21.8%
2021	652,668	516,192	79.1%	136,476	20.9%
2022	687,094	542,529	79.0%	144,565	21.0%
2023	710,355	555,000	78.1%	155,355	21.9%

연도	총진료비(A)	B. 국비 (B=A*C/100)	C. 국비구성비	D. 감면 (D=A*E/100)	E. 감면구성비
2024	733,616	567,085	77.3%	166,531	22.7%
2025	756,877	578,784	76.5%	178,093	23.5%
2026	780,138	590,096	75.6%	190,042	24.4%
2027	803,399	601,023	74.8%	202,376	25.2%
2028	826,660	611,563	74.0%	215,097	26.0%
2029	849,921	621,717	73.1%	228,204	26.9%
2030	873,182	631,485	72.3%	241,697	27.7%
2031	896,443	640,867	71.5%	255,576	28.5%
2032	919,704	649,863	70.7%	269,841	29.3%
2033	942,965	658,472	69.8%	284,493	30.2%
2034	966,226	666,696	69.0%	299,530	31.0%
2035	989,487	674,533	68.2%	314,954	31.8%
2036	1,012,748	681,985	67.3%	330,763	32.7%
2037	1,036,009	689,050	66.5%	346,959	33.5%
2038	1,059,270	695,729	65.7%	363,541	34.3%
2039	1,082,531	702,021	64.8%	380,510	35.2%
2040	1,105,792	707,928	64.0%	397,864	36.0%
2041	1,129,053	713,449	63.2%	415,604	36.8%
2042	1,152,314	718,583	62.4%	433,731	37.6%
2043	1,175,575	723,331	61.5%	452,244	38.5%
2044	1,198,836	727,693	60.7%	471,143	39.3%
2045	1,222,097	731,669	59.9%	490,428	40.1%
2046	1,245,358	735,259	59.0%	510,099	41.0%
2047	1,268,619	738,463	58.2%	530,156	41.8%
2048	1,291,880	741,281	57.4%	550,599	42.6%
2049	1,315,141	743,712	56.5%	571,429	43.5%
2050	1,338,402	745,758	55.7%	592,644	44.3%
2051	1,361,663	747,417	54.9%	614,246	45.1%
2052	1,384,924	748,690	54.1%	636,234	45.9%
2053	1,408,185	749,577	53.2%	658,608	46.8%
2054	1,431,446	750,078	52.4%	681,368	47.6%
2055	1,454,707	750,192	51.6%	704,515	48.4%
2056	1,477,968	749,921	50.7%	728,047	49.3%
2057	1,501,229	749,263	49.9%	751,966	50.1%
2058	1,524,490	748,220	49.1%	776,270	50.9%
2059	1,547,751	746,790	48.2%	800,961	51.8%
2060	1,571,012	744,974	47.4%	826,038	52.6%

보훈의료비 장기추계(2)



[그림 27] 보훈의료비 장기추계(2)

제5장 결 론

1. 연구결과 요약

□ 보훈대상자의 장기추계

- 보훈대상자는 크게 참전 관련 대상자와 참전 외 대상자로 구분하여 추계한 결과, 참전 관련 대상자는 2040년 기준 급감하며, 2057년에는 모두 사망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하지만, 전체적인 보훈대상자의 수는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 그리고 제대군인 등의 증가로 인하여 대상자 수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며, 2040년 기준 85만 9,645명, 2060년 기준 112만 1,164명으로 전망됨.
- 만일, 중장기제대군인의 배출이 일정할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에는 2060년 보훈대상자의 수는 약 93만명으로 추계되었음.

□ 보훈의료지원대상자 장기추계

- 추계한 보훈대상자 수를 근거로 보훈의료지원대상자 수를 추계한 결과, 중장기제대군인의 증가추세를 반영하는 경우 2060년경 보훈의료지원대상자 수는 약 234만 명, 일정할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는 195만 명으로 추계되었음.

□ 보훈의료지원대상자별 예산산정모델(단기예측)

- 보훈의료지원대상자별 예산산정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추세분석모형, 이동평균모형, 기하평균모형을 적용하여 각각 진료연인원, 단가, 총진료비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예측치와 실제치를 비교하여 예측정확도가 가장 높은 모형을 채택하는 모형을 개발함.
- 그 결과, 대부분의 의료지원대상자에서 추세분석모형의 예측정확도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하지만, 감면율의 확대와 같은 정책변화가 대상자의 의료이용과 의료공급자의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가변수를 이용한 회귀분석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임.

□ 보훈의료비 중장기 전망(2060년) - 장기추계모형 (1)

- 장기추계모형 (1)은 진료비단가와 진료연인원을 각각 추계하여 추정하는 모형으로, 보훈 의료비는 의료이용의 차이가 나타나는 대상자 특성인 국비진료와 감면진료로 구분하여 연인원과 단가를 각각 추계하여 총진료비를 예측함.

- 보훈의료지원대상자의 연인원과 진료단가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특히, 연인원에서 기존 국비진료대상자가 다수였던 구성비에서 국비진료대상자의 사망과 감면진료대상자 중 중장기제대군인 등의 증가로 감면진료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국비진료와 감면진료의 격차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즉, 보훈의료비의 의료이용양상과 현황이 국민건강보험환자의 이용과 점차 유사해질 것으로 예측됨.
 - 보훈의료비 중장기 전망을 추계한 결과 보훈의료비는 2060년경 약 2조 4,476억 원이 지출될 것으로 전망됨. 그 중 국비진료비는 1조 5,036억 원, 감면진료비는 9,440억 원으로 추계되어, 점차 보훈의료비에서 국비진료비의 비중이 감소하고 감면진료비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보훈의료비 중장기 전망(2060년) - 장기추계모형 (2)
- 장기추계모형 (2)는 2010년~2021년의 보훈의료비 결산총액을 기준으로 총액을 추정하는 모형임.
 - 보훈의료비 장기추계모형 (2)에 의한 중장기 전망 추계결과 총 진료비는 2040년 약 1조 1,057억원, 2060년 1조 5,710억원이 지출될 것으로 전망됨.
 - 감면, 국비지원대상자를 모두 포함한 총 보훈진료비는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임. 하지만, 그 증가폭은 장기추계모형 (1)에 비해 완만한 수준으로 나타났음.
 - 이는 장기추계 (1) 총진료비 추계치에 비교할 때 2040년 기준 0.82배 수준, 2060년 기준 0.64배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계되었음.

2. 논의

가. 연구의 제한점

- 보훈의료비의 지불제도는 행위별수가제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진료가 종결된 이후에 총진료비의 규모가 결정됨. 따라서, 진료비는 의료공급자의 진료행태에 의해 그 규모와 이용량이 결정되는 특성이 있어 예측의 정확도가 높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

- 감면제도의 빈번한 개정은 보훈의료비 추계의 정확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임.
- 감면진료대상자의 경우 참전유공자의 감면율이 확대된 시점을 계기로 기존 60%감면의 대상자와 분리된 보훈의료이용실적 통계자료가 2015년부터 구축되어 있었음. 따라서, 상대적으로 짧은 시계열자료로 인해 나타나는 추정의 불확실성과 짧은 시계열 내에 외부효과의 영향이 있었던 점으로 인해 추계의 정확도가 감소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함.
- 또한, 본 연구의 모수추정구간에는 2020~2021년이 포함되어있는데, 해당 시기는 코로나19가 대상자의 의료이용에 영향을 주는 외부효과가 존재한 시기로, 의료비 예측의 오차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그 제한점이 있었음.

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 보훈의료체계의 효율적 운영과 보훈의료 대상자별 특수성을 반영하는 의료비 예측모형 개발을 통하여 정확한 보훈의료비 소요 전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 보훈의료대상자의 특수성과 정책변화를 반영하는 예산추계모형은 통하여 보훈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보훈의료정책집행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함.
- 국회예산정책처 증장기 의무지출 전망과 공공사회복지 지출 전망 시 이용할 수 있는 추계모형 개발이 가능함. 이를 통하여 보훈의료지원 분야에서의 의무지출 전망 예측의 정확도가 향상될 것임.

2) 활용방안

- 보훈의료예산 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보훈의료지원 대상자와 의료서비스 관련 후속 연구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참고문헌

- 구길환, 동재용, 이경화, 서영준(2021). 보훈병원 통합의료복지서비스가 의료이용과 의료비 절감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병원경영학회지, 26(2), 1-16.
- 국가보훈처(2020). 보훈연감. 국가보훈처
- 국가보훈처(2022a). 보훈연감. 국가보훈처.
- 국가보훈처(2022b). 국가유공자 평균연령 현황. Retrieved from :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82
- 국가보훈처(2022c). 보훈의료비 전망을 위한 대상자 및 보훈병원, 위탁병원 진료현황 등. 국가보훈처
- 국가보훈처(2022d). 위탁병원 명단(2022.7.1.기준). Retrieved from :
<https://www.mpva.go.kr/mpva/selectBbsNttView.do?key=144&bbsNo=31&nttNo=220873&searchCtgr=&searchCnd=all&searchKrw=&pageIndex=1&integrDeptCode=>
- 국가보훈처(2019). 2019년 국가보훈처 주요업무 추진계획. 국가보훈처.
- 김진현, 신현웅, 이용재, 여나금, 권현정, 이선미(2019). 보훈의료대상자 특성을 반영한 진료비 산정체계 연구. 국가보훈처.
- 김진현, 신현웅, 이용재, 여나금, 권현정(2021). 보훈의료 대상자별 의료이용 특성을 반영한 의료비 산정체계 개발.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JKDAS), 23, 269-285.
- 보훈의료공단(2021.02). 의료사업. Retrieved from :
<https://www.bohun.or.kr/050business/business01.php?left=6>
- 신영석, 신현웅, 정은희, 임완섭, 강지원(2012). 보훈의료체계 유지 필요성 및 발전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12-10.
- 신은숙(2018). 보훈대상자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실태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훈논총, 17(3), 31-48.
- 이병구(2018). 2018년 국가보훈처의 예산 중점 투자방향. 한국재정정보원.
- 이용재, 김형석, 신화연, 이영자(2019). 국가보훈대상자 예측모형 개발 및 보훈급여금 전망. 국회예산정책처.

[부록 1] 보훈병원 명단

구분	중앙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병상수	1,383	499	571	484	383	137
진료과	31개	21개	24개	22개	20개	15개
소재지	서울시	부산시	광주시	대구시	대전시	인천시
진료권	서울, 경기, 강원	부산, 경남, 제주, 울산	광주, 전남북	대구, 경북	대전, 충남북, 세종	인천, 경기서북부

[부록 2] 보훈위탁병원 지역별 분포명단(2022년 7월 1일 기준)

연번	지역	시군구	요양기관명	진료과	병상	비고
1	강원도	강릉시	강릉동인병원	21	383	-
2	강원도	강릉시	박정빈외과의원	4	0	-
3	강원도	강릉시	위드내과의원	1	0	-
4	강원도	강릉시	이명호내과의원	1	0	-
5	강원도	고성군	세브란의원	6	0	-
6	강원도	동해시	신세계의원	2	0	-
7	강원도	동해시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9	311	-
8	강원도	동해시	동해동인병원	14	379	-
9	강원도	삼척시	삼척의료원	14	150	-
10	강원도	삼척시	예일내과재활의학과의원	6	0	-
11	강원도	속초시	닥터음가정의학과의원	1	0	-
12	강원도	속초시	속초의료원	18	172	-
13	강원도	양구군	양구성심병원	6	49	-
14	강원도	양구군	한사랑내과의원	7	0	-
15	강원도	양양군	상명내과의원	4	0	-
16	강원도	양양군	양양정형외과	10	0	-
17	강원도	영월군	성윤업내과의원	1	0	-
18	강원도	영월군	영월의료원	14	202	-
19	강원도	원주시	바른요양병원	4	238	요양병원
20	강원도	원주시	손경수내과의원	2	0	-
21	강원도	원주시	연세메디하임병원	4	199	-
22	강원도	원주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29	866	-
23	강원도	원주시	현대중앙병원	5	39	-

연번	지역	시군구	요양기관명	진료과	병상	비고
24	강원도	인제군	인제고려병원	5	42	
25	강원도	인제군	한림의원	3	0	
26	강원도	정선군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	4	178	
27	강원도	정선군	사북제일의원	5	0	
28	강원도	철원군	강남아이원안과의원	0	0	
29	강원도	철원군	철원병원	7	93	
30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교병원	26	636	
31	강원도	춘천시	마디온정형외과의원	3	29	
32	강원도	춘천시	인성병원	7	141	
33	강원도	태백시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14	395	
34	강원도	태백시	김병호내과의원	2	0	
35	강원도	평창군	평창군보건의료원	9	20	
36	강원도	홍천군	서울드림의원	2	0	
37	강원도	홍천군	서울정형외과의원(홍천)	1	0	
38	강원도	홍천군	홍천아산병원	9	145	
39	강원도	화천군	화천군보건의료원	7	21	
40	강원도	화천군	화천내과의원	3	0	
41	강원도	횡성군	횡성대성병원	5	120	
42	강원도	횡성군	횡성정형외과의원	2	0	
43	경기도	가평군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	7	167	
44	경기도	가평군	가평성모의원	3	0	
45	경기도	가평군	새희망마취통증의학과의원	8	0	
46	경기도	고양시	서울척탑병원	5	72	22.7.1.진료시작
47	경기도	고양시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22	642	
48	경기도	고양시	중앙의원	9	0	
49	경기도	과천시	김이비인후과의원	1	0	
50	경기도	과천시	탑내과의원	2	0	
51	경기도	광명시	광명새움병원	5	67	
52	경기도	광명시	광명성애병원	22	313	
53	경기도	광명시	삼성우리내과의원	13	0	
54	경기도	광주시	광주제일내과의원	12	0	
55	경기도	광주시	더플러스병원	8	68	

연번	지역	시군구	요양기관명	진료과	병상	비고
56	경기도	광주시	퇴촌중앙의원	1	0	
57	경기도	구리시	서울비뇨기과의원(구리점)	1	1	
58	경기도	구리시	윤서병원	8	135	
59	경기도	군포시	김성진내과의원	2	0	
60	경기도	군포시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27	238	
61	경기도	김포시	김포우리병원	23	385	
62	경기도	김포시	박원중내과의원	5	0	
63	경기도	김포시	올댓의원	9	1	
64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백병원	3	109	
65	경기도	남양주시	월병원	8	151	
66	경기도	남양주시	청담비뇨기과의원	1	0	
67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립노인전문동두천병원	4	197	요양병원
68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중앙성모병원	15	172	
69	경기도	부천시	메디홀스요양병원	6	357	요양병원
70	경기도	부천시	부천우리병원	12	140	
71	경기도	부천시	원미삼성의원	12	29	
72	경기도	성남시	분당연세비뇨의학과의원	1	0	
73	경기도	성남시	성남중앙병원	16	200	
74	경기도	성남시	성모월병원	10	160	
75	경기도	성남시	연세제일내과의원	1	0	
76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립의료원 수원병원	14	129	
77	경기도	수원시	다인병원	7	91	
78	경기도	수원시	동수원병원	23	377	
79	경기도	수원시	코코이비인후과의원	5	0	
80	경기도	시흥시	(의)자운의료재단강남요양병원	8	75	요양병원
81	경기도	시흥시	드림내과의원	1	0	22.7.1.진료시작
82	경기도	시흥시	센트럴병원	16	249	
83	경기도	안산시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16	425	
84	경기도	안산시	더베스트내과의원	3	0	
85	경기도	안산시	윤이비인후과의원	1	0	
86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14	249	
87	경기도	안성시	안성동인병원	3	41	

연번	지역	시군구	요양기관명	진료과	병상	비고
88	경기도	안성시	안성제일정형외과의원	6	0	
89	경기도	안양시	권태우정형외과의원	1	0	
90	경기도	안양시	김형근예병원	7	56	
91	경기도	안양시	안양샘병원	23	354	
92	경기도	양주시	21세기내과의원	3	0	
93	경기도	양주시	두리이비인후과의원	4	0	
94	경기도	양주시	양주예쓰병원	7	132	
95	경기도	양평군	새벽의원	2	0	
96	경기도	양평군	양평병원	8	115	
97	경기도	여주시	세종여주병원	8	126	
98	경기도	연천군	강비노기과의원(연천)	2	0	
99	경기도	연천군	연천군보건의료원	10	52	
100	경기도	오산시	조은오산병원	12	223	
101	경기도	용인시	(의)영문의료재단 다보스병원	14	235	
102	경기도	용인시	더원요양병원	6	295	요양병원
103	경기도	용인시	비전내과의원	1	0	
104	경기도	용인시	용인강남병원	17	299	
105	경기도	의왕시	아가페의료재단 시티병원	6	176	
106	경기도	의왕시	한국한센복지협회부설의원	2	29	
107	경기도	의정부시	(의)희경의료재단 성베드로병원	8	124	
108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립의료원 의정부병원	16	214	
109	경기도	의정부시	윤석주내과의원	2	0	
110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11	128	
111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15	200	
112	경기도	파주시	두리이비인후과의원	1	3	
113	경기도	파주시	무척조은병원	12	109	
114	경기도	평택시	로템나무내과의원	5	0	
115	경기도	평택시	성심중앙병원	6	81	
116	경기도	평택시	평택성모병원	16	352	
117	경기도	포천시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15	142	
118	경기도	포천시	한성내과의원	1	0	
119	경기도	하남시	박지영내과의원	0	0	

연번	지역	시군구	요양기관명	진료과	병상	비고
120	경기도	하남시	햇살병원	4	62	
121	경기도	화성시	동탄서울내과의원	4	0	
122	경기도	화성시	동탄시티병원	7	90	
123	경기도	화성시	화성중앙병원	9	151	
124	경상남도	거제시	대우병원	10	225	
125	경상남도	거제시	맑은샘병원	21	205	
126	경상남도	거제시	주영민비뇨기과의원	2	0	
12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적십자병원	7	91	
128	경상남도	거창군	고려정형외과의원	5	0	
129	경상남도	고성군	강병원	6	116	
130	경상남도	고성군	정일성의원	12	0	
131	경상남도	김해시	경희의료원 교육협력 중앙병원	33	467	
132	경상남도	김해시	굿모닝내과의원	3	0	
133	경상남도	김해시	메가병원	6	209	
134	경상남도	김해시	의)한솔의료재단 한서재활요양병원	9	292	요양병원
135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병원	6	142	
136	경상남도	남해군	연세안과의원	1	0	
137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선비뇨기과의원	2	0	
138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제일병원	6	79	
139	경상남도	밀양시	행복한병원	4	60	
140	경상남도	사천시	(의)승연의료재단 삼천포서울병원	9	264	
141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중앙요양병원	7	261	요양병원
142	경상남도	사천시	우리메디컬의원	5	0	
143	경상남도	산청군	청송의원	7	0	
144	경상남도	양산시	신세계요양병원	5	274	요양병원
145	경상남도	양산시	연세빛가정의학과의원	6	0	
146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중앙병원	15	295	
147	경상남도	의령군	덕영내과의원	7	0	
148	경상남도	의령군	복음의원	9	0	
149	경상남도	진주시	반도병원	9	168	
150	경상남도	진주시	성심메디컬의원	6	29	
151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제일병원	13	270	

연번	지역	시군구	요양기관명	진료과	병상	비고
152	경상남도	창녕군	의)창녕서울의료원창녕서울병원	4	100	
153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원이비인후과의원	3	0	
154	경상남도	창원시	365병원	6	143	
155	경상남도	창원시	가온내과의원	11	0	
156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의료원	12	298	
157	경상남도	창원시	메트로병원	6	240	
158	경상남도	창원시	연세에스병원	10	291	
159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세광병원	4	160	
160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파티마병원	29	441	
161	경상남도	창원시	청록의료재단신세계요양병원	6	617	요양병원
162	경상남도	창원시	푸른요양병원	6	679	요양병원
163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서울병원	4	161	
164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적십자병원	7	106	
165	경상남도	하동군	서울안과	1	0	
166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중앙의원	2	29	
167	경상남도	함안군	새롬재활요양병원	7	558	요양병원
168	경상남도	함안군	참사랑의원	2	0	
169	경상남도	함양군	한마음연합의원	12	29	
170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성심병원	3	90	
171	경상남도	합천군	삼성합천병원	7	133	
172	경상북도	경산시	경북도립경산노인전문요양병원	7	320	요양병원
173	경상북도	경산시	세명병원	17	427	
174	경상북도	경산시	파티마연합속내과의원	13	0	
175	경상북도	경주시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25	366	
176	경상북도	경주시	박경대내과의원	2	0	
177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요양병원	8	303	요양병원
178	경상북도	경주시	큰마디큰병원	4	105	
179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영생병원	6	79	
180	경상북도	구미시	고려정형외과의원	8	29	
181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6	248	요양병원
182	경상북도	구미시	삼성연합의원	8	17	
183	경상북도	구미시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28	351	

연번	지역	시군구	요양기관명	진료과	병상	비고
184	경상북도	군위군	고려마취통증의학과의원	5	0	
185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남산종합의원	8	29	
186	경상북도	김천시	덕산의료재단 김천제일병원	17	296	
187	경상북도	문경시	동춘의료재단 문경제일병원	19	505	
188	경상북도	문경시	용이비인후과의원	5	0	
189	경상북도	봉화군	(의)봉화해성병원	4	99	
190	경상북도	상주시	(의)삼백의료재단 상주성모병원	16	201	
191	경상북도	상주시	강남비뇨기과의원	5	0	
192	경상북도	상주시	상주제일안과	1	0	
193	경상북도	성주군	(의)석촌의료재단 성주무강병원	8	55	
194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의료원	17	207	
195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황금연합의원	12	0	
196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성모의원	10	0	
197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경대안과의원	1	0	
198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아산병원	6	68	
199	경상북도	영양군	(의)명성의료재단 영양병원	3	50	
200	경상북도	영주시	(의)청봉의료재단 성누가병원	9	185	
201	경상북도	영주시	김제옥피부비뇨기과의원	5	0	
202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가톨릭병원	4	99	
203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의원	7	0	
204	경상북도	영천시	영남대학교부속 영천병원	13	200	
205	경상북도	예천군	영남의원	5	3	
206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권병원	9	141	
207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군보건의료원	10	20	
208	경상북도	울진군	누가의원	7	0	
209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군의료원	12	79	
210	경상북도	의성군	삼성연합의원(의성)	7	29	
211	경상북도	의성군	오복치과의원	1	0	
212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군공립요양병원	5	196	요양병원
213	경상북도	의성군	진연합의원	7	29	
214	경상북도	청도군	마디연합정형외과의원	1	29	
215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대남병원	8	245	

연번	지역	시군구	요양기관명	진료과	병상	비고
216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군보건의료원	10	48	.
217	경상북도	칠곡군	혜원성모병원	12	60	.
218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북도립 포항노인전문요양병원	7	166	요양병원
219	경상북도	포항시	우리연합의원	12	29	.
220	경상북도	포항시	좋은선린요양병원	8	347	요양병원
221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의료원	25	297	.
222	광주광역시	광산구	최원내과의원	1	0	.
223	광주광역시	남구	힐링연합의원	5	27	.
224	광주광역시	동구	연합내과의원	1	0	.
225	광주광역시	서구	문영래정형외과병원	3	50	.
226	대구광역시	남구	서부영남내과의원	5	0	.
227	대구광역시	달서구	나사렛내과의원	6	2	.
228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제일연합의원	13	0	.
229	대구광역시	동구	대동에스정형외과의원	10	0	.
230	대구광역시	동구	바로본병원	7	200	.
231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수내과의원	1	0	.
232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정형외과연합의원	6	21	.
233	대구광역시	서구	서내과의원	3	0	.
234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울정신건강의학과의원	1	0	.
235	대구광역시	수성구	준내과의원	8	0	.
236	대구광역시	중구	건강제일내과의원	1	0	.
237	대구광역시	대덕구	청담내과의원	6	0	.
238	대구광역시	동구	덕인의원	5	0	.
239	대구광역시	서구	김봉천정형외과의원	6	27	.
240	대구광역시	서구	리더스내과영상의학과의원	11	0	.
241	대구광역시	서구	신선정형외과의원	6	0	.
242	대구광역시	유성구	메디안내과의원	9	0	.
243	대구광역시	중구	김학영정형외과의원	3	0	.
244	대구광역시	중구	지정신건강의학과의원	1	0	.
245	부산광역시	강서구	다사랑내과의원	3	5	.
246	부산광역시	금정구	세웅병원	11	202	.
247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병원	7	190	.

연번	지역	시군구	요양기관명	진료과	병상	비고
248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이비인후과의원	4	0	
249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성소병원	9	203	
250	부산광역시	동구	비타민의원	3	0	
251	부산광역시	동래구	(의)상원의료재단 부산힘찬병원	5	165	
252	부산광역시	동래구	베스트이비인후과의원	1	1	
25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이신내과의원	3	0	
254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부민병원	6	162	
255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속시원내과의원	4	0	
256	부산광역시	사상구	참좋은정형외과의원	5	0	
257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앙U병원	6	143	
258	부산광역시	서구	남포속바른내과의원	7	0	
259	부산광역시	수영구	메트로적추병원	5	58	
260	부산광역시	연제구	라라정신건강의학과의원	1	0	22.7.1.진료시작
261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강재활의학과의원	4	0	
262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도의원	6	0	
263	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좋은정형외과의원(영도)	4	0	
264	부산광역시	중구	이지숨이비인후과의원	4	0	
26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강비뇨의학과의원	2	0	
26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효성시티병원	7	149	
267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베드로병원	9	191	
268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창순내과의원	1	0	
269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성모요양병원	7	349	요양병원
270	서울특별시	강동구	류마내과의원	2	0	
271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보아스이비인후과의원	1	6	
272	서울특별시	강북구	신일병원	6	48	
273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고려비뇨의학과의원	1	2	
274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힘찬병원	7	119	
275	서울특별시	강서구	나누리강서병원	6	48	
276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랑의병원	6	78	
277	서울특별시	관악구	손장원정형외과의원	5	0	
278	서울특별시	광진구	김종웅내과의원	2	0	
279	서울특별시	광진구	더바름정형외과의원	2	29	

연번	지역	시군구	요양기관명	진료과	병상	비고
280	서울특별시	구로구	권내과의원	1	0	
281	서울특별시	구로구	에스탑치과의원	0	0	
282	서울특별시	금천구	김홍열내과의원	2	0	
283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으뜸정형외과의원	5	0	
284	서울특별시	금천구	연세조내과의원	3	0	
285	서울특별시	노원구	밝은미래안과	1	0	
286	서울특별시	노원구	삼성드림이비인후과의원	3	5	
287	서울특별시	노원구	새서울연합의원	5	29	
288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의원(서울)	5	0	
289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비뇨기과	1	3	
290	서울특별시	도봉구	강북힘찬병원	5	152	
291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성나비노의학과의원	2	0	
29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나은병원	5	72	
29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코끼리이비인후과의원	1	0	
29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현대중앙의원	10	26	
295	서울특별시	동작구	강남가드비뇨기과의원	1	0	
296	서울특별시	동작구	삼성유신경외과의원	7	0	
297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모정형외과의원	1	0	
298	서울특별시	마포구	박상수내과의원	1	0	
299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본내과의원	7	0	
3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담정형외과의원	4	0	
30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기현정형외과의원	4	0	
30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한양그린내과의원	4	0	
303	서울특별시	서초구	김일중내과의원	1	0	
304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루살렘정형외과의원	1	13	
305	서울특별시	성동구	9988병원	5	42	
306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유라의료재단 온누리요양병원	6	210	요양병원
307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척병원	7	136	
308	서울특별시	송파구	드림권내과의원	3	0	
309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온정형외과의원	0	0	
310	서울특별시	양천구	메디힐병원	8	123	
311	서울특별시	양천구	우리내과의원	2	0	

연번	지역	시군구	요양기관명	진료과	병상	비고
3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영등포병원	10	89	
3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김종률내과의원	2	0	
3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이비이비인후과의원	1	0	
3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윤문수비뇨기과의원	1	0	
3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이씨빛소망안과	2	20	
317	서울특별시	용산구	김내과의원	2	0	
318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성모내과의원	1	0	
319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파발정형외과의원	1	16	
320	서울특별시	은평구	본서부병원	5	49	
32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적십자병원	19	292	
322	서울특별시	중구	라임비뇨기과의원	2	2	
323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중앙의료의원	8	0	
324	서울특별시	중랑구	강북21세기병원	5	87	
325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한성심의원	9	29	
326	서울특별시	중랑구	맑은성심피부과의원	1	0	
327	세종시	세종시	서문365정형외과의원	4	25	
328	세종시	세종시	서울아산내과의원	15	0	
329	세종시	세종시	이내과의원	1	0	
330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병원	18	297	
331	울산광역시	남구	전내과의원	4	0	
332	울산광역시	동구	마디정형외과의원	5	27	
333	울산광역시	동구	신내과의원	2	24	
334	울산광역시	동구	안신경외과의원	1	15	
335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시티병원	12	259	
336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울산보람병원	12	218	
337	울산광역시	중구	(의)에스엠씨의료재단울산세민병원	7	147	
338	울산광역시	중구	태강내과의원	1	0	
339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병원	7	133	
340	인천광역시	강화군	비에스종합병원	14	213	
341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인성의료재단 한림병원	18	423	
342	인천광역시	남동구	봄날요양병원	5	189	요양병원
343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편한내과의원	1	0	

연번	지역	시군구	요양기관명	진료과	병상	비고
344	인천광역시	동구	인천광역시의료원	18	304	.
34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현대유비스병원	17	300	.
346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세림병원	18	270	.
347	인천광역시	부평구	탁월한내과의원	9	0	.
348	인천광역시	서구	한길정형외과의원	5	10	.
349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세정형외과의원	1	0	.
350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적십자병원	14	156	.
351	인천광역시	옹진군	인천광역시의료원 백령병원	7	30	.
352	인천광역시	옹진군	하나의료조합영흥우리의원	5	26	.
353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의료원	9	120	.
354	전라남도	강진군	오케이내과의원	7	29	.
355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종합병원	12	251	.
356	전라남도	고흥군	녹동현대병원	7	130	.
357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사랑병원	6	114	.
358	전라남도	곡성군	최성식재활의학과의원	11	0	.
359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병원	5	30	.
36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사랑병원	10	157	.
361	전라남도	광양시	현대의원	4	0	.
362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병원	5	89	.
363	전라남도	구례군	한양마취통증의학과의원	4	0	.
364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비뇨기과의원	8	0	.
365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종합병원	11	200	.
366	전라남도	나주시	한가람내과의원	4	0	.
367	전라남도	담양군	나눔내과의원	5	28	.
368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사랑병원	6	128	.
369	전라남도	목포시	김태우신경과의원	5	0	.
370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시의료원	15	120	.
371	전라남도	목포시	우리이비인후과의원	1	0	.
372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하나내과의원	4	0	.
373	전라남도	무안군	대송의료재단 무안병원	15	281	.
374	전라남도	보성군	별교삼호병원	6	418	.
375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아산병원	5	1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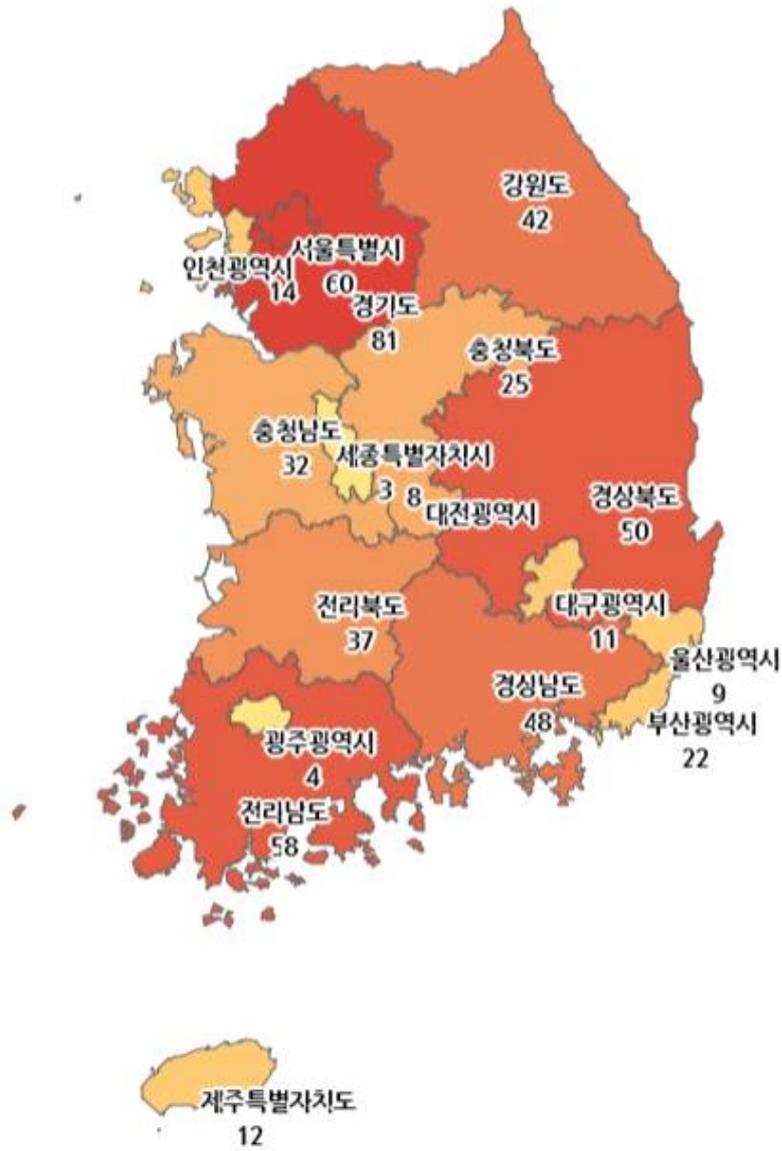
연번	지역	시군구	요양기관명	진료과	병상	비고
376	전라남도	보성군	서병기내과의원	9	0	.
377	전라남도	순천시	성모안과의원	1	4	.
378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성가롤로병원	24	589	.
379	전라남도	순천시	플러스내과의원	6	25	.
380	전라남도	순천시	하나비노기과의원	2	0	.
381	전라남도	신안군	서울의원(신안)	9	43	.
382	전라남도	신안군	신안대우병원	4	30	.
383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연합의원	17	0	.
384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보건지소	3	0	.
385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전남병원	16	287	.
386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한국병원	7	237	.
387	전라남도	여수시	정남진정형외과의원	6	29	.
388	전라남도	영광군	서울의원(영광)	7	0	.
389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종합병원	12	220	.
390	전라남도	영암군	서울정형외과의원(영암)	0	1	.
391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내과의원	6	0	.
392	전라남도	영암군	하나안과의원	1	0	.
393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의원	5	20	.
394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보건지소	0	0	.
395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금일보건지소	3	0	.
396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대성병원	7	120	.
397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소안의원	10	0	.
398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신노화의원	7	0	.
399	전라남도	장성군	세브란스의원	5	12	.
400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병원	6	167	.
401	전라남도	장흥군	오재명가정의학과의원	10	0	.
402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종합병원	11	200	.
403	전라남도	진도군	남우의료재단 진도전남병원	3	100	.
404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보건지소	3	0	.
405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성심병원	2	130	.
406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복음내과의원	3	0	.
407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종합병원	13	293	.

연번	지역	시군구	요양기관명	진료과	병상	비고
408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한국병원	5	95	.
409	전라남도	화순군	한양내과의원	5	0	.
410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고려병원	12	327	.
411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병원	10	188	.
412	전라북도	고창군	이진홍내과의원	2	0	.
413	전라북도	군산시	(의)성하의료재단 누가병원	5	162	.
414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의료원	20	430	.
415	전라북도	김제시	김인재내과의원	1	0	.
416	전라북도	김제시	김제우석병원	8	104	.
417	전라북도	김제시	서지석이비인후과의원	1	0	.
418	전라북도	김제시	이명철정형외과	1	29	.
419	전라북도	남원시	남원의료원	18	350	.
420	전라북도	남원시	미래연합의원	7	29	.
421	전라북도	남원시	중앙가정의학과의원	7	0	.
422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군보건의료원	7	50	.
423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신경외과의원	1	0	.
424	전라북도	부안군	현대가정의학과의원	1	0	.
425	전라북도	부안군	혜성병원	9	130	.
426	전라북도	순창군	대동의원	4	0	.
427	전라북도	순창군	의료법인태종의료재단순창요양병원	5	504	요양병원
428	전라북도	순창군	최선영내과의원	4	16	.
429	전라북도	완주군	맑은안과의원	2	0	.
430	전라북도	완주군	한솔의원	11	0	.
431	전라북도	완주군	혁신오케이정형외과의원	2	0	.
432	전라북도	익산시	김종성비뇨기과의원	2	1	.
433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병원	11	274	.
434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제일병원	5	99	.
435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군보건의료원	6	15	.
436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내과의원	7	0	.
437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군보건의료원	8	30	.
438	전라북도	장수군	참가정의학과의원	7	0	.
439	전라북도	전주시	우리마디의원	14	19	.

연번	지역	시군구	요양기관명	진료과	병상	비고
440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시립요양병원	4	185	요양병원
441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예수병원	23	756	.
442	전라북도	전주시	호성전주병원	7	128	.
443	전라북도	정읍시	정읍내과의원	6	0	.
444	전라북도	정읍시	정읍사랑병원	9	260	.
445	전라북도	정읍시	정읍아산병원	13	250	.
446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군의료원	11	85	.
447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치과의원	0	0	.
448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포열린병원	6	73	.
449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포의료원	18	291	.
450	제주도	서귀포시	아산본정형외과의원	10	0	.
451	제주도	서귀포시	최선365의원	10	0	.
452	제주도	제주시	늘봄재활요양병원	1	149	요양병원
453	제주도	제주시	동산내과의원	7	0	.
454	제주도	제주시	문의원	3	0	.
455	제주도	제주시	연세차내과의원	1	0	.
456	제주도	제주시	제주대학교병원	26	660	.
457	제주도	제주시	제주의료원	7	207	.
458	제주도	제주시	제주의료원 부속요양병원	6	199	요양병원
459	제주도	제주시	제주한라병원	27	534	.
460	충청남도	계룡시	계룡늘편한의원	5	0	.
461	충청남도	계룡시	김광석외과의원	5	0	.
462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서울내과의원	4	0	.
463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의료원	17	297	.
464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365의원	7	25	.
465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의원	4	0	.
466	충청남도	논산시	고려병원	6	54	.
467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속편한내과의원	5	0	.
468	충청남도	논산시	백제종합병원	20	542	.
469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성모병원	4	52	.
470	충청남도	당진시	서울신경외과의원	9	0	.
471	충청남도	당진시	성모정형외과의원(당진)	10	0	.

연번	지역	시군구	요양기관명	진료과	병상	비고
472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아산병원	11	244	
473	충청남도	보령시	서광정형외과의원	8	17	
474	충청남도	부여군	건양대학교 부여병원	5	81	
475	충청남도	서산시	서산의료원	18	256	
476	충청남도	서산시	수내과의원	16	0	
477	충청남도	서천군	공정형외과의원	1	26	
478	충청남도	서천군	서해병원	4	82	
479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충무병원	17	285	
480	충청남도	아산시	장사랑연합내과의원	2	0	
481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명지병원	7	147	
482	충청남도	천안시	JS메디칼내과외과정형외과의원	9	29	
483	충청남도	천안시	예일병원	3	50	
484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충무병원	30	365	
485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군보건의료원	13	12	
486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훈요양병원	6	99	요양병원
487	충청남도	태안군	강비노기과의원(태안)	3	0	
488	충청남도	태안군	이신경외과의원	9	0	
489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군보건의료원	8	30	
490	충청남도	홍성군	연합의원	5	0	
491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의료원	20	442	
492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성모병원	11	170	
493	충청북도	보은군	민들레안과의원	1	0	
494	충청북도	보은군	정민의료재단 보은한양병원	3	79	
495	충청북도	영동군	노상필내과의원	8	0	
496	충청북도	영동군	서외과의원	6	29	
497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병원	8	161	
498	충청북도	옥천군	(의)힐링의료재단 옥천성모병원	10	164	
499	충청북도	옥천군	드림이비인후과의원	4	0	
500	충청북도	음성군	(의)태성의료재단 제일조은병원	7	142	
501	충청북도	제천시	노병연내과의원	1	0	
502	충청북도	제천시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15	176	
503	충청북도	증평군	고려정형외과의원(증평)	5	0	

연번	지역	시군구	요양기관명	진료과	병상	비고
504	충청북도	증평군	의)여덕의료재단 증평병원	4	52	
505	충청북도	진천군	(의)건명의료재단 중앙제일병원	14	255	
506	충청북도	진천군	바른정형외과의원	4	24	
507	충청북도	청주시	김영태신경외과의원	7	29	
508	충청북도	청주시	의)라온의료재단오창호수병원	3	0	
509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탑요양병원	5	295	요양병원
510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원광효도요양병원	7	312	요양병원
511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현대병원	4	185	
512	충청북도	청주시	효성병원	24	427	
513	충청북도	충주시	건국대학교충주병원	22	318	
514	충청북도	충주시	박봉안내과의원	13	0	
515	충청북도	충주시	송원요양병원	3	139	요양병원
516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시노인전문병원	5	252	요양병원



[부록 3] 시도별 위탁병원 수

[부록 4] 제 20대 국회 보훈법령 가결법안 「 」

번호	의안번호	법령	주요 내용	의결결과
1	2010541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유가족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그 유가족의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제34조).	수정가결
2	2014210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연구결과 침샘암 및 담낭암이 고엽제 노출과의 상관성이 인정됨에 따라 현행 고엽제후유의증 대상 질병으로 분류된 악성종양 중 침샘암과 담도암을 포함한 담낭암을 고엽제 후유증 대상 질병으로 변경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들이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수정가결
3	200969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의 등급을 판정받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채용 또는 고용 인원 산정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되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두기로 함(안 제7조의9 제3항 후단 및 부칙 제2조) 나. 법률 제13718 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의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도 이 법의 적용배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제1항 제3호나 목신 설) 다.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의 요청 등(안 제31조 및 제33조 제3항 신설) 1) 국가보훈처장이 고엽제환자 등의 등록, 변동 신고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 등록사항,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및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2)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기관 의장에게 요청한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잇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고엽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이 관련 자료나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조항을 신설함. 라. 개인정보를 강화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의 벌칙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33조).	원안가결
4	201181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배우자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 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 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근거 신설(안 제8조의5 신설)	원안가결
5	2006498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과의 법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고엽제전우회에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면서도 수익계약이 가능해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제2항). 나.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에 대한 지원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와 연구 등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안 부칙 제2조).	원안가결
6	201201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가. 고엽제전우회에 대한 물품의 양도가 무상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명확히 함(안 제20조의2 제2항). 나. 결혼을 목적으로 「형법」 제288조 및 제289 조에 따른 약취, 유인 또는 인신매매의 죄를 범하거나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 높은 별명 하는 등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 이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함(안 제28조 제1항 제3 호가 목).	원안가결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 고용 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의무 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안 제71조).	수정가결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에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67조 제1항 제3 호가 목).	수정가결

번호	의안번호	법령	주요 내용	의결결과
9		「5·18민주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가. 국가기관 등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에 대하여 취업 지원을 시행하는 기관이나 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의 등급을 판정받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를 채용하거나 고용하였으면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인원을 채용하거나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제4항 신설).</p> <p>나.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주체를 명시하고, 「주택 도시기금법」 등의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5·18 민주유공자에 대하여 「주택법」에 따른 민영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60조 제1항 및 제2항).</p> <p>다.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의 요청 등(안 제67조의2 신설)</p> <p>1) 국가보훈처장이 5·18민주유공자 등의 등록, 변동 신고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 등록사항,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p> <p>2)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p> <p>라. 제7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부과하는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 수준으로 함(안 제70조 제1항 및 제3항).</p>	
10		「5·18민주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대상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 근거를 신설(안 제55조의3 신설).	원안가결
11	200387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임원에 대한 임명절차와 결산 관련 절차를 정비. 상임이사의 임명권자는 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으로 변경 비상임이사는 심의/의결 없이 추천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임명 결산 확정시기를 3.31일로 지정함.	원안가결
12	202101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진료, 건강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관련 기관·단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의료기관 등에 국가유공자들의 진료기록, 건강관리 관련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안 제24조의2 신설 등).	수정가결
13	20078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고용 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 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국가유공자 의무 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6조).	수정가결
14	201546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과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일정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전상·공상 군경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상 등으로 인하여 입원 등 연속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전역 전에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음을 따라 의료지원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비용을 부담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전상·공상 군경의 경우 전역 전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절 없이 국가의 지원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1항 제4호·제6호, 제9조 제2항 등).	수정가결
15	201347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장이 보상금 수급자에게 생활조정수당의 수급요건 및 신청방법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내·홍보하도록 하고, 보상금의 수급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조정수당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 5 신설).	수정가결

번호	의안번호	법령	주요 내용	의결결과
16	20118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 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 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 재가 복지서비스 지원의 근거를 신설함(안 제63조의3 신설).	원안가결
17	201094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4·19혁명 공로자 보상금을 수당으로 변경함으로써 공헌 등에 부합하는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2항 제7호 신설,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 제16조의4 신설). 나. 결혼을 목적으로 「형법」 제288조 및 제289조에 따른 약취, 유인 또는 인신매매의 죄를 범하거나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하는 등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 이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79조 제1항 제3 호가 목).	원안가결
18	200967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보훈 급여금을 받은 외국 국적 동포인 국가 유공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로 사망한 때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회복한 그 유족에 대해 보훈 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나. 5급 이상 중상이자인 국가 유공자의 채용 또는 고용 시 고용 인원의 2배를 인정하되, 그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둠(안 제37조의2 제4 하신 설). 다.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주체를 명시하고, 「주택 도시기금법」 등의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68조 제1항). 라. 국가 유공자에 대하여 「주택법」에 따른 민영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68조 제2항 신설). 마.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들의 등록, 보훈 급여금 지급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 등록사항,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안 14조의 3 제2항 삭제, 안 제77조 제1항). 바.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기관 의장에게 요청한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잇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 제2항). 사. 주민등록정보,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함(안 제77조 제3항, 안 제85조 제1항 제3호 신설). 아. 2016년 1월 6일 폐지된 국가유공자법(법률 제13718호) 제79조 제1항 제3호 나목 등을 법 적용배제 대상 범죄에 추가하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 등이 폐지되기 이전에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도 이 법의 적용배제 대상에 포함함(안 제9조 제1항 제3호나 목신 설). 자. 국가 유공자로 예우받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 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79조 제1항 제3 호사 목 신설). 차.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상향 조정함(안 제85조 제1항 제2호, 제85조 제3항 삭제). 카. 2012년 7월 1일 이후에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 등급의 변동이 없거나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편된 보상제도에 따라 지급된 보훈 급여금의 월총액이 해당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기 전보다 적어진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상황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훈 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법률 제11041호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원안가결
19	202324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같은 순위 부모 중 보상금 수령자가 합의되지 않거나 주(主)부 양자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부와 모에게 보상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하도록 함(제13조). 나. 보상금을 나누어 받는 국가 유공자 부모(75세 이상)의 경우에는 위탁병원 감면 진료대상자로 결정함에 있어 유족 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함(제42조).	원안가결

번호	의안번호	법령	주요 내용	의결결과
20	201890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최초등록 당시 출가한 자녀가 생존해있었으나 당시 규정으로 인해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07년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나 그 이전에 사망하여 자녀가 보상금을 받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라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독립유공자 유족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2항 제2호).	수정가결
21	201328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서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대부지원 대상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보상금 수급자 또는 앞순위자 1인에 대하여 대부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같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이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다른 자녀들의 생활여건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대부지원을 확대하여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 보장을 실현함으로써 독립유공자 예우 확대 및 자립과 생활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대부지원대상을 현행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부상금 수급자 또는 앞순위자 1인 외의 독립유공자 자녀 전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1항 제3호).	수정가결
22	20118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 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 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 재가 복지서비스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19조의3 신설).	원안가결
23	200967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순국선열 및 사망한 애국지사 중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경우 묘지관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안 제26조의2 신설).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의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도 이 법의 적용배제대상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9조 제1항 제4호나 목 신설). 다.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의 등록, 보훈 급여금 지급 등의 사무수행에 필요한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및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 2 신설). 라. 개인정보를 강화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의 벌칙과 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43조).	원안가결
24	201094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의 용자를 받아 건설되는 주택 및 민영주택을 권리자가 아닌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에게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나. 결혼을 목적으로 「형법」 제288조 및 제289 조에 따른 약취, 유인 또는 인신매매의 죄를 범하거나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하는 등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 이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함(안 제39조 제1항 제4 호가 목).	원안가결
25	201275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5, 제35조 제1항 제1의 2호, 제39조의2 제1항 제4호의2 신설). 나.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의 용도에 독립유공자나 그 유족 외에 독립유공자 가족을 포함하여 독립유공자 후손 간 형평성을 높임(안 제27조 제1항, 제30조 제1호). 다.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고용 명령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높임(안 제44조 제1항).	원안가결

번호	의안번호	법령	주요 내용	의결결과
26	200967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국가기관 등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하여 취업 지원하는 기관이나 업체가 5급 이상의 상이 등급을 판정받은 보훈보상대상자를 채용하거나 고용한 경우에는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인원을 채용하거나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함(안 제47조 제4항 신설).	원안가결
27	200897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형법」 제288조 및 제289조에 따른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범죄를 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결혼을 목적으로 한 같은 범죄에는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범죄는 반사회적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변화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하면 결혼을 목적으로 그 죄를 범한 경우에도 같이 이 법 적용 대에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72조 제1항 제3 호가 목). 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수정가결
28	20118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 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 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 재가 복지서비스 지원 근거 신설(안 제53조의2 신설)	원안가결
29	201547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과 교육 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 중 국가보훈처장이 하는 신체검사에서 일정한 상이 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재해부상 군경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상 등으로 인하여 입원 등 연속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전역 전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할 수 없음에 따라 의료지원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비용을 부담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재해부상 군경의 경우 전역 전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절 없이 국가의 지원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항 제2호, 제8조).	수정가결
30	200759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영국 가나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건립되거나 국가의 용자를 받아 건립된 주택을 우선하여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민영주택의 경우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장기복 무제 대군 인의 복지 증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택 건설 사업 의사 업주 체가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해도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민영주택 일부를 먼저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2조 제2항 신설).	수정가결
31	200897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형법」 제288조 및 제289조에 따른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범죄를 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결혼을 목적으로 한 같은 범죄에는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범죄는 반사회적 중대범죄 이해당하고, 변화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하면 결혼을 목적으로 그 죄를 범한 경우에도 같이 이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 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에 돈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1항 제3 호가 목).	수정가결
32	201694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등으로서 군 복무 중 발병·악화된 중증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현재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만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거주지 인근에 보훈병원이 없는 경우에는 안정적인 진료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도 진료비를 감면받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안가결

번호	의안번호	법령	주요 내용	의결결과
33	201377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가.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 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나. 제대군인고용 명령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제대군인의무 고용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9조).	원안가결
34	200968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가. 참전유공자에게 「주택법」 등에 따른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3 신설).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의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도 이 법의 적용배제대상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9조). 다.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의 요청 등(안 제39조의2) 1)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들의 등록, 변동 신고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및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2)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기관 의장에게 요청한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참전유공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이 관련 자료나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조항을 신설함. 라. 개인정보를 강화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의 벌칙과 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상향 조정하여 법정형 경비를 정비함(안 제41조).	원안가결
35	201647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육군이 1954년 5월 26일부터 1955년 3월 31일까지 공비 소탕 작전을 전개한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작전지역(제1, 3, 8 경비대대)을 6·25전쟁 전투목록에 추가하여 해당 전투 참전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하고 명예를 선양하려는 것임.	원안가결
36	20118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 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 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 재가 복지서비스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8조의6).	원안가결
37	201201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가. 6·25 참전유공자회에 대한 물품의 양도가 무상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명확히 함(안 제28조 제2항). 나. 결혼을 목적으로 「형법」 제288조 및 제289조에 따른 약취, 유인 또는 인신매매의 죄를 범하거나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하는 등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 이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함(안 제39조 제1항 제3 호가 목).	원안가결
38	201052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 임무 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용 명령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특수 임무 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3조).	
39	201246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 임무 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용 명령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특수 임무 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3조).	
40	201181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 임무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 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 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 재가 복지서비스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70조의3 신설).	
41	201201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가.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대한 물품의 양도가 무상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명확히 함(안 제65조의2 제2항). 다. 결혼을 목적으로 「형법」 제288조 및 제289조에 따른 약취, 유인 또는 인신매매의 죄를 범하거나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하는 등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 이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함(안 제80조 제1항 제3 호가 목).	

번호	의안번호	법령	주요 내용	의결결과
42	200968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p>가. 중상이자인 특수 임무 부상자의 채용 또는 고용 인원 산정의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두기로 함(안 제24조의2 제4항 및 부칙 제2조)</p> <p>나. 특수 임무 유공자에게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민영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75조).</p> <p>다.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의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도 이 법의 적용배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80조 제1항 제3호 나목 신설).</p> <p>라.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의 요청 등(안 제80조의2 신설)</p> <p>1) 국가보훈처장이 특수 임무 유공자 등의 등록, 변동 신고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 등록사항,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및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p> <p>2)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p> <p>3) 특수 임무 수행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이 관련 자료나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조항을 신설함.</p> <p>마. 개인정보를 강화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의 벌칙과 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82조).</p>	

[부록 5] 제21대 국회 보훈법령 가결법안

번호	의안 번호	법령	주요 내용	의결결과
1	210674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p>가. 수의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신설(안 제13조의4 신설)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가 운영하는 수의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의사업승인의 유효기간을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도록 함.</p> <p>나. 수의사업의 승인 취소 사유보완 및 정지 명령 신설(안 제13조의 12 제1항) 국가보훈처장은 수의사업의 승인을 받은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가 승인받은 수의사업을 폐지하거나 그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의사업을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승인받은 수의사업을 2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수의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p> <p>다. 국유재산/공유재산과 관련된 재산의 처분계약 내용 등 보고(안 제20조의 2 제4항 시설)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하여 보유한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가 매입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그 처분과 관련된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을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p> <p>라. 재무·회계기준준수(안 제23조의 2 신설)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의 투명한 회계 처리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예산 또는 회계 처리하도록 함.</p> <p>마. 거짓으로 수의사업승인을 받은 자 등에 대한 벌칙 신설(안 제33조의 2 신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방법으로 수의사업의 승인·변경승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수의사업의 승인을 받은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의 명의대여 금지규정을 위반 한자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함.</p>	수정가결
2	210901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p>가. 고엽제 후유증 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심리 재활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6 신설).</p> <p>나.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 제1항 제3 호사 목 신설).</p>	원안가결
3	211165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p>가. 1급 감염병으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등과 같은 서면 검진이 가능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환자 등록 심사 기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p> <p>나. 고엽제 후유증 수당대상자중생계 곤란자에 대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 보장수단을 마련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 10시설 등).</p>	원안가결
4	211376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유공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나이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함(안 제12조 제2항).	원안가결
5	21067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현행법상 전상 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과 특별공로상이자 외의 국가 유공자, 그 배우자 및 국가 유공자의 유족 중 앞순위자 1명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 진료하도록 하며, 국가보훈처장은 전상 군경, 공상군경 등의 신체적 기능 회복을 위한 의학적 재활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보훈병원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가 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대한 근거가 없어 진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국가 유공자 등은 신체적 기능 훼손에 따른 정신적 외상이 동반될 수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심리 재활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p> <p>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심리 재활서비스에 관한 사업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 및 예우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및 제44조의2 신설).</p>	원안가결

번호	의안 번호	법령	주요 내용	의결결과
6	211025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국가 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벌이는 연수교육의 법적 근거마련과 해당 교육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 신설). 나.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수를 증원하고, 자격요건을 확대함(안 제74조의6). 다. 보훈심사 국민참여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74조의19 신설).	
7	210901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독립유공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심리 재활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의4 신설). 나.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독립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 제1항 제4 호사 목 신설).	원안가결
8	210454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하여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등에 대한 환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5조, 제39조).	원안가결
9	210420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독립유공자의 묘지 소재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독립유공자의 친족 또는 묘지관리자들과의 연락체계를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수정가결
10	21194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중 자녀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만 18세까지만 지급 가능토록 하고 있어 대학진학 등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시기에 보상금 중단으로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전에 국가 지원이 끊기게 되는 상황임. 이에, 부모가 없는 보훈보상 대상자 자녀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만 24세로 상향하여 경제적 자립을 이루도록 국가가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1조 제2항).	수정가결
11	210902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의3 신설). 나. 보훈보상대상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심리 재활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53조의 3 신설). 다.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72조 제1항 제3 호사 목 신설).	원안가결
12	210901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가.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 신설). 나. 제대군인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등을 위한 심리 재활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의 4 신설). 다.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가 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 제1항 제3 호사 목 신설).	원안가결
13	210692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의 둘째 주를 제대군인 주간으로 정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취업 지원 기간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제대군인의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제대군인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제대군인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 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안가결

번호	의안 번호	법령	주요 내용	의결결과
14	2102016	「5·18민주유공자에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p>가. 법률 제명을 「5·18만 주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p> <p>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경우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중 추천된 1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 제1항 제6 호 신설).</p> <p>다.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5·18만 주 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이하 “각 단체”라 함)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 신설).</p> <p>라. 각 단체는 정치 활동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63조 신설).</p> <p>마. 각 단체는 법인으로 하고 정관, 회원, 임원 등, 이사회, 총회, 조직 등과 사업 범위를 규정함(안 제56조부터 제64조까지 신설).</p> <p>바. 각 단체는 사업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사업의 승인을 국가보훈처장에게 받도록 함(안 제65조 및 제66조 신설).</p> <p>사. 수익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승인의 유효기간을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신청이 있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 신설).</p> <p>아. 국가보훈처장은 각 단체가 법률을 위반하여 수익사업을 행하면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 신설).</p> <p>자. 각 단체의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체별로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0조 신설).</p> <p>차. 각 단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안 제73조 신설).</p> <p>카. 국가보훈처장은 각 단체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익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단체의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74조 및 제75조 신설).</p> <p>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내줄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 신설).</p> <p>파. 각 단체의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매입하고 그 후 해당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건 등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계약 체결일 30일 전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78조 신설).</p> <p>하. 각 단체의 투명한 재정관리를 위하여 예산 또는 회계 처리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 기준에 따르도록 함(안 제82조 신설).</p> <p>거.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생활 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9조의2 신설).</p> <p>너. 각 단체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명의대여자 및 명의 수여자 등 법률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98조 제4항 신설).</p> <p>더. 각 단체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을 운영한 자, 회계감사 또는 감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받은 자 등에게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등에게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00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p>	수정가결

번호	의안 번호	법령	주요 내용	의결결과
15	210674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p>가.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신설(안 제24조의4 신설)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승인의 유효기간을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도록 함.</p> <p>나. 수익사업의 승인 취소 사유보완 및 정지 명령 신설(안 제24조의 12 제1항) 국가보훈처장은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가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폐지하거나 그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2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p> <p>다. 국유재산? 공유재산과 관련된 재산의 처분계약내용 등보고(안 제28조 제4항 신설)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하여 보유한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가 그 매입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그 처분과 관련된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을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p> <p>라. 재무·회계기준준수(안 제32조의 2 신설)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의 투명한 회계 처리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예산 또는 회계 처리하도록 함.</p> <p>마. 거짓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 등에 대한 벌칙 신설(안 제41조의 2 신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방법으로 수익사업의 승인·변경승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의 명의대여 금지규정을 위반 한자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함.</p>	수정가결
16	210901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p>가.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훈병원 외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p> <p>나. 참전유공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심리 재활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 7 신설).</p> <p>다.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참전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 제1항 제3 호사 목 신설).</p>	원안가결
17	211168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중생계 곤란자에 대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 보장수단을 마련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신설 등).	원안가결
18	210674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p>가.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신설(안 제58조의3 신설)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승인의 유효기간을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도록 함.</p> <p>나. 수익사업의 승인 취소 사유보완 및 정지 명령 신설(안 제58조의 11 제1항) 국가보훈처장은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가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폐지하거나 그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2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p> <p>다. 국유재산, 공유재산과 관련된 재산의 처분계약 내용 등보고(안 제65조의 2 제4항 신설)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하여 보유한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가 그 매입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그 처분과 관련된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을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p> <p>라. 재무·회계기준준수(안 제68조의 2 신설)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의 투명한 회계 처리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예산 또는 회계 처리하도록 함.</p> <p>마. 거짓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 등에 대한 벌칙 신설(안 제82조의 2 신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방법으로 수익사업의 승인·변경승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의 명의대여 금지규정을 위반 한자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함.</p>	수정가결

번호	의안 번호	법령	주요 내용	의결결과
19	21090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p>가.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훈병원 외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p> <p>나. 특수 임무 유공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심리 재활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6조의 2 신설).</p> <p>다.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특수 임무 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80조 제1항 제3 호사 목 신설).</p>	원안가결
20	211169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 임무 유공자와 유족 중 생계곤란자에 대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 보장수단을 마련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신설 등).	원안가결